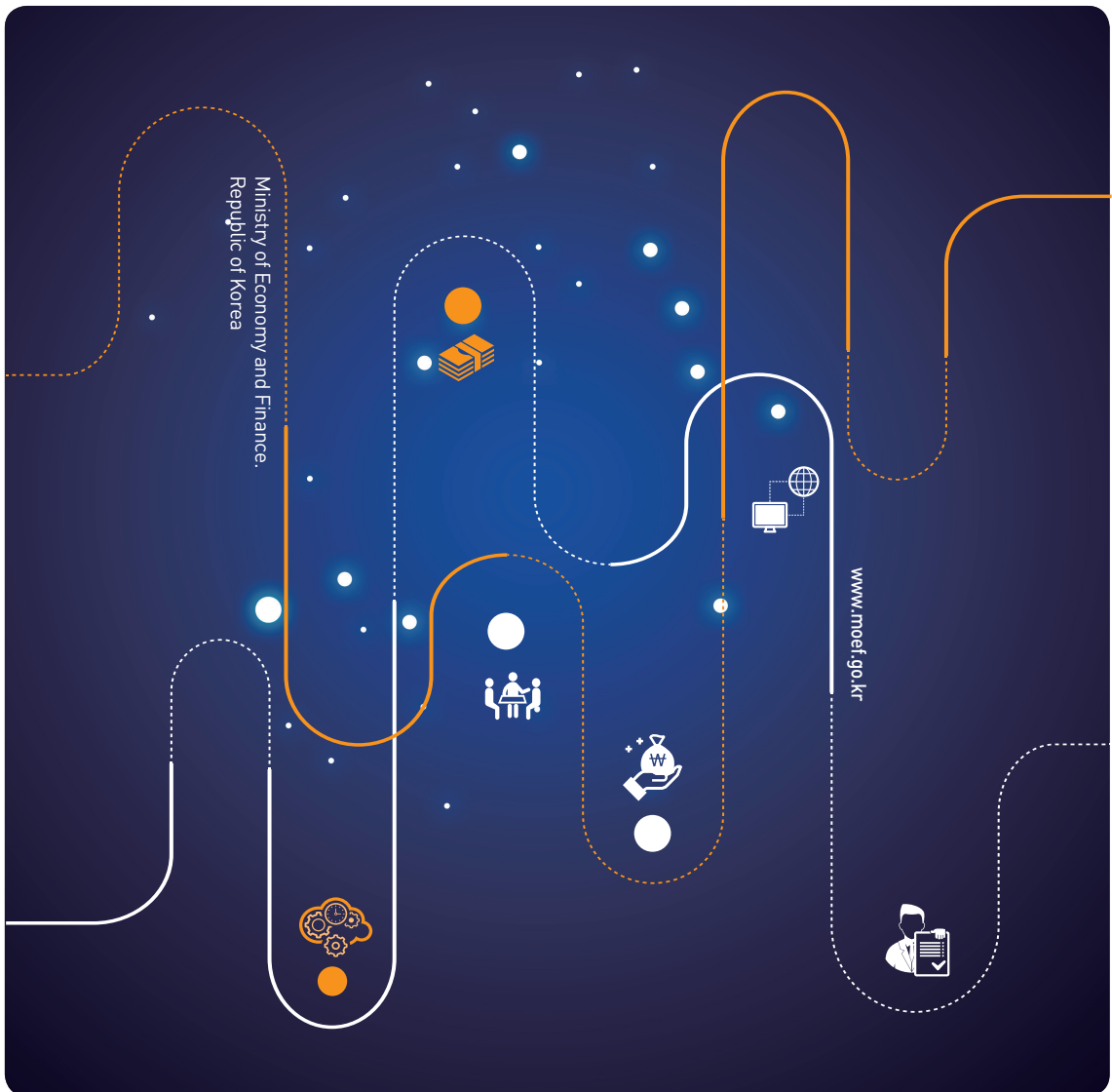


# 2018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 ☐ ☐ 목 차 ☐ ☐

## [ 감사원 지적사례 통계 PART ]

제1장 감사원 지적사례 통계 .....	3
-----------------------	---

## [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20선 PART ]

제1장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20선 .....	21
----------------------------	----

## [ 결산업무 단계별 오류사례 PART ]

제1장 수정전시산표 마감 전 .....	103
제2장 내부거래 .....	157
제3장 시스템 상 결산조정분개 .....	181
제4장 결산조정전표 등록 .....	194
제5장 결산서 생성 .....	216
제6장 결산서 발행 .....	237



# 감사원 지적사례 통계 PART



- ◆ '17회계연도는 국회제출 7년차로 감사원 결산검사 지적건수는 '11 회계연도 이후 크게 감소('11년 133건 -> '17년 100건) 하였다.
- ◆ 국가회계기준 미숙지 등으로 인한 단순 회계처리 오류\*는 감소하는 추세에서 2017회계연도에 증가('16년 45건 -> '17년 53건)하였다.  
\* 수익·비용 인식 오류, 자산누락 및 중복 계상 등 오류, 자산 및 부채 계정 분류 오류 등
- ◆ 업무담당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오류\*는 증가하는 추세에서 2015회계연도부터 감소 추세('15년 67건 -> '17년 47건)이다.  
\* 자산재평가, 대손 등 자산 평가 관련 오류, 건설중인자산 대체, 자본적지출 등 자산 취득 관련 오류, 부채 누락 및 중복 계상 등 오류
- ◆ 단순 회계처리 오류는 증가한 반면, 업무담당자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감소하였다.
- ◆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감사원 연례 지적사례가 전체 지적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상황(7개년 평균 78%이상)이다. 특히 2017회계연도에는 연례적 지적사례가 96건으로 전체 지적건수(100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 감사원 지적사례 전체 통계	...	4
2. 연례적 지적사례 통계	...	9
3. 감사원 지적사례 중앙관서별 통계	...	13

# 1

## 감사원 지적사례 전체 통계

### ■ 유형별 감사원 지적사례

유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적
자산재평가, 대손 등 자산 평가 관련 오류	15	19	22	32	34	21	16	159
건설중인자산 대체, 자본적지출 등 자산 취득 관련 오류	19	11	25	21	19	16	24	135
부채 누락 및 중복 계상 등 오류	17	18	23	23	14	14	7	116
수익, 비용 인식 오류 등	31	24	16	18	13	14	22	138
자산 누락 및 중복 계상 등 오류	21	30	21	23	30	24	24	173
자산 및 부채 계정 분류 오류	15	12	9	8	6	6	6	62
기타*	15	6	12	2	1	1	1	38
<b>합계</b>	<b>133</b>	<b>120</b>	<b>128</b>	<b>127</b>	<b>117</b>	<b>96</b>	<b>100</b>	<b>821</b>

<출처: '11~'17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 내부거래 제거 등 재무제표 통합조정(중앙관서 지적사항), 주식, 폐지·신설관서 간 자산·부채 이관 관련 오류

### ■ 세부 항목별 감사원 지적사례

세부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적
자산재평가, 대손 등 자산 평가 관련 오류	15	19	22	32	34	21	16	159
토지재평가 미 실시 등 자산재평가 관련 오류	3	4	11	12	10	12	8	60
대손설정 시 합리적인 추정 없이 단일 대손율을 적용하는 등 대손충당금 설정 오류	2	4	4	7	9	3	3	32
내용연수 입력 오류 등 감가상각비 계산 오류	1	1	-	3	3	1	3	12
회수가 불가능한 유가증권 등 감액손실 인식 누락	3	3	2	1	2	-	1	12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 인식 누락 등 BTO관련 회계처리 오류	2	1	2	4	1	-	-	10
국유재산 등재 오류 등으로 인한 자산 과대·과소계상 오류	-	-	-	-	2	4	-	6
회수가능성이 낮은 용자금에 대한 대손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등 용자금 평가 오류	1	1	1	1	1	-	-	5

세부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적
융자금에 대한 융자보조비용 및 융자보조원가충당금 미설정	2	-	-	-	1	1	-	4
저가법적용 예외 대상인 비축물자에 저가법을 적용하는 등 재고자산 평가 오류	1	2	-	1	-	-	-	4
전비품 등에 적용하는 표준단가 산정 오류	-	-	1	1	1	-	-	3
계정과목 선택 오류	-	-	-	-	1	-	-	1
자산 취득금액 계산 오류	-	-	-	-	1	-	-	1
미수제재금수익 인식시기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오류	-	-	-	1	-	-	-	1
비용을 자산 처리한 오류	-	-	-	-	1	-	-	1
기타 오류	-	3	1	1	1	-	1	7
<b>건설중인자산 대체, 자본적지출 등 자산 취득 관련 오류</b>	<b>19</b>	<b>11</b>	<b>25</b>	<b>21</b>	<b>19</b>	<b>16</b>	<b>24</b>	<b>135</b>
자산 취득금액을 비용 처리한 오류	14	1	1	3	8	7	12	46
자산취득성 경비(부대비 등)의 비용 처리 오류	-	5	6	5	2	4	6	28
취득완료된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5	3	2	3	2	1	3	19
국유재산 등재 오류 등으로 인한 자산 과대·과소계상 오류	-	2	3	1	2	1	2	11
선금 미청산으로 인한 선금금(건설중인자산) 과대계상 오류	-	-	-	2	2	1	1	6
비용을 자산 처리한 오류	-	-	2	2	1	-	-	5
계정과목 선택 오류	-	-	-	-	2	2	-	4
내용연수 입력 오류 등 감가상각비 계산오류	-	-	2	1	-	-	-	3
군수품 자산등재 누락 등 자산등재 오류	-	-	2	-	-	-	-	2
발생주의 기준이 아닌 현금수취시점 또는 현금지출시점에 수익과 비용 인식	-	-	1	1	-	-	-	2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할 공사비용 선지급금 등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	-	2	-	-	-	-	2
준공완료된 사옥에 대한 지급기일이 도래한 토지 취득분을 건설중인토지로 인식하지 아니함	-	-	-	1	-	-	-	1
과거 인식한 감액손실의 환입 회계처리 누락	-	-	-	1	-	-	-	1
기타 오류	-	-	4	1	-	-	-	5

세부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적
<b>부채 누락 및 중복 계상 등 오류</b>	<b>17</b>	<b>18</b>	<b>23</b>	<b>23</b>	<b>14</b>	<b>14</b>	<b>7</b>	<b>116</b>
지급의무 확정된 비용(부채) 등 회계처리 누락으로 인한 오류	3	1	6	3	5	6	2	26
소송충당부채 설정액 누락 등 소송충당부채 설정오류	2	5	3	4	2	2	2	20
지급의무 확정된 비용(부채) 등 회계처리 누락으로 인한 오류-비교환거래	3	2	4	5	1	-	-	15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등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오류	3	1	-	2	1	2	1	10
발생주의에 따른 선수수익 및 미지급비용의 인식 오류	2	1	1	1	-	1	-	6
소송 패소 등으로 지급 의무가 확정된 미지급금에 대한 부채 미인식	1	2	-	2	-	-	-	5
법무부소관의 소송충당부채를 다른 회계실체에서 인식하는 등 소송충당부채 계상 회계실체 오류	-	2	2	-	-	-	-	4
자산 처분 및 폐기 관련 회계처리 오류	-	-	-	-	-	1	2	3
BTL 미지급금 현재가치평가 오류 등	1	-	1	-	-	-	-	2
수익인식시기 및 기간귀속 미반영 오류	-	-	-	-	-	1	-	1
자산매각 징수결의시 발생한 선수금이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후에도 상계되지 않음	-	1	-	-	-	-	-	1
공공기관 위탁자산 등 미반영으로 인한 오류	-	-	-	-	1	-	-	1
기타 오류	2	3	6	6	4	1	-	22
<b>수익, 비용 인식 오류 등</b>	<b>31</b>	<b>24</b>	<b>16</b>	<b>18</b>	<b>13</b>	<b>14</b>	<b>22</b>	<b>138</b>
프로그램총원가, 비배분비용 등 원가배분 오류	6	7	2	3	2	3	12	35
계정과목 선택 오류	1	3	6	6	3	4	6	29
수익인식시기 및 기간귀속 미반영 오류	7	1	1	3	3	2	3	20
자산 처분 및 폐기 관련 회계처리 오류	6	2	2	1	1	-	-	12
선금 미청산으로 인한 선급금(건설중인자산) 과대계상 오류	2	-	1	-	-	2	-	5
관리전환 등 자산이관 관련 회계처리 오류	-	-	1	3	-	-	-	4
기타의기타의순자산증감 계정과목 사용에 따른 오류	1	3	-	-	-	-	-	4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계산 오류	2	1	-	-	-	-	-	3

세부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적
자산부채 평가 관련 회계처리 오류	1	2	-	-	-	-	-	3
교부금 정산액 미반영 오류	2	-	-	-	-	-	-	2
수익비용 중복 계상 오류	-	-	-	1	-	-	-	1
자산 취득금액을 비용 처리한 오류	-	-	-	-	1	-	-	1
취득완료된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	-	-	-	1	-	-	1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등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오류	-	1	-	-	-	-	-	1
지급의무 확정된 비용(부채) 등 회계처리 누락으로 인한 오류	1	-	-	-	-	-	-	1
국유재산 등재 오류 등으로 인한 자산 과대·과소계상 오류	-	-	-	-	-	-	1	1
회수가 불가능한 유가증권 등 감액손실 인식 누락	-	-	-	-	1	-	-	1
기타 오류	2	4	3	1	1	3	-	14
<b>자산 누락 및 중복 계상 등 오류</b>	<b>21</b>	<b>30</b>	<b>21</b>	<b>23</b>	<b>30</b>	<b>24</b>	<b>24</b>	<b>173</b>
국유재산 등재 오류 등으로 인한 자산 과대·과소계상 오류	9	6	4	10	6	7	4	46
자산 취득금액을 비용 처리한 오류	5	1	2	-	13	5	1	27
선금 미청산으로 인한 선급금(건설중인자산) 과대계상 오류	1	5	1	2	-	2	5	16
관리전환 등 자산이관 관련 회계처리 오류	-	4	5	1	1	1	1	13
수익인식시기 및 기간귀속 미반영 오류	-	4	2	4	-	1	1	12
공공기관 위탁자산 등 미반영으로 인한 오류	-	-	5	1	-	1	-	7
계정과목 선택 오류	-	2	1	-	-	1	2	6
자산 처분 및 폐기 관련 회계처리 오류	-	1	1	1	-	1	2	6
군수품 자산등재 누락 등 자산등재 오류	-	-	-	-	4	1	-	5
비용을 자산 처리한 오류	-	-	-	-	-	1	4	5
소유권 이전이 확정된 자산 미제거 등으로 인한 오류	3	-	-	1	-	-	-	4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 인식 누락 등 BTO관련 회계처리 오류	-	2	-	1	-	-	1	4

세부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적
자산취득성 경비(부대비 등)의 비용 처리 오류	-	3	-	1	-	-	-	4
자산 취득금액 계산 오류	1	-	-	1	-	-	-	2
금융리스, 운용리스 구분 오류	1	1	-	-	-	-	-	2
취득완료된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	-	-	-	1	-	1	2
기타의기타의순자산증감 계정과목 사용에 따른 오류	-	-	-	-	-	-	2	2
지급의무 확정된 비용(부채) 등 회계처리 누락으로 인한 오류	1	-	-	-	-	-	-	1
기타 오류	-	1	-	-	5	3	-	9
<b>자산 및 부채 계정 분류 오류</b>	<b>15</b>	<b>12</b>	<b>9</b>	<b>8</b>	<b>6</b>	<b>6</b>	<b>6</b>	<b>62</b>
유동성 분류 관련 오류	3	5	7	7	3	4	5	34
계정과목 선택 오류	8	6	2	1	3	2	1	23
국유재산 등재 오류 등으로 인한 자산 과대·과소계상 오류	2	-	-	-	-	-	-	2
선금 미청산으로 인한 선급금(건설중인자산) 과대계상 오류	2	-	-	-	-	-	-	2
비용을 자산 처리한 오류	-	1	-	-	-	-	-	1
<b>기타</b>	<b>15</b>	<b>6</b>	<b>12</b>	<b>2</b>	<b>1</b>	<b>1</b>	<b>1</b>	<b>38</b>
<b>합계</b>	<b>133</b>	<b>120</b>	<b>128</b>	<b>127</b>	<b>117</b>	<b>96</b>	<b>100</b>	<b>821</b>

## 2

## 연례 지적사례 통계

## ▣ 세부 항목별 감사원 지적사례

세부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적
자산 취득금액을 비용 처리한 오류	19	2	3	3	22	12	13	74
국유재산 등재 오류 등으로 인한 자산 과대·과소계상 오류	11	8	7	11	10	12	7	66
계정과목 선택 오류	9	11	9	7	9	9	9	63
토지재평가 미 실시 등 자산재평가 관련 오류	3	4	11	12	10	12	8	60
대손설정 시 합리적인 추정 없이 단일 대손율을 적용하는 등 대손충당금 설정 오류	2	4	7	8	9	3	3	36
프로그램총원가, 비배분비용 등 원가배분 오류	6	7	2	3	2	3	12	35
수익인식시기 및 기간귀속 미반영 오류	7	6	3	7	3	4	4	34
유동성 분류 관련 오류	3	5	7	7	3	4	5	34
자산취득성 경비(부대비 등)의 비용 처리 오류	-	8	6	6	2	4	6	32
선금 미청산으로 인한 선급금(건설중인자산) 과대계상 오류	5	5	2	4	2	5	6	29
지급의무 확정된 비용(부채) 등 회계처리 누락으로 인한 오류	5	1	6	3	5	6	2	28
취득완료된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5	3	2	3	4	1	4	22
소송충당부채 설정액 누락 등 소송충당부채 설정오류	2	5	4	5	2	2	2	22
자산 처분 및 폐기 관련 회계처리 오류	6	3	3	2	1	2	4	21
관리전환 등 자산이관 관련 회계처리 오류	-	4	6	4	1	1	1	17
지급의무 확정된 비용(부채) 등 회계처리 누락으로 인한 오류-비교환거래	3	2	4	5	1	-	-	15
내용연수 입력 오류 등 감가상각비 계산오류	1	1	2	4	3	1	3	15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 인식 누락 등 BTO관련 회계처리 오류	2	3	2	5	1	-	1	14
회수가 불가능한 유가증권 등 감액손실 인식 누락	3	3	2	1	3	-	1	13
비용을 자산 처리한 오류	-	1	2	2	2	1	4	12

세부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적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등 오류	3	2	-	2	1	2	1	11
공공기관 위탁자산 등 미반영으로 인한 오류	-	-	5	1	1	1	-	8
군수품 자산등재 누락 등 자산등재 오류	-	-	2	-	4	1	-	7
발생주의에 따른 선수수익 및 미지급비용의 인식 오류	2	1	1	1	-	1	-	6
기타의기타의순자산증감 계정과목 사용에 따른 오류	1	3	-	-	-	-	2	6
회수가능성이 낮은 용자금에 대한 대손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등 용자금 평가 오류	1	1	1	1	1	-	-	5
소송 패소 등으로 지급 의무가 확정된 미지급금에 대한 부채 미인식	1	2	-	2	-	-	-	5
용자금에 대한 용자보조비용 및 용자보조원가충당금 미설정	2	-	-	-	1	1	-	4
법무부소관의 소송충당부채를 다른 회계실체에서 인식하는 등 소송충당부채 계상 회계실체 오류	-	2	2	-	-	-	-	4
내부거래 미제거 오류	-	-	1	-	1	1	1	4
저가법적용 예외 대상인 비축물자에 저가법을 적용하는 등 재고자산 평가 오류	1	2	-	1	-	-	-	4
소유권 이전이 확정된 자산 미제거 등으로 인한 오류	3	-	-	1	-	-	-	4
자산 취득금액 계산 오류	1	-	-	1	1	-	-	3
자산부채 평가 관련 회계처리 오류	1	2	-	-	-	-	-	3
전비품 등에 적용하는 표준단가 산정 오류	-	-	1	1	1	-	-	3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계산 오류	2	1	-	-	-	-	-	3
발생주의 기준이 아닌 현금수취시점 또는 현금지출시점에 수익과 비용 인식	-	-	1	1	-	-	-	2
교부금 정산액 미반영 오류	2	-	-	-	-	-	-	2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할 공사비용 선지급금 등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	-	2	-	-	-	-	2
BTL 미지급금 현재가치평가 오류 등	1	-	1	-	-	-	-	2
금융리스, 운용리스 구분 오류	1	1	-	-	-	-	-	2
물납 회계처리 오류	-	1	1	-	-	-	-	2

세부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적
국세수익 과소계상 오류	-	-	1	-	-	-	-	1
자산매각 징수결의시 발생한 선수금이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후에도 상계되지 않음	-	1	-	-	-	-	-	1
미수제재금수익 인식시기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오류	-	-	-	1	-	-	-	1
경정청구로 인한 물납 유가증권 반환처리 오류	-	-	1	-	-	-	-	1
수익비용 중복 계상 오류	-	-	-	1	-	-	-	1
준공완료된 사옥에 대한 지급기일이 도래한 토지 취득분을 건설중인토지로 인식하지 아니함	-	-	-	1	-	-	-	1
과거 인식한 감액손실의 환입 회계처리 누락	-	-	-	1	-	-	-	1
기타 오류	19	15	18	9	11	7	1	80
<b>합계</b>	<b>133</b>	<b>120</b>	<b>128</b>	<b>127</b>	<b>117</b>	<b>96</b>	<b>100</b>	<b>821</b>

\* 감사원 유형은 다르게 구분되어 있으나, 성격이 동일한 세부항목은 합산하여 표시함

## ■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감사원 연례 지적사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적
자산 취득금액을 비용 처리한 오류	19	2	3	3	22	12	13	74
국유재산 등재 오류 등으로 인한 자산 과대·과소계상 오류	11	8	7	11	10	12	7	66
계정과목 선택 오류	9	11	9	7	9	9	9	63
토지재평가 미 실시 등 자산재평가 관련 오류	3	4	11	12	10	12	8	60
대손설정 시 합리적인 추정없이 단일대손율을 적용하는 등 대손충당금 설정 오류	2	4	7	8	9	3	3	36
프로그램총원가, 비배분비용 등 원가배분 오류	6	7	2	3	2	3	12	35
수익인식시기 및 기간귀속 미반영 오류	7	6	3	7	3	4	4	34
유동성 분류 관련 오류	3	5	7	7	3	4	5	34
자산취득성 경비(부대비 등)의 비용 처리 오류	-	8	6	6	2	4	6	32
선금 미청산으로 인한 선급금(건설중인자산) 과대계상 오류	5	5	2	4	2	5	6	29
지급의무 확정된 비용(부채) 등 회계처리 누락으로 인한 오류	5	1	6	3	5	6	2	28
취득완료된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5	3	2	3	4	1	4	22
소송충당부채 설정액 누락 등 소송충당부채 설정오류	2	5	4	5	2	2	2	22
자산 처분 및 폐기 관련 회계처리 오류	6	3	3	2	1	2	4	21
관리전환 등 자산이관 관련 회계처리 오류	-	4	6	4	1	1	1	17
내용연수 입력 오류 등 감가상각비 계산오류	1	1	2	4	3	1	3	15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 인식 누락 등 BTO관련 회계처리 오류	2	3	2	5	1	-	1	14
회수가 불가능한 유가증권 등 감액손실 인식 누락	3	3	2	1	3	-	1	13
비용을 자산 처리한 오류	-	1	2	2	2	1	4	12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등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오류	3	2	-	2	1	2	1	11
<b>합계</b>	<b>92</b>	<b>86</b>	<b>86</b>	<b>99</b>	<b>95</b>	<b>84</b>	<b>96</b>	<b>638</b>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 사항으로 기타오류 등은 제외

## 3

## 감사원 지적사례 중앙관서별 통계

## ■ 중앙관서별 감사원 지적사례

중앙관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적 (A)	연례적 지적(B)	비율 (B/A)
경찰청	6	6	2	2	3	2	2	23	23	100%
고용노동부	6	2	6	5	2	3	3	27	22	81%
공정거래위원회	-	1	1	3	1	1	1	8	8	100%
관세청	1	2	2	3	3	1	-	12	8	67%
교육부	6	4	4	4	4	3	2	27	21	78%
국가보훈처	3	2	1	4	2	2	2	16	12	75%
국가인권위원회	-	-	-	1	2	1	1	5	5	10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	1	1	1	1	-	1	7	7	100%
국민권익위원회	-	-	1	-	-	-	1	2	2	100%
국방부	7	7	11	11	12	8	9	65	43	66%
국세청	1	4	4	1	1	1	-	12	9	75%
국토교통부	8	5	8	7	9	9	8	54	44	81%
국회	-	-	1	-	-	1	2	4	4	100%
금융위원회	3	1	2	4	2	1	1	14	10	71%
기상청	3	-	2	2	3	3	-	13	10	77%
기획재정부	4	9	11	7	9	5	4	49	35	71%
농림축산식품부	4	5	4	7	5	5	3	33	20	61%
농촌진흥청	2	3	4	2	2	1	2	16	14	88%
대법원	1	3	3	1	2	1	1	12	11	92%
문화재청	3	7	3	2	3	1	2	21	17	81%
문화체육관광부	4	5	4	6	-	3	6	28	23	82%
방송통신위원회	-	1	-	-	-	1	1	3	2	67%
방위사업청	9	6	4	3	4	3	2	31	20	65%
법무부	5	4	2	2	-	2	2	17	10	59%
법제처	-	-	1	-	1	-	-	2	2	100%
병무청	-	1	1	1	2	1	1	7	6	86%
보건복지부	3	5	5	5	5	4	2	29	20	69%
산림청	5	8	8	4	4	3	4	36	31	86%
산업통상자원부	1	3	7	3	1	4	1	20	13	65%
새만금개발청	-	-	-	1	1	2	1	5	5	100%
식품의약품안전처	1	-	1	-	2	1	3	8	8	100%

중앙관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적 (A)	연례적 지적(B)	비율 (B/A)
여성가족부	1	-	1	1	1	1	2	7	7	100%
외교부	3	1	1	1	2	3	2	13	12	92%
원자력안전위원회	1	-	-	1	1	-	-	3	3	100%
인사혁신처	1	2	-	-	-	-	-	3	2	67%
조달청	1	-	1	3	-	-	-	5	4	8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2	1	-	-	-	-	6	2	33%
통계청	2	-	-	1	1	1	-	5	2	40%
통일부	4	1	2	3	4	3	4	21	17	81%
특허청	3	-	-	1	3	1	1	9	8	89%
해양수산부	3	2	6	6	4	3	6	30	23	7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	2	1	4	2	3	2	17	14	82%
헌법재판소	-	-	-	1	-	-	-	1	1	100%
환경부	4	7	2	5	4	2	4	28	24	8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	-	-	1	-	-	1	1	100%
해양경찰청	3	2	1	4	3	1	2	16	15	94%
행정안전부	3	1	3	1	1	-	1	10	8	8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	-	-	-	-	1	1	1	100%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	-	-	-	-	-	1	1	1	100%
중소벤처기업부	1	2	-	1	3	1	2	10	6	6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2	4	2	1	3	3	24	18	75%
소방청	-	-	-	-	-	1	1	2	2	100%
대통령경호처	-	1	1	-	-	-	-	2	2	100%
<b>합계</b>	<b>133</b>	<b>120</b>	<b>128</b>	<b>127</b>	<b>117</b>	<b>96</b>	<b>100</b>	<b>821</b>	<b>638</b>	<b>78%</b>

<출처: '11~'17 감사원결산감사보고서>

▣ 중앙관서별 감사원 유형에 따른 지적사례 누적 수

중앙관서	감사원 유형*							합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6	기타	
경찰청	5	6	1	3	5	3	-	23
고용노동부	10	-	4	9	-	2	2	27
공정거래위원회	1	-	4	-	3	-	-	8
관세청	3	2	3	1	1	-	2	12
교육부	9	1	4	4	6	1	2	27
국가보훈처	4	2	4	-	3	3	-	16
국가인권위원회	-	1	1	-	2	1	-	5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2	-	-	4	1	-	7
국민권익위원회	-	-	-	-	2	-	-	2
국방부	14	9	10	7	22	1	2	65
국세청	2	1	1	1	-	-	7	12
국토교통부	10	5	11	5	17	2	4	54
국회	1	1	-	1	-	1	-	4
금융위원회	-	1	5	4	1	3	-	14
기상청	1	2	4	3	3	-	-	13
기획재정부	12	1	5	12	12	3	4	49
농림축산식품부	7	5	6	5	8	2	-	33
농촌진흥청	2	7	-	1	4	2	-	16
대법원	1	5	-	1	1	3	1	12
문화재청	4	7	-	7	-	3	-	21
문화체육관광부	4	9	2	9	4	-	-	28
방송통신위원회	-	-	-	1	1	1	-	3
방위사업청	3	4	5	2	15	1	1	31
법무부	2	1	7	1	3	1	2	17
법제처	-	-	-	-	1	1	-	2
병무청	1	2	2	1	1	-	-	7
보건복지부	4	6	5	4	6	2	2	29
산림청	10	5	5	7	4	5	-	36
산업통상자원부	6	2	3	4	4	1	-	20

중앙관서	감사원 유형*							합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6	기타	
새만금개발청	-	2	1	-	2	-	-	5
식품의약품안전처	-	3	-	3	-	2	-	8
여성가족부	1	1	1	-	3	1	-	7
외교부	2	2	2	4	1	2	-	13
원자력안전위원회	1	1	1	-	-	-	-	3
인사혁신처	-	-	1	1	-	1	-	3
조달청	2	-	-	2	-	1	-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1	1	1	-	3	6
통계청	1	-	-	3	1	-	-	5
통일부	4	5	2	3	5	1	1	21
특허청	2	2	1	3	1	-	-	9
해양수산부	5	8	6	2	7	1	1	3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7	4	2	2	1	1	-	17
헌법재판소	-	1	-	-	-	-	-	1
환경부	8	4	1	5	5	5	-	28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	-	-	1	-	-	1
해양경찰청	2	4	2	3	4	1	-	16
행정안전부	1	2	1	3	3	-	-	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1	-	-	-	-	-	1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	-	-	-	-	1	-	1
중소벤처기업부	3	1	1	4	1	-	-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3	1	6	4	2	4	24
소방청	-	2	-	-	-	-	-	2
대통령경호처	-	2	-	-	-	-	-	2
<b>합계</b>	<b>159</b>	<b>135</b>	<b>116</b>	<b>138</b>	<b>173</b>	<b>62</b>	<b>38</b>	<b>821</b>

<출처: '11~'17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 감사원 유형별 세부내용

유형	세부내용
유형1	자산재평가, 대손 등 자산 평가 관련 오류
유형2	건설중인자산 대체, 자본적지출 등 자산 취득 관련 오류
유형3	부채 누락 및 중복 계상 등 오류
유형4	수익, 비용 인식 오류 등
유형5	자산 누락 및 중복 계상 등 오류
유형6	자산 및 부채 계정 분류 오류



##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20선 PART



## 제1장

##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20선

◆ 2017회계연도 감사원 지적건수(100건) 중 연례적 지적사례가 96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결산 시 연례적 지적사례 관련 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감사원 지적사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1. 자산 취득금액을 비용 처리한 오류	...	22
2. 국유재산 등재 오류 등으로 인한 자산 과대·과소계상 오류	...	26
3. 계정과목 선택 오류	...	30
4. 토지 재평가 미실시 등 자산재평가 관련 오류	...	34
5. 대손설정 시 합리적인 추정 없이 단일 대손율을 적용하는 등 대손충당금 설정 오류	...	40
6. 프로그램총원가, 비배분비용 등 원가배분 오류	...	43
7. 수익인식시기 및 기간귀속 미반영 오류	...	48
8. 유동성 분류 관련 오류	...	51
9. 자산 취득성 경비(부대비 등)의 비용 처리 오류	...	54
10. 선금 미청산으로 인한 선급금(건설중인자산) 과대계상 오류	...	59
11. 지급의무 확정된 비용(부채)등 회계처리 누락으로 인한 오류	...	64
12. 취득완료된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	68
13. 소송충당부채 설정액 누락 등 소송충당부채 설정오류	...	72
14. 자산 처분 및 폐기 관련 회계처리 오류	...	76
15. 관리전환 등 자산이관 관련 회계처리 오류	...	80
16. 내용연수 입력 오류 등 감가상각비 계산오류	...	82
17.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 인식 누락 등 BTO관련 회계처리 오류	...	85
18. 회수가 불가능한 유가증권 등 감액손실 인식누락	...	89
19. 비용을 자산 처리한 오류	...	92
20.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등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오류	...	97

# 1

## 자산 취득금액을 비용 처리한 오류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누적
자산 취득금액을 비용 처리한 오류	19	2	3	3	22	12	13	74

<출처: '11~'17 감사원결산감사보고서>

### 대표사례

OO청 일반회계에서 XX진흥원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연구개발용역비로 처리하여, 내부개발소프트웨어(무형자산) 및 무형자산상각비(프로그램명: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가 각각 9억 7,898만 원, 1억 7,277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연구개발용역비(프로그램명: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가 11억 5,175만 원 과대 계상되었다. ('17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 ➤ 무체재산 취득 관련 비용 지출 시 용역명세 선택 오류

업무담당자는 용역계약요청서 작성 시 '용역명세'에서 해당 용역의 성격에 따라 국유재산(무체재산 및 선박항공기), 건설중인자산, 비용, 물품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전산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에 지출된 용역비는 무체재산으로 등재해야 하나, 무체재산이 아닌 비용을 선택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1-1 | 조달(계약)>요청>용역계약>용역계약요청

##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 Step I: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결산담당자는 아래 방법 중 각 회계실체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자산 취득금액을 비용 처리한 오류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① 비용항목 분개장 검토 및 추세 분석

- 연구개발비, 수선유지비 계정과목에서 무형자산(내부개발소프트웨어)으로 등록되어야 할 자산이 비용 처리된 오류가 많으므로, 연구개발비, 수선유지비 분개장 전체를 금액순으로 정렬한 후 금액이 큰 항목들을 중심으로 적요를 통해 지출항목의 성격을 검토한다.
- 연구개발비, 수선유지비가 매년 많이 발생하는 부처의 경우, 합계잔액시산표에서 해당 계정과목을 더블클릭하여 월별 증가내역을 검토하는 추세 분석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때 비정상적으로 연구개발비/수선유지비가 많은 월의 세부내역을 추가로 확인한다.

#### ② 내부개발소프트웨어와 비용항목 단위사업 비교

내부개발소프트웨어와 비용항목(연구개발비, 수선유지비) 분개장 조회 시 '단위사업' 명을 비교하여 내부개발소프트웨어와 비용항목에서 동일한 단위사업명이 조회되는지 확인한다. 이때 비용화된 내역이 발견되는 경우 자산화하지 않고 비용처리한 이유를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 ▶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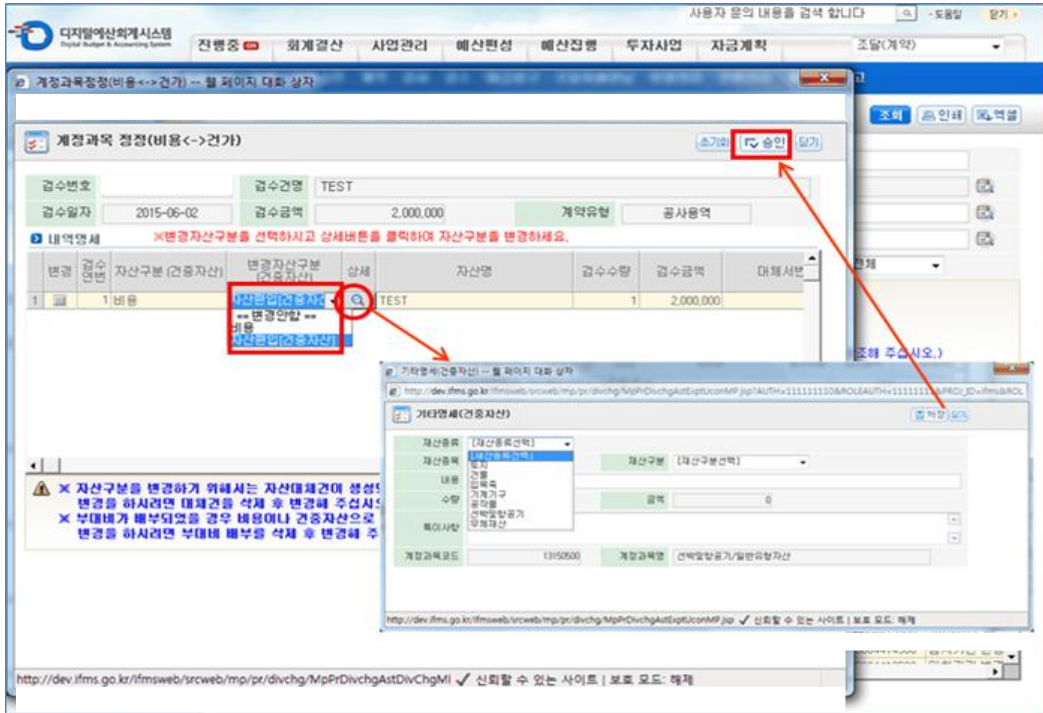
결산담당자는 'Step I'에서 파악한 항목을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하여 무체 재산으로 등재해야 할 내역이 없는지 확인(계약서 검토 등) 시킨다. 만약 업무담당자가 비용처리가 타당하다고 답변한 경우 근거를 업무담당자로부터 수령한다.

### ▶ Step III: 오류 사유별 조치

- 내부개발소프트웨어가 비용처리 된 경우 업무담당자는 계정과목정정(비용<->건가) 기능을 통해 선급금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를 직접 건중자산 대체서를 생성하여 자산등재 할 수 있다.

- **계정과목 정정**: 업무담당자는 계정과목 정정(비용<->건가) 메뉴에서 변경할 건을 조회한 후 [상세]메뉴를 활용하여 자산종류를 '무체재산'으로 선택하면 계정과목이 '선급금'으로 수정된다.

그림 1-2 | 조달(계약)>검사>검사등록>계정과목정정(비용<->건가)



- **건중자산대체서 생성**: 업무담당자는 건명과 검수일자, 검수자를 선택한 뒤 건설중인자산 내역의 '추가' 버튼을 이용해 건설중인자산을 추가한다. '자산명세' 부분에서 '관서, 자산구분'을 선택한 뒤 '승인'버튼을 누르면 '무체재산'으로 자산 등재된다.

그림 1-3 | 조달(계약)>검수>검수등록>건중자산대체서 생성

**건중자산대체서 생성** [입저장] [입삭제] [승인] [도 취소] [닫기]

검수번호: [ ] 견명: 용역계약 공작물..기타잡공작물대체

요청부서: [ ]

검수일자: 2015-02-01 [ ] 검수자: 결산교육

검수자의견: [ ]

첨부파일: [ ] [첨부] [초삭제]

프로그램: 2015 공공질서및안전/경찰/경찰행정지원/본부기본경비/경남형기본경비

진행상태: 검수-완료

**3. 견실증언자산 내역** [공사계약통합정산] [대장상세정보] [추가] [삭제]

선택	검수번호	연번	검수명	자산명	검사금액	미정산금액	금회정산금액(A)	검사일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용역간중		100,000	0	100,000	2015-01-28

**3. 자산명세**

물품/재산란서: [ ]

자산구분: [ ] 자산명: [ ]

취득금액(A+B): 100,000 정산금액(A): 100,000 [정산] 부대비(B): [ ]

**3. 부대비** [부대비등록]

발생일자	발생연번	발생내역	발생비용	미배부비용	금회정산금액(B)	거려쳐
------	------	------	------	-------	-----------	-----

### <TIP> 소프트웨어 분류 기준

#### 1. '17회계연도 국유재산 결산 지침

- 전산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에 지출된 비용(용역비)을 무체재산으로 등재, 단 서버 등 물품 구매비용은 제외(물품으로 관리)
- 매입한 패키지 S/W(예: 한글 2007, V3 등)는 무체재산이 아니므로 결산에 반영하지 말 것



#### 2. 계정과목해설서 X. 무형자산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 범용소프트웨어(예: MS Office, 한글 등)와 전용소프트웨어(예: Oracle, DB,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도서관운영시스템 등)를 외부로부터 구입한 경우 내부개발소프트웨어가 아닌 외부구입소프트웨어로 처리한다.

## 2

## 국유재산 등재 오류 등으로 인한 자산 과대·과소계상 오류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누적
국유재산 등재오류 등으로 인한 자산 과대·과소계상 오류	11	8	7	11	10	12	7	66

<출처: '11~'17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 대표사례

OO부 일반회계에서 강원도 원주시 소재 XX센터 건설이 진행 중인데도 기성금 지급액을 건물로 회계처리하여 건물(일반유형자산)이 40억 9,138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건설중인건물(일반유형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으며, 이에 대한 건물감가상각누계액(일반유형자산의 차감계정) 및 감가상각비(프로그램명: 과학수사)가 각각 682만 원 과대 계상되었다. ('17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 ▶ Case I: 국유재산 취득시점에 대한 판단 오류

국유재산은 취득이 완료된 시점에 국유재산대장에 등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담당자가 국유재산의 취득 완료 시점을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업무처리를 진행하여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자산을 국유재산에 등재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 ▶ Case II: 거래의 성격에 맞지 않는 계약 종류의 선택

국유재산의 취득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의하여야 할 절차는 해당 국유재산의 취득 성격에 맞는 계약종류를 선택하는 것이다.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보증금은 국유재산 중 무체재산권에 해당하며, '무체재산취득요청' 메뉴를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업무담당자가 '사용/임차계약요청' 메뉴를 사용하여 업무를 진행할 경우 무체재산이 국유재산대장에서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 Step I: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결산담당자는 매 회계연도말에 합계잔액시산표\* 조회를 통해 국유재산 관련 계정과목의 주요 증가내역을 파악한 후 전기 대비 크게 변동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회계결산>재무장부>시산표조회>합계잔액시산표]

### ➤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결산담당자는 전기 대비 크게 변동한 사항 중 과거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고려할 때 오류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수행한 후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

#### ① 취득이 완료된 자산인지 여부 검토 및 오류수정

-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상 일반유형자산 관련 증가내역 중 등기 대상 토지, 건물이 있을 경우, 각 건별로 당기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여부를 업무담당자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 확인 결과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건이 발견될 경우 결산담당자는 업무담당자에게 취득이 완료된 자산이 맞는지 재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 추가 확인결과 취득이 완료된 자산이 아니라면 해당 자산을 국유재산 대장에서 제거하고 건설중인자산 계정과목이 재무결산에 반영되도록 수정하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

#### <자산대체서를 통해 자산등재된 경우>

해당 건이 업무처리상 자산대체서를 통해 건설중인자산에서 국유재산으로 대체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가 [조달/검수/검수조서전체조회] 메뉴에서 해당 자산대체서를 조회한 후 취소함으로써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 <취득(부동산, 무체재산)계약을 통해 자산등재된 경우>

해당 건이 자산대체서를 통하지 않고 바로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된 경우(토지, 전세권)에는 업무담당자가 [조달/진행관리/검수명세변경/수량변경및자산합산] 메뉴를 통해 자산구분을 [건중자산]으로 변경하면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 ② 전세권 설정여부 검토 및 오류수정

○ 임차보증금의 경우 전세권 설정 여부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지는데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보증금은 '임차보증금-국유'로 전세권이 미설정된 임차보증금은 '임차보증금-채권'으로 재정상태표에 표시된다.

○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상 임차보증금 증가내역이 있을 경우 '임차보증금-국유', '임차보증금-채권'으로 조회\*되는 내역에 대해서 각 업무 담당자에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 [회계결산>재무장부>회계기금>원장조회>보조원장조회]

○ 결산담당자는 전세권 설정 여부 확인 결과 계약 종류의 선택이 잘못된 경우, 업무담당자에게 올바른 계정과목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 [조달>진행관리>검수명세변경>임차/전세권 변경]

그림 1-4 | 검수명세변경>임차/전세권변경



### <‘임차보증금-국유’에서 ‘임차보증금-채권’으로 수정>

해당 메뉴를 통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임차보증금이 ‘임차보증금-국유’로 등재된 경우 ‘임차보증금-채권’으로 수정해 주어야 하며,

### <‘임차보증금-채권’에서 ‘임차보증금-국유’로 수정>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임차보증금이 ‘임차보증금-채권’으로 등재된 경우 ‘임차보증금-국유’로 수정해 주어야 한다. 다만, ‘임차보증금-채권’을 ‘임차보증금-국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채권’이 자동으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채권 소멸절차[채권>채권마감>마감자료조정>월별채권현황>대출(기타)채권소멸처리]를 추가적으로 진행해 주어야 한다.

### <TIP> 해외소재 국유재산 취득 완료시점



1. 일부 회계실체의 경우 해외부동산(토지,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데, 해당 국가에 등기제도가 없는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허가만으로도 취득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등기제도가 없는 국유재산의 경우 각 상황별(인수시점, 사용수익시점 등)로 취득절차가 완료된 시점을 판단해야 하며, 취득절차 완료시점에 국유재산대장 및 재무결산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3

## 계정과목 선택 오류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누적
계정과목 선택 오류	9	11	9	7	9	9	9	63

<출처: '11~'17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 대표사례

OO처 일반회계에서 소비자감시원활동비 등 외부지급수수료를 기타수수료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비배분비용의 잡손실 및 관리운영비의 기타용역비로 처리하여, 기타수수료 3억 7,827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잡손실 및 기타용역비가 각각 2억 4,344만 원, 1억 3,483만 원 과대 계상되었다. ('17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 ▶ Case I: 세부·세세부 항목 선택 오류

세출예산조회 화면에서 세부·세세부항목의 선택은 지출하는 비용의 계정과목을, 세입예산조회 화면에서 세부·세세부항목의 선택은 수입하는 현금과 관련된 수익 계정과목을 결정하는 업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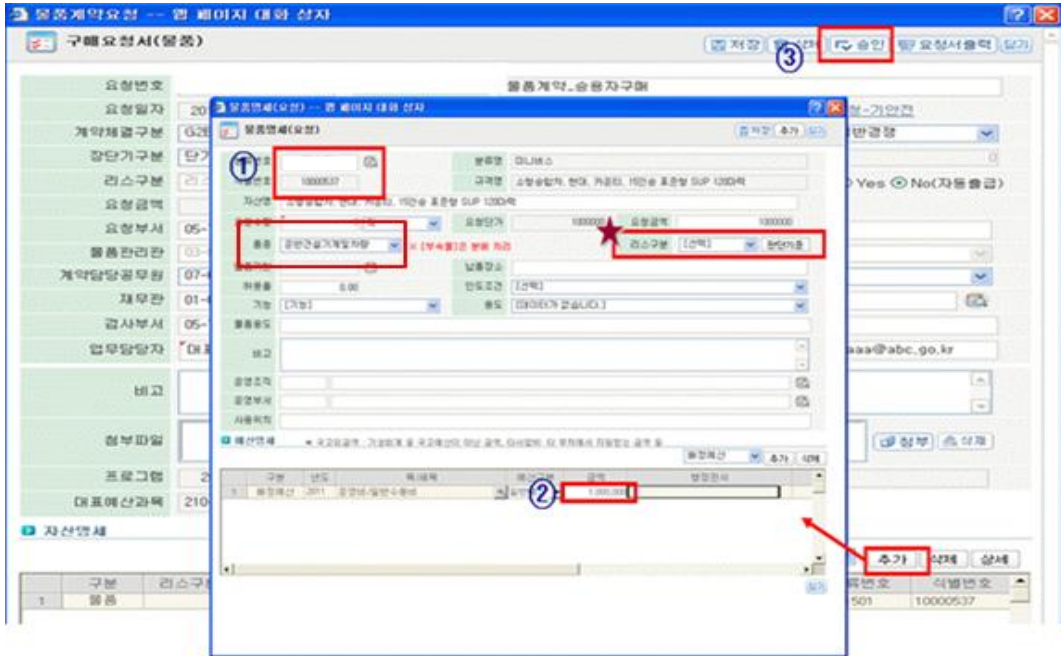
그런데 지출요청서 또는 징수요청서를 작성하는 담당자가 해당 지출 또는 수입과 관계없는 예산과목 및 세부·세세부항목을 선택하는 경우 재정운영표에 집계되는 비용 또는 수익정보가 왜곡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별도의 세부·세세부항목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타'항목을 선택하는 경우 잡손실 또는 잡이익이 과다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 ▶ Case II: 계약요청서 작성 시 자산명세 선택 오류

각종 계약(물품계약, 공사계약, 용역계약 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출의 성격을 구분하기 위하여 계약요청서 작성 시 자산명세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1-5 | 자산명세 선택(물품계약요청)



또한, 각 계약과 관련하여 선금 지급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요청서에서 선택한 자산명세에 따라 생성되는 계정과목이 달라진다. 자산 관련 항목을 선택할 경우 ‘건설중인자산’ 계정과목이, 비용 관련 항목을 선택할 경우 ‘선급금’ 계정과목이 선금지급 시 생성된다.

그런데 업무담당자가 향후 비용처리될 계약 건에 대해서 자산 관련 항목을 선택하거나, 향후 자산에 등재될 계약 건에 대해 비용 관련 항목을 선택할 경우 선금지급 시 잘못된 계정과목이 생성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 Step I: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결산담당자는 매 회계연도 말에 합계잔액시산표 조회 등을 통하여 계정과목 선택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정과목(잡손실, 잡이익, 선급금, 건설중인자산 등)이 당기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감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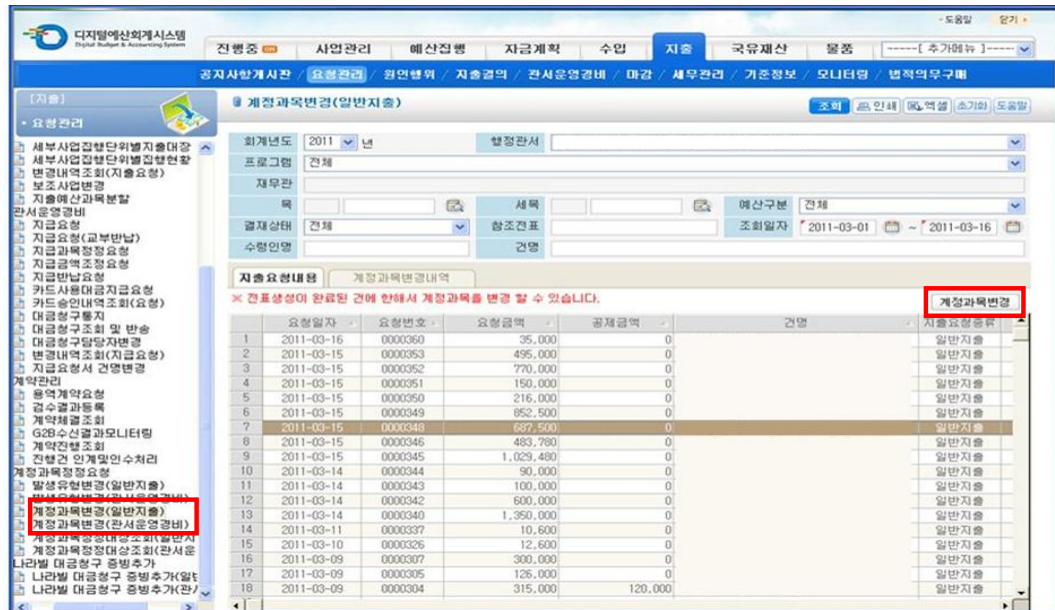
결산담당자는 분개전표 적요 등을 확인하여 지출 및 수입항목의 성격이 관련 계정과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올바른 계정과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세부·세세부항목 선택 오류 수정

- 지출 관련 선택 오류 시 올바른 계정과목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계정과목변경'에서 수정하여야 할 지출 건을 조회한 후 올바른 계정과목과 관련된 세부·세세부항목을 선택해야 한다.

그림 1-6 | 지출>요청관리>계정과목정정요청>계정과목변경(일반지출)



- 수입 관련 선택 오류 시 올바른 계정과목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수입과목정정결의에서 수입과목정정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요청 일자를 수납일자와 동일한 회계연도로 변경한 후 예산과목 조회를 통하여 올바른 수입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림 1-7 | 수입>결의관리>변경결의>수입과목정정결의



## ② 선금 지급액 관련 자산명세 선택 오류 수정

- 자산명세 선택 오류로 인하여 선금 지급액이 잘못된 계정과목과 연계된 경우(예: 건설중인자산과 연계되어야 할 내역이 선급금과 연계된 경우) 업무담당자가 **검사 시점에 자산명세를 변경함으로써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 회계연도말 현재 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납품 미완료 등) 결산 담당자는 결산조정전표 입력을 통해 해당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 다만, 결산담당자는 향후 검사 시점에 자산명세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결산조정분개를 역 분개 처리해야 한다.

# 4 토지재평가 미 실시 등 자산재평가 관련 오류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누적
토지 재평가 미 실시 등 자산재평가 관련 지적 건수	3	4	11	12	10	12	8	60

<출처: '11~'17 감사원결산감사보고서>

## 대표사례

OO청 XX회계에서 토지 및 건물 등 21건의 일반유형자산은 본 회계연도 재평가 대상이 아닌데도 자산재평가를 수행하여 토지 및 건물 등(일반유형자산), 자산재평가손실합입(비배분수익), 일반유형자산재평가손실(비배분비용), 일반유형자산재평가이익(조정항목)이 각각 138억 9,639만 원, 95억 5,761만 원, 793만 원, 42억 6,190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감가상각비(비배분비용)가 8,480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17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 ▶ Case I : 가격평가대상자산 선택 오류

- 토지재평가는 국유재산담당자가 국유재산 가격평가메뉴에서 수행한다. '가격평가진행현황'에서 가격평가정보를 생성한 후 '가격평가증감처리'에서 '추가'를 클릭하여 재평가 대상자산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재평가해야 하는 자산임에도 이 단계에서 선택을 누락하면 재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평가가 수행되지 않는다.

그림 1-8 | 국유재산>가격평가>일선관서>가격평가진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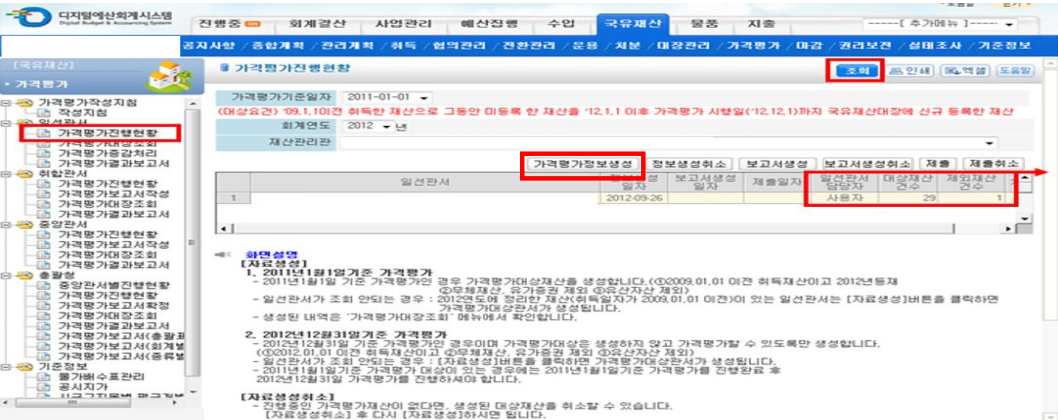


그림 1-9 ■ 국유재산>가격평가>일선관서>가격평가증감처리

-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공정가액과 장부가액 간 차이가 중요하지 않는 자산 등)에 대해 재평가를 수행할 경우에도 재정상태표에 자산금액이 왜곡 표시된다.

**<TIP> 자산재평가 대상 자산 및 중요성 판단 기준**



1. 일반유형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고정성기계장치, 선박및항공기, 입목)과 사회기반 시설 중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자산 또는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 (「국유재산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가회계실체의 해당 자산 포함)의 경우 재평가를 수행한다.
2.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했는지는 질적 요소(외부요인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상당히 상승 및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 요소)에 따라 판단 후, 양적 요소(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장부가액 대비 30%를 초과하고, 차이금액이 1억 원을 초과)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한다.

▶ **Case II: 공정가액 입력 오류**

- '가격평가증감처리'메뉴에서 평가방법(공정가액, 공시지가, 개별토지가격산정 등)을 '공정가액'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입력평가금액'에 담당자가 금액을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있는데, 공정가액이 아닌 기존 대장금액을 입력하는 경우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 **Case III: 토지의 평가방법 순서 적용 오류**

- 토지 재평가지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대체적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해야한다.
  - 국유재산담당자가 감정가액 등 공정가액이 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대체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거나,
  - 공정가액이 없어 대체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과 다른 순서를 적용하여 평가할 경우, 토지의 장부가액 및 재평가손익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 <TIP> 토지의 평가방법 적용 순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에 의하면 토지의 재평가는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하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대체적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공정가액 정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3(정의) (4)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적인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공정가액은 시장가격으로 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 자산의 현금거래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실현가능가액이나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 시장에 근거한 증거를 기초로 평가한 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 <대체적 평가방법 적용 순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54(토지의 대체적 평가방법)

1. 공시지가
2. 해당 토지 인근의 표준지공시지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3. 시군구의 해당 또는 유사 지목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가액
4. 토지가 속한 법정동의 최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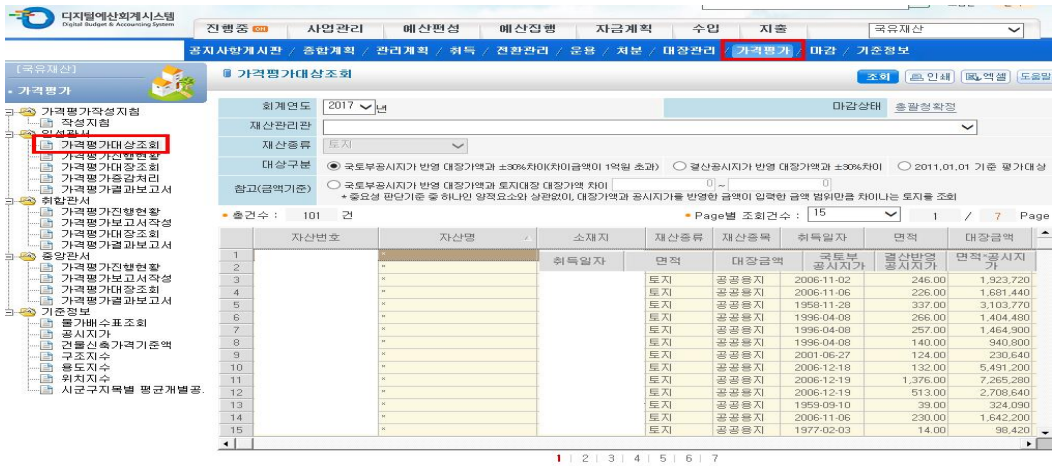
대체적 평가방법 적용 순서와 다른 순서를 적용하여 평가할 경우 재무결산 측면에서 평가손익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므로 **순서 적용에 유의**해야 한다.

##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 Step I: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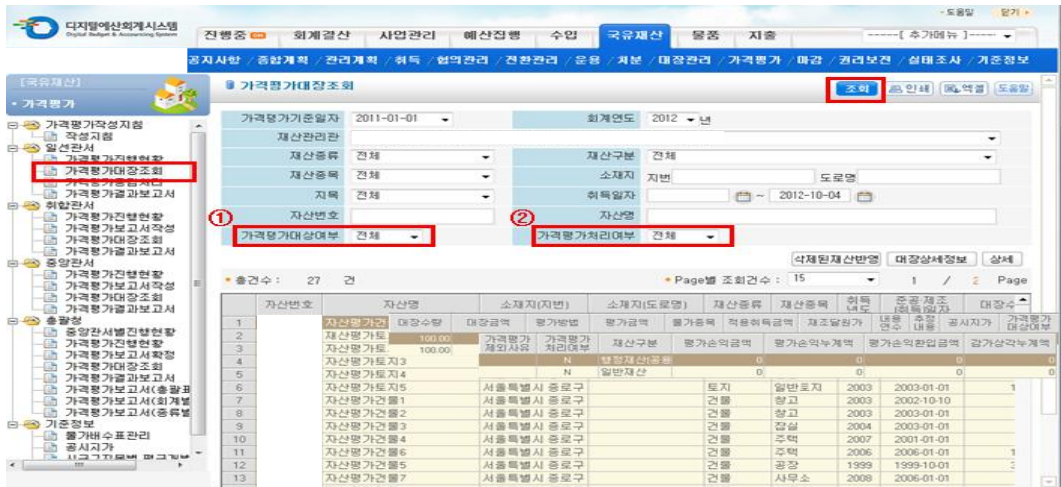
- dBrain에서는 국유재산 게시판을 통해 **장부가액과 공시지가의 차이가 장부가액의 30%를 초과하며 차이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시행을 공지**하는 한편, '가격평가대상조회'메뉴를 통하여 재평가대상자산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림 1-10 | 국유재산>가격평가>일선관서>가격평가대상조회



- 결산담당자는 국유재산담당자로부터 재평가 대상 자산의 목록을 입수하여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평가를 독립적으로 수행, 이를 '가격평가대장'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그림 1-11 | 국유재산>가격평가>일선관서>가격평가대장조회



- \* 가격평가대상조회란 가격평가 전에 토지의 재평가가 누락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부 가액과 공시지가의 차이가 장부가액의 30%를 초과하고 차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토지의 목록 및 대장금액, 공시지가 등을 국유재산담당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메뉴이다.
- \* 가격평가대장조회란 가격평가 후에 재평가된 자산 및 평가방법, 평가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로 결산담당자도 국유재산 CFO 권한을 부여받아 가격평가대장조회가 가능하다.

### ▶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 결산담당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한 재평가 결과와 '가격평가대장'을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고, 재평가대상에서 발생하는 차이인지 평가금액에서 발생하는 차이인지 구분하여 검토한다.
- (재평가대상에서 차이 발생) 장부가액과 공시지가의 차이가 장부가액의 30%를 초과하는 자산임에도 재평가에서 누락된 자산은 없는지 또는 재평가대상자산이 아님에도 재평가된 자산은 없는지를 검토
- (평가금액에서 차이 발생) 면적 또는 공시지가 입력오류, 공정가액, 대체적 평가방법의 순차적 적용 여부 및 시가 이외 공정가액 적용 시 합리적인 근거(감정평가서 등) 구비 여부 검토

### ▶ Step III: 오류 사유별 조치

- 결산담당자는 검토 결과 차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국유재산담당자에게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문서화**한다.
- 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담당자가 자산재평가를 다시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결산 시 검토를 통해서는 재평가오류여부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국유재산마감 전에 국유재산담당자와 결산담당자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요구되며, 재평가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결산담당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 <TIP> 결산조정분개로 재평가손익 인식 시 오류



재평가로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전에 인식한 일반유형자산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과 우선 상계시키고 나머지를 일반유형자산재평가손실(비배분비용)로 처리하여야 하나, 전액 일반유형자산재평가손실(비배분비용)로 회계처리하여 감사원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는 국유재산 가격평가 업무가 아니라 결산조정분개로 재평가손익을 인식하는 경우, 다음 해에 관련 평가손익이 자동으로 상계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다. 따라서 토지 재평가는 결산조정분개가 아닌 국유재산 메뉴의 가격평가 업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5

## 대손설정 시 합리적인 추정 없이 단일 대손율을 적용하는 등 대손충당금 설정오류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누적
대손설정 시 합리적인 추정없이 단일 대손율을 적용하는 등 대손충당금 설정오류	2	4	7	8	9	3	3	36

<출처: '11~'17 감사원결산감사보고서>

### 대표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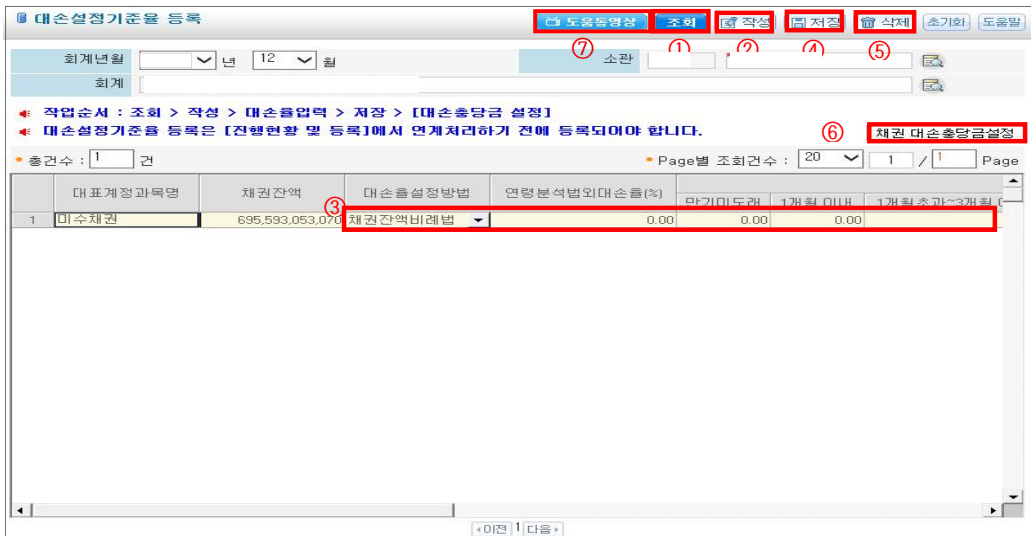
OO부 XX기금에서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실적률 등 합리적인 기준이 아닌 전기말과 동일한 60%를 임의 적용하여 구상채권대손충당금이 271억 7,281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대손상각비가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17년 감사원 지적사항 中)

###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 ➤ Case I :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대손추산액 산출근거 미비

- 결산담당자는 '대손설정기준율등록' 메뉴를 이용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방법과 대손설정기준율을 지정하게 되는데
- 대손율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없이 직전연도의 대손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1-12 | 회계결산>재무결산>회계기금>결산조정분개>대손설정기준율등록



➤ **Case II: 계정과목 단위로 대손설정방법 및 대손율 입력**

- 당기 말 현재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대여금, 미수채권 등 계정과목별로 단일의 대손율을 적용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 I: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 결산담당자는 재정상태표 조회를 통해 미수채권, 대여금 등 대손충당금 설정이 필요한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① **대손충당금설정 방법 문서화**

결산담당자는 대손추산액의 합리적인 추정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연령분석법**은 기말 채권가액을 만기 경과일수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별로 상이한 대손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연령을 구분하는 근거와 적용하는 대손율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채권잔액비례법**을 사용하는 경우 기말 채권잔액 전체에 동일한 대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채권잔액비례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근거가 필요하다.
- **대손실적률법**은 채권에 대한 과거 대손율로 대손추산액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대손율<sup>1)</sup> 산출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미수채권 및 대여금에 대한 기말시점 회수가능성 추가 검토**

- 특히 이행기간이 장기이고 금액이 큰 미수채권 등의 경우 기말 시점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 국세청의 사업자 휴·폐업 조회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휴·폐업한 거래처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전액 설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보증서 확보 조치 등으로 회수가능성이 전기 대비 중요하게 변동된 채권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서 당기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

1) 대손율=(과거 3년 간 채권의 결손처분액÷과거 3년 간 채권 기말잔액)×100

## <TIP> 대손충당금 설정 메뉴

1. 대손충당금 설정 시 설정 대상 채권별로 하단의 [행추가]버튼을 클릭하여 관련 프로그램/단위사업을 입력하는 절차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누락할 경우 프로그램충원가로 처리되어야 할 대손상각비가 모두 비배분비용으로 배부되어 재무제표의 원가정보가 왜곡되기 때문에 결산담당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회계결산>재무결산>회계기금>결산조정분개>결산조정분개 진행 및 등록>대손충당금 설정]

대손충당금 설정

회계년월: [ ] 년 12 월 소관: [ ]

회계: [ ]

전표번호: 00053186 (4) **입 전표조회시 전표번호 입력** 대상계정과목조회

\* 작업순서 : [프로그램/단위사업설정 > 저장] > 전표상성  
 \* 당기말 대손충당금 현재액(B) : 전기말 대손충당금설정액-당기감소액(불납결손액)  
 \* 당기말 대손충당금 설정액(C) : [대손기준율 등록 > 채권 대손충당금설정] 의 설정금액  
 \* 대손충당금 결산조정분개금액(C-B) : 당기말 대손충당금 설정액(C)-당기말 대손충당금 현재액(B)(-) 는 환입전표 발생  
 \* 전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하여 변경한 내역은 제외된 금액이므로 참고하세요 (2) (3)

(단위:원) 전표상성 전표취소

\* 출건수: 2 건 Page별 조회건수: 20 / 1 / 1 Page

일련번호	계정과목명	상대계정과목명	당기말 채권금액(A)	당기말 대손충당금 현재액(B)	당기말 대손충당금 설정액(C)
1		합 계	19,713,084,040	0	
2	CT0000000001	미수제재금수익	19,709,957,950	0	
3	CT0000000002	미수제화및용역제공수익	3,126,090	0	

1

일련번호	계정과목명	상대계정과목명	대손충당금 결산조정분개금액(C-B)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1	CT0000000001	미수제재금수익	6,178,918,435,0000	0000	

1 행추가, 행저장, 행삭제

2. 휴·폐업 등의 이유로 각각의 채권에 별도의 대손율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상 '대손설정기준율등록' 메뉴에서는 '계정과목별'로 일괄등록만 가능하므로, 결산담당자는 '대손충당금 설정' 메뉴에서 대손충당금 금액을 수정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잔액에 대손율을 곱한 금액과 기말 대손충당금이 일치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결산담당자는 대손충당금의 산출근거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 6

## 프로그램총원가, 비배분비용 등 원가배분 오류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누적
프로그램총원가, 비배분비용 등 원가 배분 오류	6	7	2	3	2	3	12	35

<출처: 11~'17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 대표사례

OO부 소관 2개 특별회계 및 5개 기금에서 2016년 이전에 지출한 프로그램 관련 사업비 정산액을 본 회계연도에 반납 받은 경우 해당 반납금을 지출금반납금(프로그램수익)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비배분수익으로 회계처리하여 지출금반납금(프로그램수익)이 1,242억 1,064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지출금반납금·잡이익(비배분수익)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17년 감사원지적사항 중)

####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 ▶ Case I: 감가상각비 관련 프로그램 변경 절차 미수행

자산 취득 시 입력하였던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해당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프로그램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를 누락할 경우 감가상각비가 비배분비용으로 처리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 ▶ Case II: 원가 재배분 업무 누락

특정 프로그램에 대응되어 프로그램수익 또는 프로그램총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적절하나, 원가 재배분 업무를 누락하는 경우 비배분수익 또는 비배분비용으로 처리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 ▶ Case III: 결산조정분개 항목 관련 프로그램 입력 누락

결산조정분개(대손상각비 등) 입력 시 결산담당자가 관련 프로그램 입력을 누락하는 경우 프로그램총원가로 처리되어야 할 항목이 비배분비용으로 처리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 ▶ Case IV: 과년도 지출금 반납 시 업무 처리 오류

전기 이전의 지출금을 반납 받을 때 dBrain 상 '지출'업무를 통하지 않고 '수입'업무로 처리함에 따라 '잡이익(비배분비용)'으로 계상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 I: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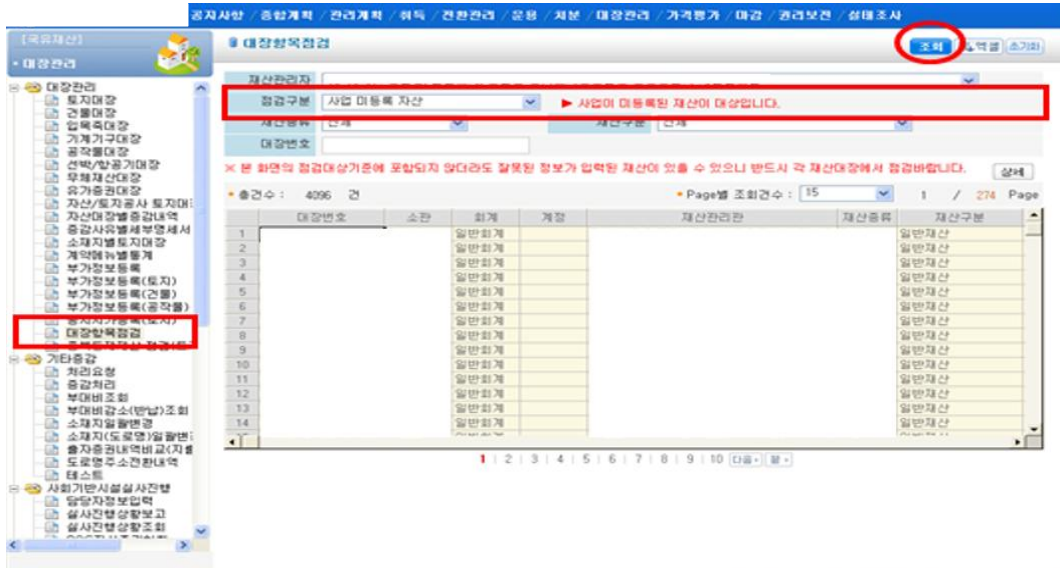
결산담당자는 재정운영표 조회를 통해 비배분비용 또는 비배분수익 중 회계실체나 계정과목 성격상 프로그램총원가나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항목(감가상각비, 지출금반납금 등)이 있는지 파악해 보아야 한다.

➤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① 감가상각비 관련 프로그램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결산담당자는 비배분비용으로 처리된 감가상각비를 발견한 경우 업무 담당자를 통해 아래 절차를 진행한다.
- '대장항목점검' 메뉴에서 점검구분을 각각 [사업미등록자산]과 [종료 폐지된 세부사업]으로 하여 조회되는 자산이 있는지, 그 자산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림 1-13 | 국유재산>대장관리>대장관리>대장항목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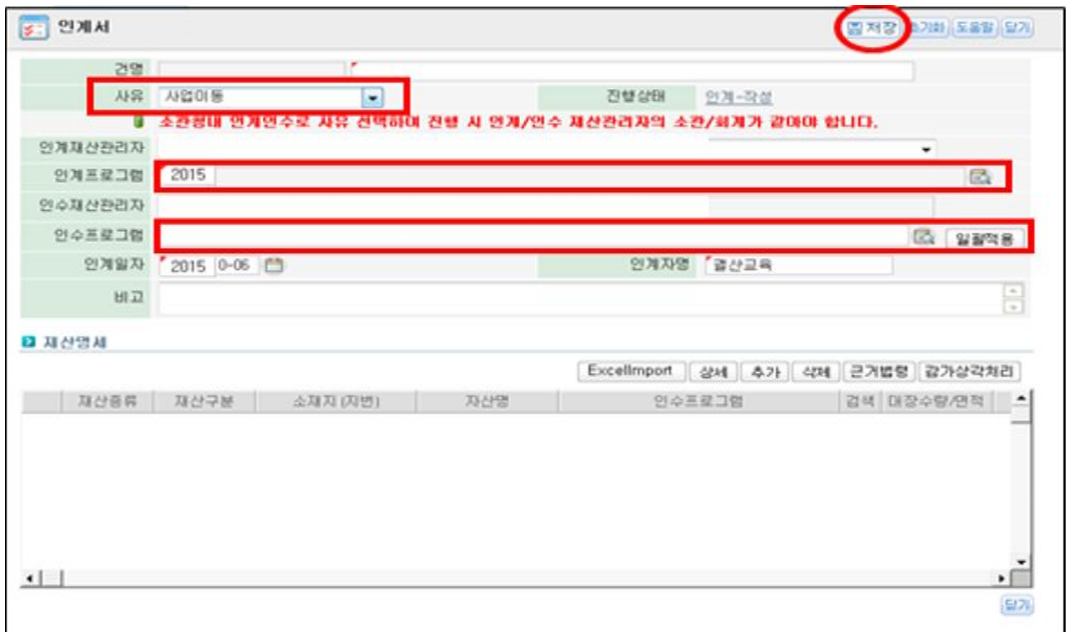


- 프로그램 등록 또는 프로그램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인계관리' 메뉴에서 '인계서'를 작성(사유는 '사업이동')한다. 만약 대응되는 프로그램이 없다면 그 사유를 파악한다.

그림 1-14 | 국유재산>취득>기타증감>인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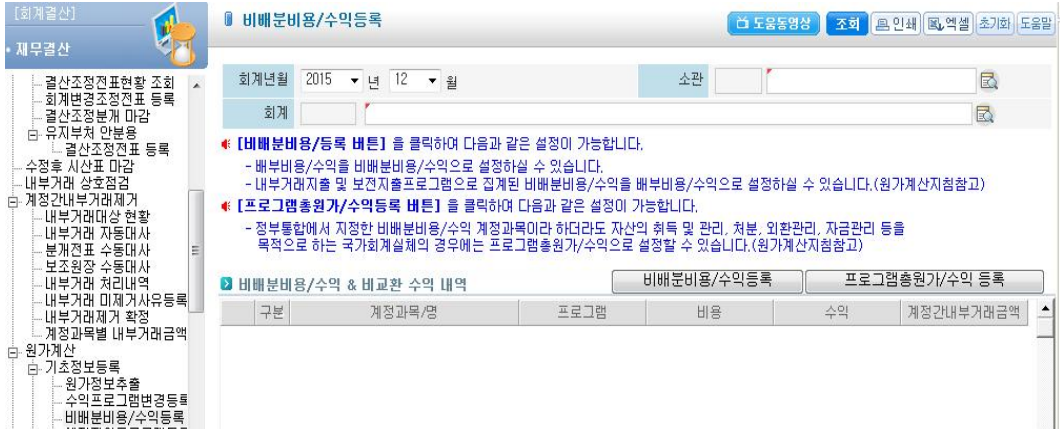
그림 1-15 | 인계서 작성



② 원가 재배분이 필요한 경우

- 결산담당자는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검토 후 프로그램총원가, 프로그램 수익으로 원가 재배분이 필요한 경우, '비배분비용/수익등록' 메뉴를 통해 프로그램총원가/수익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림 1-16 비배분비용/수익등록



③ 결산조정분개 시 프로그램 입력이 필요한 경우

- 결산담당자는 대손충당금 설정시 대상 채권별로 관련 '프로그램/단위 사업'을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42p '<TIP> 대손충당금 설정 메뉴' 참조). 결산담당자는 이외 결산조정분개 입력 시에도 관련 프로그램이 누락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④ 잡이익을 지출금반납금으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

- 보조금 정산액 등이 지출금반납금(프로그램수익)이 아닌 잡이익(비배분수익)으로 잘못 처리된 경우 업무담당자(지출관 또는 집행단위담당자)에게 수입이 아닌 지출메뉴(과년도지출반납 징수요청)에서 징수요청<sup>2)</sup>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2) 상세한 오류 정정 방법은 '2018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업무담당자용)\_제2장 수입\_3.지출금 반납\_(3) 오류 정정 방법' 참조

그림 1-17 | 지출>지출결의>과년도지출반납징수요청>과년도지출반납징수요청(일반지출)



\* 지출관은 위의 화면에서 징수요청하고, 집행단위담당자는 [지출>요청관리>일반지출>과년도지출반납징수요청>과년도지출반납징수요청(요청관리)] 경로에서 징수요청한다.

- 결산담당자가 결산조정분개로 정정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프로그램을 확인하여 입력해야 한다.

**<TIP> 원가배분 오류 검토**

결산담당자는 아래의 경우 원가배분 오류를 의심해 볼 수 있다.



- ① 비배분비용 하위 항목에 감가상각비가 있는 경우
- ② 회계실체의 성격상 주요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항목과 관련된 계정과목이 비배분수익이나 비배분비용의 하위항목에 있는 경우(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 교육청에 양여한 물품 금액이 '정부외자산기부' 계정과목으로 비배분비용 하위 항목에 있는 경우)
- ③ 결산조정으로 입력한 항목과 관련된 계정과목이 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상태로 비배분수익이나 비배분비용 하위항목에 있는 경우(대손상각비 등)
- ④ 전기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계정과목이 당기 비배분수익이나 비배분비용 하위 항목에 있는 경우

## 7

## 수익인식시기 및 기간귀속 미반영 오류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누적
수익인식시기 및 기간귀속 미반영 오류	7	6	3	7	3	4	4	34

<출처: '11~'17 감사원결산감사보고서>

#### 대표사례

OO부 XX기금에서 □□납부금의 2017년 12월 징수액을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부담금수익(비교환수익 등)이 31억 8,287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미수부담금수익(유동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대행수수료(프로그램총원가)가 1억 5,551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미지급비용(유동부채)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17년 감사원지적사항 중)

#### □ 감사원 지적 발생 원인

##### ➤ Case I : 자체 수납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발생주의 효과 미고려

일부 회계실체는 dBrain이 아니라 자체 수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입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 시스템은 대부분 현금주의에 기초하여 데이터가 생성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결산담당자가 매 회계연도 말에 자체 시스템에서 산출된 자료에 발생주의에 따른 효과 조정을 누락할 경우 기간귀속 미반영에 따른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 ➤ Case II :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한 발생주의 효과 미반영

이자발생 자산 및 부채를 보유한 회계실체의 경우 매 회계연도 말에 발생주의에 따른 효과를 별도로 재무결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할 경우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미지급비용의 경우 현금 지급시점이 비용 인식 시점보다 늦을 뿐만 아니라<sup>3)</sup> 미수수익과는 다르게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업무처리 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sup>4)</sup> 결산담당자가 직접 결산조정 전표로 반영하여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3) 현금 지급시점이 비용 인식시점보다 빠른 경우(선급비용 등)에는 결산시점에 '결산조정분개 진행 및 등록' 메뉴를 통해서 발생주의에 따른 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

4) 다만, 정보관리항목을 입력하여 관리하는 부채(예: 정부내예수금)와 관련된 미지급이자비용의 경우에는 '결산 조정분개 진행 및 등록' 메뉴를 통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 **Case III: 부담금수익 인식 시 발생주의 효과 미반영**

국가는 위탁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 때 위탁기관이 납부대상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시점이 아니라, 국가가 위탁기관으로부터 해당 부담금을 수령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ex) XX공사가 12월에 징수한 부담금을 다음연도 1월에 OO기금에 납부하는 경우 → OO기금은 12월에 해당 부담금수익을 인식해야 함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 I: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결산담당자는 매 회계연도말에 합계잔액시산표 조회를 통하여 회계실체 내 발생주의에 따른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계정과목(부담금수익, 이자발생자산 및 부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전기에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하여 발생주의에 따른 효과를 반영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합계잔액시산표와 전기 결산조정전표 등록내역 조회를 통해 발생주의에 따른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계정과목이 발견될 경우 결산담당자는 각 계정과목별로 발생주의에 따른 효과가 재무결산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① **자체 수납관리시스템 사용 시 발생주의 효과 반영**

- 자체 수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 결산담당자는 업무담당자로부터 결산시점이 아니라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조회된 데이터를 재무결산에 반영해야 한다.
- 이는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조회할 경우, 회계연도말부터 결산시점사이 수납완료 건이 미수납 내역에서 조회되지 않아, 미수채권 인식시 이를 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만일 자체 수납관리시스템 상 조회시점 변경이 어려울 경우, 회계연도 말부터 결산시점까지의 수납완료 데이터를 추가로 수령하여 부과고지가 회계연도말 이전에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는 결산조정분개를 통해 미수 채권을 인식해야 한다.

②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관련 발생주의 효과 반영

- 결산담당자는 결산시점에 업무담당자로부터 이자율 및 만기 등 정보가 포함된 이자발생 자산 및 부채 내역을 수령하여 발생주의에 따른 효과가 재무결산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정보관리항목을 잘못 입력한 경우 조치>

재무결산담당자의 확인 결과 정보관리항목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주의에 따른 효과가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한국재정정보원에 공문을 보내 정보관리항목을 변경하도록 요청한 후 '결산조정분개 진행 및 등록' 절차를 재수행하거나, '결산조정전표 등록' 메뉴에서 올바른 금액으로 수정하기 위해 결산조정분개를 등록해야 한다.

③ 위탁기관 등을 통한 부담금 수납 시 발생주의 효과 반영

- 결산담당자는 위탁기관 등을 통해 징수하는 부담금이 있을 경우, 위탁기관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에 부과한 부담금 정보를 수령해야 한다.
-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위탁기관에서는 부과·징수 하였으나 기금 등 국가 회계실체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결산담당자는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해 부담금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가 위탁기관 등에 지급하는 징수대행수수료(부담금 징수액에 비례하여 지급)가 있는 경우, 결산시점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해 미지급비용을 인식해야 한다.

<발생주의 효과 자체를 누락한 경우 조치>

발생주의에 따른 효과 자체를 누락한 경우라면 결산담당자가 관련 효과를 '결산조정전표 등록' 메뉴를 통해 재무결산에 직접 반영해야 한다.

<TIP> 이자 발생 자산·부채



합계잔액시산표상 조회되는 계정과목 중 이자발생자산과 이자발생부채일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장·단기금융상품, 장·단기투자증권, 장·단기대여금
- ② 부채: 장·단기차입금, 장·단기미지급금(국고채무부담행위액 등)

## 8

## 유동성 분류 관련 오류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누적
유동성 분류 관련 오류	3	5	7	7	3	4	5	34

<출처: '11~'17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 대표사례

OO회 일반회계에서 임차계약에 따라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 회수될 임차보증금을 장기임차보증금으로 계상하여 임차보증금(유동자산)이 2억 2,734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장기임차보증금(기타비유동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17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 ➤ Case I: 정보관리 항목 입력 오류

유동성대체는 연말 결산조정분개\*를 통하여 인식되며, 결산조정분개는 해당 계정과목 정보관리항목의 만기일 또는 상환일을 기준으로 dBrain 상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정보관리항목을 오(誤)입력하는 경우 유동성대체 오류가 발생한다.

\* [회계결산>재무결산>회계기금>결산조정분개>결산조정분개 진행 및 등록>유동성대체]

##### ➤ Case II: 임차보증금 유동성 판단 오류

임차계약서 상 만기일자가 1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재계약 여부, 계약 연장 의도 등을 근거로 임차보증금을 장기로 분류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 Step I: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결산담당자는 유동성대체가 필요한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합계잔액시산표 상 전기 대비 증감금액 등을 파악하여 오류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① 비유동성 항목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

전기말 비유동성 항목 중 일부는 당기 유동성 대체를 통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비유동성 항목 계정과목 중 당기에 줄어들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이상 징후로 판단해 볼 수 있다.

② 비유동성 항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경우

당기 비유동성 항목이 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경우 신규 발생 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당기 신규 발생 건이 전액 비유동 항목으로 증가한 내역은 없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결산담당자는 'Step I'에서 검토한 내역들을 바탕으로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계정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로부터 관련 자료(융자금/리스 상환스케줄, 보증금 계약서 등)를 수령하여 재계산을 독립적으로 수행, 이를 dBrain 상 산출된 유동성대체 금액과 비교해 정보관리 항목에서 오류가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 Step III: 오류 사유별 조치

- 당초 정보관리항목에 잘못 입력된 상환스케줄, 만기일 등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업무담당자를 통해 아래와 같이 원장을 수정\* 반영한 후 유동성 대체 업무를 재수행해야 한다.

- \* 융자금: 상환스케줄 변경은 [용자>요청관리>용자집행>원금회수계획]에서 수정
- \* 리스: 리스스케줄 변경은 [조달>계약>리스계약관리>리스계약등록및조회]에서 수정
- \* 보증금: 보증금 계약기간 변경은 [국유재산>대장관리>부가정보등록]에서 수정

- 임차보증금의 경우 결산담당자는 계약서상 만기를 기준으로 유동성대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TIP> 유동성 분류 계정 및 유의사항



1. 감사원 연례지적사항에서 나온 유동성 분류 관련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금융상품, 대여금(융자금), 임차보증금, 선수수익, 차입금(금융리스부채) 등
2. 임차보증금의 경우 감사원 결산검사 수행 시 계약서 검토가 빈번히 수행되고 있으므로 유동성 대체에 유의해야 한다.
3.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해 인식한 유동성대체금액은 반드시 '환원여부'를 'Y'로 선택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결산조정으로 반영한 효과가 제거되도록 해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에 유동성 분류 관련 재검토를 수행하여 관련 효과를 재무결산에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

## 9

## 자산 취득성 경비(부대비 등)의 비용 처리 오류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누적
자산 취득성 경비(부대비 등)의 비용 처리 오류	-	8	6	6	2	4	6	32

<출처: '11~'17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 대표사례

OO부 일반회계와 XX특별회계에서 토지 취득 관련 보상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지급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여 토지(사회기반시설-하천), 토지(사회기반시설-공항), 토지(사회기반시설-도로)가 각각 36억 2,032만 원, 20억 3,694만 원, 54억 6,816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지급수수료(프로그램총원가), 소모품비(프로그램총원가)가 각각 103억 7,510만 원, 7억 5,032만 원 과대 계상되었다. ('17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 ▶ Case I : 지출요청서 발생유형을 '0.일반지출'로 선택하는 오류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대비관련 지출요청서 작성 시에는 '발생유형'에서 부대비인 지출(1번~5번)을 선택하여야 하나, 부대비가 아닌 지출 '0.일반지출'을 선택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 <TIP> 발생유형 선택 유의사항



지출요청서 작성시 '발생유형'은 '0.일반지출'이 디폴트값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대비 지출(1~5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바로 비용처리 되므로 담당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 Case II : 수리요청서 작성 시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 ① 공사수리 요청 시 '증축'이 아닌 '개보수'를 선택하는 오류

공사계약을 통해 대장등재된 자산을 증축 또는 개보수 하는 경우에는 '공사수리(증축, 개보수)' 메뉴에서 업무를 진행한다. 이때 자본적 지출(증축)에 해당하는데도 '공사구분'을 '증축'이 아닌 '개보수'로 선택하는 경우 자산취득성 경비가 비용처리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1-18 | 조달(계약)>요청>공사계약>공사수리(증축, 개보수)

② 수리요청 시 '자산증액'이 아닌 '비용처리'를 선택하는 오류

'공사계약'이외로 취득한 국유재산과 물품의 수리 관련 업무 처리는 '수리 요청'에서 진행하는데, 자본적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지출구분'에서 '자산 증액'이 아닌 '비용처리'를 선택하는 경우 자산취득성 경비가 비용처리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1-19 | 조달(계약)>요청>수리폐기>수리요청

- \* 자본적 지출: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대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
- \* 수익적 지출: 자산의 원상회복이나 현상유지를 위한 지출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 I: 오류 발생 가능성 검토

① 합계잔액시산표를 통한 추세 분석

특정비용(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기타용역비, 외주용역비, 수선유지비 등) 항목에서 자산화 되어야 할 금액이 비용처리된 오류가 많으므로, 합계잔액시산표에서 해당 계정과목을 더블클릭하여 월별 증가내역을 검토한다. 이때 비정상적으로 금액이 많은 월의 세부내역을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② 분개장 조회를 통해 비용 항목 적정성 검토

- 특정 비용 항목의 분개장을 조회해서 자본적지출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적요 기재 내용 및 예산상 지출 목(세목)**을 통해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 그 결과 자본적지출로 추정되는 건(부대비 관련 내용을 적요에 기재, 400번대 예산 목 지출 건)은 업무담당자를 통해 비용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등은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편성하되,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은 자산취득비(430-01) 또는 공사비(420-03)로 반영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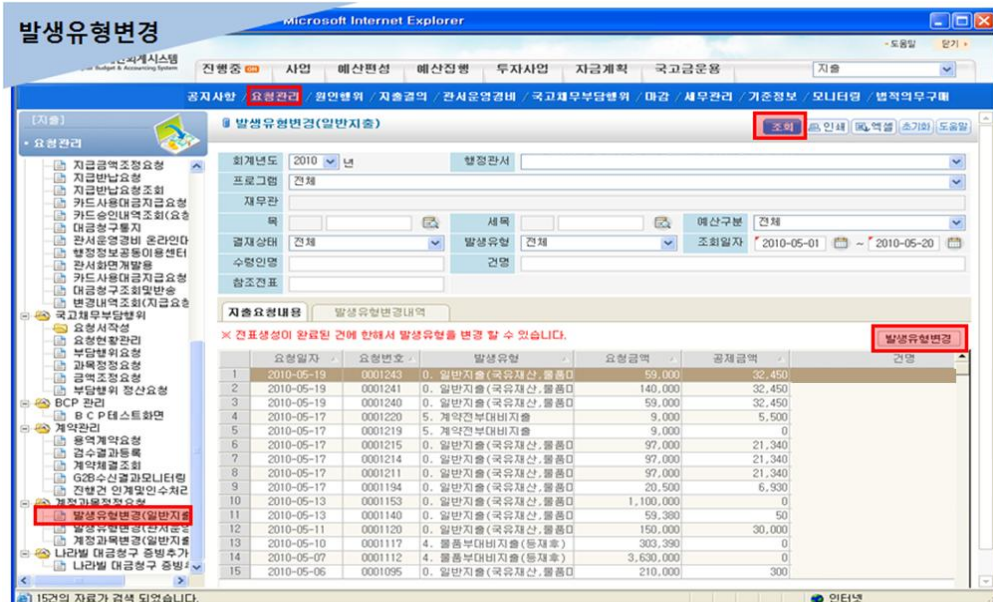
➤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검토 및 조치

① 지출요청서 오류 조치방안

업무담당자는 '발생유형변경'을 통해 비용처리 된 부대비를 건설중인자산으로 수정한 후 **부대비 배부**를 통해 자산 가액을 증가시켜야 한다.

(발생유형변경) '0.일반지출'을 선택하여 비용처리한 경우 '발생유형변경'을 통하여 부대비 발생유형(1~5번)으로 수정할 수 있다.

그림 1-20 | 지출>요청관리>발생유형변경(일반지출)



이 때 부대비 발생유형은 해당 자산이 대장에 이미 등재된 경우(3,4항목)와 아직 등재되지 않은 경우(1,2,5항목)로 나누어지므로 해당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발생유형	구 분
0. 일반지출(국유재산, 물품 미 관련)	순수한 일반지출로 기타증감의 부대비 배부에서 조회되지 않으며 부대비로 처리될 수도 없음
1. 국유재산 부대비 지출(계약 후/등재 전)	- 지출 시 <b>계약번호</b> 선택 필수 - <b>자산 취득 시:</b> 조달(계약)의 검사/검수 에서 계약번호를 근거로 배부 가능
2. 물품 부대비 지출(계약 후/등재 전)	- <b>자산 취득 후:</b> 기타증감에서 부대비 배부 사유로 계약번호를 근거로 배부 가능
3. 국유재산 부대비 지출(등재 후)	- <b>대장번호, 요청/검수번호</b> 선택 가능 - <b>대장번호 입력 시:</b> 별도 배부처리 없이 선택된 대장번호의 자산 1건에 <b>모두 자동 배부됨</b>
4. 물품 부대비 지출(등재 후)	- <b>요청/검수번호 입력 시:</b> 기타증감에서 부대비배부 사유로 요청/검수번호를 근거로 배부 가능
5. 계약 전 부대비 지출	부대비(별도 배부처리)

(부대비배부) 자산 등재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대비를 배부한다.

- 자산 등재 전: 검사/검수 단계에서 검사/검수서 작성 시 부대비 배부 처리를 한다.
- 자산 등재 후: 검수 이후의 부대비 배부는 '기타증감' 메뉴에서 '**기타증가 | 취득후부대비배부**' 사유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TIP> 발생유형 선택, 부대비배부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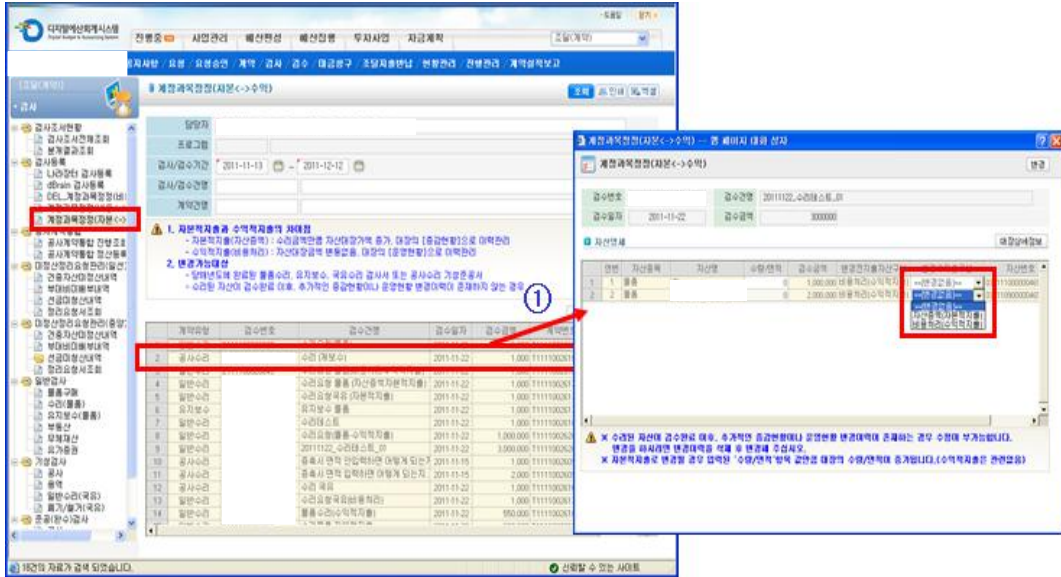


1. 발생유형 3, 4번을 선택하는 경우 '대장번호'를 입력하면 추가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요청번호' 또는 '검수번호'를 입력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2. '5. 계약 전 부대비 지출'을 선택하는 경우 연계정보가 입력되지 않기 때문에 검수 시점에 관련 부대비 배부를 누락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해당 유형의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

② 수리요청서 오류 조치방법(비용처리(수익적지출) → 자산증액(자본적지출))

‘공사수리(증축, 개보수)’ 및 ‘수리요청’ 메뉴에서 선택 오류로 자본적지출을 수익적지출로 처리한 경우 ‘계정과목정정(자본<->수익)’ 메뉴에서 해당 검사서를 선택하여 자본적지출로 변경할 수 있다.

그림 1-21 | 조달(계약)>검사>검사등록>계정과목정정(자본<->수익)



<TIP> 취득부대비용, 자본적·수익적 지출 사례

1. 자산 취득과 관련된 매입부대비용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①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예: 토지보상비용, 이주단지 조성비용)
  - ②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예: 설계용역비)
  - ③ 자산을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운임, 보험료, 하역비, 매입수수료, 보험료
  - ④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2. 참고로 「법인세법 집행기준 23-31-2」에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사례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1부터 4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1부터 5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누적
선금 미청산으로 인한 선급금(건설중인 자산) 과대계상 오류	5	5	2	4	2	5	6	29

<출처: '11~'17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 대표사례

OO부 XX특별회계에서 기타용역비 213억 4,939만 원을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해당 용역이 완료되었는데도 본계정 대체하지 아니하여, 선급금(유동자산)이 213억 4,939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전기오류수정손실(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17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 ▶ Case I: 검사절차 누락

- 공사계약을 통하여 국유재산 등 자산을 취득하거나, 용역계약을 통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계약 관련 선금은 선급청구[조달>대금청구>선급청구] 메뉴를 통해 지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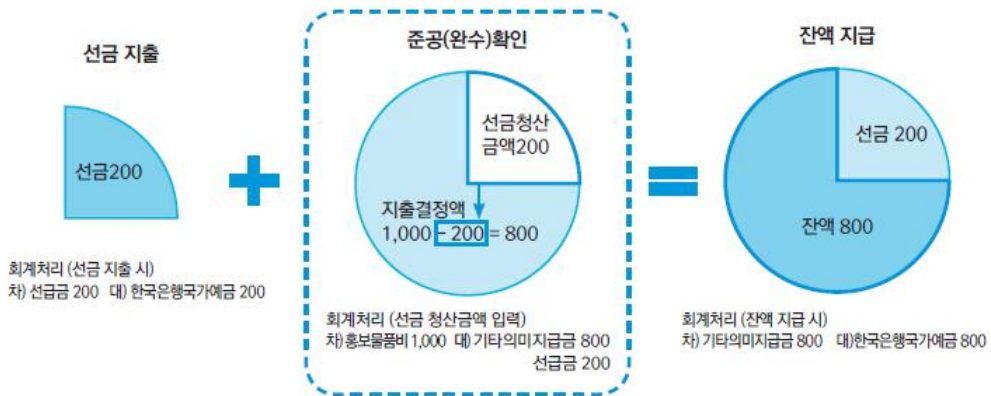
선금 지급 시 계약종류에 따라 일반유형자산이나 사회기반시설인 경우 '건설중인자산'이, 무체재산이나 비용인 경우 '선급금' 계정과목이 생성된다.

- 이렇게 생성된 선금은 검사를 통해 건설중인자산<sup>5)</sup>이나 비용으로 대체되는데, 업무담당자가 검사절차를 누락할 경우 선금이 청산되지 않아 건설중인자산/선급금이 상계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다.

ex) 홍보사업을 위해 지급한 선급금은 검사절차를 통해 홍보물품비로 대체되나, 검사 누락 시 선급금 과대, 비용 과소 계상

5) 이 건설중인자산은 검수 시점에 토지, 건물 등 본자산으로 대체된다.

그림 1-22 | 선금지급과 청산금액



➤ Case II: 검사 시 '선금청산금액' 입력 누락

- 공사, 용역 등이 완료되면 dBrain검사등록\*에서 검사를 하는데 이 때 기성/준공 승인 전에 지급한 선금을 반드시 '선금청산금액'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를 누락할 경우 선금 지급 시 발생한 선금금/건설중인자산이 상계되지 않고 그 금액만큼 미지급금이 과다 계상된다.

\* [조달>검사>검사등록>dBrain검사등록]

ex)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의 40%를 선급하여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한 이후 검사 시 선금청산금액 입력을 누락할 경우, 선급한 건설중인자산이 차감되지 않고, 미지급금이 동액 만큼 과대 계상

그림 1-23 | 준공(완수)확인

검수번호	건 명	신속전기공사.테스트
계약번호	계약금액	300,000
계약일자	기성출액	0
2011-03-21	준공(완공)일자	0
학공일자	기선금청산금액	0
선금지급액	준공확인요청일	2011-03-21
0 (반납액: 0)	지체상금출	0
0	유보출	0.00
0	유보금액	0
거래처	6118201066	한전거항지점
검사일자	2011-03-21	검사자
대표자		
검사자의견		
첨부파일		
프로그램	2011	
검사부서		
품물관리관	선택	

▶ **Case III: 자본형성적 경비에 의한 취득 시 업무처리 누락**

- 민간 또는 자치단체 등을 통해 자산을 취득하는 자본형성적 경비는 그 성격 상 예산을 집행한 뒤 일정시간이 지나서 자산 취득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때 자산등재 처리를 누락하거나 기타증감 사유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 예산 집행시 계상되었던 선급금이 상계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다.

ex) 민간에 시설 설치 사업을 맡기고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예산으로 1억 원을 지출 후 해당 시설 완공 시 '기타증감\_외부에의한 기반시설취득'으로 자산을 등재해야 하나, 등재 누락 또는 '기타증감\_기타(증)'으로 등재 시 선급금 미상계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 I: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 선급금/건설중인자산이 있는 경우 관련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이 완료되어 비용/본자산으로 대체해야 하는 건은 아닌지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동일 거래처·금액의 선급금과 미지급금이 남아있는 경우 오류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

▶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결산담당자는 오류 발견 시 업무담당자에게 아래의 방법을 통해 선금을 청산할 것을 요청한다.

① **검사를 통한 선금 청산**

- 사업담당자가 **검사를 누락**하여 미청산 선금이 남아있는 경우, '**dBrain 검사등록**' 메뉴를 통한 검사로 선금을 청산한다.
- 이때 지출할 금액이 없는 경우라면 검사금액과 선금청산금액에 청산하려는 선금을 동일하게 입력하여 지출결정금액<sup>6)</sup>이 0원이 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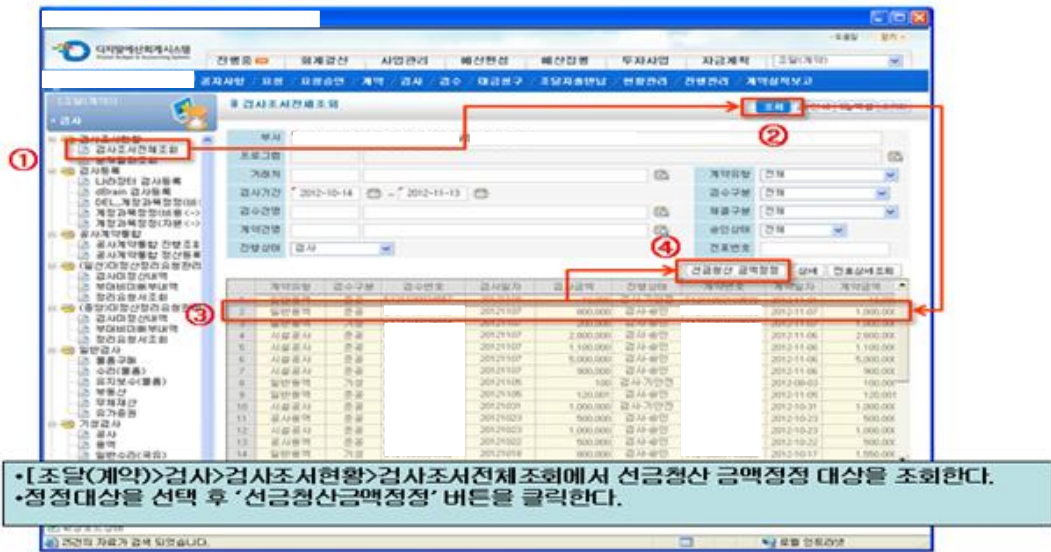
6) 지출결정금액=검사금액-선금청산금액

② '선금청산 금액정정'을 통한 선금 청산

○ 검사 시 '선금청산금액'을 입력하지 않아 선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조서전체조회' 메뉴에서 해당 검사서 조회 후 '선금청산 금액정정' 버튼을 클릭하여 오류를 수정한다.

- '선금 미청산 잔액' 한도 내에서 '선금청산 정정금액'을 입력하고 '승인' 하면 선금금/건설증인자산과 미지급금이 동시에 제거되는 분개가 생성되어 오류가 수정된다.

그림 1-24 | 조달(계약)>검사>검사조서현황>검사조서전체조회



• [조달(계약)>검사>검사조서현황>검사조서전체조회]에서 선금청산 금액정정 대상을 조회한다.  
 • 정정대상을 선택 후 '선금청산금액정정'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1-25 | 선금청산 금액정정



• 선금 미청산 잔액의 한도 내에서 선금청산 정정금액을 입력한다.  
 • 승인 버튼을 클릭하여 금액정정을 완료한다.  
 - 선금청산 정정금액은 [총 선금지출액, 검사금액, 선금 미청산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선금청산 정정에 의한 지출결정금액은 실지출금액 이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③ 취득이 완료된 자본형성적 경비 관련 선급금 정산

- '선급금'으로 처리된 자본형성적 경비 중 취득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에게 대장관리 메뉴에서 기타증감의 '외부에 의한 기반시설 취득' 사유를 통해 해당 선급금을 상계하고 자산을 등재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 <TIP>



업무담당자 파악불가 등의 사유로 결산담당자가 결산조정전표로 선급금을 제거하는 경우 재무제표 오류는 수정되지만 dBrain상의 선금미청산 내역은 사라지지 않는다.

'검사업무 재수행'이나 '선금청산 금액정정'은 개별법 대장(국유·물품·채권·채무) 마감 후라도 재무결산상 수정전시산표 마감 전까지는 가능하므로, 결산조정전표보다는 업무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통해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누적
지급의무 확정된 비용(부채)등 회계처리 누락으로 인한 오류	5	1	6	3	5	6	2	28

<출처: '11~'17 감사원결산감사보고서>

#### 대표사례

OO처 일반회계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지급하는 2017년 2학기 사립대학교 수업료 보조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는데도 미지급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여 민간보조비(프로그램총원가)가 4억 6,853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미지급금(유동부채)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17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 감사원 지적 발생원인

##### ➤ 결산조정으로 반영해야 하는 부채 누락

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발생주의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미지급한 금액은 부채(미지급금 등)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때 dBrain 상 업무처리 절차가 없어 결산조정으로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산담당자가 이를 누락할 경우 비용과 부채가 과소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 Step I: 오류 발생 가능성 검토

과거 감사원 지적사항 중 발생주의 부채 누락과 관련된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동일한 사유로 비용 및 부채를 계상하여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아직 지출되지 않은 비교환거래 비용 중 비용 인식시기가 도래하여 비용과 부채로 계상해야 할 건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7) 발생주의에 따른 부채(미지급금, 미지급비용)를 계상하지 않아 감사원 지적을 받은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사례) 보조비, 유류비, 사회보험비용, 임차료, 급여, 이차보전비용, 징수수수료, 수입보장금액, 연구개발비 등

## <TIP> 비교환거래 비용 인식 기준

법령 등에 따른 지출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어(의무이행을 위한 지출을 승인하였고, 거래 상대방이 수급조건을 충족한 경우) 그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비용 회계처리지침」 적용사례 3~6 참조)



사례	비용 인식시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보조금 교부결정 시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	배상금 지급청구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출연금	출연금 협약체결 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른 국제부담금	부담금 협약체결 시

➤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결산담당자는 회계연도말부터 결산시점까지 실제 대금지급한 건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여 지출항목의 성격상 회계연도말 시점에 부채(미지급금 등)로 계상하여야 하는 내역<sup>8)</sup>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TIP> 결산부표 내역조회를 통한 부채 파악

사고이월 내역 중 지출의무가 확정되어 부채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건이 있으면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결산담당자는 이월내역 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미지급금 등 부채로 계상되어야 하나 누락되는 사고이월 건은 없는지 검토할 수 있다.

\* [재무장부>원장조회>업무별원장조회>결산부표 내역조회]

<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부채의 정의와 구분)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 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제18조(부채의 인식기준) ① 부채는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 중 향후 그 이행을 위하여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구분	금역	결산부표
1. 세입(수입)	2,893,105,989,860	1. 세입(수입) 총합표
2. 미수납	32,088,658,773,856	2. 세입(수입) 총합표
3. 잔액	8,913,361,000	3. 세출예산 집행사유 총합표
4. 이월	0	4. 세출예산 집행사유 총합표
5. 이월	0	5. 세출예산 집행사유 총합표
6. 이월	0	6. 세출예산 집행사유 총합표
7. 이월	0	7. 세출예산 집행사유 총합표
8. 이월	0	8. 세출예산 집행사유 총합표
9. 이월	0	9. 세출예산 집행사유 총합표
10. 이월	0	10. 세출예산 집행사유 총합표
11. 이월	25,792,764,160	11. 세출예산 집행사유 총합표
12. 이월	25,792,764,160	12. 세출예산 집행사유 총합표
13. 이월	25,792,764,160	13. 세출예산 집행사유 총합표
14. 이월	25,792,764,160	14. 세출예산 집행사유 총합표
15. 이월	25,792,764,160	15. 세출예산 집행사유 총합표

8) 해당기간 중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건은 회계연도 말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 Step III: 오류 사유별 조치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발생주의에 따라 비용 및 부채(미지급금 등)를 인식하여야 할 경우 결산담당자는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해 관련 효과를 재무결산에 반영해야 한다.

#### <TIP> 결산조정전표 등록시 환원여부 체크

dBrain 상 '결산조정전표 등록'으로 부채를 인식(비용 xx/부채 xx)한 경우, 실제 현금을 지급하는 해에 환원전표(부채 xx/비용 xx)를 등록하지 않으면 비용 및 부채가 과대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따라서 결산담당자는 매년 등록하는 결산조정전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결산조정분개가 상계되어야 하는 시점(현금지급시점)에 환원전표를 등록해 주어야 한다.

거래의 성격상 다음 회계연도 중에 현금지출이 반드시 수반되는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조정전표 등록' 시 환원여부에 'Y'를 선택(dBrain 상 자동 환원분개 생성)함으로써 결산조정전표 환원 누락으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누적
취득완료된 건설증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5	3	2	3	4	1	4	22

<출처: '11~'17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 대표사례

OO청 일반회계는 대형헬기 취득과 관련하여 전기 이전 지출액은 건설증인선박 및항공기로, 본 회계연도 지출액은 건설증인기타의유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위 대형헬기의 취득이 완료되었는데도 본계정으로 대체하지 아니하여, 선박및항공기(일반유형자산)가 545억 65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건설증인선박및항공기(일반유형자산) 및 건설증인기타의유형자산(일반유형자산)이 각각 393억 8,959만 원, 151억 1,106만 원 과대 계상되었다. ('17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 ➤ Case I: 자산대체서 승인 누락

자산의 취득이 완료되면 자산 등재(자산대체서 승인)를 통해 건설증인자산을 토지, 건물 등 본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하나, 자산대체서를 승인하지 않아 자산 등재가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 ➤ Case II: '기타 증감'으로 자산 계상

자산을 등재하면서 건설증인자산을 대체하지 않고 자산만 직접 대장에 '기타증감'으로 처리하여 건설증인자산이 상계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다.

####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 Step I: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 결산담당자는 '건설증인자산 명세서'\*를 통해 일선관서, 거래처, 계약명 등의 정보(상세내역 전체받기 가능)가 포함된 건설증인자산의 상세내역을 확보한다.

\* [회계결산>재무장부>회계기금>원장조회>계정과목별 명세>계정과목 세부명세서> 8.일반유형자산/사회기반시설/무형자산>(12)건설증인자산 명세서]

- 건설증인자산 건별로 자산취득 완료 여부, 취득 완료 예정일 등을 업무담당자를 통해 확인한다.

## ▶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 ① 자산대체서 승인으로 자산 등재

- 자산대체서 승인을 누락하여 자산 등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설중인 자산은 조달(계약)메뉴('검수조서전체조회' 또는 '검수요청등록')에서 **미완료** 대체서를 조회한 후 '상세'버튼 클릭하여 대체서 승인 처리할 수 있다.

그림 1-26 | 조달(계약)>검수>검수조서현황>검수조서전체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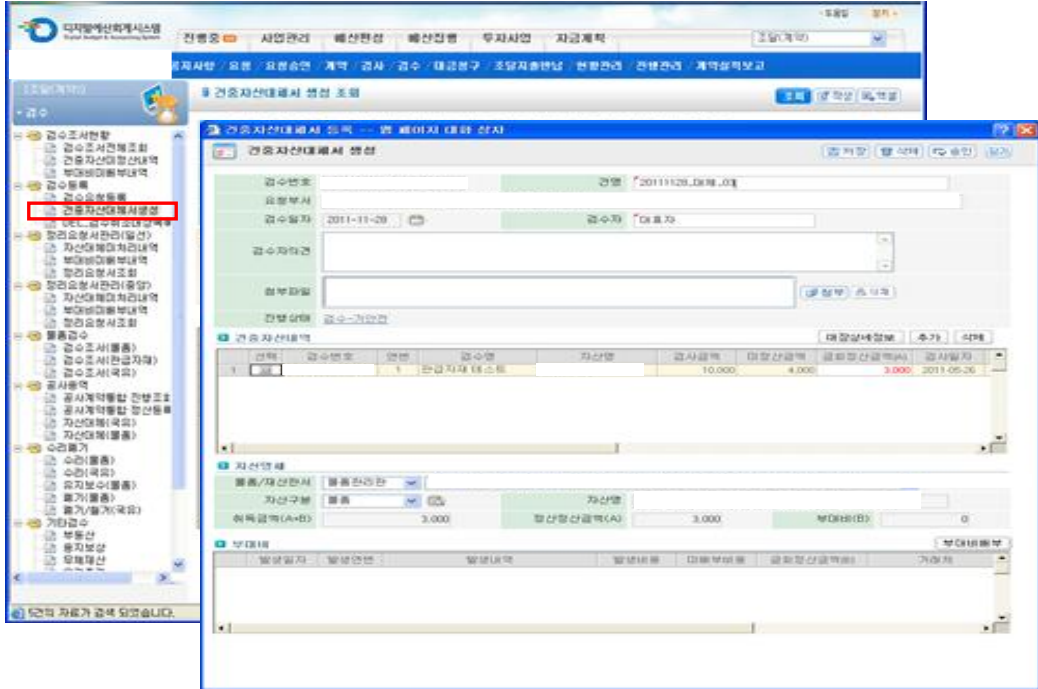
번호	계약유형	검수구분	검수번호	건명	검수일자	검수금액	거래처명	진행상태
1	물품	검수		송용차구매	20110309	1,000,000		검수-승인 T111
2	계약물	검수		계약물 폐기	20110309	0		검수-승인 MP2
3	폐기	검수		물품 폐기	20110309	0		검수-승인 MP2
4	물품	검수		차량과 차량용어여론	20110309	1,500,000		검수-승인 T111
5	일반수리	검수		555	20110307	200		검수-승인 T111
6	물품	검수		111	20110303	1,000		검수-기안건 T111
7	물품	검수		복사기 구매	20110225	10,000		검수-반려 T111
8	물품	검수		리스 대금형구 예산 테스트	20110224	100,000		검수-승인 T111
9	물품	검수		신규 검수판	20110217	2,000,000		검수-승인 MP2

그림 1-27 | 조달(계약)>검수>검수등록>검수요청등록

번호	계약유형	검수구분	계약번호	검수번호	건명	거래처명
1	부동산취득				용지보상 22222222	
2	부동산취득				용지보상 검수판 0309	
3	부동산취득				간성 천내	
4	부동산취득				테스트공사5	
5	부동산취득				간성 천내	
6	시설공사	대체			원사신속공사 테스트	
7	시설공사	대체			영역별당 장기계속 공사 1차	
8	부동산취득	검수			20110309_용지보상_S_003	
9	물품	검수			20110310_국유취득	

- 미완료 대체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대체서가 생성되지 않은 건이므로, 건증자산대체서생성 메뉴에서 자산대체서를 생성한 후 대체서 승인을 통해 자산 등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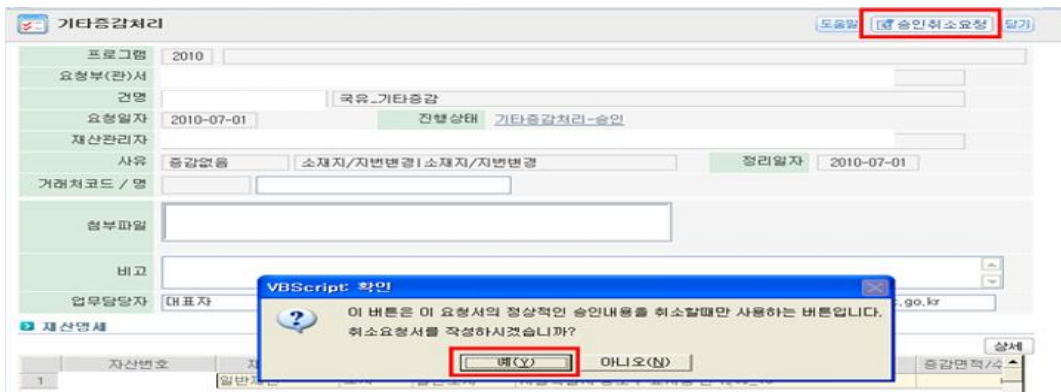
그림 1-28 | 조달(계약)>검수>검수등록>건증자산대체서생성



## ② 미상계된 건설증인자산 제거

- 당기에 '기타증감'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증감처리' 메뉴에서 해당 건을 조회하여 '승인취소요청'을 통해 기존 업무를 취소한 후, 자산대체서 승인으로 자산을 등재하여야 한다.

그림 1-29 | 국유재산(물품)>대장관리>기타증감>증감처리



- 전기에 기타증감으로 처리한 경우에 결산담당자는 건설중인자산을 제거하면서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인식하는 결산조정분개(전기오류수정손실 XX/ 건설중인자산 XX)를 수행해야 한다.
- 업무담당자는 소멸정리요청서를 통해 검사 미정산(또는 선금 미청산, 부대비 미배부) 내역으로 조회되는 건설중인자산을 제거(이때 회계처리는 발생하지 않음)해야 한다.

그림 1-30 | 조달(계약)>진행 관리>건설중인자산 관리>소멸정리요청서



<TIP>



소멸정리요청서는 조달에 남아있는 건설중인자산 내역만 제거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증감으로 자산을 직접 대장에 반영하는 경우에 결산담당자는 건설중인자산을 결산조정분개로 제거하고, 업무 담당자는 소멸정리요청을 통해 관련 조달 내역만 제거하는 것이다.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누적
소송충당부채 설정액 누락 등 소송충당부채 설정오류	2	5	4	5	2	2	2	22

<출처: '11~'17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 대표사례

OO회 일반회계에서 소송사건 중 2심 패소 후 상고되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18건에 대한 손실 추정금액만을 소송충당부채로 설정하고, 2심에서 패소 하였으나 상고여부가 미확정된 소송사건 4건은 향후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에 대한 소송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하여 소송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가 26억 6,651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소송충당부채전입액(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17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 ➤ Case I: 소송충당부채 설정기준 미비

- 부처의 소송충당부채 설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설정기준의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경우(예: 소송가액 10억원 미만인 소송은 충당부채에서 제외 등) 오류가 발생한다.

##### ➤ Case II: 소송충당부채 설정 대상 건의 누락

- 대부분의 부처가 소송전담부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송의 성격상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결산담당자는 소송전담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 결산조정분개로 충당부채를 입력하게 되는데,
- 소송건수가 많고 사건이 복잡하여 기말시점으로 소송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는 경우, 소송충당부채 설정대상임에도 해당 건을 누락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 ➤ Case III: 재정상태표일 이후의 사건 미고려

- 재정상태표일과 결산시점 사이에 소송 패소가 확정되어 추정치로 인식했던 소송충당부채 금액과 실제 지출할 금액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 **Case IV: 기인식한 소송충당부채 미고려**

- 기중에 패소 등의 이유로 소송비용이 실제로 지급되는 경우에 전기에 인식한 소송충당부채를 대체처리하지 않거나, 또는 기말충당부채를 설정하는 시점에 전년도까지 인식하였던 소송충당부채 및 당기 계정 대체된 소송충당부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 I: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① **소송충당부채 설정여부 확인**

- 결산담당자는 소송전담부서를 통해 부처에서 소송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할 소송 건이 있는지 확인한다.

② **전기 소송충당부채와 비교 대사**

- 소송전담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와 전기 재무제표 및 주석에 계상된 소송충당부채를 비교하여 당기에 발생한 주요 변동사항을 검토한다.

➤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① **소송충당부채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감사원은 각 부처의 소송충당부채 설정기준이 합리적인지 검토한 후, 그 기준대로 소송충당부채가 계상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는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소송충당부채 설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② **소송자료의 정확성 확인 및 설정기준에 따른 충당부채 계상**

- 소송충당부채는 결산담당자가 '결산조정전표 등록'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므로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결산담당자는 소송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 소송충당부채 설정기준에 따라 충당부채를 계상하여 부채 설정 대상 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TIP>



패소 시 소송가액에 가산하여 발생하는 환급가산금 및 이자비용, 예상지연 손해금 등에 대한 소송충당부채 미설정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경우가 있으므로, 결산담당자는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재정상태표일 이후의 사건 고려

- 소송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의무이행에 소요될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인식해야 하며, 추정할 때에는 재정상태표일 후 소송 확정 사건 발생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만약 재정상태표일 후에 소송 패소 확정 사건이 발생하여 추정치로 인식했던 소송충당부채 금액과 실제 지출할 금액이 불일치할 경우, 소송충당부채 금액을 실제 지출할 금액으로 수정해야 한다.

④ 전기에 인식한 소송충당부채 고려

- 결산조정전표로 등록된 분개는 결산조정 이외의 업무로는 상계되지 않으므로 패소 등의 이유로 **소송비용이 실제로 지급된다면, 전기에 소송충당부채로 설정한 건을 반드시 기말에 상계처리**하여야 한다.
- 만약 이를 누락할 경우 소송충당부채가 상계되지 않고 배상비 등의 비용이 인식되거나 관련 수익이 차감되는 등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 **당기말 소송충당부채 설정 시에도 전기 결산조정분개로 인식한 소송충당부채와 당기 계정대체된 소송충당부채를 고려해서 소송충당부채 설정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ex) 전기말 소송충당부채 잔액 1,000, 소송패소지급액 500(전기말 충당부채 설정 건으로 과징금수익 환급 결정됨), 당기말 소송충당부채 잔액 2,000

구분	분개			
	차변		대변	
소송 패소 금액 지급	과징금수익환급금	500	국고수입	500
소송충당부채 상계	소송충당부채	500	과징금수익환급금	500
소송충당부채 설정	소송충당부채전입액	1,500	소송충당부채	1,500

<TI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국방부와 특별회계(기금포함)를 제외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소송비용은 법무부 예산에서 일괄 계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분	세부구분	지급주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일반회계	법무부
	국방부	국방부
	특별회계, 기금	해당 행정청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외		해당 행정청

그럼에도 법무부소관의 소송을 타회계에서 인식하거나, 타부처가 인식하여야 하는 소송충당부채를 법무부에서 계상하는 등의 오류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결산담당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누적
자산 처분 및 폐기 관련 회계처리 오류	6	3	3	2	1	2	4	21

<출처: '11~'17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 대표사례

OO처 XX기금에서 토지를 연부 매각하면서 본 회계연도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는데도 해당 토지와 관련 선수금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토지(일반유형자산)가 32억 4,112만 원, 선수금(유동부채)이 25억 8,888만 원, 자산재평가이익(조정항목)이 3억 723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일반유형자산처분손실(비배분비용)이 3억 4,501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17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 ➤ Case I: 국유재산 매각 시 매각요청서 작성 오류

매각하는 유가증권의 계약요청수량, 계약요청금액을 dBrain에 잘못 입력하는 경우 실제 처분대상과 다른 금액이 국유재산대장에서 제거되고, 이에 따라 자산처분손익이 왜곡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 ➤ Case II: 수입 메뉴와 기타증감을 통한 업무 처리 진행

국유재산 매각 시 '국유재산' 메뉴에서 '매각요청서 작성'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나, '수입' 메뉴에서 '납부서 작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자산이 제거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국유재산 대장에서 자산을 제거하기 위해 '기타증감\_기타(감)'을 사용할 경우 자산처분손익이 아니라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정과목이 생성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 ➤ Case III: 매각 완료된 국유재산의 인계처리 누락

'국유재산' 메뉴의 '매각요청서 작성'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였지만 매각 완료된 자산에 대해 착오로 인계처리를 누락하면, 해당 자산이 장부에서 제거되지 않고 선수금이 과대 계상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한다.

이는 자산 매각 과정에서 표와 같은 회계처리가 생성되는데, 인계처리를 누락 할 경우 ‘자산 인계 시’ 분개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구분	차변	대변
수입 징수결의 시	미수금 10	선수금 10
자산 인계 시	선수금 10	자산 8 자산처분이익 2

##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 Step I: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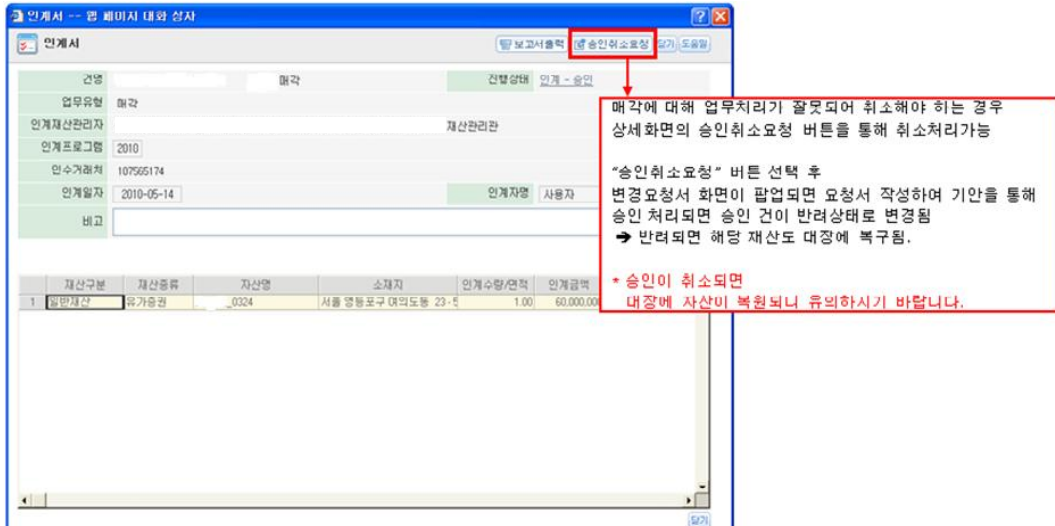
- 결산시점에 합계잔액시산표 조회 등을 통하여 국유재산 관련 계정과목 (토지, 건물 등)이 감소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처분손익 또는 폐기손실이 재무결산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 결산담당자는 거래처별 선수금 잔액이 매각 완료된 자산에 대한 인계 처리 누락 건이 아닌지 업무담당자를 통해 확인한다.  
특히 선수금 잔액이 동일한 거래처의 수납금액과 일치하는 경우 인계 처리 누락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 ① 매각요청서 작성 오류 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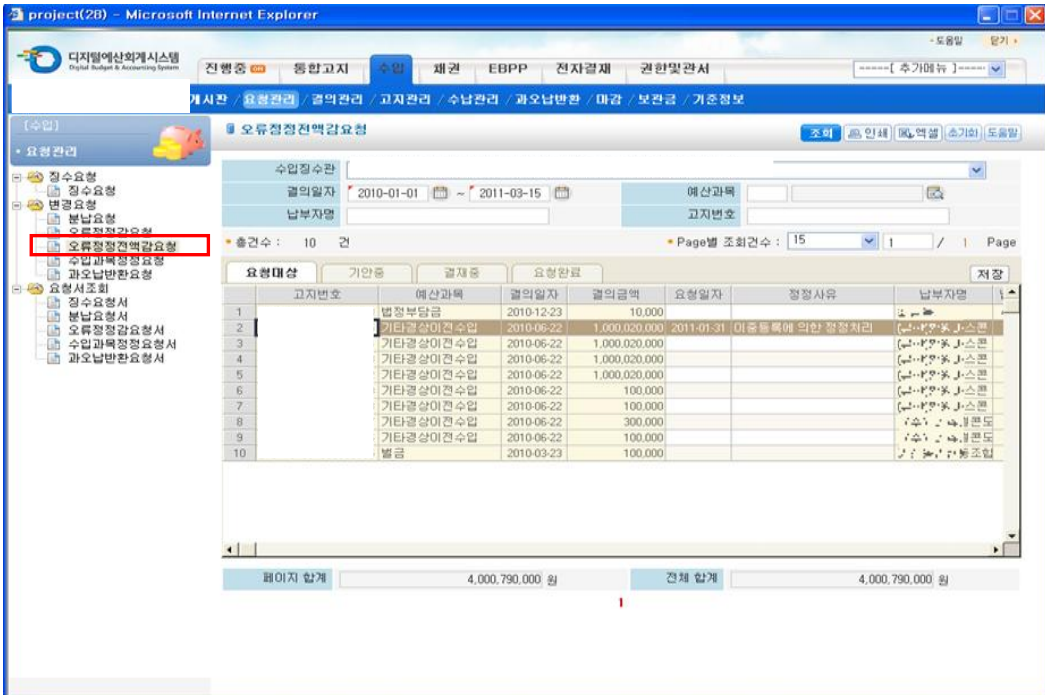
- 유가증권 매각요청서 상 계약요청수량 또는 금액 입력 오류인 경우, 결산담당자는 업무담당자에게 기존 업무를 취소한 후 매각요청서를 다시 올바르게 수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 매각 관련 오류는 인계관리에서 인계서 ‘승인취소요청’을 통해 해당 건을 반려하는 것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림 1-31 | 국유재산>처분>매각>인계 관리-인계서



- 이때 국유재산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 업무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오류정정전액감요청 및 수납정산 취소<sup>9)</sup>**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림 1-32 | 수입>요청관리>변경요청>오류정정전액감요청



<sup>9)</sup> 국유재산에서 징수요청된 자료는 수입 메뉴에서 결의취소를 할 수 없으며, 잘못 작성된 건은 '오류정정전액처리'를 통해 전액 감액하여야 한다.

## <TIP> 국유재산 매각 오류정정 방법

국유재산 매각 관련 오류정정 방법은 거의 동일하나, 매각하는 국유재산이 유가증권인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① 유가증권: 기존 승인요청 건(인계서, 수입업무 처리내역)을 반려하게 되면 기존 유가증권매각등록 화면까지 돌아가, 이를 수정함으로써 오류정정이 가능하다.
- ② 기타 국유재산: 기존 승인요청 건(인계서, 수입업무 처리내역)을 반려하더라도 기존 매각요청서까지 돌아가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반려된 건에 대한 징수요청서 등을 강제종료한 후 계약변경을 통해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 ② 수입 메뉴와 기타증감을 통해 업무를 진행한 경우 오류 정정

- 업무담당자가 국유재산 메뉴가 아닌 수입 메뉴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여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한 경우, 결산담당자는 업무담당자에게 수입 관련 업무(수납정산, 징수결의 등)를 취소한 후 국유재산 메뉴를 통해 매각 업무를 다시 진행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 기타증감 메뉴를 통해 대장에서 해당 국유재산을 제거한 효과는 [대장 관리>기타증감>증감처리] 메뉴에서 해당 건을 조회하여 취소해야 한다.

### ③ 매각 완료된 국유재산 인계처리

- (당기 매각완료된 자산의 인계처리 누락) '인계관리'에서 인계서 승인을 통해 오류 정정
- (전기 이전에 매각 완료된 자산의 인계처리 누락) 인계서 승인 절차를 수행한 후, 전기 이전 매각 건이므로 자산처분손익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대체하는 결산조정분개를 수행해야 한다.

그림 1-33 | 국유재산>처분>매각>인계관리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누적
관리전환 등 자산이관 관련 회계처리 오류	-	4	6	4	1	1	1	17

<출처: '11~'17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 대표사례

OO청 일반회계에서 2016회계연도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어 국방부로 납품이 완료된 군수품에 대한 선급금을 정부내자산기부로 대체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여 선급금(유동자산)이 5,123억 5,264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정부내자산기부(재원의 이전)와 전기오류수정손실(비배분비용)이 각각 5,040억 8,676만 원, 82억 6,588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17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 ▶ Case I: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간 관리전환 회계처리 오류

- 국방부가 사용하는 군수품의 대금지급은 방위사업청이 수행(선급금 계상)하고, 국방부가 군수품을 수령하면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로 관리전환(방위사업청 선급금 상계)<sup>10)</sup>을 수행한다.
  - 자산 수령 시점에 국방부의 재산관리관이 '관리전환'이 아니라 '재물조정에 의한 자산등재'로 업무 처리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에서 계상한 선급금이 상계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다.
  - 또한, 방위사업청이 관리전환과 관계없이 선급금을 임의로 차감시킨 경우에는, 국방부 자산등재 시 방위사업청에서 상계할 선급금이 없어 미지급금이 자동생성(정부내자산기부 XX/미지급금 XX)되는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한다.

##### ▶ Case II: 출자금 중복 계상 오류

출자금의 경우 예산을 지출하는 국가회계실체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자산으로 해당 출자금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예산을 지출하는 회계실체에서도 자산을 계상하는 경우 출자금 중복계상 오류가 발생한다.

<sup>10)</sup> 국방부에서 군수품을 수령할 때 자원관리장비체계에 자산정보를 입력하여 자산등재를 하면 자동으로 관리전환이 수행되어 방위사업청의 선급금이 차감

##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 Step I: 오류 발생 가능성 검토

결산담당자는 해당 부처에서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또는 기재부가 관리하는 출자금과 같은 자산취득 사례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 ① 계약 단계별 정보 제공

-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재산관리관이 군수품 수령 관련 정보 입력 오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정확한 계약관련 정보를 적시에 국방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기타증감, 결산조정전표 입력 등으로 조치

- 예산 지출 부처의 업무담당자는 기타증감\*메뉴를 활용하여 기획재정부 자산과 중복으로 계상된 출자금을 제거한다.

\* [국유재산>대장관리>기타증감]

- 결산담당자는 '기타증감'으로 인해 발생한 회계처리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결산조정전표 입력을 수행한다.
  - 예산 지출 부처에서는 출자금을 차감하면서 '기타재원이전', 기획재정부에서는 출자금을 증가시키면서 '기타재원조달'로 회계처리하고 국가통합시 내부거래로 제거해야 한다.
  - 따라서 결산담당자는 '기타증감' 처리로 인해 발생한 계정과목을 결산 조정분개를 통해 '기타재원이전' 계정과목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누적
내용연수 입력 오류 등 감가상각비 계산오류	1	1	2	4	3	1	3	15

<출처: '11~'17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 대표사례

OO부 XX특별회계에서 2015. 6. 30. 취득한 구축물 외 19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잔존가액을 추정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데도 잔존가액을 취득원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잘못 추정하여 감가상각비(프로그램총원가), 전기오류수정손실(비배분비용)이 각각 73억 9,837만 원, 118억 1,627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감가상각누계액(일반유형자산의 차감계정)이 192억 1,464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17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 ➤ Case I: 내용연수 입력 오류

- 내용연수(자산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로 입력하거나,
- 재산종목 판단 오류 또는 동일 구조물에 대한 일관성 없는 내용연수 적용 등으로 내용연수 오류가 발생한다.

##### ➤ Case II: 잔존가액 입력 오류

감가상각 관련 정보 입력 시, 잔존가액에 합리적인 추정치가 아니라 **취득가액(또는 취득가액의 96%)** 등을 입력하는 경우 감가상각비가 산출되지 않거나 과소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 Step I: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 결산담당자는 감가상각비 계산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계정과목 검토를 수행한다.
  - 당기 취득 자산의 자산가액과 감가상각비를 통해 감가상각비율을 구하고 기존 자산의 감가상각비율과 비교한다.
  - 당기 취득 자산의 감가상각비율이 기존 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내용연수나 잔존가액 확인이 필요하다.
- 결산담당자는 업무담당자로부터 감가상각 대상 자산목록을 확보하여 내용연수와 잔존가액이 적정한지, 취득원가와 잔존가액이 동일한 자산은 없는지 검토한다.
- 무형자산은 국유재산담당자를 통해 계약서나 협약서<sup>11)</sup>상 권리기간과 내용연수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 ▶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 ① 내용연수 정정

내용연수가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에게 대장관리의 기타증감\*을 활용하여 오류를 정정하도록 한다.

\* [국유재산(또는 물품) > 대장관리 > 기타증감]

기타증감의 사유를 '증감없음, 기타증가/내용연수 증가'로 하여 잘못 처리된 자산의 대장번호를 선택하면, 내용연수를 수정할 수 있다.

#### ② 잔존가액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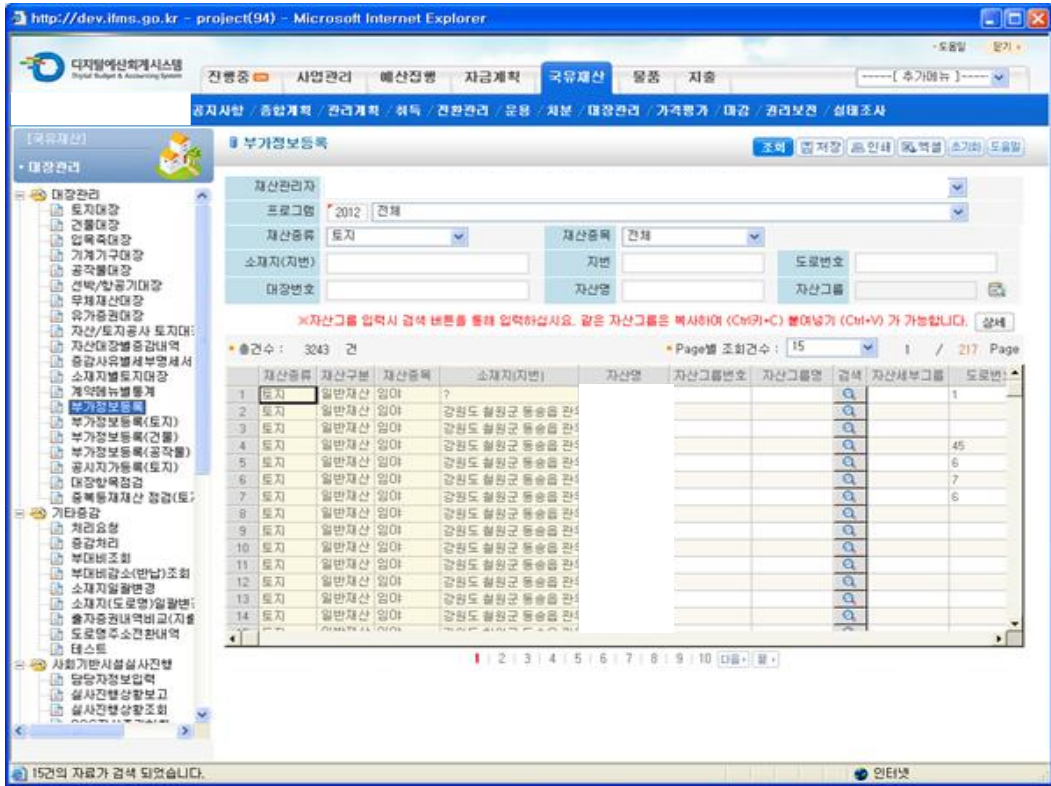
잔존가액이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에게 대장관리의 부가정보등록\*을 활용하여 오류를 정정하도록 한다.

\* [국유재산(또는 물품) > 대장관리 > 부가정보등록]

부가정보등록에서 해당 자산을 조회하면 '기타정보' 하단의 '감가상각 잔존가액(원)'에 수정된 잔존가액을 입력·저장할 수 있다.

11) 무형자산은 관계 법령이나 계약서상 권리기간 등으로 내용연수를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 확인 필요

그림 1-34 | 국유재산(또는 물품) > 대장관리 > 부가정보등록



**<TIP> 자본적지출과 잔존내용연수 & 자산분류 오류**



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 37에 따르면, 자본적 지출로 자산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잔존내용연수를 재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자본적 지출로 인해 증가된 내용연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가된 내용연수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감가상각한다.
2. 투자자산(회원권) 등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잘못 등재하여 감가상각비가 산출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 인식 누락 등 BTO관련 회계처리 오류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누적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 인식 누락 등 BTO관련 회계처리 오류	2	3	2	5	1	-	1	14

<출처: '11~'17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 대표사례

OO부 XX특별회계에서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된 고속도로가 본 회계연도에 준공되어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고 민간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면서 사회기반시설의 차감항목인 사용수익권을 계상하지 않고 정부외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하여 고속국도사용수익권(사회기반시설의 차감계정)이 7,528억 9,440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정부외자산수증(재원의 조달)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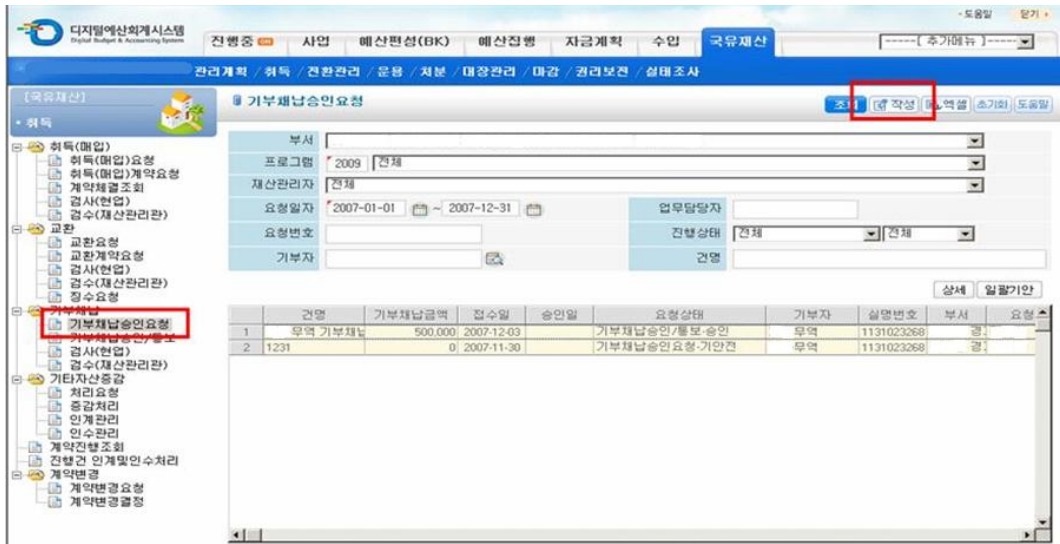
또한, 이와 관련하여 본 회계연도 사용수익권을 상각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외자산수증(재원의조달)이 83억 6,549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고속국도사용수익권(사회기반시설의 차감계정)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17년 감사원 지적사항 中)

### □ 감사원 지적 발생 원인

#### ➤ Case I: 기부채납승인요청서 작성 시 사용수익권 누락

BTO사업과 관련하여 건물 등을 기부채납 받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승인요청서에 사용수익권의 금액과 사용기간을 입력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권'이 아닌 '정부외자산수증'으로 회계처리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1-35 | 국유재산 > 취득 > 기부채납 > 기부채납승인요청



➤ **Case II: 기부채납승인요청서가 아니라 기타증감으로 처리**

사용수익권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승인요청'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기타증감'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권이 계상되지 않고 증감사유에 따른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 I: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결산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수익권 인식 누락의 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내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BTO 계약 내역 확보**

BTO 계약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권을 인식해야 하므로, BTO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로부터 계약내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정부외자산수증 계정과목 내역 검토**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에는 자산의 상대 계정과목으로 정부외자산수증이 계상되므로, 정부외자산수증 계정과목을 검토하여 사용수익권 인식 누락 가능성이 있는 자산 내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 증가 내역 검토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이 큰 금액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권을 인식해야 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자산 내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 ➤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결산담당자는 'Step I'에서 확보한 자산의 내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수익권 인식 여부를 검토한다.

### ① 기부채납승인요청 내역 검토

국유재산담당자로부터 당기 중 기부채납된 자산 내역을 수령하여 BTO 계약 내역 및 정부의자산수증 계정과목 내역과 비교 검토하고, 무상사용권이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권의 금액과 사용기간을 미입력한 내역이 없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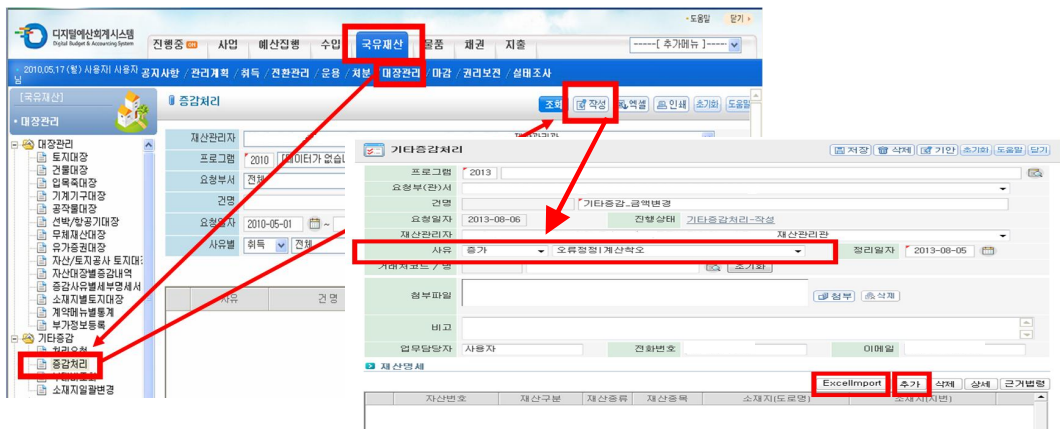
### ② 기타증감 처리내역 검토

국유재산담당자에게 dBrain에서 당기 중 기타증감을 통해 처리된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여, 기부채납승인요청을 통해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타증감으로 처리한 내역이 없는지 검토하도록 한다.

## ➤ Step III: 오류 사유별 조치

- 사용수익권이 누락된 경우에는 국유재산담당자에게 대장관리의 기타증감을 활용하여 오류를 정정하도록 한다.

그림 1-36 | 국유재산>대장관리>기타증감>증감처리



- 기타증감의 사유를 '증가, 오류정정/입력착오'로 하여 잘못 처리된 자산의 대장번호를 선택하면, '증가 사용수익설정금액'과 '변경 사용수익기간'을 변경·입력할 수 있다.
- 결산담당자는 최초 잘못된 업무처리로 발생한 회계처리와 국유재산담당자가 기타증감으로 오류 정정하여 발생한 회계처리를 확인하여, 추가적으로 결산조정분개를 입력하여야 한다.

< 업무별 회계처리 예시 >

업무	회계처리			
잘못된 업무처리	차) 건물 등	100	대) 정부외자산수증 등	100
기타증감(오류정정)	차) 전기오류수정이익	100	대) 사용수익권	100
결산조정분개	차) 정부외자산수증 등	100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100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누적
회수가 불가능한 유가증권 등 감액손실 인식 누락	3	3	2	1	3	-	1	13

<출처: '11~'17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OO부 XX기금에서 보유한 주식회사□□ 주식은 해당 기업이 폐업되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도 투자주식에 대한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장기투자증권(투자 자산)이 7,059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자산감액손실(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17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 Case I: 감액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감액손실 인식 누락

- 유가증권의 감액은 국유재산담당자가 조정자료입력에서 수행하는데, 업무담당자가 매년 감액손실 발생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경우 감액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감액손실 인식을 누락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1-37 | 국유재산>마감>재산관리관별>조정자료입력(기타)

➤ **Case II: 감액손실을 평가손실로 계상하는 오류**

- 공정가액으로 평가<sup>12)</sup>하는 유가증권의 시가가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 감액 발생 여부를 검토하지 않으면 감액손실을 평가손실로 인식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TIP> 유가증권의 감액손실 인식**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 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4항)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 I: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 결산담당자는 재정상태표 조회를 통해 **출자금, 주식, 회사채, 기타지분 증권, 투자회원권<sup>13)</sup>** 등 기말시점에 감액손실 발생여부 검토가 필요한 자산이 있는지 확인한다.

➤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① **매 회계연도 말 객관적인 감액사유 발생여부 검토**

- 결산담당자는 부처가 보유한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휴·폐업, 파산, 회생 정리절차폐지, 자본잠식, 상장주식 공정가액의 현저한 하락** 등이 발생했는지 업무담당자를 통해 확인한다. 사유발생시 해당 유가증권에 대해 감액손실을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한다.

① **휴·폐업**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로 휴·폐업 여부 조회

② **파산, 회생정리절차폐지**

⇒ 인터넷을 통해 최근 기사를 검색하여 파산여부를 확인

12) 투자목적(매매차익목적)으로 보유하는 장·단기 투자증권의 경우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 중 '투자증권평가손익'으로 표시함

13) 투자회원권의 경우 가치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년 매매가 조회를 통해 감액 요인이 있는지 검토해야 함

**③ 자본잠식**

⇒ 적자 누적으로 잉여금이 바닥나 자본금으로 적자를 상쇄하기 시작하는 것을 자본잠식이라고 함(자본금이 모두 상쇄되어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인 상태는 완전 자본잠식)

**④ 상장주식 공정가액의 현저한 하락**

⇒ 한국거래소 종가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장부가액 대비 현저하게 하락

**② 평가손실이 큰 유가증권에 대한 감액손실 인식여부 검토**

- 결산담당자는 유가증권 관련 ‘투자증권평가손실’ 금액을 확인하여 그 공정가액이 현저하게 하락하였다면, 해당 유가증권에 대해 **평가손실이 아닌 감액손실**을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한다.

**➤ Step III: 오류 사유별 조치**

- 결산담당자는 객관적인 감액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감액손실 인식을 누락하였거나, 감액손실을 평가손실로 계상한 내역이 파악된 경우, 국유재산담당자에게 국유재산 마감절차를 통해 감액손실을 인식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TIP> 감액손실 회계처리**



1. 직전년도에 감액한 상장주식과 관련하여 당기 시가 하락분에 대한 추가 감액손실 인식 누락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다.

감액손실을 인식한 이후 ①금융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감액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 감액손실환입(감액사유 발생 전 장부가액을 한도)을 ②추가 감액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추가로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감액손실을 인식한 이후에도 해당 감액손실의 환입 또는 추가 인식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순자산변동표에 조정 항목으로 인식한 “투자증권평가손실” 또는 “투자증권평가이익”을 “감액손실”에 더하거나 빼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해주어야 한다.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누적
비용을 자산 처리한 오류	-	1	2	2	2	1	4	12

<출처: '11~'17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 대표사례

OO부 일반회계에서 중국과 베트남에 소재한 재외교육기관의 교사 증축, 농구장 설치 등을 위해 반대급부 없이 지출한 금액은 시설 완공 후 국가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외보조비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선급금으로 처리하여 선급금(유동자산)이 43억 9,030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해외보조비가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17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 감사원 지적 발생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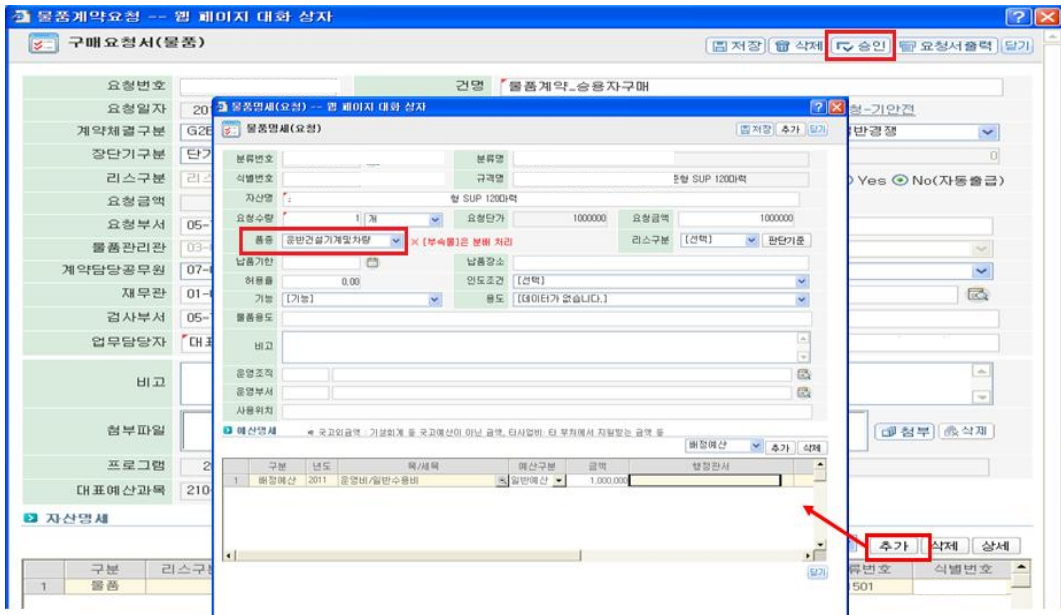
##### ➤ Case I: 세부·세세부 항목 선택 오류

- 해외자본이전(340-03) 예산은 해외취득자산의 소유가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해외보조비로 비용처리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업무담당자가 지출요청서에서 세부·세세부 항목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 '선급금'(자산)으로 회계처리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 ➤ Case II: 물품명세 및 자산명세 선택 오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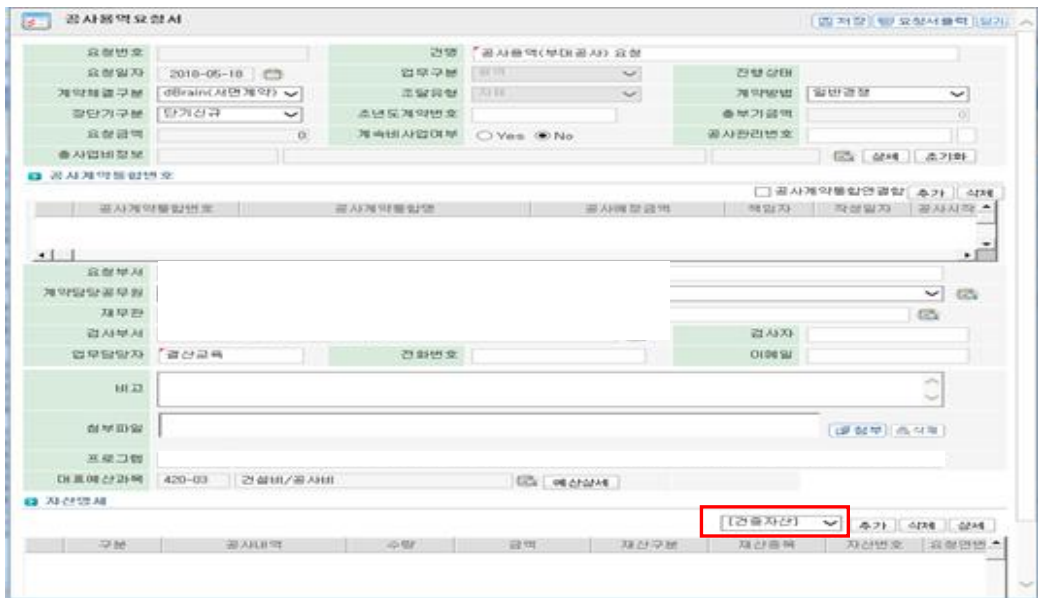
- ① 물품 구매요청서 작성 시 '물품명세'에서 품종의 선택에 따라 자산과 비용이 구분된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1년 사용계약)는 지출시 비용(소모성 물품비)처리 되어야 하나, 품종을 '외부소프트웨어'로 잘못 선택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1-38 | 조달(계약)>요청>물품계약>구매요청(물품)>구매요청서(물품)>물품명세(요청)



- ② '공사용역요청서' 작성 시 '자산명세' 선택에 따라 자산과 비용이 구분된다. '수선유지비' 성격의 지출에 대해 자산명세를 '비용'이 아닌 '자산편입(건축자산)'으로 선택하는 경우 '건설중인자산'이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1-39 | 조달(계약)>요청>공사계약>공사용역(부대공사)>공사용역요청서



##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 Step I: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 자산항목(무형자산, 선급금, 건설중인자산) 분개장 전체를 금액순으로 정렬한 후 금액이 큰 항목들을 중심으로 적요를 통해 자산성 여부를 검토한다.
- 특히 과거에는 비용으로 처리했던 것을 일관성 없이 자산으로 잘못 회계처리한 것은 없는지, 부처의 과거 감사원 지적사례와 유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검토한다.

- \* 무형자산: 국가회계실체 등이 행정목적으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으로,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 소프트웨어는 외부업체에 대가를 지불하고 구축한 전산 프로그램인 내부개발소프트웨어와 외부에서 구입한 전산 패키지 등인 외부구입소프트웨어로 구분된다.
- \* 선급금: 상품 등의 구입이나 외주가공을 위하여 구입처나 외주가공처에 거래의 보증금 또는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선지급한 금액이다. 공사 지출금의 일부(예산상 “출연금”으로 지출되는 경우는 제외)를 국가가 부담하여 향후 지분만큼 국가가 자산을 취득하고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완공 전에 지급한 공사지출금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다.
-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취득과정이 진행 중인 일반유형 자산 및 사회기반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의 지출액을 건설중인자산으로 인식한다.

### ➤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결산담당자는 ‘Step I’에서 파악한 자산성이 의심되는 항목에 대해 업무 담당자를 통해 자산 계상의 타당성을 최종 확인(계약서 검토 등)한다.

### ➤ Step III: 오류 사유별 조치

해외보조비, 수선유지비, 소모성물품비 등의 비용 성격의 지출을 선급금, 건설중인자산, 무형자산 등 자산으로 잘못 처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업무처리 절차를 통해 비용으로 수정해야 한다.

① 지출 요청서 작성 시 세부·세세부항목을 잘못 선택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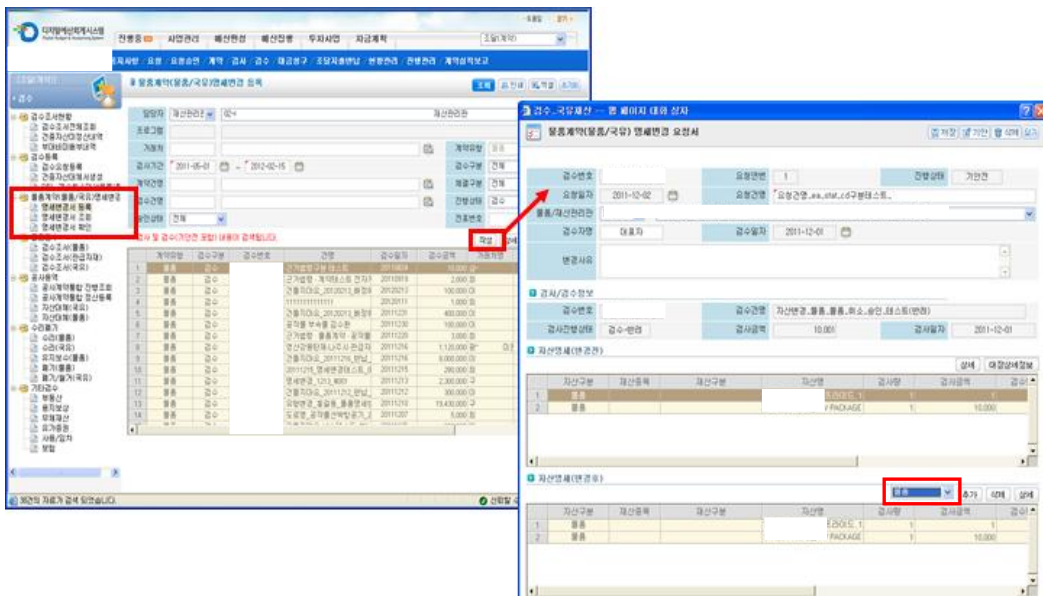
- 업무담당자가 '계정과목변경' 메뉴를 통해 계정과목을 정정한다. 일반지출은 '계정과목변경(일반지출)' 메뉴에서, 관서운영경비 지출은 '계정과목변경(관서운영경비)'에서 각각 세부·세세부 항목을 수정할 수 있다.

\* [지출>요청관리>계정과목정정요청>계정과목변경] (그림 1-6 참조)

② 물품 구매요청서 작성 시 '물품명세'의 품종을 잘못 선택한 경우

- (검수 이전) 검수서에서 품종을 수정해서 진행한다.
- (검수 이후) 명세변경서 등록 메뉴를 통해 자산처리된 항목을 비용으로 변경('자산명세(변경후)'에서 자산구분을 '물품'으로 선택 후 품종 변경)한다.

그림 1-40 | 조달(계약)>검수>물품계약(물품/국유)명세변경>명세변경서 등록



③ 공사용역요청서 작성 시 '자산명세'를 잘못 선택한 경우

- 당기에 지출한 경우 재무결산 마감 전까지 계정과목정정(비용<->건가) 메뉴를 통해 '건설중인자산'을 비용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조달(계약)>검사>검사등록>계정과목정정(비용<->건가)] (그림 1-2 참조)

- 당기 이전에 지출하여 발생된 건설중인자산의 경우 결산조정분개를 통해 건설중인자산을 비용으로 대체하고, 소멸정리요청서\*를 통해 건설중인자산을 조달에서도 제거해 주어야한다.

\* [조달(계약)>진행관리>건설중인자산 관리>소멸정리요청서] (그림 1-30 참조)

## <TIP> 공사비 선지급액 회계처리

공사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선지급액 회계처리



1.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자치단체대행사업비(330-04), 해외자본이전(340-03) 예산으로 지출되는 경우:** 자산이 취득되어 대장에 계상되기 전까지 '선급금'으로 관리한다.
2. **출연금(350, 360) 예산으로 지출되는 경우:** 각 예산에 매핑되어 있는 공공기관출연비, 민간출연비, 해외출연비 등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 출연금 예산으로 지출한 금액을 비용이 아닌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례 존재('17회계연도 지적사항)

##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등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오류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누적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등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오류	3	2	-	2	1	2	1	11

<출처: '11~'17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 대표사례

OO부 XX특별회계에서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별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2017년 12월 중 담당업무 또는 근로시간이 변경된 직원의 퇴직금이 중복 생성되었는데도 이를 수정하지 아니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가 7억 1,075만 원 과대 계상되었으며, 퇴직급여(프로그램총원가)가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17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 **Case I: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적용 부처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는 부처는 금융기관에 약정한 금액을 납입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하게 되므로 재무제표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가 계상되지 않아야 한다.
- **Case II: 기준정보 오류**
  - ① 퇴직급여 지급대상 설정오류
    - 지급대상자 중복 계상, 지급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근속자 포함, 지급대상인 1년 이상 근속 임직원을 제외하는 등 충당부채 설정대상자를 잘못 산정하였다.
  - ② 평균임금 입력 오류
    -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하는데도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제외한 채 기본급만 포함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하였다.

### ③ 중간정산 시 근속기간 입력 오류

- 중간정산자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일을 기산일로 하여 새롭게 근속연수를 기산하여야 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였다.

##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 Step I: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 ① 부처에서 적용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확인

- 결산담당자는 부처에서 적용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면 해당 중앙관서에서 정한 퇴직금운용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법정 최저한<sup>14)</sup> 기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여야 한다.
-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면 지급방식(DC, DB)\*을 확인하여 DC형임에도 퇴직급여충당부채가 계상되었는지, DB형임에도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누락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 미래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며,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은 퇴직연금운용자산<sup>15)</sup> 계정과목으로 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

⇒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약정한 금액 납입 시, 퇴직금 지급의무가 사라지게 되므로 퇴직급여충당부채도 계상되지 않음

#### ② 퇴직급여충당부채 비교 분석

- 전년도 퇴직급여충당부채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변동원인(인원수 변동, 근속기간 증가, 임금상승 등)을 파악한다.

14) (최근 3개월 임금/최근 3개월 일수)×30일×(총 근무일수/ 365일)

15)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산(투자자산(Ⅱ레벨))\_기타투자자산(Ⅲ레벨)\_기타의 기타투자자산(Ⅳ레벨))으로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 ▶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결산담당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본정보 값(설정대상자, 평균임금, 근속기간 등)이 올바른지 확인해야 한다.

### ① 퇴직급여설정 대상 인원

-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 중 회계연도말 현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② 평균임금

- 평균임금이란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으로, 임금의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그 밖에 명칭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

-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롭게 기산하여야 한다.

## ▶ Step III: 오류 사유별 조치

- 결산담당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의 기본정보 값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 후, 부처에서 적용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방식에 맞게 기말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하고 이를 문서화한다.

- 이렇게 산정한 퇴직급여추계액을 dBrain\*에 입력하면 현재까지의 잔액을 감안하여 자동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분개가 생성되게 된다.

\* [회계결산>재무결산>회계기금>결산조정분개>결산조정분개진행및등록>퇴직급여충당금설정]

- 퇴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퇴직, 신규입사, 중간정산 등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당, 상여금 등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지급할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결산업무 단계별 오류사례 PART**



- ◆ 합계잔액시산표란 기중에 발생한 분개전표를 통하여 나타난 계정과목을 집계하여 보여주는 표로 dBrain 시스템 상으로 결산시점 이외에도 조회가 가능하다.
- ◆ 합계잔액시산표를 결산담당자가 수정하기 전, 다시 말해 기중 발생한 분개만 집계되어 있는 시산표를 수정전시산표라고 하며, 수정전시산표를 마감하면서 결산절차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 ◆ 하지만 수정전시산표를 마감하기 전 계정과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수정전시산표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 물품 및 채권 등 개별법에 따른 결산작업이 모두 마무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결산시점에 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
- ◆ 따라서 기중에 가능한 많은 검토를 통하여 기말 결산시점에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본 장에서는 수정전시산표 마감 전에 나타난 오류사례를 살펴보고 그 처리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예산결산과 재무결산 차이 오류	...	104
2. 건설중인자산 및 선급금	...	116
3. 기타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적정성	...	127
4.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 계정과목 적정성	...	143
5. 특정 부처 이외에는 나타나지 않는 계정과목	...	153

# 1 예산결산과 재무결산 차이 오류

결산담당자로 새로 임명된 장재무 주무관은 합계잔액시산표를 검토하면서 국고 이전지출과 국고수입 계정과목 금액이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지하였지만,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차이라고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 (1) 오류의 유형

세입, 세출, 국유재산, 물품, 채권 및 채무의 결산(이하 '예산결산')이 모두 이루어지고 나면 수정전시산표(결산조정 전 합계잔액시산표)의 마감이 가능하다. 결산담당자는 수정전시산표 검토를 할 때 가장 먼저 예산결산이 재무결산 금액에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재무결산 상 예산결산과 차이가 나는 계정과목도 존재하지만, 대다수는 예산결산과 금액이 동일해야 하므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오류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1-1 | 합계잔액시산표 양식

The screenshot shows the '합계잔액시산표' (Consolidated Balance Sheet) interface.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다자합계예산회계시스템' and various menu options like '전행중', '국유재산', '물품', '회계결산', '전자결재', '성과관리', '권한및권서'.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a table with the following data:

계정과목	잔액		계정과목 코드	계정과목	당월		
	합계	당월			합계	당월	
1	9,516,973,480	13,506,765,985	480,960,896	합 계	480,960,896	13,506,765,985	
2	917,029,219	2,806,692,499	147,475,830	10000000	자산	151,796,712	1,889,663,280
3	855,077,030	2,741,776,300	147,475,830	11000000	유동자산	151,796,712	1,886,699,270
4	627,328,920	2,426,035,240	119,975,830	1101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151,796,712	1,798,706,320
5	627,328,920	2,426,035,240	119,975,830	11010200	국고금	151,796,712	1,798,706,320
6	0	0	0	11010201	한국은행국가예금	0	0
7	627,328,920	2,426,035,240	119,975,830	11010204	국고예금	151,796,712	1,798,706,320
8	0	87,992,950	0	11040000	미수채권	0	87,992,950
9	0	87,992,950	0	11040900	미수기타수익	0	87,992,950
10	227,748,110	227,748,110	27,500,000	11090000	기타유동자산	0	0

## (2) 오류에 따른 영향

현 dBrain 시스템은 예산과목과 재무계정과목을 연계하여 재무결산에 필요한 계정과목 정보를 생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액이 꼭 일치해야 하는 계정과목이 존재한다. '국고이전지출'과 '국고수입'은 각각 세입·세출결산보고서의 '세입금액'과 '세출금액'에 연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지출이 발생할 때 국고에서 돈을 받아 지출하고, 수입이 발생할 때 들어온 돈을 국고로 수납하는 업무처리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무결산 상 각 중앙관서별 회계실체 이외에 '국고금회계'가 존재하며, 여기서 국고의 현금흐름에 대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진다.

각 중앙관서에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때 나타나는 회계처리를 국고금회계의 회계처리와 함께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세입 업무(수수료수입 10,000원)

구분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중앙관서	국고이전지출	10,000	수수료수익	10,000
국고금회계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	국고이전수입	10,000

### ○ 세출 업무(소모품 구입 5,000원)

구분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중앙관서	소모성물품비	5,000	국고수입	5,000
국고금회계	세출예산지출액	5,000	한국은행국가예금	5,000

이와 같이 세입 또는 세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중앙관서에서 직접 현금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금회계로 이전하거나 국고금회계로부터 이전받는 회계처리가 나타나며, 현금은 국고금회계에서 인식한다.

이에 따라 현금이 생겨 국고로 보낸 국고이전지출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의 수납액(전년도이월금 제외)과 동일하여야 하며, 지출을 하기 위해 국고에서 이관받는 국고수입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의 지출액과 동일하여야 한다. 단,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포함)는 기말에 한국은행국가예금 표시를 위해 기중 발생한 국고수입, 국고이전지출을 결산조정으로 제거하므로 제거전 금액과 지출, 수납액을 비교해야 한다.

국고금회계는 국가통합 결산보고서 작성 시 통합되며, 국고금회계의 국고 이전수입과 각 중앙관서의 국고이전지출, 그리고 국고금회계의 세출예산지출액과 각 중앙관서의 국고수입 금액은 내부거래로 제거된다. 따라서 사례의 장재무 주무관과 같이 국고이전지출과 국고수입이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금액과 동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산을 수행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오류일 뿐만 아니라 국가통합 단위에서 내부거래가 제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3) 오류 정정 방법

국고이전지출, 국고수입은 세입 및 세출업무와 연계되어 생성되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금액이 서로 상이한 원인을 결산담당자가 찾기는 쉽지 않은 일이므로, 차이가 나는 회계실체와 차이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해당 내역을 dBrain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세출결산보고서 상 지출액 = 합계잔액시산표 상 국고수입 금액
  - 세입결산보고서 상 수납액(전년도이월금 제외) = 합계잔액시산표 상 국고이전지출 금액
- ※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포함)는 기말에 한국은행국가예금 표시를 위해 기중 발생한 국고수입, 국고이전지출을 결산조정으로 제거하므로 제거전 금액과 지출, 수납액을 비교

#### (4) 동일유형 오류사례

##### ① Case 1: 국유재산대장과 합계잔액시산표 차이 오류

XX부처는 OO기금이 국유재산대장 및 재무제표에 계상한 채무증권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도 재무제표에 장기투자증권으로 중복 계상하여, 장기투자증권이 과대 계상되었다.

재무계정과목 중 국유재산과 관련된 계정과목은 국유재산 대장 금액과 기본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상기 사례는 국유재산대장과 관련된 계정과목의 금액 차이를 확인하였다면 나타나지 않았을 오류로 결산담당자는 수정전시산표 마감 전에 이를 꼭 검토해야 한다.

국유재산의 재산종류명에 따른 합계잔액시산표 대응은 다음과 같다.

표 1-1 | 국유재산의 재산종류명에 따른 합계잔액시산표 대응

국유재산대장 (재산종류명)		합계잔액시산표		
		중분류(Lv.2)	회계과목(Lv.3)	관리과목(Lv.4)
토 지		일반유형자산 / 사회기반시설	토 지	-
건 물			건 물	-
공작물			구축물	-
기계기구			기계장치	고정성기계장치 <sup>*4</sup>
입목죽			기타일반유형자산	입 목
선박·항공기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선박및항공기
유가증권 <sup>*1</sup>		유동자산 / 투자자산	장(단)기 투자증권	채무증권
				지분증권
				기타장(단)기투자증권
무체재산	소프트웨어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내부개발소프트웨어 <sup>*3</sup>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
	광업권		광업권	-
	기타무체재산권		기타무형자산	-
	전세권 <sup>*2</sup>	기타비유동자산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장기지급보증금 (장기임차보증금_국유)

- \*1: 국유재산대장 상에는 장단기 구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비교하여야 함
- \*2: 무체재산 중 전세권은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보증금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예산결산 상 채권으로 보고되며, '임차보증금\_채권'과 대응된다.
- \*3: 물품과 대응되는 소프트웨어는 '외부구입소프트웨어'임
- \*4: 물품과 대응되는 기계장치는 '이동성기계장치'임

국유재산의 분류는 재산종류명 이외에 재산구분명으로도 분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다음과 같다.

표 1-2 ■ 국유재산의 재산구분명에 따른 합계잔액시산표 대응

국유재산대장 (재산구분명)			합계잔액시산표 증분류(Lv.2)
행정재산	공공용	도 로	사회기반시설 (단, 토지, 건물 및 공작물에 한정)
		철 도	
		항 만	
		댐	
		공 항	
		하 천	
		상수도	
		어항	
	이외(기타, 사용예정 등)		일반유형자산
	보존용	문화재	유산자산*
		국립공원	
		보호구역, 기타	
		유산자산아님	일반유형자산
	기업용		
공 용			
일반재산			일반유형자산, 유동자산/투자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 유산자산은 합계잔액시산표에 자산으로 대응되지 않으며, 당기 취득금액은 유산 자산취득비(비용)와 대응된다.

장기투자증권은 국유재산 대장과 연계되어 생성되는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대장과 합계잔액시산표 상 금액 차이는 대부분 전기 이전의 결산 조정전표 등록에 기인한다. 이는 ①감사원 지적사항 반영 시 국유재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결산조정전표로만 장기투자증권 등 국유재산 대응 계정과목을 생성 또는 삭제한 경우, 또는 ②결산 시 오류를 발견하였으나 결산 일정 상 국유재산대장을 수정하지 않고 결산조정전표 등록으로 재무결산에만 반영한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전기 이전의 장기투자증권 관련 결산조정전표를 확인하여 차이 원인을 파악한 후, 중복계상 된 장기투자증권을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해 삭제해야 한다.

## ② Case II: 채권현재액보고서와 합계잔액시산표 차이 오류

XX부 OO주무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13회계연도 채권현재액보고서와 재정상태표 차이가 발생한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검토하였다. 대손충당금 등 올바른 차이 내역을 모두 제외하고 나니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과 미수기타이자수익이 85,450원씩 서로 부호가 다르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수채권의 경우 대손충당금이 존재하는 경우 채권현재액보고서는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지 않은 장부가액으로, 재정상태표는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금액만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위와 같은 오류가 아닌 사유를 걸러내고 나면 실제 차이금액을 산출할 수 있고 이는 오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부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례의 경우 차이금액이 각 계정과목별로 부호만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을 위해 dBrain 메뉴 중 '채권·재무장부간 비교점검'을 조회하였다.

그림 1-2 | 채권·재무장부간 비교점검(XX부)\_2013회계연도

계정과목	채권별 대장 현황		재무결산 현황		차이		
	명	기말잔액(내부거래포함) 상세	결산조정금액	기말잔액	상세	조정전차이	조정후차이
1 미수채금수익		2,032,940	0	2,032,940		0	0
2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21,357,660	0	21,443,110		-85,450	-85,450
3 미수기타이자수익		307,540	0	222,090		85,450	85,450
4 미수기타수익		20,099,720	0	20,099,720		0	0
5 기타의미수금		2,135,790	0	2,135,790		0	0

상기 조회 화면에서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과 미수기타이자수익의 차이 금액이 각각 85,450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2013회계연도에서는 재무결산현황의 결산조정금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 이전분의 오류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2012회계연도 차이내역을 다시 조회하였다.

그림 1-3 | 채권·재무장부간 비교점검(XX부)\_2012회계연도

**채권/재무장부간 비교점검** 조회 엑셀 초기화 도

회계년도: 2012 년 소관:

회계: 11000 일반회계

계정과목: 미수채권

계정과목	채권별 대장 현황		재무결산 현황			차이	
	명	기말잔액(내부거래 포함)	상세	결산조정금액	기말잔액	상세	조정전차이
1 미수채채금수익	2,032,940	00	0	2,032,940	0	0	0
2 미수채화및용역제공수익	6,671,310	00	-1,881,970	6,756,760	0	-1,967,420	-85,450
3 미수기타이자수익	85,450	00	1,881,970	0	0	1,967,420	85,450
4 미수기타수익	8,559,760	00	0	8,559,760	0	0	0
5 기타의미수금	667,140	00	0	667,140	0	0	0

2012회계연도 조회 결과 미수채화및용역제공수익을 차감하면서 미수기타 이자수익을 증가시킨 결산조정금액을 발견하였다. 사유를 살펴보기 위해 2012년 결산조정전표를 조회하였더니, 미수기타이자수익 금액이 부(-)의 금액(△1,881,970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0'으로 조정하기 위한 결산조정전표 등록임이 확인되었다.

그림 1-4 | 2012회계연도 결산조정전표

**문개상** 엑셀 달기

회계일자: 2012-12-31 소관:  전표번호:

회계: 11000 일반회계 전표유형: 결산조정분개전표

거래코드: 결산조정전표입력 거래일자: 2012-12-31 작성일자: 2013-02-15

작성자:  일선관서:  행정관서:

전표총금액: 1,881,970 단위업무:  발생업무구분: 회계결산

예산과목:

전기여부: 전기완료

**분개내역** (단위:원)

행번호	계정과목	적요	결의내용	차변금액	대변금액	분
1	11040804 미수기타이자수익			829,170	0 000	
2	11040400 미수채화및용역제공수익			0	829,170 000	
3	11040804 미수기타이자수익			953,370	0 000	
4	11040400 미수채화및용역제공수익			0	953,370 000	
5	11040804 미수기타이자수익			99,430	0 000	
6	11040400 미수채화및용역제공수익			0	99,430 000	

**관리항목내역**

일련번호	관리항목명	관리항목값	참조값
1	1 거래코드		
2	2 단위업무		

2012회계연도에 미수기타이자수익이 부(-)의 금액이 나타난 사유를 살펴 보기 위하여 '채권·재무장부간 비교점검' 2011회계연도를 다시 조회하였다.

그림 1-5 ■ 채권·재무장부간 비교점검(XX부)\_2011회계연도

채권/재무장부간 비교점검 조회 엑셀 초기화 도움말

회계년도: 2011 년 소관

회계: 11000 일반회계

계정과목: 미수채권

명	계정과목	채권별 대장 현황		재무결산 현황		차이	
		기말잔액(내부거래포함)	상세	결산조정금액	기말잔액	상세	조정전차이
1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117,983,720	00	1,967,420	119,951,140	0	-1,967,420
2	미수기타이자수익	1,967,420	00	-1,967,420	0	0	1,967,420
3	미수기타수익	1,000,000	00	0	1,000,000	0	0
4	기타의미수금	11,798,430	00	570,000	12,368,430	0	-570,000

2011회계연도 조회 결과 두 개의 계정과목에 대해서 결산조정금액만큼 차이가 발생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결산조정전표를 확인한 결과 '미수금 조정'이라는 사유로 미수기타이자수익 금액 1,967,420원을 모두 차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6 ■ 2011회계연도 결산조정전표

분개장 엑셀 닫기

회계일자: 2011-12-31 소관 전표번호

회계: 11000 일반회계 전표유형: 결산조정분개전표

거래코드: 결산조정전표입력 거래일자: 2011-12-31 작성일자: 2012-02-21

작성자: 일선관서 행정관서

전표총금액: 1,967,420 단위업무 발생업무구분: 회계결산

예산과목: 전기여부: 전기완료

분개내역 (단위:원)

행번호	계정과목	적요	결의내용	차변금액	대변금액	분
1	11040400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1,967,420	0	
2	11040804 미수기타이자수익			0	1,967,420	

검토결과 85,450원의 차이가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과 미수기타이자수익에서 부호가 다르게 발생하였던 사유는 2011회계연도 결산조정전표를 통하여 1,967,420원 미수기타이자수익을 차감하였고, 2012회계연도 결산조정전표를 통하여 1,881,970원을 가산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OO주무관은 차이금액 85,450원이 2012회계연도에 신규 발생한 미수기타이자수익임을 확인하고 2013년 말 결산조정분개를 통해 미수기타이자수익 85,450원을 가산하고,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85,450원을 차감하여 채권·재무장부간 차이 금액을 '0'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물품대장과 합계잔액시산표>

물품은 소프트웨어를 제외하면 모두 일반유형자산으로 분류되며, 품종에 따른 합계잔액시산표 대응은 다음과 같다. 단,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 단가가 50만원 미만인 물품은 물품관리운영보고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물품은 소액자산으로 볼 수 있다. 소액자산 또는 소모성 물품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표 1-3 ■ 물품대장과 합계잔액시산표

물품대장		합계잔액시산표	
대장종류	코드명	회계과목(Lv.3)	관리과목(Lv.4)
비소모품대장	전기통신기기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전기통신기기
	사무용기기		사무용기기
	사무용집기		사무용집기
	운반건설기계및차량		운반건설기계및차량
리스대장*1	기계요소및공작기계	기계장치	이동성기계장치
	산업기계		
	의료및화학분석기기		
	물리실험및측정기기		
	인쇄사진및사상각기기		
	기타잡기기	기타일반유형자산	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
	소프트웨어대장*2	외부구입소프트웨어	-

\*1: 금융리스 물품만 해당

\*2: 일반유형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분류



**참고**

**채권현재액보고서와 합계잔액시산표**

채권현재액보고서는 국유재산, 물품과 달리 대장으로 관리되지 않고, 기말 시점에 현재액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 물품과 같이 대장과 합계잔액시산표를 1:1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채권현재액보고서의 유형과 합계잔액시산표 상 채권과 관련된 계정과목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 ■ 채권현재액보고서와 합계잔액시산표

채권현재액보고서		합계잔액시산표	
관	항	회계과목(Lv.3)	관리과목(Lv.4)
사회보장기여금	사회보장기여금		(장기)미수국세
재산수입	관유물대여료		(장기)미수부담금수익
	정부출자수입		(장기)미수제재금수익
	이자수입		(장기)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장기)미수사회보험수익
경상이전수입	변상금및위약금		(장기)미수연금수익
	가산금		(장기)미수보험수익
	기타경상이전수입		(장기)미수보증수익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면허료및수수료		(장기)미수이자수익
	입학금및수업료		(장기)미수기타수익
	항공항만및용수수입		기타의미수금
	교도소수입	단기대여금 / 장기대여금	단(장)기전대차관대여금
	병원수입		정부내단(장)기예탁금
	잡수입		단(장)기융자금
관유물매각대	고정자산매각대	기타유동자산	지급보증금 (Lv.5:임차보증금_채권)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기타비유동자산	장기지급보증금 (Lv.5:장기임차보증금_채권)
	재고재산매각대및유동자산		
용자회수금	용자원금회수	각 계정과목 별로 아래 계정과목이 추가로 존재 - 미수채권: 대손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 대여금: 대손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용자보조원가충당금	
	전대차관원금회수		
예금및예탁금	예금및예탁금		
기타수입	기타수입		
내국세 등	<생략>		

채권현재액보고서와 합계잔액시산표를 비교할 때 어려운 점은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①채권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②채권은 예산과목(관, 항, 목)과 재무계정과목이 1:1로 대응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③채권현재액 보고서의 작성기준과 재무제표 작성기준이 차이 나는 것 또한 비교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우선 합계잔액시산표 상 채권계정과목 생성로직은 크게 다음과 같이 수익 계정과목에 대응, 업무에 대응, 그리고 수입업무가 아닌 지출업무에 대응 되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표 1-5 | 합계잔액시산표상 채권계정과목 생성로직

합계잔액시산표		생성로직	분개예시
회계과목(Lv.3)	관리과목(Lv.4)		
미수채권 / 장기미수채권	(장기)미수국세	징수요청 시 세입 및 세세부항목 선택에 따라 대응	(차) 미수이자수익 / (대) 이자수익
	(장기)미수부담금수익		
	(장기)미수제재금수익		
	(장기)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장기)미수사회보험수익		
	(장기)미수연금수익		
	(장기)미수보험수익		
	(장기)미수보증수익		
	(장기)미수이자수익		
	(장기)미수기타수익		
미수채권	기타의미수금	자산매각 등 업무에 대응	(차) 기타의미수금 / (대) 선수금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단(장)기전대차관대여금	수입이 아닌 지출에 대응	(차) 지급보증금 / (대) 국고수입
	정부내단(장)기예탁금		
	단(장)기융자금		
기타유동자산	지급보증금 (Lv.5:임차보증금_채권)		
기타비유동자산	장기지급보증금 (Lv.5:장기임차보증금_채권)		

또한 채권현재액보고서 작성기준과 재무제표 작성기준이 다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1-6 ■ 작성기준이 상이한 주요사항

구 분	채권현재액	재무제표	비 고
대손충당금	차감하지 않고 현재액보고서 각주에 기재	차감하여 순액표시	채권현재액보고서는 총액 관리
현재가치할인차금			
용자보조원가충당금			
국가기관 상호간의 채권	미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회계실체: 인식</li> <li>• 중앙관서, 국가통합: 내부거래 제거</li> </ul>	국가기관 상호간의 채권은 채권 현재액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가 통합단위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나, 각 회계실체 단위에서는 차이가 발생

**<TIP> 채권 검토 방법**



채권현재액보고서의 금액과 합계잔액시산표 상 금액은 비교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dBrain 시스템은 채권현재액보고서와 합계잔액시산표 상 금액을 비교를 할 수 있는 조회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시스템 상 조회기능과 상기 서술한 생성로직, 인식기준 차이 등을 참고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올바른 차이인지, 오류에 따른 차이인지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미수채권의 경우에는 국유재산, 물품과 마찬가지로 결산조정전표 등록에 따른 차이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2 건설중인자산 및 선급금

OO청 XX특별회계에서 토지의 취득 시 발생한 이주단지조성비 및 관련 수수료 금액을 건설중인토지로 기재하고 있었으나, 취득 완료 시 토지로 대체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중인토지가 과대 계상되고, 토지가 과소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 (1) 오류의 유형

상기 사례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부대비를 배부하지 않아 생긴 오류로 올바른 업무처리는 다음과 같다.

#### ○ 부대비 설정 및 배부의 올바른 업무처리

구분	업 무	차 변	대 변
부대비 설정	지 출	건설중인토지	국고수입
부대비 배부	조달(검수)	토 지	건설중인토지

부대비 설정은 지출업무에서, 부대비 배부는 조달업무 중 검수 시점에 수행하게 되므로, 각 업무담당자가 서로 달라 부대비 배부 절차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존재하는 건설중인자산 중 부대비 배부가 누락된 것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아래 <표 1-7>과 같이 건설중인자산 중 조달업무(부대공사 등)가 아닌 지출업무를 통한 부대비 설정 가능성이 높은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부대비 배부 누락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표 1-7 | 건설중인자산 중 지출 업무를 통한 부대비 설정 가능성이 높은 계정과목

계정과목		사 유
관리과목(Lv.4)	세부관리과목(Lv. 5)	
건설중인토지	-	토지는 공사기간 없이 일시에 취득하는 경우가 다수
건설중인기계장치	건설중인이동성기계장치	국유재산이 아닌 물품과 대응되는 계정과목으로 하나의 회계연도에 취득이 완료되는 것이 일반적
건설중인집기·비품·차량운반구	건설중인전기통신기기	
	건설중인사무용기기	
	건설중인사무용집기	
건설중인기타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운반건설기계및차량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	건설중인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	지출업무의 부대비 설정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계정과목

특히 건설중인가타의유형자산 계정과목은 지출업무의 부대비 설정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계정과목(단, 국세청에서 나타나는 물납자산 제외)이므로 부대비 배부 누락에 따라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2) 오류에 따른 영향

부대비를 설정하였으나, 이를 배부하지 않은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오류가 연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부대비와 관련된 재무제표 왜곡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대비 배부 누락: 토지 과소 계상, 건설중인토지 과대 계상

구분	업 무	차 변	대 변
부대비 설정	지 출	건설중인토지	국고수입
부대비 배부 누락	조달(검수)	-	-

부대비 배부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건설중인토지가 토지로 대체되지 않아 토지는 과소 계상, 건설중인토지는 과대 계상되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 기타증감\_기타(증) 처리: 전기오류수정이익 및 건설중인토지 과대 계상

구분	업 무	차 변	대 변
부대비 설정	지 출	건설중인토지	국고수입
기타증감_기타(증)	국유재산(검수 이후)	토 지	전기오류수정이익

국유재산담당자가 부대비를 배부하지 않고 기타증감 처리를 통하여 토지의 가액을 올바르게 수정하는 경우에도 건설중인토지와 전기오류수정이익이 과대 계상 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 (3) 오류 정정 방법

결산담당자는 건설중인자산 중 취득이 완료된 건을 발견한 경우, 이를 각 국유재산 및 물품담당자에게 전달하여 부대비를 배부토록 하여야 한다. 부대비 배부는 ①검수업무 취소 후 재검수 시 부대비 배부, ②'기타증감\_부대비배부' 메뉴를 통한 사후적 부대비 배부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림 1-7 | 기타증감처리(부대비 배부)

**<TIP> 결산조정분개를 통한 오류수정의 문제점**

국유재산대장 기마감, 업무담당자 파악 불가 등의 사유로 부대비 배부 업무를 통하지 않고 결산담당자가 결산조정전표로 '(차) 토지 / (대) 건설중인토지' 또는 '(차) 전기오류수정이익 / (대) 건설중인토지' 등의 분개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당장 당기 회계연도 재무결산 상 금액 오류를 조정하는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전자((차) 토지 / (대) 건설중인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 보고서 상 토지금액과 재무결산 상 토지 금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후자((차) 전기오류수정이익 / (대) 건설중인토지)의 경우에는 재무결산 상으로는 건설중인토지가 모두 제거되었지만 조달의 내역은 제거되지 않아, 조달과 재무장부의 건설중인자산 내역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유재산대장 마감을 풀고 업무담당자가 부대비 배부 업무를 통해 해당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결산담당자가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해 오류를 수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 참고

# 건설증인자산 적정성 검토 방법

개별법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유재산, 물품 및 채권 등과 관련된 계정과목과는 달리 건설증인자산은 개별법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결산담당자는 건설증인자산의 실재성 및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결산담당자는 일차적으로 조달의 건설증인자산 내역과 재무장부의 내역이 일치하도록 조치하고, 이 후에 조달의 내역을 바탕으로 건설증인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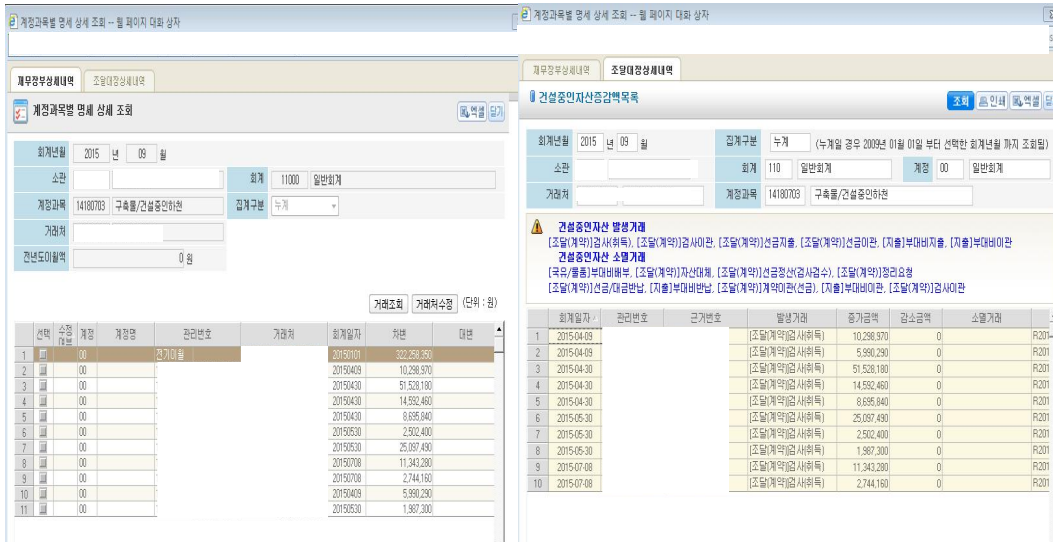
재무장부 상 건설증인자산 금액은 조달 업무에서 생성된 정보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오류로 볼 수 있다. dBrain시스템에서는 조달메뉴의 건설증인자산(부대비미배부, 검사미정산, 선금미청산)과 재무장부의 건설증인자산의 일치 여부를 거래처별로 비교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건설증인자산의 실재성 및 금액의 적정성을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1-8 | 재무장부\_회계기금\_원장조회\_계정과목별명세\_건설증인자산

거래처별		계정과목		거래처		조달현황		결산현황	
코드	명	코드	명	잔액	잔액	잔액	잔액	잔액	잔액
1	13220500	건설증인고정성기계장차/일반		0		0		2,140,940	
2	14180703	구축물/건설증인하천		134,780,370		0		457,038,720	
3	13220200	건설증인건물/일반유형자산		4,196,729,400		0		4,376,869,400	
4	13220300	건설증인구축물/일반유형자산		0		0		29,600,000	
5	13220200	건설증인건물/일반유형자산		496,000,000		0		261,000,000	
6	13220200	건설증인건물/일반유형자산		280,000,000		0		387,748,000	
7	14180701	토지/건설증인하천		0		0		289,250,330	
8	14180701	토지/건설증인하천		0		0		12,348,000	
9	14180703	구축물/건설증인하천		0		0		448,843,320	
10	13220500	건설증인고정성기계장차/일반		0		0		640,000	
11	13220300	건설증인구축물/일반유형자산		0		0		187,409,360	
12	14180703	구축물/건설증인하천		0		0		388,520,000	
13	14180703	구축물/건설증인하천		0		0		50,860,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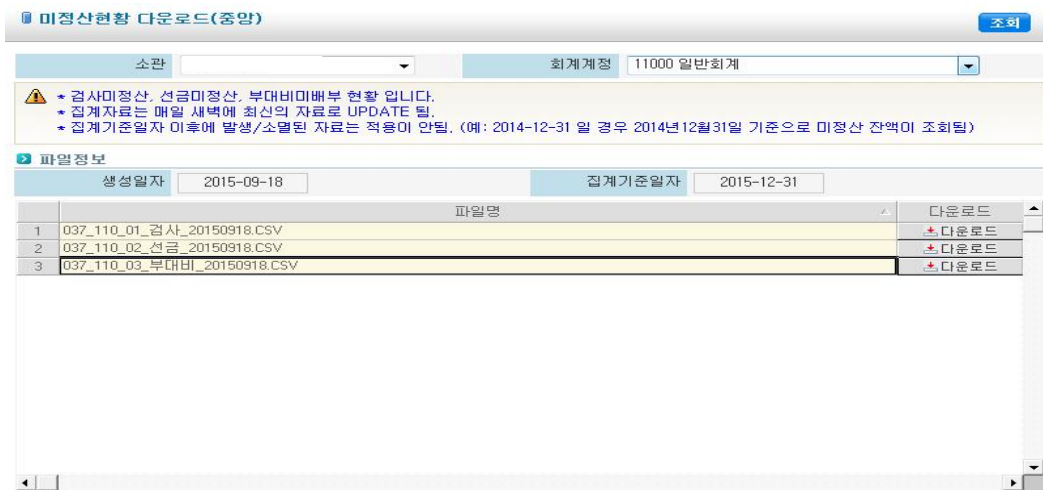
상기 메뉴에서 건설증인자산의 조달 및 재무장부의 거래처별 불일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상세내역'을 선택하면 재무장부와 조달대장의 거래처별 상세내역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9 ■ 재무장부 상세내역 및 조달대장 상세내역



또한 조달메뉴에 일괄 조회기능[조달>진행관리>건설중인자산관리>미정산현황 다운로드]을 신설하여 재무결산담당자가 한꺼번에 검사미정산, 선금미청산, 부대비 미배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10 ■ 조달\_진행관리\_건설중인자산관리\_미정산현황다운로드



조달의 내역과 재무장부의 내역이 서로 일치되게 조치하였다면, 결산담당자는 건설중인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중인자산은 자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취득이 모두 완료 되었다면 본 자산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따라서 취득과정이 모두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잔액시산표 상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오류로 판단할 수 있다.

#### (4) 관련 오류사례

##### ① Case I : 부대비 미배부(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

XX부처 결산담당자는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검토 절차 없이 업무에서 발생한 금액을 그대로 믿고 합계잔액시산표를 마감하였다.

부대비 설정은 지출담당자가 지출요청서 작성 시 발생유형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며, 선택하는 화면과 선택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11 | 발생유형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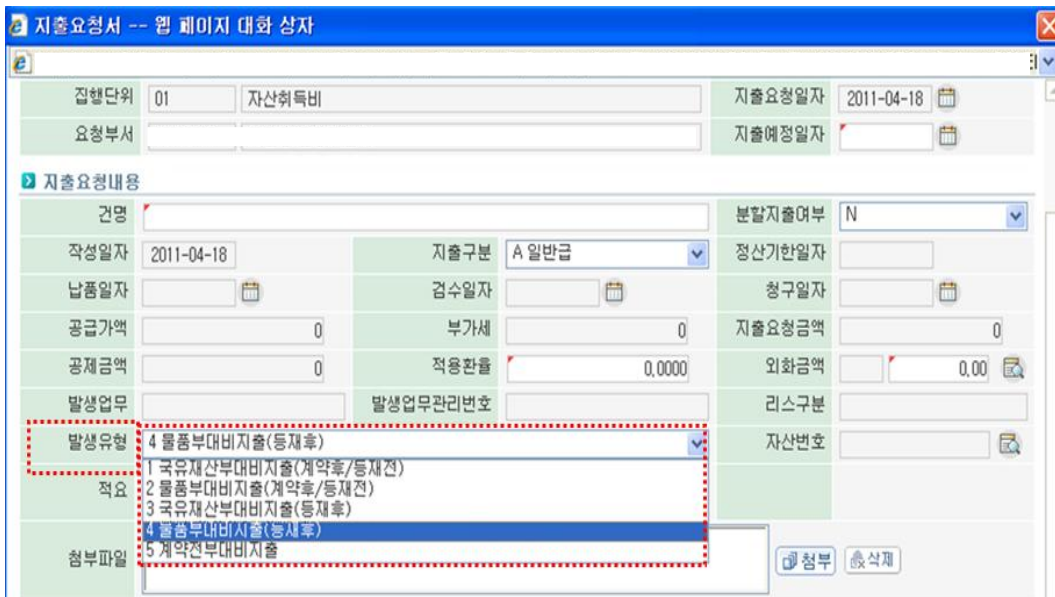


표 1-8 | 발생유형 구분

발생유형	구분
0. 일반지출(국유재산, 물품 미 관련)	순수한 일반지출
1. 국유재산 부대비 지출(계약 후/등재 전)	부대비(계약번호 선택, 별도 배부처리)
2. 물품 부대비 지출(계약 후/등재 전)	
3. 국유재산 부대비 지출(등재 후)	부대비(대장번호 선택 시 대장 자동반영)
4. 물품 부대비 지출(등재 후)	(요청번호, 검수번호 선택 시 별도 배부처리)
5. 계약 전 부대비 지출	부대비(별도 배부처리)

발생유형 1~4번의 경우에는 각각 계약번호, 요청번호, 검수번호 및 대장번호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각각의 정보에 따라 계정과목이 생성되며 (ex. 계약번호가 건물 관련된 경우 건설중인건물) 해당 자산 검수 시 부대비 조회를 통하여 국유재산 및 물품담당자가 부대비 존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발생유형 5번의 경우에는 계약정보 등 연계 정보를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계정과목은 '건설중인가타의유형자산'으로 발생되며, 해당 자산 검수 시 부대비 조회를 통해 국유재산 및 물품담당자가 부대비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건설중인가타의유형자산'은 건설중인 자산 중 부대비 배부가 누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 건명으로 조회하는 방법이 시스템 상 구현되어 있으나 건명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에는 조회가 쉽지 않다.

결산담당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건설중인가타의유형자산' 계정과목의 경우 오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부대비 배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후 업무담당자가 해당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018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업무담당자용)] '제1장 물품의 취득\_3. 부대비(조달수수료 등) 미배부 오류' 참조

## ② Case II: 검사 미정산(건설중인자산)

OO부 일반회계에서 건물 완공 시점에 건설중인건물을 대체하지 아니하고 기타증감 업무를 통하여 처리함에 따라 건설중인건물이 과대 계상되었다.

상기 사례는 검사 업무를 통하여 생긴 건설중인건물에 대하여 검수 업무를 누락하여 생긴 오류로 자산의 취득절차(요청→계약→검사→(지출)→검수→지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계처리하는 검사, 지출 및 검수시점에 각각 나타나며, 생성되는 분개는 다음과 같다.

○ 자산 취득시 올바른 업무절차(1차 검사: 1억 원, 2차 검사: 2억 원)

절차	담당자	차변	금액	대변	금액
검사*	사업담당자	건설중인건물	1억 원	미지급금	1억 원
지출*	지출관	미지급금	1억 원	국고수입	1억 원
검사	사업담당자	건설중인건물	2억 원	미지급금	2억 원
<b>검수</b>	<b>재산관리관</b>	<b>건 물</b>	<b>3억 원</b>	<b>건설중인건물</b>	<b>3억 원</b>
지출(조달)	지출관	미지급금	2억 원	국고수입	2억 원

\* 장기공사(건설공사 등)가 아니어서 지출이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생략

국유재산 관련 사업담당자가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재산관리관이 검수 절차(검사 정산)를 수행하지 않고, 기타증감 업무를 통하여 건물을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하는 경우 '건설중인건물'이 '건물'로 대체되지 않아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 기타증감 처리에 따른 검사 미정산

절차	담당자	차변	금액	대변	금액
검사	사업담당자	건설중인건물	1억 원	미지급금	1억 원
지출	지출관	미지급금	1억 원	국고수입	1억 원
검사	사업담당자	건설중인건물	2억 원	미지급금	2억 원
기타증감	재산관리관	건 물	3억 원	전기오류수정이익	3억 원
지출(조달)	지출관	미지급금	2억 원	국고수입	2억 원

국유재산대장 기마감, 업무담당자 파악 불가 등의 사유로 검수 업무를 통하지 않고 결산담당자가 결산조정전표로 '(차) 건물 / (대) 건설중인건물' 또는 '(차) 전기오류수정이익 / (대) 건설중인건물' 등의 분개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당장 당기 회계연도 재무결산 상 금액 오류를 조정하는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전자((차) 건물 / (대) 건설중인건물)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보고서 상 건물금액과 재무결산 상 건물 금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후자((차) 전기오류수정이익 / (대) 건설중인건물)의 경우에는 재무결산 상으로는 건설중인건물이 모두 제거되었지만 조달의 내역은 제거되지 않아, 조달과 재무장부의 건설중인자산 내역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업무담당자가 '기타증감'을 취소하고 검수를 통해 해당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018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업무담당자용)] '제2장 국유재산의 취득\_5. 검사 미정산' 참조

③ Case III: 선금 미청산(건설중인자산 & 선급금)

OO청 △△특별회계에서 간선임도 신설사업과 관련하여 선지급한 지출액은 검사 시 관련 건설중인자산을 제거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하여 기타의미 지급금이 과대 계상되었다.

상기 사례는 건설중인자산이 과대계상 되는 사례 중 하나로 미리 지급한 선금을 청산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류 유형이다. 공사계약 등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검사(준공 또는 기성) 시점에 선금청산금액을 입력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거나 오(誤)입력 하는 경우 해당 오류가 발생한다.

- 올바른 업무절차(선금 2억원 지급, 총 계약금액 10억원)

절차	차 변	금액	대 변	금액
선금 지급	건설중인자산	2억원	국고수입	2억원
검 사	건설중인자산	10억원	미지급금	8억원
			건설중인자산	2억원
검 수	자 산	10억원	건설중인자산	10억원
대금 지출	미지급금	8억원	국고수입	8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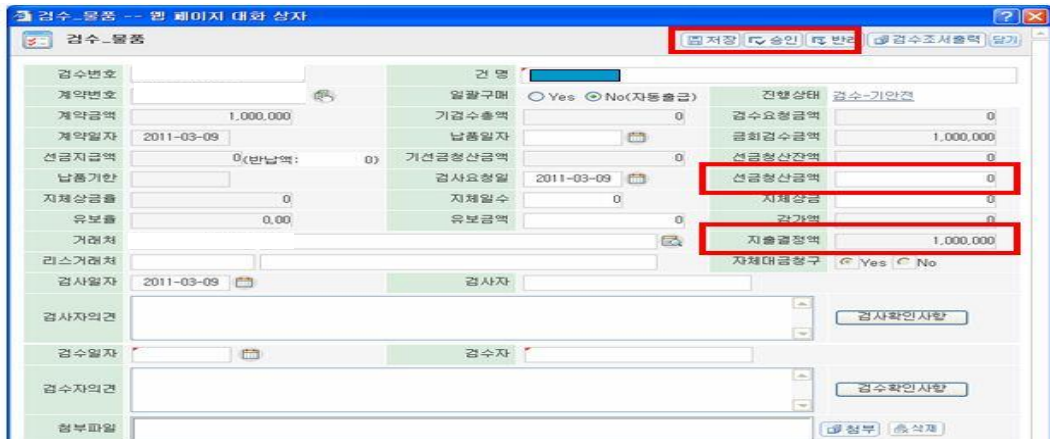
- 잘못된 업무절차(선금청산금액 미입력으로 선금 미청산)

절차	차 변	금액	대 변	금액
선금 지급	건설중인자산	2억원	국고수입	2억원
검 사	건설중인자산	10억원	미지급금	10억원
검 수	자 산	10억원	건설중인자산	10억원
대금 지출*	미지급금	8억원	국고수입	8억원

\* 예산 배정액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출담당자가 지출금액을 수정하여 지출

상기 회계처리와 같이 선금청산금액을 미입력하고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선금지급 시 인식하였던 건설중인자산 2억원이 차감되는 분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중인자산이 과대 계상되며, 검사시점에 함께 인식한 미지급금 역시 선금 지급금액 만큼 크게 발생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지급금도 과대 계상된다.

그림 1-12 | 검수\_선금청산금액 입력



국유재산대장 기마감, 업무담당자 파악 불가 등의 사유로 선금청산금액 정정 업무를 통하지 않고 결산담당자가 결산조정전표로 '(차) 미지급금 / (대) 건설중인자산'의 분개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건설중인자산과 미지급금이 모두 제거되어 당장 당기 회계연도 재무 결산 상 금액 오류를 조정하는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dBrain 상 조달과 재무장부의 건설중인자산 내역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유재산대장 마감을 풀고 업무담당자가 '선금청산금액정정\*'을 통해 해당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018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업무담당자용)] '제2장 국유재산의 취득\_7. 선금지급액 미청산' 참조

선금으로 지급하는 용역의 종류에 따라 선금지급 시 발생하는 계정과목이 건설중인 자산과 선금금으로 구분된다. 자산(건물, 공작물 등) 취득과 관련된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중인자산으로, 비용으로 처리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선금금으로 계정과목이 발생하게 된다.

#### ④ Case IV: 자본형성적 경비(선금금)

XX부처 결산담당자는 산업폐수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하여 민간에 사업을 맡기고자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예산으로 1억원을 지출하였다. 해당 시설이 완공되었을 경우 확인 후 자산을 등재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다.

지출 예산 중에는 자본형성을 위해 민간, 자치단체 및 해외 등에 위탁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예산(이하 '자본형성적 경비')이 존재한다. 자본형성적 경비는 그 성격상 예산을 집행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자산의 취득이 이루어지게 된다.

표 1-9 | 자본형성적 경비 예산

예산목	성 격
법정민간대행사업비 (320-08)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비
자치단체대행사업비 (330-04)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비
해외자본이전 (340-03)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보조금 등

표 1-10 ■ 자본형성적 경비 세부·세세부항목

예산목	세부·세세부항목	계정과목
법정민간대행사업비 (320-08)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비(자산 취득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선급금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비(자산 취득이 아닌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민간대행사업비
자치단체대행사업비 (330-04)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비(자산 취득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선급금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비(자산 취득이 아닌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자치단체대행사업비
해외자본이전 (340-03)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해외취득자산의 소유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선급금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해외취득자산의 소유가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외보조비
	해외출자금	출자금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할 경우 현금의 상대계정과목으로 일반 비용이 아닌 '선급금'이 계상된다. 해당 지출은 자본형성, 즉 자산의 취득을 전제한 지출이기 때문에 자산이 취득되어 대장에 계상되기 전까지 '선급금'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정민간대행사업비 등을 지출한 담당자는 해당 지출에 의하여 건설되는 재산의 취득 완료시점에 관련 재산을 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유재산관리관이 자본형성적 경비로 취득한 자산을 대장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기타증감처리 메뉴에서 「기타증감\_외부에의한기반시설취득」 사유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만약 재산관리관이 「기타증감\_외부에의한기반시설취득」 이외의 사유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ex.기타(증), 누락재산등록)에는 지출 시 계상된 선급금이 사라지지 않아 자산의 과대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3 기타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적정성

#### 가. 국고예금

결산담당자 나결산 주무관은 관서운영경비의 경우 연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모두 반납을 해야 하므로, 관서운영경비에 대응하는 재무계정과목인 국고예금 잔액 326원에 대하여 모두 오류라 판단하여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하여 잔액을 0원으로 조정하였다.

##### (1) 오류의 유형

세출은 크게 일반지출과 관서운영경비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지출의 경우 지출건마다 원인행위를 거치는 과정을 통하여 집행이 되지만, 관서운영경비는 최초 교부 시에만 원인행위를 거치고 지급결의를 통하여 집행된다.

관서운영경비는 사전에 교부받은 일정 금액 안에서 지출 건마다 원인행위를 거치지 않고 지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절차를 간소화시킨 제도이다. 관서운영경비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부구매카드를 통해서 지출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서운영경비는 타 지출과 구분하기 위해서 ‘국고예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 회계기간이 종료되면 재정상태표 상 국고예금 금액은 ‘0’이 된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 국고예금 잔액, 즉 관서운영경비 잔액이 남아있을 수 있으며 이를 간과하고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하여 국고예금 금액을 ‘0원’으로 조정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 ① 정부구매카드 결제일이 출납정리기한을 넘어서는 경우

관서운영경비는 통상 정부구매카드를 통하여 지출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1개월분 카드대금이 차월에 빠져나가게 되며, 이에 따라 12월의 카드대금은 차기 회계연도 1월에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납정리기한을 두어서 1월 20일 이전에 지출되는 정부구매카드 결제대금은 차기 회계연도가 아닌 당기 회계연도의 지출로 본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정부구매카드는 결제일을 20일 이전으로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20일이 휴일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21일 이후에 카드대금이 지출되는 경우에는 출납정리기한이 지나갔기 때문에 당기 회계연도의 지출이 아닌 차기 회계연도의 지출로 처리되며, 이에 따라 재정상태표 상 미지급금과 함께 국고예금 잔액이 존재하게 된다.

- 출납정리기한 이전 지출 시 당기 회계처리(12월 결제대금 100,000원)

구분	차변	금액	대변	금액
관서운영경비 교부	국고예금	100,000	국고수입	100,000
카드결제	제 비용	100,000	미지급금	100,000
지출(1월19일)	미지급금	100,000	국고예금	100,000

- 출납정리기한 이후 지출 시 당기 회계처리(12월 결제대금 100,000원)

구분	차변	금액	대변	금액
관서운영경비 교부	국고예금	100,000	국고수입	100,000
카드결제	제 비용	100,000	미지급금	100,000

- 출납정리기한 이후 지출 시 차기 회계처리(12월 결제대금 100,000원)

구분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지출(1월21일)	미지급금	100,000	국고예금	100,000

## ② 국고금관리법 제47조16)에 따른 단수차액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의 경우 원단위는 절사하고 거래가 이루어진다. 관서운영경비는 통상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게 되는데 이에 이자 등이 붙는 경우에는 원단위 금액이 존재하며 원단위 금액은 국고에 반납 할 수 없어 통장에 남게 된다.

따라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별로 원단위 금액은 존재할 수 있으며, 중앙관서에 관서운영경비 출납 단위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 오류 사례처럼 백원, 천원 단위의 국고예금 잔액이 나타날 수 있다.

<sup>16)</sup>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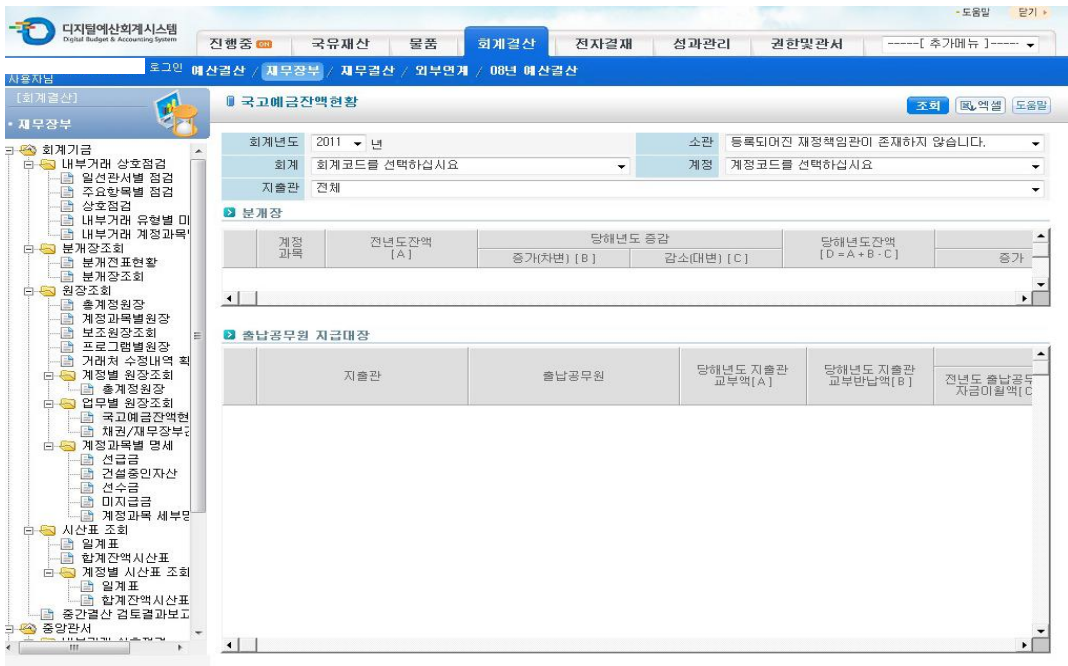
## (2) 오류에 따른 영향

국고예금계좌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국고예금 금액을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하여 없애는 경우 국고예금 계정과목 금액에 오류가 발생하며, 차기 회계연도에 국고예금 잔액이 부(-)의 금액으로 나타날 여지도 존재한다. 실제로 중앙관서에 존재하고 있는 현금 잔액을 결산조정전표를 통하여 수정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 (3) 점검 방법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많은 중앙관서의 경우 국고예금 잔액이 위에서 설명한 올바른 금액인지, 혹은 오류로 인한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dBrain 시스템에서는 각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별로 국고예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13 | 업무별원장조회\_국고예금잔액현황



상기 화면을 통해서 각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별 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10원 미만인 경우에는 오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10원 이상인 경우에는 오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나. 금융자산의 분류(현금및현금성자산, 파생상품자산)

결산담당자 나결산 주무관은 취득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정기에금을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을 장기투자증권으로 분류하였다.

### (1) 오류의 유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보통예금, 당좌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초단기 수익증권(MMF를 포함), 취득 당시의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취득 당시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 환매채(3개월 이내의 환매조건) 등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으면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한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자산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은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 다만, 기초변수가 물리적 변수(예: 온도, 강우량 등)인 경우로서 해당 금융상품 등이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되며 비금융변수인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가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해야 한다.
- 미래에 결제된다.

나결산 주무관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정기에금을 다른 일반적인 정기에금과는 다르게 단기금융상품이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결산업무를 진행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이 과소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업무 유형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자산이라 하더라도 세부정보(취득일, 만기일)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를 통해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각각의 경우에 맞게 올바른 금융자산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 (2) 오류에 따른 영향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단기적인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척도이기 때문에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다른 항목으로 분류할 경우 단기 지급능력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장기투자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그 자체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정가액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일 경우 관련 평가손익을 재정운영표에 인식하여야 하는데, 다른 지분증권과 동일하게 관련 평가손익을 순자산변동표에 인식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 올바른 회계처리(공정가액위험회피 대상 파생상품 평가이익 1,000)

차 변	금액	대 변	금액
파생상품자산	1,000	파생상품평가이익 (재정운영표)	1,000

- 잘못된 회계처리(장기투자증권 평가이익 1,000)

차 변	금액	대 변	금액
장기투자증권	1,000	투자증권평가이익 (순자산변동표)	1,000

참고로 파생상품자산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의 유형별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재무제표	비고
공정가액 위험회피		재정운영표	당기손익
현금흐름 위험회피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순자산변동표	순자산변동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	재정운영표	당기손익

### (3) 점검방법

결산담당자는 각 금융상품별로 관리정보항목(취득일, 만기일) 점검을 통해 금융상품의 분류가 잘못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파생상품 분류에 대해서는 과거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참고하여 부처 내에 관련 상품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고 분류 오류 가능성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

### (4)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단기금융상품 계정 분류 오류(2015회계연도)

OO부 XX기금에서 보유 중인 정기예금 중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하이고 거래비용이 없으며,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정기예금은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는데도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여 단기금융상품(유동자산)이 331억원 과대 계상되었고, 현금및현금성자산(유동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I 143p 중>

- 현금및현금성자산 계정 분류 오류(2015회계연도)

OO부 XX기금에서 2013년도에 한진해운(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면서 신주인수권은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데도 지분증권으로 회계처리하고 매년 결산 시 공정가액 변동을 투자증권평가손익으로 인식함으로써 지분증권(투자자산)과 투자증권평가이익(조정항목)이 각각 24억 1,348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파생상품자산(투자자산)이 24억 1,348만원 과소 계상되었으며 파생상품평가손실(비배분비용)과 전기오류수정이익(비배분수익)이 각각 65억 9,539만원, 90억 887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I 153p 중>

- 단기금융상품 계정분류 오류(2016회계연도)

OO부 XX기금에서 보유 중인 금융상품 중 수시입출금 특정금전신탁(Money Market Trust)은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여 기타국고금(유동자산)이 33억 6,752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기타의단기금융상품(유동자산)과 미수금융상품이자수익(유동자산)이 각각 33억 6,725만원, 27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508p 중>

## 다. 임차보증금

결산담당자 나결산 주무관은 임차보증금 계정과목 검토 시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차보증금이 임차보증금\_국유 계정과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동일한 임차보증금이 국유재산대장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오류가 아니라 생각하고 추가 조치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 (1) 오류의 유형

임차보증금은 그 성격에 따라 재정상태표 상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계정과목이 생성된다.

- 임차보증금\_국유: 전세권이 설정되어 국유재산대장으로 관리하는 임차보증금
- 임차보증금\_채권: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아 채권현재액보고서로 관리하는 임차보증금
- 임차보증금\_일반: 공공기관관리기금의 임차보증금으로 국유재산대장 또는 채권현재액보고서에 보고되지 않는 임차보증금

상기 오류사례는 국유재산대장으로 보고되는 임차보증금이 '임차보증금\_국유'로 재정상태표에 계상된 것이므로 재무결산에는 오류가 없다고 잘못 판단할 수 있으나,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임차보증금이 국유재산대장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오류이므로 국유재산대장 및 재무결산 상 오류인 것이다.

### (2) 오류에 따른 영향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차보증금 금액이 '임차보증금\_국유'로 표시되므로 재정상태표가 왜곡된다.

이러한 오류는 업무 수행시 '사용/임차계약요청'(국유재산으로 등재되지 않고, 재정상태표에 '임차보증금\_채권'으로 인식됨)이 아닌 '무체재산취득요청'으로 처리하여 발생한 것으로, [조달>진행관리>검수명세변경>임차/전세권 변경]메뉴를 통해 '임차보증금\_채권'으로 수정가능하다.

- \* [2018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업무담당자용)] '제2장 국유재산의 취득\_1. 계약 종류의 선택 오류\_(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참조

### (3) 점검 방법

임차보증금 금액 및 실재성 검토 시 전세권 설정 여부를 추가로 파악하여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세권 설정 여부에 따라 계정과목이 변동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합계잔액시산표 상 임차보증금을 조회하면 연간 증감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증감 시 발생한 회계처리 적정성, 임차계약서 등과 비교를 통한 실재성 및 정보관리항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재무장부’ 메뉴 중 ‘보조원장조회’ 화면에서는 계정과목별로 세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의 경우 각 거래처별(임차계약 주체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4 | 보조원장조회(장기임차보증금\_국유)

**보조원장조회** 조회 역설 닫기

회계년월: 2014 년 09 월 소관: \_\_\_\_\_

회계: 11000 일반회계

계정과목: 16040302 장기임차보증금-국유 집계구분: 누계

상계기준: 1값: \_\_\_\_\_ 2값: \_\_\_\_\_ 3값: \_\_\_\_\_

- ◀ <누계> 조회 시 자료 내역이 많아 조회가 안되는 경우 <당월>을 선택하여 월별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 항목을 더블클릭 하거나 항목 선택 후 <전표조회> 버튼을 눌러 관련 전표내역을 조회 가능합니다.
- ◀ 상계기준 : 주요 정보관리항목별로 발생/소멸에 대한 잔액관리를 위해 구성된 계정과목별 기준

월별내역 (단위 : 원)

계정	SEQ	상계기준			전기잔액	회계/기금 결산조정전		
		상계기준1				차변	대변	조정전 잔액
		[코드명]	값	값명				
233 00					15,000,000	0	0	15,000,000
234 00					25,000,000	0	0	25,000,000
235 00					140,000,000	0	0	140,000,000
236 00					40,000,000	0	0	40,000,000
237 00					-90,000,000	0	0	-90,000,000
238 00					0	95,000,000	0	95,000,000
239 00					0	45,000,000	0	45,000,000
240 00					0	80,000,000	0	80,000,000
241 00					0	80,000,000	0	80,000,000
242 00					0	10,000,000	0	10,000,000
243 00					0	12,000,000	0	12,000,000
244 00					0	0	50,085,554	-50,085,554
245 00					0	100,000,000	0	100,000,000
246 00					0	65,000,000	30,000,000	35,000,000
247 00					0	3,800,000	0	3,800,000

집계구분을 ‘누계’로 선택하여 조회하는 경우 전기이월잔액이 함께 조회가 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상기 그림의 237행, 244행과 같이 거래처별 잔액이 부(-)의 금액인 경우는 올바른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않아서 생긴 오류이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각 거래처별 금액과 실제 임차계약 주체별 금액이 일치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그림 1-15 ■ 전표조회(장기임차보증금\_국유)

회계일자	2014-04-01	소관		전표번호	
회계	11000 일반회계	거래일자	2014-04-01	전표유형	일반전표
거래코드	취득	작성일자	2014-04-01	행정관서	
작성자		발생업무구분	조달관리		
전표총금액	45,000,000	단위업무	검수_조달		
예산과목	440-00 무형자산/무형자산				
전기여부	전기완료				

■ 분개내역 (단위:원)

행번호	행번호	계정과목	적요	결의내용	차변금액	대변금액	분
1	1	16040302 장기임차보증금-국유			45,000,000	0	일반 · 거
2	2	11090600 선급금			0	4,500,000	일반 · 거
3	3	21110205 기타의미지급금			0	40,500,000	일반 · 거

■ 관리항목내역

일련번호	관리항목명	관리항목값	참조값
1	거래처코드		
2	거래처분류코드		
3	자산번호		
4	자산명		
5	소재지	기타	
6	임차일	20140401	
7	만기일	기타	

보조원장 조회 화면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더블클릭하면 상세 전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기 <그림 1-15>와 같이 정보관리항목 중 만기일이 '기타'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 회계연도말 유동성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담당자를 통해 만기일을 수정하여야 한다.

## 라. 선수금

업무담당자가 국고납입하지 않고 제각되는 전세권을 처리하기 위하여 매각요청서 작성 시 '기수납여부' 를 체크함에 따라 특정 거래처에 대한 부(-)의선수금이 발생하였으나, 결산담당자 나결산 주무관은 선수금 거래처별 잔액 검토를 하지 않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 (1) 오류의 유형

선수금은 dBrain 시스템 상 자산의 매각을 위한 징수결의 시 나타나는 계정과목으로 정상적인 자산매각절차<sup>17)</sup>에 따른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다.

- 자산매각절차별 분개(토지 장부가액: 100,000, 매각액: 120,000)

구분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징수결의	미수금	120,000	선수금	120,000
수납정산	국고이전지출	120,000	미수금	120,000
인계	선수금	120,000	토지	100,000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20,000

자산매각절차의 시작인 매각요청단계에서 매각요청서 작성 시 '기수납여부'를 체크하는 화면이 존재하는데, 이는 해당 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국고로 세입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기수납여부'를 체크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dBrain 매뉴얼에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국고납입 없는 전세권 제각' 등 정상적인 자산매각절차를 벗어난 업무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자가 '기수납여부'를 체크할 경우 재무회계상 오류(부(-)의 선수금 잔액)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전세권과 관련해서는 100% 오류가 발생한다.

- 기수납여부 체크 시 분개

구분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인계	선수금	100,000	자산	100,000

<sup>17)</sup> 매각절차: 매각요청>매각계약요청>Onbid/dBrain(수의계약)계약결과 입력>징수요청>징수결의>수납정산>인계

그림 1-16 ■ 매각요청서(기수납여부 체크)

The screenshot shows a web application window titled "매각요청서" (Sale Request Form). The window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 요청정보 (Request Information):** Includes fields for 프로그램 (2009), 부서 (05-7156), 업무유형 (관리금회수), 목적 (기타), 건명 (RO2009012), 요청일자 (2009-01-22), 예산과목 (12-59-596), 재산관리자 (02-101), 계약채결대상 (아니오), 계약방법, 계약보증금, 수입결수관 (선택), 거래처명, 분할납부구분 (일시납), 분할납부횟수 (1 회), 기수납여부 (checked), 실명번호 (5138505319), 계약보증금 (0), 신청일자, 신청자, 신청번호, 신청자주소, 첨부파일, 비교, 업무담당자.
- 재산명세 (Asset Details):** A table with columns: 자산명, 소재지, 지목, 요청면적/수량, 요청금액, 재산평가금액, 대장면적/수량. The table contains one row with values: 1, 1.00, 1,129,000,000, 1,129,000,000, 1.00.

## (2) 오류에 따른 영향

‘기수납여부’를 체크 하였을 때, 인계 시 선수금과 자산이 사라지는 분개가 나타나는데 실제 수납 시 선수금으로 처리한 건\*이 아니라면, 생성되지도 않은 선수금을 차감하는 분개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해당 구매처에 대한 선수금이 부(-)의 금액으로 나타나게 된다.

\* (차) 국고이전지출 / (대) 선수금

특히 국고납입하지 않고 전세권을 제각하는 경우라면 국고납입이 없었기 때문에 선수금은 발생할 수가 없으므로, 전세권에 대해서 ‘기수납여부’ 체크로 업무를 처리하면 해당 거래처에 대해 부의 선수금이 발생한다.

## (3) 점검 방법

선수금은 재무장부의 ‘계정과목별 명세’ 메뉴 중 ‘선수금’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다. 해당 화면에서는 선수금 계정과목 금액에 대해서 거래처별로 증감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7 | 계정과목별 명세(선수금)

선수금
조회
엑셀
상세내역전체받기
초기화
도움

회계년월: 2014 년 08 월
 소관:

회계: 11000 일반회계
 집계구분: 누계

거래처: 
잔액구분: 전체

관리번호:

- ❖ <누계> 조회 시 자료 내역이 많아 조회가 안되는 경우 <당월>을 선택하여 월별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 <누계> 조회 시 2009년 1월1일 부터의 내역이 조회됩니다.

상세내역 (단위 : 원)

계정과목	거래처	전년도이월액	차변금액	대변금액	잔액
1 선수금		0	500,000	500,000	0
2 선수금		0	3,150,000	3,150,000	0
3 선수금		0	3,856,070	3,856,070	0
4 선수금		0	40,000,000	40,000,000	0
5 선수금		0	12,148,000	12,148,000	0
6 선수금		0	30,000,000	30,000,000	0
7 선수금		0	1,694,000	1,694,000	0
8 선수금		0	1,530,000	1,530,000	0
9 선수금		0	3,322,200	3,322,200	0
10 선수금		0	2,222,000	2,222,000	0
11 선수금		0	28,000,000	28,000,000	0
12 선수금		0	60,000,000	60,000,000	0
13 선수금		0	45,000,000	45,000,000	0
14 선수금		0	35,000,000	0	-35,000,000
15 선수금		0	7,484,000	7,484,000	0
16 선수금		0	69,000,000	69,000,000	0
17 선수금		0	40,000,000	40,000,000	0
18 선수금		0	2,888,800	2,888,800	0

계정과목별 명세 조회화면에서 우선 부(-)의 잔액으로 나타나는 건에 대해서 사유를 확인하여 처리하고(거래처 수정 등), 나머지 거래처별 선수금 금액의 실재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TIP> 인계 업무 누락 시 오류**



자산매각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인계 절차를 누락할 경우 징수결의 시 생성된 선수금과 매각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감소되면서 자산처분손익이 발생하는 분개가 생성되지 않아 자산, 부채가 과대 계상되고 자산처분손익이 과소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sup>18)</sup>

<sup>18)</sup> 인계 절차 누락과 관련한 점검 및 조치방법은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20선\_14. 자산 처분 및 폐기 관련 회계처리 오류' 부분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분 참조

## 마. 무형자산

결산담당자 나결산 주무관은 당기 중 무형자산(내부개발소프트웨어)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용역비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된 것을 발견하였지만 추가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재무결산을 마무리하였다.

### (1) 오류의 유형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형자산 취득원가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된 재료비, 용역비 등
- 특히 출원과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취득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전산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비용만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나, 위 사례에서처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비용까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할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 (2) 오류에 따른 영향

전산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기타 용역 비용까지도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할 경우 무형자산이 과대 계상되고 비용이 과소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 (3) 점검 방법

수정전시산표 검토를 통하여 당기 중 무형자산이 크게 증가한 것이 확인된 경우 당기 중 증가한 내역들이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월별증가내역을 확인하여 다른 월 대비 급격하게 증가한 월에 대한 전표(적요 등)확인을 통해 무형자산 취득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유사한 성격의 비용이 일관성 없이 자산 또는 비용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 (4)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자산 처리 오류(2015회계연도)

OO청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기 구축된 번역 데이터베이스(무형자산)에 대하여 매년 발생하는 신조어 업데이트 용역비는 수익적 지출이므로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2012년과 2013년에 위 지출 금액을 내부개발 소프트웨어(자산)로 회계처리하여 소프트웨어(무형자산) 및 무형자산상각비(프로그램총원가)가 각각 4억 8,519만원, 2억 1,010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전기오류수정손실(비배분비용)이 6억 9,529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I 342p 중>

- 연구용역비의 무형자산 등재 오류(2016회계연도)

OO부 일반회계에서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 BPR/ISP 관련 용역비 13억 8,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기타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연구용역비가 13억 8,000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기타무형자산(무형자산)과 무형자산상각비가 각각 12억 4,200만원과 1억 3,800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548p 중>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의 무형자산 등재 오류(2017회계연도)

OO부 일반회계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료를 지출하면서 당해연도 서비스 제공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다음 회계연도 서비스 제공분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라이선스 사용료 지출액 전체를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소모성물품비(프로그램총원가), 선급비용(유동자산), 전기오류수정손실(비배분비용)이 각각 1,136만 원, 183만 원, 664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외부구입소프트웨어(무형자산) 및 무형자산상각비(프로그램총원가)가 각각 464만 원, 1,519만 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1005p 중>

#### <TIP> 무형자산 과소 계상



본 사례(무형자산 과대 계상)와 반대로 무형자산 과소 계상 오류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점검 및 조치방안은 '제1장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20 선\_1. 자산 취득금액을 비용 처리한 오류' 부분 참조

## 바. 사용수익권

결산담당자 나결산 주무관은 당기 중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직접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민간에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이유로 사용수익권을 인식한 것을 발견하였지만 적정한 회계처리라고 판단하고 재무결산을 마무리하였다.

### (1) 오류의 유형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국가회계실체 외의 자로부터의 수증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무상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을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해당 자산에 무상 사용권 등이 설정된 경우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사용수익권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용수익권은 민간사업자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반대급부 성격으로 민간사업자 등에 부여하는 무상사용권을 인식할 경우에만 발생하는 계정과목이다. 그러나 무상으로 취득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 사용수익권을 인식할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 (2) 오류에 따른 영향

부처가 직접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사용수익권을 인식할 경우 자산이 과소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또한 사용수익권은 무상 사용기간 동안 상각하여 '정부외자산수증'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 사용기간 동안 '정부외자산수증'이 과대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 (3) 점검 방법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담당자에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기부 또는 증여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거래상대방이 재무제표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부처가 사용수익권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거래상대방과 상각기간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상각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 (4)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사용수익권 인식 및 상각오류(2015회계연도)

OO부 XX특별회계에서 취득 후 민간에 무상으로 제공한 건물 등을 사용수익권(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잘못 인식하여 건물사용수익권(일반 유형자산의 차감계정), 구축물사용수익권(일반유형자산의 차감계정)이 각각 40억 1,380만원, 72억 5,857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관련 사용수익권 상각으로 인하여 정부외자산수증(재원의조달및이전)이 26억 250만원, 전기오류수정이익(비배분수익)이 86억 6,987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II 214p 중>

#### <TIP> 사용수익권 과소 계상



본 사례(사용수익권 과대 계상)와 반대로 사용수익권 과소 계상 오류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점검 및 조치방안은 '제1장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20선\_17.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 인식 누락 등 BTO관련 회계처리 오류' 부분 참조

## 4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 계정과목 적정성

### 가. 수선유지비

결산담당자 나결산 주무관은 구축물수선유지비 계정과목 금액이 122억원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예산 규모 상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금액으로 판단하여 추가로 금액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 (1) 오류의 유형

수선유지비란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 등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해당 계정과목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자산성이 있는 지출(자본적지출)에 대해서도 수선유지비로 처리하는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산담당자의 검토가 필요하다.

##### ① '자본적지출' 성격의 지출을 '수익적지출'로 처리

\* [2018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업무담당자용)] '제2장 국유재산의 취득\_8. 공사계약의 증축 및 개보수 선택 오류' 참조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수선 목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지출 성격에 따라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로 구분되며, 자본적지출은 자산 가액의 증가로, 수익적지출은 비용(수선유지비)으로 회계처리 된다.

- 자본적지출: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대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
- 수익적지출: 자산의 원상회복이나 현상유지를 위한 지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보수비 등은 시설장비 유지비(210-09)로 편성하되,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은 자산취득비(430-01) 또는 공사비(420-03)로 반영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410~430번대 예산으로 지출된 금액이 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 되어 있으면 업무처리 오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 ② 공사용역요청서 등 요청서 작성 시 자산명세 선택 오류(비용 선택)

\* [2018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업무담당자용)] '제2장 국유재산의 취득\_1. 계약 종류의 선택 오류' 참조

국유재산 취득 관련 공사계약 시 계약종류는 크게 시설공사(본공사), 공사용역(부대공사)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계약요청서 작성 시 자산명세를 선택할 수 있다.

자산명세 선택 시 '비용'을 선택하는 경우 수선유지비로 처리가 된다. 따라서 자산성격의 공사계약 시 '비용'을 선택하는 경우 수선유지비가 과대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표 1-11 | 공사용역요청서 작성시 자산 명세 선택

계약 종류	자산, 비용 선택 구분	자산, 비용 처리 결과
시설공사 (본공사)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물품	[물품대장] 물품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국유재산대장]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공사용역 (부대공사)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물품	[물품대장] 물품
	건설중인자산	[건설중인자산] 국유재산 편입 예정

## ③ 일반지출로 처리하면 안되는 업무를 일반지출로 처리

\* [2018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업무담당자용)] '제1장 물품의 취득\_1. 일반지출을 통한 자산의 취득 오류' 참조

지출 성격별로 업무를 처리하는 메뉴가 별도로 존재하며, 업무담당자는 이를 올바르게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달, 국유재산 등 별도의 메뉴에서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일반지출' 메뉴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항목이 비용 처리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 (2) 오류에 따른 영향

지출에 대응하는 효용이 당해연도에 모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건물 취득과 같이 건물의 사용기간 동안 효용이 지속되는 경우 감가상각을 통하여 효용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비용을 나누어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자산 항목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연도에는 비용이 과대계상되고, 당해연도 이후의 비용은 과소계상되며 결과적으로 올바른 원가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 (3) 점검 방법

수선유지비가 존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자산성이 있는 지출을 수선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은 오류이므로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를 통해 오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림 1-18 ■ 합계잔액시산표(건축물수선유지비)

(단위 : 원)

	차변			계정과목	대변		
	잔액	합계	당월		당월	합계	잔액
1	248,990,736,016,205	485,344,742,703,313	263,428,241,852	합 계	263,428,241,852	35,344,742,703,313	248,990,736,016,205
302	40,499,231,300	40,499,231,300	0	기타자산임차료	0	0	0
303	799,303,092	799,303,092	98,233,470	유류비	0	0	0
304	307,229,598,484	307,229,598,484	30,216,554,731	수선유지비	0	0	0
305	20,263,345,690	20,263,345,690	953,769,980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0	0	0
306	6,310,568,230	6,310,568,230	75,626,600	건물수선유지비	0	0	0
307	12,173,243,070	12,173,243,070	795,925,080	건축물수선유지비	0	0	0
308	5,626,600	5,626,600	132,850	기계장치수선유지비	0	0	0
309	323,745,060	323,745,060	34,269,550	집기비품차량운반구수	0	0	0
310	1,450,162,730	1,450,162,730	47,815,900	기타일반유형자산수선	0	0	0
311	286,965,539,994	286,965,539,994	29,262,784,751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0	0	0

건축물 수선유지비 122억원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해당 행을 더블클릭하면 월별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9 ■ 월별내역(건축물수선유지비)

전기미월금액 : 0 원

보조원장조회 전표조회 (단위 : 원)

	월	차변금액	대변금액	결산조정전 잔액	결산조정 차변금액	결산조정 대변
1	2월	9,499,232,000	0	9,499,232,000	0	
2	3월	15,391,600	0	15,391,600	0	
3	4월	5,529,980	0	5,529,980	0	
4	5월	407,000	0	407,000	0	
5	6월	881,531,600	0	881,531,600	0	
6	7월	584,241,110	0	584,241,110	0	
7	8월	390,984,700	0	390,984,700	0	
8	9월	795,925,080	0	795,925,080	0	
9	합 계	12,173,243,070	0	12,173,243,070	0	

월별내역 확인결과 2월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금액 95억 원이 인식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전표를 조회할 수 있다.

그림 1-20 ■ 분개장(구축물수선유지비)

예산과목	420-03 건설비/시설비				
전기여부	전기완료				
<b>▶ 분개내역</b> (단위:원)					
행번호	계정과목	적요	결의내용	차변금액	대변
1	51170102	구축물수선유지비		9,497,000,000	
2	61010000	국고수입/재원의조달		0	9,497,000,000
<b>▶ 관리항목내역</b>					
일련번호	관리항목명	관리항목값	참조값		
1	거래처코드				
2	거래처분류코드				
3	자산번호				
4	자산명				

전표 조회 결과 420-03목(건설비) 예산으로 도로 건설을 위해 선금을 지출한 건임을 알 수 있다. 자산 취득을 위한 선금 지출 금액은 수선유지비가 아닌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 되어야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선유지비는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큰 금액을 우선하여 검토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다.

## 나. 전기오류수정손익

김국유 주무관은 당기에 신축 완료된 건물과 관련해 검사만 수행하고, 검수는 누락 후 기말에 건물이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자 '기타증감' 메뉴 중 '기타(증)' 을 선택하여 건물을 등재하였다.<sup>19)</sup> 그 결과 전기오류수정이익이 발생하였고 건설중인건물이 과대 계상되었다.

한편, 결산담당자 나결산 주무관은 결산 시 큰 금액의 전기오류수정이익을 발견하였으나, 발생 원인의 적정 여부 검토 없이 재무결산을 마무리하였다.

### (1) 오류의 유형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전기오류수정'이란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회계처리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오류를 당 회계연도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하며,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결산담당자는 재정운영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존재하는 경우 전기재무제표 재작성이 불필요한 중대하지 않은 오류인지와, 발생 원인이 전기 이전의 회계처리 오류를 당기에 수정하여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위 사례와 같은 업무담당자의 잘못된 업무처리(검수업무 대신 기타증감 메뉴로 건물 등재)로 인해 발생하지 말아야 할 전기오류수정이익이 발생하고, 건설중인 자산이 과대 계상된 채로 남아있게 되는데, 결산담당자가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할 경우 이러한 회계처리 오류가 발견되지 못하고 남아 있게 된다.

### (2) 오류에 따른 영향

업무담당자가 업무처리 오류를 기타증감(기타(증)) 메뉴를 통해 해결하고, 결산담당자가 그로인해 잘못 생성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건설중인자산과 전기오류수정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여 당기 자산과 재정운영결과가 왜곡표시 된다.

<sup>19)</sup> 검사 시 건설중인건물이 생성되는 회계처리가 발생하고, 검사 시 건물이 증가하고 건설중인건물이 감소하는 회계처리가 발생하며, 기타증감 메뉴에서 '기타(증)'을 선택하여 자산 등재 시 자산의 상대 계정과목으로 전기오류수정이익이 발생한다. 기타증감 메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2018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업무담당자용) 제1장 물품의 취득\_1.일반지출을 통한 자산의 취득 오류\_참고 기타증감 메뉴' 참조

### (3) 점검 방법

재무결산 메뉴 중 '전기오류수정손익 기중발생내역 확인' 메뉴에서 기중에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익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계정과목별로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전기오류수정손실을 구분하여 조회할 수도 있으며, 통합하여 조회도 가능하다.

그림 1-21 | 전기오류수정손익 기중발생내역 확인

회계일자	거래코드	계정과목	단위업무	대변금액	적요 및 정보관리항목
2013-01-01	결산조정전표입력	41071700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1,504,190.493	
2013-01-02	기타증감처리	41071700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기타증감처리_국유	35,000,000	
2013-01-17	기타증감처리(물품)	41071700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기타증감처리_물품	14,320,000	
2013-01-23	기타증감처리(물품)	41071700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기타증감처리_국유	40,000,000	
2013-01-30	기타증감처리(물품)	41071700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기타증감처리_국유	232,379,000	
2013-01-31	기타증감처리(물품)	41071700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기타증감처리_국유	67,657,170	
				1,518,000	
				8,542,696	
				819,600	
				1,632,040	
				640,000	
				3,420,000	
2013-02-01	기타증감처리(물품)	41071700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기타증감처리_물품	21,263,800	
				15,000,000	
				35,000,000	
2013-02-04	기타증감처리(물품)	41071700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기타증감처리_물품	4,125,000	

건수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엑셀로 다운받아서 금액을 점검할 수 있다. 금액이 클수록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액 순으로 정렬하여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림 1-22 | 전기오류수정손익 기중발생내역 확인(엑셀 다운)

	A	J	L	M	N	O	P	Q
	회계일자	거래코드명	계정과목	단위업무	차변금액	대변금액		적요 및 정보관리항목
1	2013-10-24	기타증감처리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0	10,544,529.440	
2	2013-12-31	결산조정전표입력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0	5,934,704.000	
3	2013-12-31	결산조정전표입력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0	3,328,286.742	
4	2013-12-31	결산조정전표입력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0	1,504,190.493	
5	2013-12-31	결산조정전표입력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0	1,501,389.426	
6	2013-12-26	기타증감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0	1,257,000.000	
7	2013-12-30	기타증감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0	1,047,887.380	
8	2013-07-22	기타증감처리(물품)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GD6400	기타증감처리_물품	0	777,252.300	
9	2013-06-07	기타증감처리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0	606,452.543	
10	2013-12-27	기타증감처리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0	535,964.400	
11	2013-02-14	기타증감처리(물품)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GD6400	기타증감처리_물품	0	517,224.731	
12	2013-10-01	기타증감처리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0	457,428.000	
13	2013-07-04	기타증감처리(물품)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GD6400	기타증감처리_물품	0	395,000.000	
14	2013-12-31	결산조정전표입력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0	351,000.000	
15	2013-07-04	기타증감처리(물품)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GD6400	기타증감처리_물품	0	341,000.000	
16	2013-02-15	기타증감처리(물품)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GD6400	기타증감처리_물품	0	320,431.310	
17	2013-07-01	기타증감처리(물품)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GD6400	기타증감처리_물품	0	318,343.001	
18	2013-12-27	기타증감처리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0	307,052.061	
19	2013-12-20	기타증감처리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0	284,727.472	
20	2013-07-01	기타증감처리(물품)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GD6400	기타증감처리_물품	0	254,000.000	
21	2013-11-12	기타증감처리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0	245,000.000	
22	2013-01-23	기타증감처리(물품)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GD6400	기타증감처리_물품	0	232,379.000	
23	2013-05-15	기타증감처리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0	190,000.000	
24	2013-09-23	기타증감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0	188,000.000	
25	2013-12-31	기타증감처리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0	185,000.000	
26	2013-11-08	기타증감처리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0	180,000.000	
27	2013-10-14	기타증감처리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0	177,000.000	
28	2013-09-03	기타증감처리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0	170,000.000	
29	2013-04-16	기타증감처리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0	168,769.180	
30	2013-05-29	기타증감처리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0	160,000.000	
31	2013-12-31	기타증감처리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0	150,000.000	
32	2013-07-10	기타증감처리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0	140,000.000	
33	2013-05-08	기타증감처리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0	137,606.520	
34	2013-07-19	기타증감처리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0	130,000.000	
35	2013-07-19	기타증감처리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0	130,000.000	
36	2013-12-30	기타증감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0	130,000.000	

금액이 가장 큰 건에 대해서 전표 조회결과 다음 <그림 1-23>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23 ■ 분개장(전기오류수정이익)

회계일자	2013-10-24	소관		전표번호	
회계	11000 일반회계			전표유형	일반전표
거래코드	기타증감처리	거래일자	2013-10-24	작성일자	2013-10-24
작성자		일선관서		행정관서	
전표총금액	10,544,529,440	단위업무	기타증감처리-국유	발생업무구분	국유재산
예산과목					
전기여부	전기완료				

② 분개내역 (단위: )

행번호	계정과목	적요	결의내용	차변금액	대변금액	분야
1	13040000 토지/일반유형자산			10,544,529,440	0	
2	41071700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0	10,544,529,440	

③ 관리항목내역

일련번호	관리항목명	관리항목값	참조값
1	1 거래처코드		
2	2 거래처분류코드		
3	3 자산번호		
4	4 자산명		
5	5 자산증가구분		
6	6 취득일	기타	
7	7 소재지	기타	

전표 조회 결과 105억원의 전기오류수정이익은 ‘기타증감처리’ 업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적요 및 결의내용으로는 전기 오류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결산담당자는 전표 작성 일선관서와 담당자를 찾아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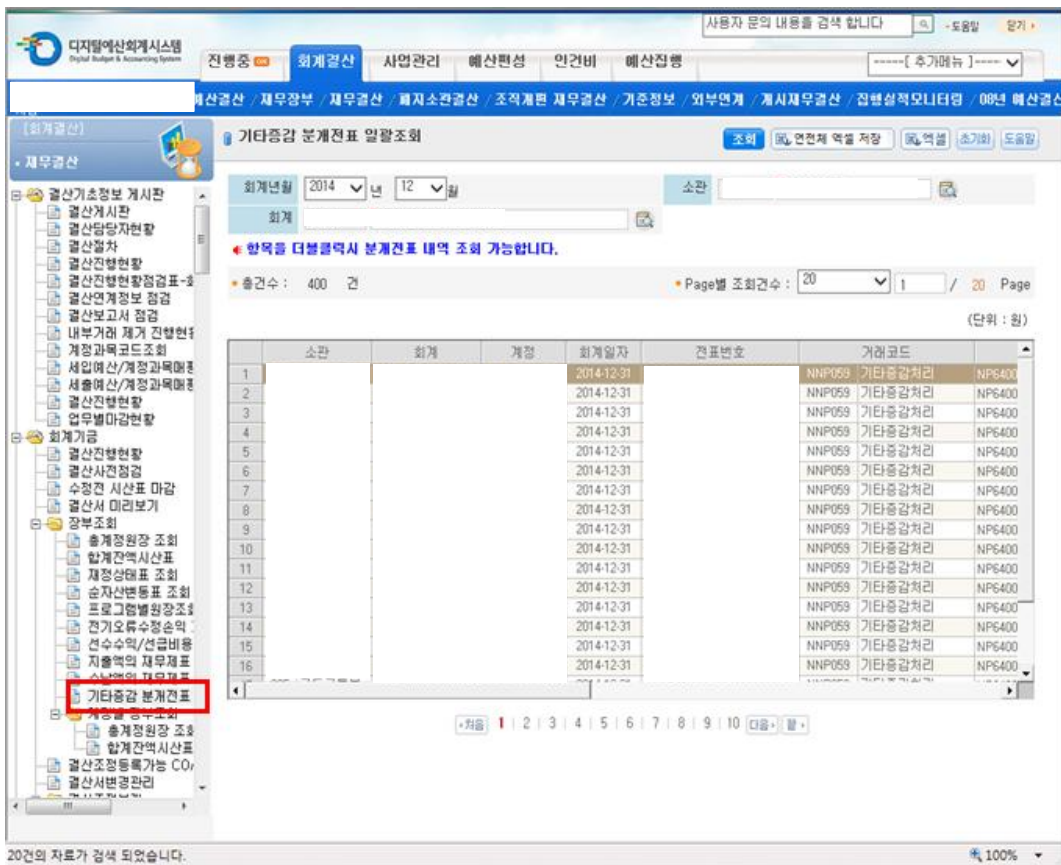
적요가 ‘RQ~’ 로 시작되는 전표는 모두 기타증감업무에서 나타난 업무처리로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타증감업무로 나타난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경우에는 전기오류가 아닌 업무처리 오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1) 배경**

국유재산과 물품에서 발생시킨 기타증감 분개 전표는 건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계정과목도 다양하다. 이에 따라 기타증감에 따른 분개 전표를 별도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재무결산>회계기금>장부조회>기타증감 분개전표 일괄조회]을 구현하여 기타증감에 따른 계정과목의 적정성을 결산 담당자가 쉽게 파악하도록 기타증감 분개 전표 일괄조회 화면을 구현하였다.

**(2) 기타증감 분개 전표 일괄조회**

그림 1-24 | 기타증감 분개 전표 일괄조회 화면



## 다. 잡이익, 잡손실

결산담당자 나결산 주무관은 잡손실 금액이 70억원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해당 내역에 대하여 추가 검토 없이 수정전시산표를 마감하였다.

### (1) 오류의 유형

\* [2018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업무담당자용)] '제1장 지출\_3. 잡손실 과다 계상', '제2장 수입\_2. 잡이익 과다 계상' 참조

기중에 발생하는 잡손실과 잡이익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반지출 또는 수입 업무에서 세부·세세부항목 선택에 따라 나타나는 계정과목이다. 따라서 결산 담당자는 당기에 발생한 잡이익과 잡손실 금액이 세부·세세부항목 선택 오류에 따라 나타난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 (2) 오류에 따른 영향

잡이익과 잡손실은 비경상적 또는 한정적으로 나타나는 수익과 비용 계정과목으로, 잡이익 또는 잡손실이 과다 계상되는 경우 재정정보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

다만 부처별 업무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특정 계정과목으로 포괄하지 못하여 잡손실, 잡이익이 계상되는 경우는 존재한다.

### (3) 점검 방법

잡이익과 잡손실의 경우 각 지출건이 다양하고 그 수가 많기 때문에 이를 모두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보다, 금액이 큰 지출건이 잡이익과 잡손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선 검토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그림 1-25 | 월별내역(잡손실)

	월	차변금액	대변금액	결산조정전 잔액	결산조정 차변금액	결산조정 대변
1	1월	21,224,590	0	21,224,590	0	
2	2월	94,061,157	0	94,061,157	0	
3	3월	230,943,559	0	230,943,559	0	
4	4월	231,584,716	0	231,584,716	0	
5	5월	817,722,888	0	817,722,888	0	
6	6월	4,979,822,650	0	4,979,822,650	0	
7	7월	364,240,152	0	364,240,152	0	
8	8월	123,172,682	0	123,172,682	0	
9	9월	121,709,845	0	121,709,845	0	
10	합 계	6,984,482,239	0	6,984,482,239	0	

잡손실 70억원 중 6월에 50억원이 계상되었으므로 6월의 잡손실 내역을 위주로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분개장 검토를 통하여 오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6 ■ 분개장(잡손실)

회계일자		소관		전표번호	
회계	2014-06-05				
회계	11000	일반회계		전표유형	
거래코드	일반지출	거래일자	2014-06-05	작성일자	
작성자		일선관서		2014-06-05	
전표출금액	1,634,818,000	단위업무	계재이체요구	행정관서	
예산과목	320-01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발생업무구분	
전기여부	전기완료			지출관리	

행번호	계정과목	적요	결의내용	차변금액	대변금액
1	51311400 잡손실			1,634,818,000	0
2	61010000 국고수입/재원외조달			0	1,634,818,000

일련번호	관리항목명	관리항목값	참조값
1	거래처코드		
2	거래처분류코드	기타	

상기 지출건은 세부·세세부항목을 잘못 선택하여 잡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담당자를 파악하여 실질에 맞는 계정과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1-12 ■ 320-01목 세부·세세부항목

예산세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재무계정과목
320-01 (민간경상보조)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및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	공공기관보조	기타공공기관보조비
		기타민간보조	기타민간보조비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 장려금 또는 보조금	공공기관보조	차액보상금
		기타민간보조	차액보상금
	<b>기타비용</b>	-	<b>잡손실</b>

## 5 특정 부처 이외에는 나타나지 않는 계정과목

사회기반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중앙관서의 결산담당자 나결산 주무관은 합계 잔액시산표 조회 결과 공항수선유지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 (1) 오류의 유형

계정과목 중에는 일부 중앙관서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계정과목이 존재 하는데 대표적으로 상기 사례와 같은 사회기반시설 관련 계정과목을 들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 개별법령에 따라 8종(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어항, 상수도, 하천)으로 구분한다.

사회기반시설 관련 계정과목은 일부 중앙관서\*에만 나타날 수 있으며, 타 중앙관서에서 발생한 경우 세부·세세부항목 선택에 따른 오류\*\*로 추정할 수 있다.

\* 2017년 말 계상 부처: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 개발청,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 세부·세세부항목 선택 오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2018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업무담당자용)] '제1장 지출\_1. 세부·세세부항목 선택' 참조

### (2) 오류에 따른 영향

사례의 경우처럼 일부 중앙관서에만 나타날 수 있는 계정과목이 타 중앙 관서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당 계정과목의 존재만으로도 오류임을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크게 저하된다.

### (3) 점검 방법

사회기반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중앙관서에서 사회기반시설 관련 수선유지비가 나타나는 경우는 모두 오류이기 때문에 합계잔액시산표를 조회하여 사회 기반시설수선유지비가 나타난 건 모두에 대하여 담당자를 확인하여 세부·세세부항목 선택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그림 1-27 ■ 합계잔액시산표(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단위 : 원)

계정과목	차변			계정과목	대변		
	잔액	합계	당월		당월	합계	잔액
1	3,483,693,973.039	7,800,307,524.206	4,327,909,038	합 계	4,327,909,038	7,800,307,524.206	3,483,693,973.039
187	32,989,980	32,989,980	770,000	51170103	기계장치수선유지비	0	0
188	610,051,401	610,051,401	49,149,830	51170104	집기비품차량운반구수	0	0
189	1,454,241,350	1,454,241,350	49,051,050	51170105	기타일반유형자산수선	0	0
190	725,000	725,000	0	51170200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0	0
191	120,000	120,000	0	51170205	담수선유지비	0	0
192	605,000	605,000	0	51170206	공항수선유지비	0	0
193	598,400	598,400	0	51170300	유선자산수선유지비	0	0
194	5,434,340,973	5,434,340,973	174,677,859	51180000	대비교통비	0	0
195	4,539,376,116	4,539,376,116	154,362,260	51180100	국내대비	0	0
196	894,964,857	894,964,857	20,315,599	51180200	국외대비	0	0

<그림 1-27>의 중앙관서는 사회기반시설이 나타날 수 있는 부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가 725,000원 발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8 ■ 분개장(공항수선유지비)

분개내역 (단위:원)						
행번호	계정과목	적요	결의내용	차변금액	대변금액	
1	51170206	공항수선유지비		605,000		
2	61010000	국고수입/재원의조달		0	605,000	

관리항목내역				
일련번호	관리항목명	관리항목값	참조값	
1	거래처코드			
2	거래처분류코드			
3	공항 발생계정과목코드	기타		
4	자산번호	기타		
5	자산명			

공항수선유지비의 내역을 분개장을 통해 검토한 결과 단순히 공항을 관리하면서 공항 내 전원장치를 수리한 것을 공항수선유지비로 처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공항은 상기 중앙관서의 소유가 아니므로 공항수선유지비를 계상하는 것은 오류이며, 담당자에게 세부·세세부항목 선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 (4) 동일유형 오류사례

##### ① 유산자산취득비, 유산자산수선유지비

유산자산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문화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으로 국유재산대장에서는 '보존용재산'으로 관리된다.

유산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자산 대신 '유산자산취득비'가 계상되며, 유산자산을 취득한 이후 관리 및 수선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유산자산수선유지비'가 계상된다.

따라서 유산자산(국유재산대장 상 보존용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유산자산취득비'와 '유산자산수선유지비'가 나타나면 이는 오류로 판단할 수 있다. 유산자산은 문화재청의 소유로 되어있는 재산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다.

\* 2017년 유산자산 관리 부처: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7개 부처

결산담당자는 유산자산 관련 비용이 집계잔액시산표에 조회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출건별로 내역을 확인하여 실제 유산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1-29 ■ 분개장(유산자산수선유지비)

분개장		회계일자		회계		거래코드		작성일자		작성일자		전표출금액		예산과목		전기여부			
회계일자	2014-04-03	소관		전표번호		회계	11000 일반회계	거래일자	2014-03-31	전표유형	일반전표	작성일자	2014-04-04	작성일자		행정부서		발생업무구분	지출관리
거래코드	일반지출	단위업무	계좌이체요구	전표출금액	1,881,000	예산과목	210-09 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		전기여부	전기완료									

분개내역					(단위:원)	
행번호	계정과목	적요	차변금액	대변금액		
1	51170300 유산자산수선유지비		1,881,000		0	사회기
2	61010000 국고수입/재원의조달		0	1,881,000		사회기

관리항목내역			
일련번호	관리항목명	관리항목값	참조값
1	거래처코드		
2	거래처분류코드		

## ②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법령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해야 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로 정의된다. 일부 공공기관관리기금의 경우 법인으로 등록된 기금이 존재하며, 해당 기금의 법인세가 법인세비용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이외의 회계실체에서 법인세비용이 나타나는 것은 모두 오류라고 할 수 있으며, 세부·세세부항목 선택 오류에 따라 나타난다.

그림 1-30 ■ 분개장(법인세비용)

분개장
엑셀 | 닫기

회계일자	2014-04-24	소관		전표번호	
회계	11000	일반회계		전표유형	일반전표
거래코드	일반지출	거래일자	2014-04-24	작성일자	2014-04-24
작성자		일선관서		행정관서	
전표출금액	82,330,400	단위업무	계좌이체요구	발생업무구분	지출관리
예산과목	210-02 운영비/공공요금및제세				
전기여부	전기완료				

**분개내역** (단위:원)

행번호	계정과목	적요	차변금액	대변금액	분
1	1 51311000 법인세비용		82,330,400	0	일반·지
2	2 61010000 국고수입/재원의조달		0	82,330,400	일반·지

**관리항목내역**

일련번호	관리항목명	관리항목값	참조값
1	1 거래처코드		
2	2 거래처분류코드		

- ◆ 국가통합 결산보고서의 작성 목적은 국가 전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다. 즉, 국회, 정책결정자, 일반국민 및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 다양한 정보이용자들에게 국가회계실체의 개별적인 정보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대한민국 정부 전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 국가통합 결산보고서는 자산 또는 부채의 과대표시 및 수익 또는 비용의 중복표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과정에서 정부 내부의 회계실체내 또는 회계실체간의 내부거래를 상계 제거하여 작성한다.
- ◆ 내부거래의 제거는 국가통합 결산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작업으로 국가통합 결산보고서 작성 작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 ◆ 내부거래와 관련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업무담당자와 결산담당자 간에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하며 이 장에서는 내부거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동시에 주요 오류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거래처 관련 오류	...	158
2. 계정과목 관련 오류	...	167
3.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 관련 오류	...	169
4. 수동대사	...	172

## 1 거래처 관련 오류

사업담당자인 차징수 주무관은 폐지를 매각하면서 세입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폐지를 매각한 곳은 민간으로 dBrain 상 거래처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징수 요청서를 작성하면서 거래처 등록을 통하여 실제 수납하는 거래처를 입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관서를 거래처로 입력하였다.

### (1) 오류의 유형

세입처리를 위해 징수요청서 작성 시 납부거래처를 등록하여야 한다. 납부 거래처는 실제 수납하여야 하는 기관 및 개인을 입력하여야 하는데 차징수 주무관은 해당 거래처가 dBrain 상 거래처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래처에 자신의 관서를 입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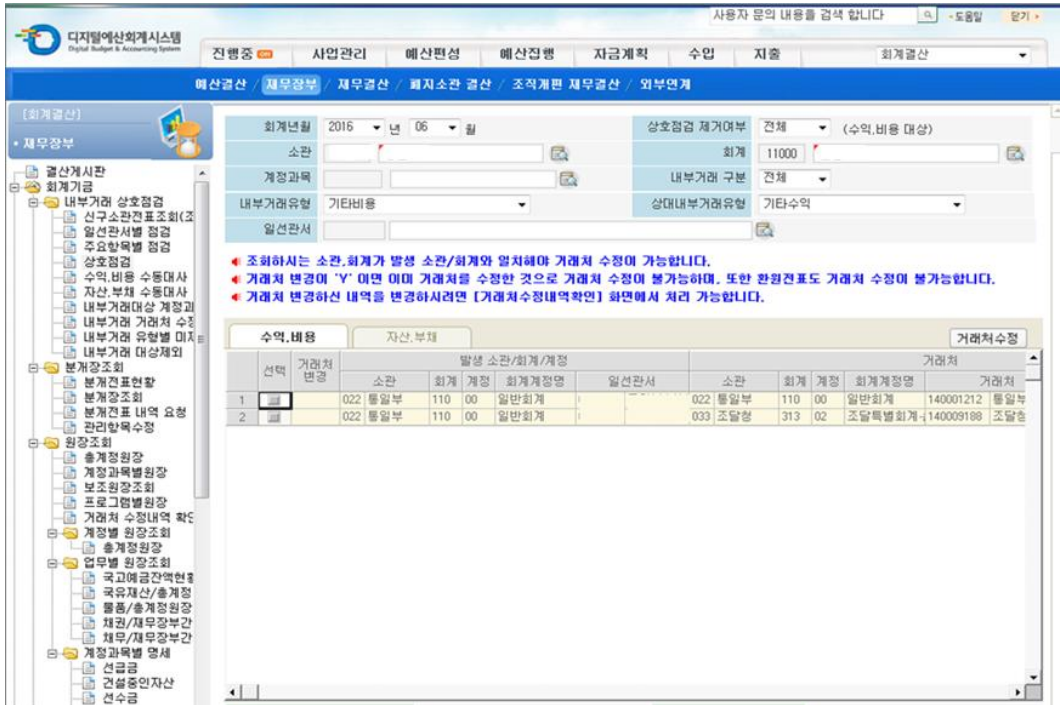
그림 2-1 징수요청서

거래처를 본인의 관서와 같이 국가회계실체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국가회계실체간의 거래인 내부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부거래로 인지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 (2) 오류에 따른 영향

위와 같은 오류에 따라 내부거래 상호점검 시 내부거래 미제거 현황에 해당 거래가 조회되며, 실제 내부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거래제거가 수행되지 않아 부처통합 및 국가통합 재무제표 작성 시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2-2 | 내부거래 상호점검



## (3) 사용자 유의사항

따라서 납부거래처 입력 시 거래처가 없는 경우 사업자번호 등으로 해당 거래처 확인한 후 거래처 등록을 통하여 실제 수납하는 기관 및 개인을 거래처로 입력하여야 한다.

거래처가 조회되지 않거나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래처를 자신의 관서로 등록하게 되면 해당 거래가 내부거래로 인지되어 내부거래제거 대상으로 등록이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담당자는 올바른 거래처 입력을 통하여 해당 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 (4) 동일유형 오류사례

##### ① Case I : 거래처 입력 오류

• 사업담당자인 차징수 주무관은 수행한 수납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선택을 총괄계정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관계정을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거래처를 잘못 입력하여 내부거래 자동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처를 잘못 입력한 회계실체가 거래처 수정을 통하여 자동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표 2-1 | 거래처 입력 오류

발생소관, 회계, 계정			거래처(상대소관, 회계, 계정)			제거 여부
소관	회계	계정	소관	회계	계정	
A부	a기금	총괄계정	B부	b기금	-	미제거
B부	b기금	-	A부	a기금	차관계정	미제거

위와 같은 경우에는 B부 b기금에서 거래처를 소관, 회계까지는 올바른 거래처를 선택하였으나, 총괄계정이 아닌 차관계정으로 선택하여 거래처가 불일치한 사례이다. 따라서 B부 b기금의 차징수 주무관이 거래처 수정을 하여야 한다. 거래처 수정은 '상호점검' 메뉴에서 수행할 수 있다.

그림 2-3 | 상호점검\_거래처 수정(I)

수익,비용		자산,부채		거래처수정			
선택	거래처 변경	발생 소관/회계/계정				거래처	
		소관	회계	계정	회계계정명	일선관서	거래처
<input checked="" type="checkbox"/>		035	통계청	110	00	일반회계	1400009188 조달총
<input type="checkbox"/>		069	기획재정부	502	00	국유재산관리기	160000306 통계총
<input type="checkbox"/>		035	통계청	110	00	일반회계	170000462 기획자
<input type="checkbox"/>		069	기획재정부	502	00	국유재산관리기	160000306 통계총
<input type="checkbox"/>		035	통계청	110	00	일반회계	170000462 기획자
<input type="checkbox"/>		069	기획재정부	502	00	국유재산관리기	160000306 통계총
<input type="checkbox"/>		035	통계청	110	00	일반회계	160000306 통계총
<input type="checkbox"/>		069	기획재정부	502	00	국유재산관리기	170000462 기획자
<input type="checkbox"/>		035	통계청	110	00	일반회계	160000306 통계총
<input type="checkbox"/>		069	기획재정부	502	00	국유재산관리기	170000462 기획자
<input type="checkbox"/>		035	통계청	110	00	일반회계	160000306 통계총
<input type="checkbox"/>		069	기획재정부	502	00	국유재산관리기	170000462 기획자
<input type="checkbox"/>		035	통계청	110	00	일반회계	160000306 통계총
<input type="checkbox"/>		069	기획재정부	502	00	국유재산관리기	170000462 기획자
<input type="checkbox"/>		035	통계청	110	00	일반회계	160000306 통계총
<input type="checkbox"/>		069	기획재정부	502	00	국유재산관리기	170000462 기획자
<input type="checkbox"/>		035	통계청	110	00	일반회계	160000306 통계총
<input type="checkbox"/>		069	기획재정부	502	00	국유재산관리기	170000462 기획자
<input type="checkbox"/>		035	통계청	110	00	일반회계	160000306 통계총

상호점검 메뉴에서 내부거래 대상자료를 조회한 후 '선택' 열에서 거래처를 수정할 전표를 클릭한 후 '거래처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거래처를 수정할 수 있다.

그림 2-4 | 상호점검\_거래처 수정(II)

**2 조정전 분개내역** (단위: 원) 전표조회 | 엑셀

회계년월	계정과목	차대변구분	차변금액	대변금액	수정후 전표번호
1 201403	51040300 소모성물품비	차변	10,000	0	

---

**2 조정후 분개내역** 저장 | 엑셀 | 추가 | 삭제 (단위: 원)

적요

계정과목	차대변구분	차변금액	대변금액
2 51040300 소모성물품비	차변	10,000	0

---

**수정전 분개내역 금액과 수정후 분개내역 합계금액이 같아야 함**

수정전 금액	10,000 원	수정후 금액	10,000 원
수정전 금액과 수정후 금액의 차이	0 원		

---

**2 관리항목내역**

순번	관리항목명	관리항목값	관리항목값명	필수여부
1 1	거래처코드	140009188	조달청 징수관	Y
2 2	거래처분류코드	121	중앙재정-기업특별회계	N

'거래처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2-4>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며, 올바른 거래처를 선택하여 거래처를 수정할 수 있다. 거래처 수정은 거래처만 상이한 동일한 계정과목이 차변, 대변에 입력되는 거래처조정전표를 입력하는 것으로, 거래처 수정을 수행하면 상호점검 조회 시 '거래처변경' 열에 'Y'가 찍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래처 수정 시 주의하여야 할 점은 한번 거래처를 수정하여 '거래처변경' 열에 'Y'가 찍혀있는 전표는 재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번 거래처를 수정한 전표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수정내역을 취소하고, 다시 거래처 수정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Case II : 내부거래 상대 없음

- 사업담당자인 내상호 주무관은 내부거래 제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내부거래 대상자료를 조회하였으나, 본인이 발생시킨 내부거래의 짝이 되는 내부거래가 조회되지 않아 내부거래 제거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표 2-2 내부거래 상대 없음

발생소관, 회계, 계정			거래처(상대소관, 회계, 계정)			제거 여부
소관	회계	계정	소관	회계	계정	
A부	a기금	-	B부	b기금	차관계정	미제거

위와 같은 경우에는 내부거래 대상자료 조회 시 본인이 발생시킨 내부거래와 짝이 되는 내부거래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로서, 원인은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①발생소관이 내부거래로 집계되지 않아야 할 전표의 거래처를 정부내 거래처로 발생시킨 경우, ②상대소관이 내부거래로 집계되어야 하는 전표의 거래처를 정부내 거래처로 발생시키지 않은 경우이다.

따라서 내부거래 상대가 없는 경우에는 내부거래 대상자료로 집계된 발생소관의 전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내부거래 여부를 확인 후, 내부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처 수정을 수행하여 내부거래 대상자료로 집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 내부거래가 맞는 경우에는 상대 소관이 전표를 잘못 생성시켰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대소관의 결산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여야 한다.

### ③ Case III : 거래처 선택 및 등록 오류

- OO특별회계에서 거래처가 XX기금인 미수채권 전표를 원전표의 거래처와 다른 YY공공기관으로 차감하는 결산조정전표를 입력하면서 재정상태표는 의도대로 미수채권이 '0'으로 나왔으나 내부거래제거 대상은 계속 남아있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 일반회계에서 OO기금으로 출연금을 지급하면서 거래처를 OO기금의 자금 운용을 하고 있는 투신운용사로 처리하여 내부거래 제거대상으로 집계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 일반회계에서 XX기금을 거래처로 등록하면서 거래처구분을 중앙정부가 아닌 공공기관으로 선택하여서 국가회계실체간 거래로 인지되지 않아 내부거래 제거 대상에서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납부자란 수납의무를 지는 거래상대방을 의미하는데, 수입징수업무를 통해 생성되는 미수채권이나 수익의 거래처 정보가 되며, 이는 향후에 내부거래 제거를 위한 기본 정보 역할을 담당한다.

납부자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등 국가회계실체가 아닌 경우에는 내부거래 제거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회계·기금 등 국가회계실체인 경우에는 내부거래제거 대상에 해당되어 정보가 관리된다.

따라서 납부자 실명번호에 납부자가 등록되지 않는 경우 납부자를 추가 등록하지 않고 수입징수관을 납부자로 선택하거나, 사업담당자가 수입징수관을 납부자로 오해하여 납부자로 수입징수관을 선택하는 오류가 자주 발생하므로 담당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④ Case IV : 거래처수정 중복 처리 오류

- 업무담당자는 디브레인 [회계결산>재무장부>회계기금>내부거래상호점검] 화면에서 전표적요가 '거래처 수정'이고 부(-)의 금액으로 미제거되는 거래건을 발견하였다.

업무담당자는 결산담당자보다 신속하게 업무 실질을 파악할 수 있고, 결산담당자는 업무담당자보다 더 많은 내부거래 조회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내부거래 제거를 위해서는 업무담당자와 결산담당자 서로간의 협조가 필요하다. 해당 사례는 결산담당자와 업무담당자간의 협조가 미비한 대표적인 사례로 오류 발생원인은 아래와 같다.

- ① 업무담당자는 국가회계실체가 아닌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 거래처를 국가회계실체로 잘못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차변		대변		거래처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잡손실	100	현금	100	00부 일반회계

- ② 이 후 결산담당자는 위의 업무담당자가 발생시킨 전표의 거래처가 잘못 선택된 것을 알고 업무담당자에게 알리지 않고 거래처를 '기타'로 수정하였다.

차변			대변		
계정과목	금액	거래처	계정과목	금액	거래처
잡손실	100	기타	잡손실	100	00부 일반회계

- ③ 업무담당자는 뒤늦게 본인의 잘못을 알고 기존에 입력했던 전표를 취소하고 거래처를 수정하여 다시 전표를 생성하였다.

차변		대변		거래처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현금	100	잡손실	100	00부 일반회계
잡손실	100	현금	100	기타

위의 사례는 업무담당자와 결산담당자가 거래처수정을 중복으로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오류로, 결과적으로 결산담당자가 처리했던 거래처수정 전표만 내부거래 미제거 오류로 발생하게 된다.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산담당자가 디브레인 [회계결산>재무장부>원장조회>거래처 수정내역 확인] 메뉴에서 거래처 수정 전표를 취소해야 한다.

그림 2-5 | 거래처 수정내역 확인

The screenshot displays the '거래처 수정내역 확인' (Check Transaction Modification History) menu. The interface includes search filters for fiscal year (회계년월: 2017년 11월), account type (구분: 전체), and transaction number (신규전표번호). A table lists transaction details, and a '취소' (Cancel) button is highlighted in red.

구분	회계년월	신규전표번호	선액	신규	계정과목	처대	수정전	거래처	
1	분계전표	201701	00000008	2	42080101 일반회계건업금세교부	대변	092010096	기획재정부 국고국	14
2		201704	00000030	2	42080110 당기순이익건업금세교	대변	092010096	기획재정부 국고국	14
3			00000031	2	42080109 감가상각건업금세교부	대변	092010096	기획재정부 국고국	14

# 참고

# 상호점검 화면상 내부거래 미제거 사유 기입 기능

## (1) 배경

내부거래 상호점검 화면에서 내부거래 미제거 항목에 대하여 사유를 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없어서 미제거 사유를 상호 확인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재무결산 및 재무장부의 상호점검 화면에서 미제거 사유를 기입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 미제거 사유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 (2) 상호점검 화면상 내부거래 미제거 사유 기입

그림 2-6 | 재무결산의 상호점검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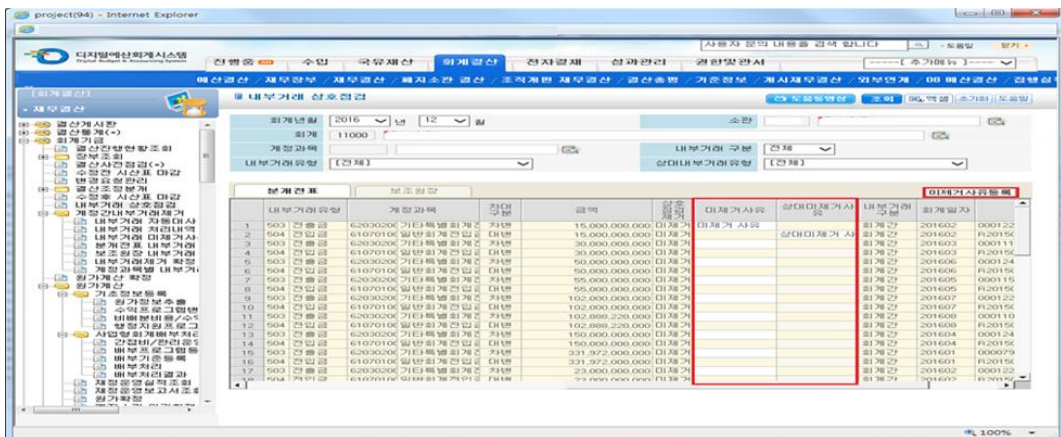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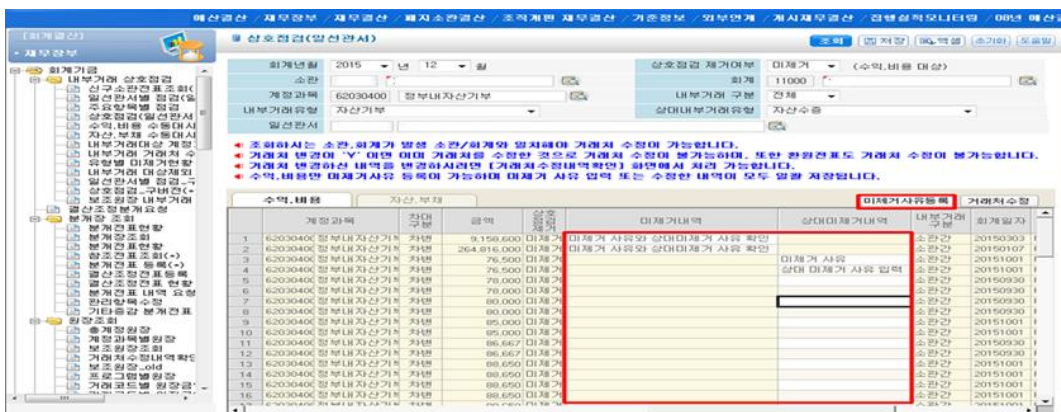


그림 2-7 | 재무장부의 상호점검 화면



## 2 계정과목 관련 오류

사업담당자인 내상호 주무관은 내부거래 제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내부거래 대상자료를 조회하였는데, 계정과목의 내부거래 유형이 일치하지 않아 자동대사가 수행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 (1) 오류의 유형

계정과목이 잘못 되어 내부거래 자동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계정과목 수정을 통하여, 자동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오류에 따른 영향

표 2-3 | 내부거래 유형 불일치

발생소관, 회계, 계정			거래처			계정과목	제거 여부
소관	회계	계정	소관	회계	계정		
A부	a기금	총괄계정	B부	b기금	-	정부내자산수증	미제거
B부	b기금	-	A부	a기금	총괄계정	기타재원이전	미제거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발생시킨 계정과목의 내부거래 유형이 일치하지 않아 자동대사가 수행되지 않는 것으로, 두 명의 업무담당자 중 계정과목을 잘못 발생시킨 업무담당자가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표 2-4 | 내부거래 유형별 COA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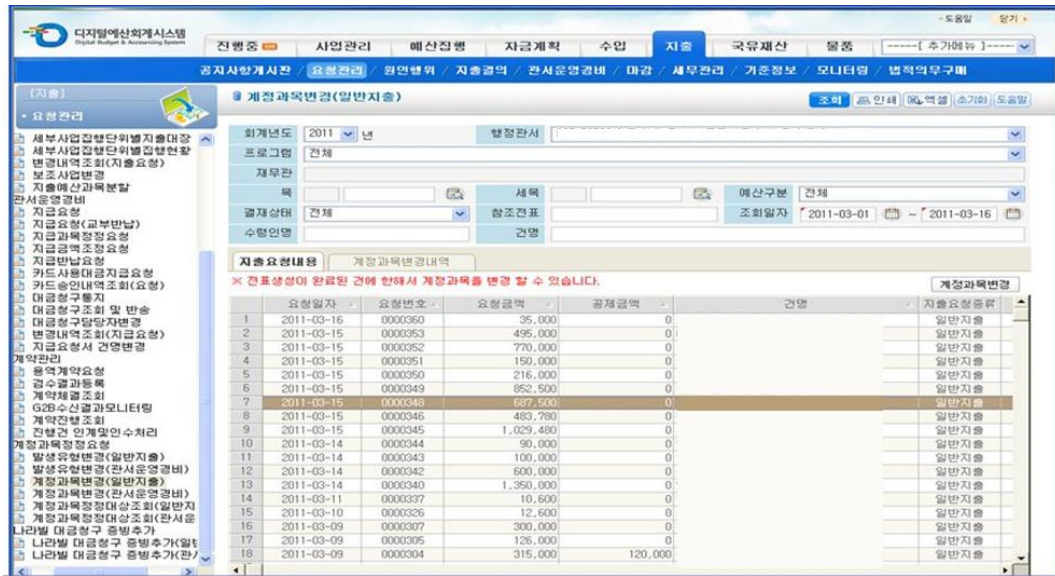
유형	Code	계정과목명	상대유형	Code	계정과목명
이자비용 (501)	51270100	국채이자비용	이자수익 (502)	41040201	국채이자수익
	51270200	공채이자비용		41040202	공채이자수익
	51270303	정부내전대차관이자비용		41040303	정부내전대차관이자수익
	51270304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41040304	정부내예탁금이자수익
자산기부 (505)	42080310	정부내자산기부 /비교환수익등	자산수증 (506)	42080104	정부내자산수증 /비교환수익등
	62030400	정부내자산기부		61070400	정부내자산수증

내부거래 유형별 COA란 ‘이자비용·이자수익’, ‘자산기부·자산수증’과 같이 내부거래 대상이 되는 계정과목과 제거 가능한 상대 내부거래 계정과목을 유형별로 구분해 놓은 것으로, 서로 짝이 되는 유형끼리만 제거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내부거래가 잘못 제거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3) 오류 정정방법

계정과목은 업무담당자의 세부·세세부항목 선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담당자는 올바른 세부·세세부항목을 선택했는지 확인하고, 잘못 선택하였을 경우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세부·세세부항목 선택의 정정은 지출 메뉴 중 ‘계정과목변경’에서 수행할 수 있다.

그림 2-8 | 계정과목 변경



수정해야 하는 지출이 일반지출이었다면 ‘계정과목변경(일반지출)’ 메뉴에서, 관서운영경비 지급을 하였던 견이라면 ‘계정과목변경(관서운영경비)’에서 각각 조회되므로, 이를 선택하여 계정과목 변경을 수행할 수 있다.

### 3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 관련 오류

- 사업담당자인 내상호 주무관은 내부거래 제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내부거래 대상자료를 조회하였는데,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이 '미제거'로 표시된 것을 발견하였다.

#### (1) 오류의 유형

##### ① Case I : 대상제외 항목 거래처 선택 오류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인 우편요금 지출 시 거래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편사업특별회계로 지정해야 내부거래 대상제외로 집계 가능하나, 우체국 예금특별회계나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잘못 선택하여 내부거래가 대상제외로 분류 되지 않고 미제거로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표 2-5 | 대상제외 항목 거래처 선택 오류

발생소관	거래처			계정과목	제거 여부
	소관	회계	계정		
00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편사업특별회계	-	공공요금	대상제외
00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공공요금	미제거
00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공공요금	미제거

##### ② Case II : 대상제외 항목 계정과목 선택 오류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인 우편요금과 조달수수료에 대해서 거래처는 적정하게 선택하였으나 계정과목을 잘못 선택한 결과, 내부거래가 대상제외로 분류 되지 않고 미제거로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표 2-6 | 대상제외 항목 계정과목 선택 오류

발생소관	거래처			계정과목	제거 여부
	소관	회계	계정		
00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편사업특별회계	-	공공요금	대상제외
00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편사업특별회계	-	잡손실	미제거
00부	조달청	조달특별회계	-	기타수수료	대상제외
00부	조달청	조달특별회계	-	소모성물품비	미제거

내부거래가 소액다수 건이어서 제거로 인한 효익보다 비용이 더 크고 그 금액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dBrain시스템에서는 내부거래 대상제외로 지정하여 내부거래 자동대사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2-7 ■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

항목	대상제외 조건		대상제외 사유
	거래처	계정과목	
조달수수료,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조달청 조달특별회계, 조달사업회전자금	기타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조달수수료, 나라장터이용수수료는 그 건수가 많고, 금액이 크지 않으며 자산 취득 관련 조달수수료, 나라장터이용수수료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부거래 대상에서 제외
	조달청 조달특별회계	기타의미지급금, 기타의미지급비용	
우편요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편사업특별회계	공공요금	우편요금은 그 건수가 많고, 금액이 크지 않으며 우편사업특별회계에서 징수할 시 정부내거래를 분류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거래 대상에서 제외
검사수수료 및 허가수수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중앙전파관리소	공공요금, 기타수수료, 기타의미지급금, 기타의미지급비용	검사수수료 및 허가수수료는 그 건수가 많고, 금액이 크지 않으며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징수할 시 정부내거래를 분류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거래 대상에서 제외
등기료	대법원 등기특별회계	등기료법정수수료	등기료는 그 건수가 많고, 금액이 크지 않으며, 등기특별회계에서 징수할 시 정부내거래를 분류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거래 대상에서 제외
세금	국세청 일반회계 / 관세청 일반회계	기타수수료, 제세, 법인세비용	국세청, 관세청의 경우 dBrain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징수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거래처 파악이 용이하지 않으며, 국가회계실체가 납부하는 세금이 전체 세금 중 비중이 높지 않음. 이에 따라 내부거래로 국세수익이 과대되는 위험보다 전체 국세수익이 공시되어야 하는 효익이 더 높으므로 내부거래 대상에서 제외

## (2) 오류에 따른 영향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은 시스템에서 '대상제외'로 조회되므로 내부거래 제거 관련 검토를 수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런데 대상제외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나 계정과목을 잘못 선택하여 시스템 상 '대상제외'가 아닌 '미제거'로 조회된다면 불필요한 내부거래 검토 업무를 하게 되어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 (3) 오류 정정방법

우편요금, 조달수수료 등과 같이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임에도 거래처나 계정과목을 잘못 선택하여 '미제거'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앞의 '1. 거래처 관련 오류' 및 '2. 계정과목 관련 오류'에서 설명한 거래처 수정('회계결산>재무장부>회계기금>내부거래 상호점검>상호점검'메뉴)과 계정과목 정정('지출>요청관리>계정과목정정요청>계정과목변경'메뉴)을 통해 대상제외로 올바르게 집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대상제외 항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래처, 계정과목 등의 오류로 대상제외로 조회되는 경우에도 올바른 거래처나 계정과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4 수동대사

사업담당자인 내상호 주무관은 내부거래 제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내부거래 대상자료를 조회하였는데, 거래처 전표가 1:1로 대응되지 않거나, 전표의 회계일자가 크게 차이를 보임에 따라 자동대사를 통해 내부거래가 제거되지 않은 '미제거' 항목을 발견하였다.

### (1) 내부거래 제거 방법

내부거래의 거래처, 내부거래 유형 및 금액이 모두 일치하면 시스템에서 자동대사되어 내부거래가 제거 되나, 회계일자 차이가 큰 경우와 전표가 1:1대응이 되지 않고, 1:n 또는 n:n으로 대응되는 경우에는 자동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내부거래를 제거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가 수동대사를 해야 한다.

### (2) 수동대사 필요 유형

① Case I : 상대방 전표와 1:1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

표 2-8 | 전표 1:n 대응

발생소관	거래처	계정과목	금 액	제거여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정부내예탁금이자수익	10,000,000	미제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8,000,000	미제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2,000,000	미제거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전표가 1:1로 대응되지 않아 자동대사가 수행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해당 전표가 1:2로 서로 짝이 된다는 사실을 시스템에 반영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내부거래 수동대사라 한다.

② Case II : 상대방 전표와 회계일자 차이가 큰 경우

표 2-9 회계일자 차이가 큰 경우

발생소관	거래처	계정과목	금액	회계일자	제거여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정부내예탁금이자수익	10,000,000	2012. 7. 31	제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10,000,000	2012. 8. 31	제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정부내예탁금이자수익	20,000,000	2012. 7. 31	미제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20,000,000	2012. 12. 31	미제거

위 사례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거래처, 계정과목, 금액인 경우에도 회계일자의 거래월을 기준으로 상대거래 건의 거래월이 전월부터 차월까지의 범위를 벗어나면 dBrain 시스템 상 자동대사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1:n, n:n 으로 전표가 대응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동대사를 통해서 전표를 각각 짝지어 주어야 한다.

(3) 수동대사 방법

그림 2-9 내부거래 수동대사(내부거래 유형 전체)

1 내부거래 유형이 [전체]일 경우 수동대사를 하실 수 없습니다.  
 2 내가 처리한 '요청번호'와 상대가 처리한 '상대요청번호' 모두 일치해야 [제거]가 됩니다.

회계일자	계정과목	전표금액	일련번호	내부거래유형	내부거래처	상대소관	상대회계
20140324	51040300 소모성물품비	10,000	0225450:통계청 지출관:509 기타비용	140009188	조달청 정수 033	조달청	313 조달청
20140226	41010302 수수료수익	250,000,000	07010956:통계청 운영지:510 기타수익	140006482	여성가족부 076	여성가족 110	일반회
20140318	51070900 기타수수료	25,790	0813212:통계청 통복지:509 기타비용	130604353	미래창조과 085	미래창조 314	우편사
20140318	51130200 건물임차료	12,101,700	0813212:통계청 통복지:509 기타비용	130604353	미래창조과 085	미래창조 314	우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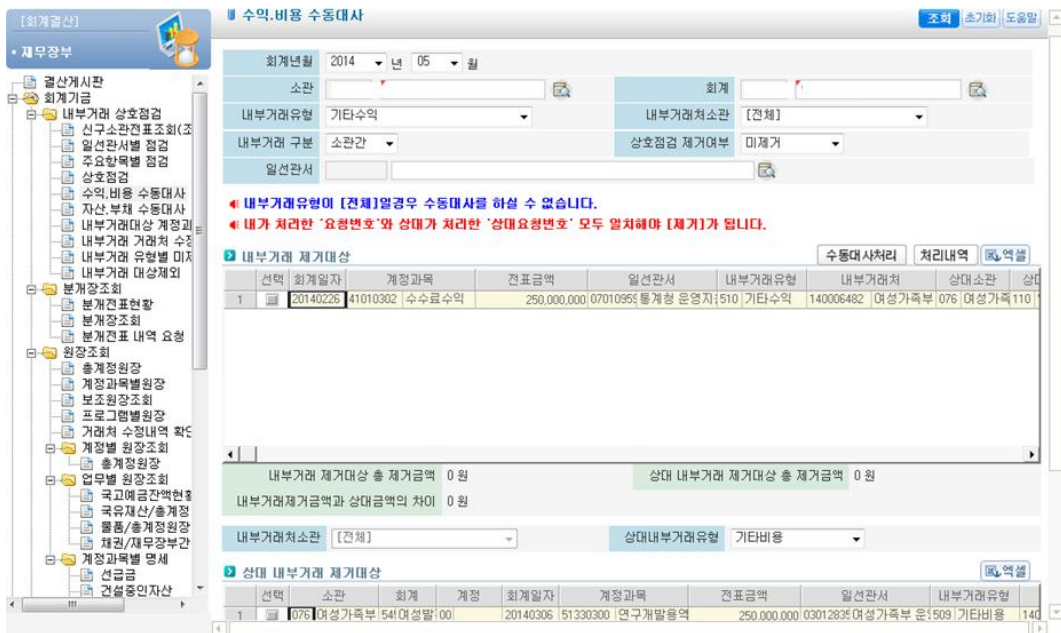
내부거래 제거대상 총 제거금액 0 원      상대 내부거래 제거대상 총 제거금액 0 원  
 내부거래제거금액과 상대금액의 차이 0 원

소관	회계	계정	회계일자	계정과목	전표금액	일련번호	내부거래유형	내부
072	문화체육관광 111	일반회:00	20140115	41010301 사용료수익	9,972,000	08112176	문화체육관광부 510	기타수익
076	여성가족부 54	여성발:00	20140306	51330300 연구개발용역	250,000,000	03012838	여성가족부 운영:509	기타비용

수동대사 메뉴에서 소관과 회계를 선택하고, 내부거래 구분과 상호점검 제거 여부를 선택하여 조회하면 상기 <그림 2-9>과 같이 내부거래 대상 자료 중 수동대사를 수행할 전표들이 조회된다. 또한 아래쪽 화면에서는 상대방에서 발생시킨 전표(내가 발생시킨 거래와 제거해야 하는 상대 거래처에서 발생시킨 전표)가 조회된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내부거래 유형을 전체로 놓고 조회하면 조회는 가능하나 수동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수동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부거래 유형을 특정하여 선택 후 진행하여야 한다. 내부거래 유형을 선택하는 경우 아래쪽 화면에서는 상대 거래처가 발생시킨 전표 중 선택한 유형과 짝이 되는 유형만 조회가 가능하다.

그림 2-10 | 내부거래 수동대사(내부거래 유형 선택)



<그림 2-10>에서 알 수 있듯이 내부거래 유형을 '기타수익'으로 설정한 후 조회를 했을 경우에는 '선택'열이 추가로 생성되며, 상대내부거래유형은 '기타비용'으로 고정되어 조회가 이루어진다.

조회되는 전표 중 짝이 되는 전표를 위아래로 모두 선택한 후 '수동대사 처리'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수동대사가 수행된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내가 발생시킨 전표의 금액과 상대방이 발생시킨 금액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동대사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동대사를 수행하게 되면 상호점검 화면에서 '요청번호' 열에 일련번호가 생성되며, 이 일련번호는 수동대사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제거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이 된다.

수동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은 내부거래제거는 두 개의 회계실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업무담당자 본인이 수동대사를 수행한다고 해서 모든 업무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 거래처에서 동일한 수동대사 업무를 수행하여야만 모든 업무가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단, 차감전표 수동대사는 예외적으로 상대방에서 동일한 수동대사를 할 필요 없음).

그림 2-11 | 수동대사 제거대기내역

수동대사 화면에서 '처리내역'을 클릭하면 수동대사를 수행한 전표는 '제거 대기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동일하게 수동대사를 완료한 이후에야 제거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제거내역에서 조회가 되는 건은 자동대사와 마찬가지로 결산시점에 자동으로 내부거래제거가 이루어진다.

상호점검에서 수익·비용 전표를 확인하는 경우 업무담당자가 수동대사를 수행한 것은 요청번호에 일련번호가 조회되며, 상대 거래처에서 본인과의 거래에 대해 수동대사를 수행한 것은 상대요청번호에 일련번호가 조회가 되므로 수동대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요청번호와 상대요청번호가 일치한다면 수동대사 업무가 올바르게 수행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으며, 만일 요청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제거', '미제거' 대신 '불일치'라고 상호점검제거 열에 표시가 이루어진다. 만일 '불일치'로 조회되는 건이 있다면 각 담당자가 서로 다르게 수동대사를 수행한 것으로 수동대사를 취소하고 재수행 하여야 한다.

수동대사가 양 거래처에서 모두 완벽하게 처리되었다면, <그림 2-12>와 같이 '제거내역'으로 조회가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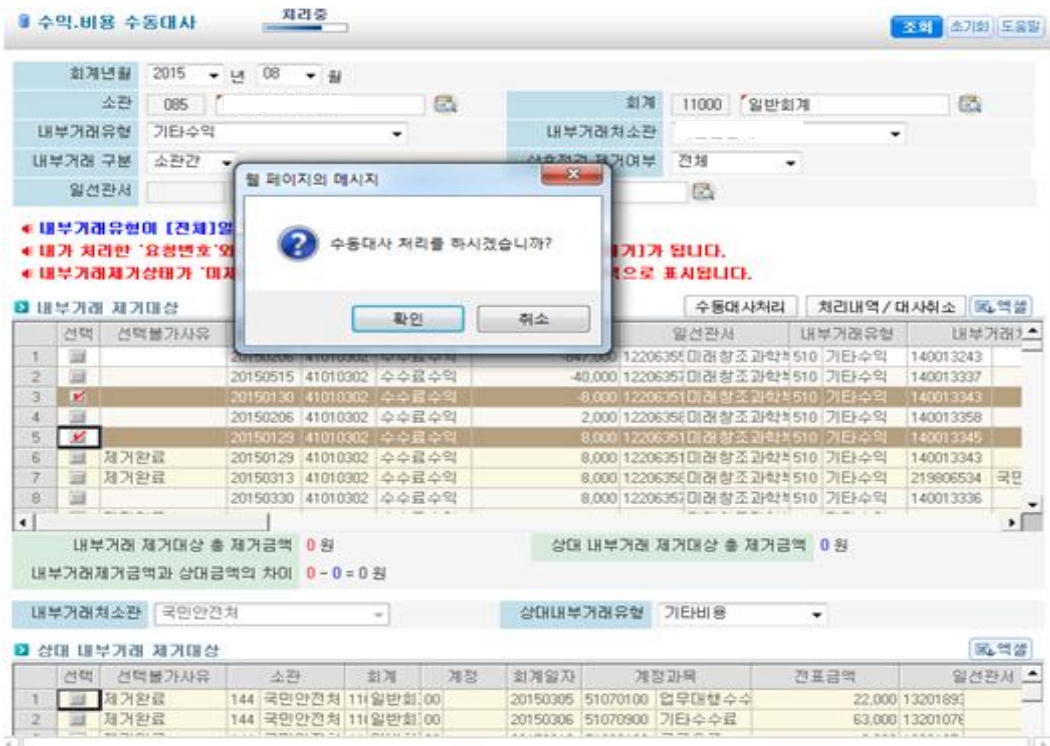
그림 2-12 | 수동대사 제거내역

내부거래 대사 상세					
내부거래제거대상					
제거내역		제거대기내역			
	내부거래제거전표번호	내부거래유형	상대내부거래유형	대사금액	작업일시
1	합 계	전입금	전출금	2,730,929,668	2014-05-27
2	0000000000000027	전입금	전출금	536,431,370	2014-01-24
3	0000000000000357	전입금	전출금	34,000	2014-02-15
4	0000000000000358	전입금	전출금	693,000	2014-02-15
5	0000000000001200	자산수증	자산기부	5,162,748	2014-03-06
6	0000000000001401	전입금	전출금	179,310,000	2014-03-12
7	0000000000001686	전입금	전출금	256,570	2014-03-25
8	0000000000001687	전입금	전출금	161,780	2014-03-25
9	0000000000001688	전입금	전출금	78,220	2014-03-25
10	0000000000001689	전입금	전출금	3,983,340	2014-03-25
11	0000000000001690	전입금	전출금	584,560	2014-03-25
12	0000000000001691	전입금	전출금	514,600	2014-03-25
13	0000000000001692	전입금	전출금	3,678,130	2014-03-25
14	0000000000001693	전입금	전출금	230,700	2014-03-25
15	0000000000002009	전입금	전출금	6,209,400	2014-04-08
16	0000000000002164	전입금	전출금	65,750	2014-04-09
17	0000000000002165	전입금	전출금	325,780	2014-04-09

(1) 차감전표 수동대사

일반적으로 내부거래 전표의 수동대사는 양 회계실체가 각각 동일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내부거래 차감전표의 경우에는 차감전표를 발생시킨 회계실체에서만 수동대사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여, 2015년 dBrain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그림 2-13>와 같이 차감전표를 발생시킨 회계실체만 수동대사 하여 내부거래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13 | 차감전표 수동대사



## (2) 내부거래 상대소관의 수동대사 취소

일반적으로 내부거래 전표의 수동대사 취소는 요청한 회계실체만 가능하고 요청받은 회계실체는 수동대사 취소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내부거래 수동대사 요청 후 발생소관에서 원전표를 취소할 경우 요청받은 상대소관은 수동대사 요청 내역을 삭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dBrain 시스템 개선을 통해 내부거래 수동대사 요청을 받은 회계실체에서도 수동대사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14 | 상대소관 수동대사 취소

내부거래 대사 상세			
내부거래제거대상			
제거내역		제거대기내역	
	임시번호	내부거래유형	대사금액
1	0000000000000001	자산기부	144,46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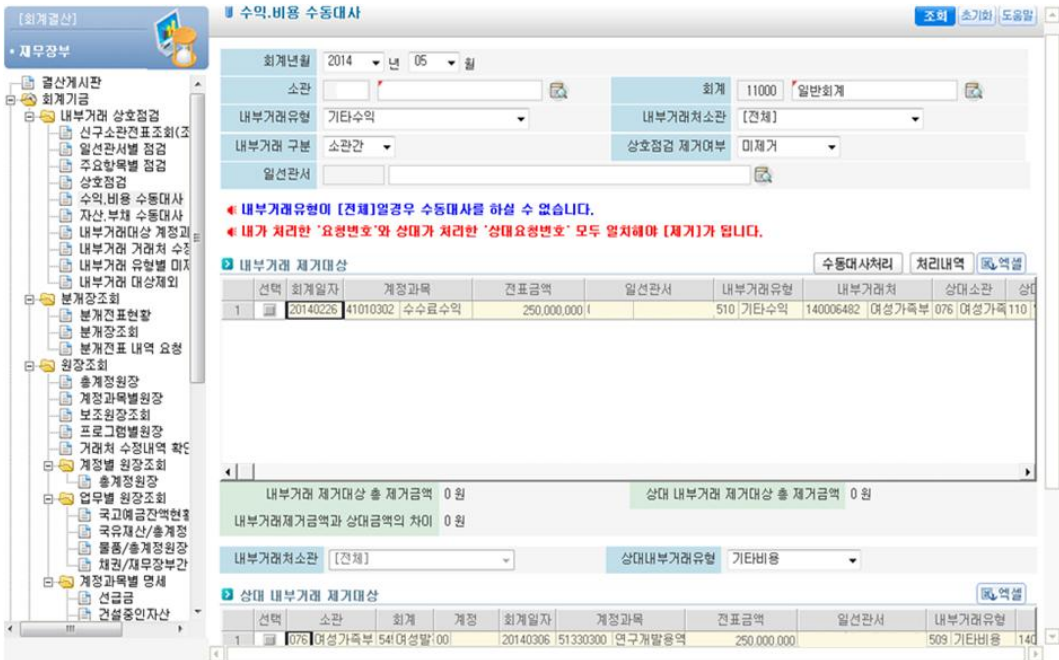
### (3) 거래처 오류 건에 대한 수동대사 처리

사업담당자인 내상호 주무관은 내부거래 미제거 내역 검토 중 거래처가 잘못 입력된 미제거 건에 대해서 거래처 수정을 수행하여야 하나 수동대사로 처리하였다.

수동대사는 1:1 대응 전표가 아니거나 또는 회계일자 차이가 커서 제거되지 않는 건의 경우 시스템 상 자동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동으로 짝을 지어주는 업무이다.

따라서 거래처 오류 또는 계정과목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거래처수정이나 계정과목 수정을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방법이나, 수동대사 처리하는 경우에는 내부거래가 미제거된다.

그림 2-15 | 거래처 오류 건에 대한 수동대사 처리



내상호 주무관은 내부거래 자동대사를 위해 해당 수수료수익의 거래처를 여성가족부 일반회계에서 여성가족부 여성발전기금으로 수정하여야 하나, 해당 거래처 오류 건에 대해 수동대사 처리하여 내부거래가 미제거 되었다.

표 2-10 | 거래처 불일치

발생소관	발생회계	거래처소관	거래처회계
통계청	일반회계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여성가족부	여성발전기금	통계청	일반회계

내상호 주무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발생시킨 거래의 소관회계와 상대방이 발생시킨 거래처 소관회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수동대사가 가능하나, 상대 거래처인 여성가족부에서는 발생은 기금, 거래처는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수동대사를 수행할 수 없다.

수동대사의 경우 거래 당사자가 각각 동일한 전표에 대해서 수동대사처리를 해야 업무가 완료되므로, 내부거래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수동대사 메뉴에서 조회된 내부거래 제거대상을 수동대사처리하기 전에 거래처 확인 후 일치할 경우 수동대사를 해야 내부거래가 제거될 수 있다. 만약 거래처가 불일치 할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여 올바르게 못한 거래처를 선택한 업무담당자가 거래처를 수정하여 자동대사를 통한 내부거래 제거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결산조정분개란 보고실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의 결과 등을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적절하게 나타내기 위해 결산시점에 수행하는 분개를 말한다.
- ◆ 결산조정분개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 ①회계기간 말에 자산과 부채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재정상태표를 적절하게 기록, ②회계기간 말에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재정운영성과를 파악하여 재정운영표를 적절하게 기록
- ◆ dBrain 시스템 상 결산조정분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 ①주요 결산조정항목에 대하여 입력한 정보관리항목 등을 근거로 결산조정금액을 자동 계산하는 것과 ②결산조정전표 등록 화면을 통하여 결산담당자가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 ◆ 본 장에서는 dBrain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행하는 결산조정분개 관련 오류사례에 대하여 설명하고, 결산조정전표 등록에 따른 오류 사례는 제3장에서 알아보도록 한다.

1. 대손충당금	...	182
2.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	187
3. 재고자산 평가	...	191

## 1 대손충당금

OO부 일반회계에서 미수채권의 합리적 추정에 따른 대손율을 고려하지 않고 미수채권 잔액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으며, 만기가 5년 경과된 채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권보존절차를 통해서 소멸시효를 연장하였다는 사유로 회수가 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동일한 대손설정률을 적용하여, 미수채권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였다.

### (1) 오류의 유형

국가회계기준에 따르면 미수채권, 대여금 등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대손추산액을 산정할 때에는 연령분석법, 채권잔액비례법 및 대손실적률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외에도 기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연령분석법**: 기말 채권잔액을 만기 경과일수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별로 상이한 대손율을 적용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하는 방법인데, 이는 오래된 채권일수록 회수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채권의 만기 경과일수의 장단기에 따라 대손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이다.
- **채권잔액비례법**: 기말 채권잔액 전체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회수불능 채권예상액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말 대손충당금잔액으로 하는 방법이나 채권의 연령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대손율을 적용한다.
- **대손실적률법**: 채권에 대한 과거 대손율을 산정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하는 방법이다.

대손충당금은 채권보존절차 등 행정적 절차에 따라 변동되는 성격이 아니므로,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결산담당자는 연령분석법, 채권잔액비례법 및 대손실적률법 중에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오류에 따른 영향

국가회계기준은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미래의 대손예상액을 추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같은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충당금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의 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기의 비용이 과소계상 되며, 자산이 과대 계상된다.

그림 3-1 | 대손설정기준을 등록

그림 3-2 | 대손충당금 설정

### (3) 점검 방법

결산담당자는 dBrain 메뉴[회계결산>재무결산>회계기금>결산조정분개>대손기준율등록]에서 대손충당금 설정방법과 대손설정기준율을 등록하므로 이에 대한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대손 설정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휴·폐업, 소멸시효 연장, 불납결손 신청 등 특수한 상황의 채권에 대해서는 회수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대손율을 적용하여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TIP> 이행기한도래 미수채권 내역 조회

결산담당자는 [채권 > 채권마감 > 일선관서마감 > 이행기한도래 미수채권 내역] 메뉴에서 '발생사유별 현황' 탭의 자료를 조회하여 별도의 대손율을 적용해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해야 하는 채권이 있는지 참고할 수 있다.



#### (4)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미수채권 및 용자금 대손충당금 과소 설정(2011회계연도)

OO부 일반회계에서 미수채권의 합리적 추정에 따른 대손율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채권에 대하여 채권 잔액 대비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에 따라 대손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이 13억 8,502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또한 OO부 XX기금에서 기관별로 재정상태에 따른 신용등급을 고려하여 용자금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한 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결과 대손충당금(투자자산의 차감계정)이 12억 63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391p 중>

○ 국세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설정(2012회계연도)

OO부 일반회계에서 채권의 회수기일이 5년 이상 경과하여 회수가능성이 낮은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국세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하게 설정하여 미수채권대손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이 66억 4,928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기타유동부채(유동부채)가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징수활동표상 국세수익과 미수국세의 증감(처분)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327p 중>

○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 과대 설정(2013회계연도)

OO부 일반회계에서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시 대손충당금 기초금액을 환입한 후 기말금액을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금액을 환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도에 설정되어야 하는 대손충당금 전체를 대손상각비로 인식하여 미수채권대손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과 대손상각비(비배분비용)가 각각 15억 2,655만원이 과대 계상되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I 150p 중>

○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설정(2015회계연도)

OO부 일반회계에서 미수채권대손충당금을 계상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설정금을 산정하면서 사업자의 휴폐업으로 인해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채권에 대하여 일반적인 채권과 동일한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적용하여 미수채권대손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이 29억 8,521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대손상각비(비배분비용)가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I 142p 중>

○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2016회계연도)

OO부 일반회계에서 대손충당금을 산정하면서 기간경과 및 채권 성질별 대손경험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한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미수채권 대손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과 대손상각비(비배분비용)가 각각 67억 5,311만원, 67억 4,062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기타수익(비배분수익)이 1,249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452p 중>

○ 대손충당금 과대 계상(2017회계연도)

OO청 일반회계에서 기말 미수채권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정하면서, 티센크루프해양시스템(ThyssenKrupp Marine Systems) 채권은 금융기관의 보증서가 확보되는 등 대손가능성이 낮은데도 전액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대손경험률을 높게 반영하여 미수채권대손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 및 대손상각비(비배분비용)가 각각 826억 2,063만 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651p 중>

## 2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OO청 일반회계에서 비정규직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면서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은 제외한 채 기본급만 포함시켜 산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가 과소 계상되었다.

### (1) 오류의 유형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추정하여 부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표 3-1 ■ 퇴직급여제도와 퇴직급여충당부채 결산조정분개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충당부채 결산조정분개
퇴직 연금 제도	확정 급여형	미래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추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 결산조정분개를 수행하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금액은 평가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계상
	확정 기여형	금융기관에 약정된 금액 납입 시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되므로 퇴직급여 관련 결산조정분개는 나타나지 않음
퇴직금제도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대상자의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 결산조정분개를 수행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미래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추정한 금액을 퇴직금추계액으로 설정하며,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법정 최저한의 기준<sup>20)</sup>을 따라야 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 금액은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므로 상기 감사원 지적사례처럼 퇴직금추계액 산정 시 수당 및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으로 계산할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20) (최근 3개월 임금/최근 3개월 일수) \* 30일 \* (총 근무일수/365일)

## (2) 오류에 따른 영향

dBrain 상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 회계처리는 결산담당자가 퇴직금 추계액(기말 충당금 잔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추계액을 과소 설정하는 경우 퇴직급여가 과소 계상되며, 퇴직급여충당부채 금액 역시 과소 계상된다.

- 퇴직금 회계처리 사례 I (퇴직금추계액 80,000, 기초잔액 100,000, 기중지급액 30,000)

구분	차변	금액	대변	금액
기중 지급 시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	국고수입	30,000
추계액 입력 시	퇴직급여	1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

- 퇴직금 회계처리 사례 II (퇴직금추계액 50,000, 기초잔액 100,000, 기중지급액 30,000)

구분	차변	금액	대변	금액
기중 지급 시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	국고수입	30,000
추계액 입력 시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0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20,000

그림 3-3 |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회계년월: 2013 년 12 월

회계: 11000 일반회계

대표번호: 00017553

작업순서: 기말충당금잔액입력 > (프로그램/단위사업별 퇴직급여 배부) > 저장 > 전표생성

기초충당금잔액(A): 전년도 퇴직충당부채잔액

퇴직금 지급액(B): 당기 퇴직급여지급액

당기인식당기충당금설정액(퇴직급여)에 대해 프로그램별 배부가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단위사업별 퇴직급여 배부"에서 프로그램/단위사업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음

대표생성 대표취소

기초충당금잔액(A): 20,000

퇴직금 지급액(B): 615,192,010

퇴직급여충당부채설정액(C): 715,172,010

기말충당금잔액(D=A-B+C): 100,000,000

프로그램/단위사업별 퇴직급여 배부

(단위: 원)

번호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당기충당금설정액(=퇴직급여)
1	0000	0000	400,000,000
2	국고관리	국가회계제도지원	315,172,010

### (3) 점검 방법

퇴직금추계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퇴직, 신규입사 등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당 등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지급할 금액을 기준으로 추계액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퇴직급여충당부채 산정시 기본급만 포함함에 따라 부채 과소 계상(2011회계연도)

OO부 일반회계에서 비정규직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면서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은 제외한 채 기본급만 포함시켜 산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가 9,571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1114p 중>

- 퇴직금 중간정산 시 회계처리 오류(2012회계연도)

OO부 일반회계에서 전기의 퇴직금 중간정산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감소분을 회계처리하면서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으로 계상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비배분수익)이 19억 393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비배분수익)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876p 중>

- 퇴직급여충당부채 과대 계상(2014회계연도)

OO회 XX기금에서 퇴직급여지급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 및 퇴직급여(관리운영비)가 각각 2,517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I 256p 중>

○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상 오류(2016회계연도)

OO부 XX기금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면서 퇴직금 추계액을 잘못 계산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가 1억 2,124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퇴직급여(프로그램명: 장병보건및복지향상)가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그리고 2015회계연도에 과소 설정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본 회계연도에 추가로 설정하면서 퇴직급여로 잘못 회계처리하여 퇴직급여(프로그램명: 장병보건및복지향상)가 114억 5,525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전기오류수정 손실(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또한 외부 금융기관에서 운용 중인 퇴직연금에 예치한 금액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인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예치금은 기타투자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퇴직보험예치금(장기충당부채의 차감계정), 기타투자자산(투자자산)이 각각 168억 6,674만원, 32억 8,278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기타국고금(유동자산)이 201억 4,952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452p 중>

○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 오류(2017회계연도)

OO부 XX회계에서 비공무원의 급여지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별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2017년 12월 중 담당업무 또는 근로시간이 변경된 직원의 퇴직금이 중복 생성되었는데도 이를 수정하지 아니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가 7억 1,075만 원 과대 계상되었으며, 퇴직급여(프로그램명:국민과함께하는우편서비스)가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470p 중>

### 3 재고자산 평가

OO부 OO특별회계에서 재고자산에 대하여 평가손실을 미계상하여 재고자산이 과대 계상되고, 평가손실이 과소 계상되었다.

#### (1) 오류의 유형

재고자산은 취득 시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며, 기말시점에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재고자산의 단가는 품목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량은 실지재고수량으로 한다. 국가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회계실체는 제한적이다.

표 3-2 ■ 재고자산 보유 국가회계실체(예시)

구분	종류
양곡관리특별회계	미곡, 잡곡, 기타부산물, 포장재 등
조달특별회계	6대원자재(유연탄, 우라늄, 철광석, 동광석, 아연, 니켈), 희귀금속 등 비축물자
우편사업/우체국예금	저장품, 미착자산
경찰병원/국립병원/국립재활원	의약품, 진료재료, 의료소모품
공무원연금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군인복지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상품, 식재료, 원재료, 저장품, 용지, 미성공사(분양주택), 분양주택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지관리기금	비축농산물, 농산물 종자, 조성토지
축산발전기금	생장물 및 정액
수산발전기금	비축재고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협동화용 자산, 아파트형 공장, 중소기업전용산업단지, 미성공사(단지)

재고자산 보유 실체는 결산 시 재고자산을 평가하여 장부가액보다 시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평가손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 (2) 오류에 따른 영향

dBrain 상 재고자산 관련 회계처리는 결산담당자의 재고자산 인식 및 재고자산 평가를 통하여 자동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결산시점에 시가 평가를 통하여 평가손실 인식 여부를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

결산시점에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으나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재고자산이 과대 계상되며, 평가손실이 과소 계상된다.

- 재고자산 관련 회계처리 사례(기초: 0, 기중 구입: 10,000, 기말 평가 8,000)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재고자산 구입	재화판매원가	10,000	국고수입	10,000
재고자산 인식(결산 시)	재고자산	10,000	재화판매원가	10,000
재고자산 평가(결산 시)	기타평가손실	2,000	재고자산	2,000

그림 3-4 ■ 재고자산 인식

선택	일련번호	계정과목명	품종명	기말재고자산수량	단위당원가
1		합 계		8	228,176.
2	AC00000000	상품	의약품	1	132,715.
3	AC00000000	기타의저장품	방사선재료	1	5.

그림 3-5 재고자산의 평가

일련번호	계정과목	종류명	기말재고 자산수량	수입단위코드	단위당평가	결산조정금액	결산조정후금액
1	합 계					1,834,925,480,082	1,415,067,314,990
2	AC000000001	원재료	2009년산 일반배	16,937	톤	1,182,000	20,019,534,000
3	AC000000002	원재료	2009년산 정부인수 증	1	톤	108,735,900,092	108,735,900,092
4	AC000000003	원재료	2006년및2007년산 일	278,452	톤	1,182,000	329,130,264,000
5	AC000000004	원재료	2008년산및2009년산	545,661	톤	1,182,000	644,971,302,000
6	AC000000005	원재료	2010년산 일반배	455,942	톤	1,182,000	538,923,444,000
7	AC000000006	제품	2007년산 미전 일반배	9,039	톤	1,832,000	16,559,448,000
8	AC000000007	제품	2008년및 2009년산 등	7,034	톤	1,832,000	12,886,288,000
9	AC000000010	원재료	2005년 및 2006년산	1,372	톤	1,608,000	2,206,176,000

### (3) 점검 방법

재고자산을 소유한 회계실체는 결산시점에 꼭 시가 평가를 수행하여 장부가액보다 시가가 하락한 경우 평가손실을 인식해야 한다. dBrain 사용 회계실체는 해당 평가금액을 dBrain을 통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 (4)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재고자산 평가손실 미계상에 따른 자산 과대 계상(2011회계연도)

OO부 XX회계 및 XX기금에서 일반 쌀, 일반 벼, 콩 등 재고자산에 대하여 평가손실을 미계상하여 재고자산(유동자산)이 계 267억 494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545p 중>

- 재고자산 평가손실 미반영(2012회계연도)

OO부 XX기금에서 재고자산 중 시가(순실현가능가액)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자산에 대해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아 재고자산(유동자산)이 12억 7,785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평가손실(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488p 중>

- ◆ dBrain을 통하여 자동분개가 생성되는 현재의 국가회계시스템에서 결산담당자가 직접 입력하는 결산조정전표 등록은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자동분개 생성이 어려운 항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된다.
- ◆ 앞서 3장에서 살펴본 dBrain 시스템으로 자동 산출되는 결산조정 분개는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하면 기중에 발생한 분개의 정보관리 항목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정보관리항목 값이 잘못 입력되어 있지 않는 한 결산담당자의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 ◆ 하지만 결산담당자가 결산조정전표 등록 화면을 통하여 직접 입력하는 결산조정전표 등록의 경우에는 조정전표 등록 오류 및 관리 미비 등 결산담당자의 오류로 재무제표의 왜곡이 일어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 ◆ 본 장에서는 결산조정전표 등록과 관련된 오류사례를 제시하고, 동일한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1. 정보관리항목 등의 입력 오류	...	195
2. 전기 결산조정전표 관리	...	200
3. 발생주의 계정과목 인식 오류	...	205
4. 소송충당부채 설정 오류	...	209
5. 자산 감액여부 판단	...	212

# 1 정보관리항목 등의 입력 오류

2013년말 기준으로 회수기일이 1년 이내인 대여금은 단기대여금으로 적절하게 유동성대체 되었으나, 동 단기대여금에 대한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은 유동성대체를 수행하지 않아 단기용자보조원가충당금이 과소 계상되고, 동 금액만큼 장기용자보조원가충당금이 과대 계상되었다.

## (1) 오류의 유형

결산조정전표의 등록은 '결산조정분개 등록' 화면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시스템을 통한 결산조정분개와는 달리 결산담당자가 직접 분개를 입력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결산담당자는 결산조정전표의 산출근거를 문서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결산조정전표 등록 시 유의사항 중 하나는 정보관리항목을 제대로 입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계정과목마다 필수로 입력하여야 하는 정보관리항목이 있으며, 이를 올바르게 입력하지 않는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4-1>의 ③번 부분에서 정보관리항목을 입력할 수 있으며, 필수로 입력하여야 하는 정보는 '필수여부'에 'Y'로 표시된다.

그림 4-1 | 결산조정전표 등록

결산조정전표 등록

조회 | **입력** | 저장 | 삭제 | 초기화 | 도움말 | 닫기

회계년월: 2013 년 | 전표번호: 00000030 ⑤

소관: | 회계: 11000 | 일반회계

작성자: 회계결산

① 적요 | ⑥ 환원여부: N

작업순서 : 적요입력 > [추가 > 계정과목선택 > 차대변구분선택 > 금액입력 > 프로그램, 단위사업 입력 > 통제계정과목조회

> 관리항목내역 입력 | ..반복.. > 저장

② 분개내역 (단위:원)

행번호	계정과목	차대변구분	차변금액	대변금액	프로그램코드	프로그램명
1	기타의기타순자산의증가	대변	0	500,000,000		
2	건설중인건물/일반유형자산	차변	500,000,000	0		

④ 차변금액과 대변금액 합계가 일치해야함

합계	500,000,000	500,000,000
----	-------------	-------------

③ 관리항목내역

순번	관리항목명	관리항목값	관리항목값명	필수여부
1	순자산분류코드	03	순자산조정	Y
2	거래처코드			Y
3	거래처분류코드			Y

본 사례의 감사원 지적사항은 대여금에 대한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결산 조정전표 등록으로 인식하면서 정보관리항목에 만기일 정보를 잘못 입력했기 때문에 발생한 지적사항으로, 대여금은 만기일 정보에 따라 유동성대체가 이루어졌으나 관련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은 만기일 정보가 없기 때문에 유동성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오류이다.

결산 시 결산조정전표 등록으로 인식한 계정과목도 기중 업무를 통해 발생한 계정과목과 동일하게 정보관리항목을 올바르게 입력하였다면, 향후 dBrain 시스템을 통한 결산조정분개 시 자동으로 유동성대체 분개가 발생하게 된다.

## (2) 오류에 따른 영향

dBrain 시스템을 통해 자동 계산되는 결산조정분개는 정보관리항목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산담당자가 결산조정전표 등록 시 정보관리항목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는 경우 수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 정보, 유동성대체가 필요한 대여금, 차입금, 임차보증금의 만기일 정보 등이 '필수여부'에 'Y'로 표시되는 정보관리항목이므로 이를 유의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그림 4-2>와 같이 '기타' 또는 '99991231'과 같이 의미없는 정보를 입력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림 4-2 | 정보관리항목 오류

회계일자	2014-04-01	소관		전표번호	
회계	11000 일반회계	전표유형	일반전표		
거래코드	취득	거래일자	2014-04-01	작성일자	2014-04-01
작성자		일선관서		행정관서	
전표총금액	45,000,000	단위업무	검수_조달	발생업무구분	조달관리
예산과목	440-00 무형자산/무형자산				
전기여부	전기완료				

행번호	계정과목	적요	결의내용	차변금액	대변금액	분
1	16040302 장기임차보증금-국유			45,000,000	0	일반·지
2	11090600 선급금			0	4,500,000	일반·지
3	21110205 기타의미지급금			0	40,500,000	일반·지

일련번호	관리항목명	관리항목값	참조값
1	거래처코드		
2	거래처분류코드		
3	자산번호		
4	자산명		
5	소재지	기타	
6	임차일	20140401	
7	만기일	기타	

### (3) 점검 방법

결산담당자가 등록한 결산조정전표는 '결산조정전표현황 조회'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결산담당자는 결산조정분개 마감 전 해당 화면에서 정보관리항목 등이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오류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4-3 | 결산조정전표현황 조회

조정전표 번호	계정과목코드	계정과목명	반영전 금액		조정 금액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차변 금액	대변 금액
1	22090400	금융리스부채	1,925,490,879	610,725,250	0	0
2	22090400	금융리스부채	1,925,490,879	652,763,098	0	0
3	51270401	금융리스이자비용	0	0	1,973,524	0
4	13150100	전기통신기기/일반유형자산	3,883,462,144	261,410,179	42,037,848	0
5	51130400	운용리스료	2,386,416,280	0	-25,464,480	0
6	22090400	금융리스부채	1,925,490,879	629,272,142	0	0
7	22090400	금융리스부채	1,925,490,879	825,465,968	0	0
8	51270401	금융리스이자비용	1,973,524	0	11,092,772	0
9	13150200	사무용기기/일반유형자산	14,532,167,755	376,498,336	196,193,826	0
10	51130400	운용리스료	2,360,951,800	0	-74,684,940	0
11	22090400	금융리스부채	1,925,490,879	762,673,800	0	0
12	22090400	금융리스부채	1,925,490,879	6,014,082,756	0	0
13	51270401	금융리스이자비용	13,866,296	0	319,306,784	0
14	13150100	전기통신기기/일반유형자산	3,925,499,992	261,410,179	5,251,408,956	0
15	51130400	운용리스료	2,286,266,860	0	-1,951,984,440	0
16	51130400	운용리스료	334,282,420	0	-197,819,800	0
17	22090400	금융리스부채	1,925,490,879	4,381,405,100	0	0
18	51270401	금융리스이자비용	333,173,080	0	46,660,384	0
19	11010204	국고예금	11,216,916,007	11,216,821,061	-93,000	0

### (4)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수형자를 위한 작업장려금의 유동성 분류 오류(2013회계연도)

OO부 XX회계에서 수형자 중 1년 이내에 퇴소 예정인 수형자들에게 지급할 직업장려금을 기타유동부채로 계정대체하지 않고 기타장기충당부채로 분류하여 기타유동부채(유동부채)가 32억 2,292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기타장기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가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I 169p 중>

○ 장기융자금 유동성 대체 오류(2014회계연도)

OO부 XX특별회계에서 장기융자금을 유동성대체하면서 단기융자금으로 과다하게 대체하여 단기융자금(유동자산) 및 단기융자보조원가총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이 각각 679억 670만원, 1억 8,176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장기융자금(투자자산) 및 장기융자보조원가총당금(투자자산의 차감계정)이 각각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I 200p 중>

○ 임차보증금 유동성 대체 오류(2015회계연도)

OO청 일반회계에서 전국 일선관서의 관사 관련 임차보증금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성 구분을 한 결과, 임차보증금(유동자산)이 8억 728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장기임차보증금(기타비유동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I 311p 중>

○ 장기대여금 및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 누락(2016회계연도)

OO처 OO기금에서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OO기금 예탁액을 정부내단기예탁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정부내장기예탁금으로 처리하여 단기대여금(유동자산)이 500억원 과소 계상되었고, 장기대여금(투자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또한, 2017년 5월에 조기상환 예정인 OO기금 차입금을 유동성정부내장기예수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정부내장기예수금으로 처리하여 유동성장기차입부채(유동부채)가 70억원 과소 계상되었고, 장기차입금(장기차입부채)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717p 중>

○ 임대료미지급금 유동성 대체 누락(2017회계연도)

OO부 OO회계에서 전라선·경전선의 임대형 민자사업(BTL:Build-Transfer-Lease)과 관련하여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해야 할 임대료 미지급금은 유동성 대체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하여 미지급금(유동부채)이 887억 760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장기미지급금(기타비유동부채)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기타유동부채현재가치할인차금(유동부채의 차감계정)이 408억 7,054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기타비유동부채의 차감계정)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968p 중>

## 2 전기 결산조정전표 관리

전기에 OO부 XX회계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과소 계상된 보조비와 미지급금을 결산조정전표로 반영하였다.

당기에 OO부 XX회계에서 보조비를 지급하면서 전기 결산조정분개로 계상했던 미지급금이 제거되지 않아 당기에 보조비와 미지급금이 과대 계상되었다.

### (1) 오류의 유형

환원 여부를 'N'으로 선택하여 결산조정전표로 등록한 분개는 결산조정전표 등록 이외의 기중 수입·지출 등의 업무로는 자동 상계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결산담당자는 결산조정전표 등록 시 차기에 환원시켜야할 분개인지 잘 판단하여 환원 여부를 입력해야 하며, 전기에 입력한 결산조정전표에 대해 당기에 환원 분개가 제대로 발생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전기에 결산조정전표 등록한 분개와 연동된 추가 오류가 당기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전기결산조정전표의 환원여부 'N' 선택 시 회계처리(잘못된 회계처리)

구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전기 (결산조정전표)	부채인식	보조비	10,000	미지급금	10,000
당기	보조비 지급	보조비	10,000	국고수입	10,000

상기 분개를 살펴보면 보조비와 관련하여 전기에 인식한 미지급금에 대하여, 당기 지급 시 미지급금을 차감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처리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기결산조정전표 입력 시 환원여부를 'Y'가 아니라 'N'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이다.

### (2) 오류에 따른 영향

해당 오류는 결산담당자가 결산 시 등록했던 결산조정전표보다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입력하는 결산조정전표에서 많이 발생한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분개형태로 중앙관서에 전달되고 결산조정전표 등록으로 입력하게 되는데, 입력 시 환원 여부를 잘못 선택하고 이후에 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그 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감사원 지적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 (3) 점검 방법

결산조정분개 입력사항은 환원분개가 필요한 결산조정분개와 환원분개가 필요하지 않은 결산조정분개로 구분할 수 있다. 발생주의에 따른 수익·비용항목이나 유동성대체와 같은 결산조정분개 사항은 기존의 업무처리 일관성을 위하여 환원분개를 수행하게 된다.

#### ○ 환원분개 대상 결산조정분개(유동성대체)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유동성대체('17.12.31)	임차보증금	10,000	장기임차보증금	10,000
환원분개('18.1.1)	장기임차보증금	10,000	임차보증금	10,000
매각('18.3.31)	국고이전지출	10,000	장기임차보증금	10,000

임차보증금은 모두 장기임차보증금으로 관리가 되며, 이에 따라 매각 시 '장기임차보증금'으로 분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기일 기준('18.3.31)으로 유동성을 판단하여 '임차보증금'으로 재무제표 상 보고했던 계정과목을 환원분개를 통하여 다시 '장기임차보증금'으로 돌려준 것이다.

#### ○ 환원분개 비대상 결산조정분개(투자증권평가)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투자증권취득('17.10.31)	투자증권	100,000	현 금	100,000
투자증권평가('17.12.31)	투자증권	10,000	투자증권평가이익	10,000
매각('18.3.31)	현 금	120,000	투자증권	110,000
	투자증권평가이익	10,000	투자증권처분이익	20,000

투자증권평가이익은 업무 상 처분 시 까지 관리되는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결산조정분개를 환원처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결산조정분개에는 환원처리를 해야 하는 분개와 하지 않아야 하는 분개로 구분되는데, 시스템을 통한 결산조정분개의 경우에는 환원 여부까지 모두 자동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결산조정전표 등록의 경우에는 결산조정전표를 등록하는 결산담당자가 반드시 환원여부를 선택하여야 한다.

그림 4-4 | 결산조정전표 등록

<그림 4-4>의 '⑥ 환원여부'를 'N'으로 선택하면 환원분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Y'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환원분개가 차기 회계연도에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결산담당자는 결산조정전표 등록 시 환원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야 한다.

- 상기 오류사례 환원여부 'Y' 선택 시 회계처리(올바른 회계처리)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전기 (결산조정전표)	부채인식	보조비	10,000	미지급금	10,000
	환원분개	미지급금	10,000	보조비	10,000
당기	보조비 지급	보조비	10,000	국고수입	10,000

따라서 상기 오류사례의 경우 전기결산조정전표 등록 시 환원 여부를 'Y'로 선택해야 올바른 회계처리가 이루어진다. 만약 전기에 착오로 환원 여부를 'N'으로 선택하였다면 당기에 결산조정분개 등록을 통해 환원 분개를 수기로 입력해 주어야 한다.

#### (4)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기초 환원분개 회계처리 오류(2012회계연도)

OO청 일반회계에서 담당자 오류로 발생한 기초 환원분개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잘못 회계처리하여 지급임차료(프로그램명: 공능원관리 등) 및 기타 순자산의증감(조정항목)이 각각 5,905만원, 4,063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지급임차료(비배분비용)가 1,842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906p 중>

- 승소하거나 지급의무를 이행한 소송사건에 대한 충당부채 미제거(2012회계연도)

OO부 XX회계에서 본 회계연도 이전에 기타장기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로 인식하였던 소송사건이 확정되어 승소하거나, 패소하여 소송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기타장기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를 환입하지 않아 기타 장기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가 3억 9,499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기타수익(비배분수익)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1035p 중>

- 농업자금 이차보전 상환 관련 회계처리 오류(2013회계연도)

OO부 XX회계에서 전년도에 미지급한 농업자금 이차보전액을 당기에 상환하면서 비용으로 잘못 처리하여 기타이전비용(프로그램명: 농가경영안정)과 기타순자산의증감(조정항목)이 각각 880억 3,752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I 193p 중>

○ 지급 완료된 미지급금 미제거 오류(2016회계연도)

OO부 XX특별회계에서 대구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공사 등 공사 미지급금의 지급이 완료될 때, 미지급금을 제거하지 않고 이를 비용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여 미지급금(유동부채)이 78억 27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전기오류수정이익(비배분수익)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또한, OO부 XX특별회계에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미지급금을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미지급금(유동부채)이 673억 6,958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전기오류수정이익(비배분수익)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 627p 중>

○ 납부기일이 도래한 금융리스료 관련 회계처리 오류(2017회계연도)

OO부 XX회계에서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관련하여 2016 회계연도에 선지급한 금융리스료는 본 회계연도에 납부기일이 도래 하였으므로 선지급한 금융리스료를 제거하여야 하는데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여 선급금(기타유동자산)이 8억 2,262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전기오류수정이익(비배분수익)이 7억 6,591만 원 과대 계상되었으며 금융리스이자비용(프로그램명: 여권업무선진화)이 5,671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 588p 중>

### 3 발생주의 계정과목 인식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1회 이자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발생주의에 따르지 않고 현금주의에 따라 비용을 계상하고 있어 발생주의 기간 경과분에 해당하는 미지급비용이 과소 계상되었다.

#### (1) 오류의 유형

발생주의에서는 비용과 수익을 현금의 유출입과는 무관하게 발생 사실에 따라 인식한다. 따라서 현금의 유출입 시점보다 늦게 수익·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수수익, 선급비용을, 빨리 수익·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수수익, 미지급비용을 결산 시점에 인식해야 한다.

선급비용, 선수수익의 경우는 유효일자 등 정보관리항목을 통해 dBrain 상 자동으로 아래와 같은 결산조정분개가 생성된다.

○ 선금지급 [1년 임차료('17. 10. 1 ~ '18. 9. 30)]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현금 지출 시	임차료	100,000	국고수입	100,000
결산조정분개	선급임차료	75,000	임차료	75,000

결산조정분개를 통해서 '17회계연도의 비용은 현금 지출분인 100,000원이 아니라 실제 3개월 임차사용분인 25,000원만 인식된다.

선급비용, 선수수익과 같이 현금 유출입이 먼저 일어나는 경우에는 dBrain을 통하여 발생주의 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미수수익은 현금 유입이 늦게 발생하지만 징수결의 업무를 통하여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미지급비용<sup>21)</sup>, 미지급금은 현금 유출이 비용 인식 시점보다 늦을 뿐 아니라 현금 유출 전에 비용을 인식할 수 있는 별도 업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산담당자가 다음과 같이 결산조정전표 등록으로 따로 반영해야 하므로 비용과 부채를 누락하기 쉽다.

<sup>21)</sup> 미지급이자비용은 '결산조정분개 진행 및 등록'에서 정보관리항목으로 입력된 유효기간 시작 및 종료일자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결산조정분개 생성 가능

○ 미지급금 [지출의무 발생한 기타민간보조비]

구분	차변	금액	대변	금액
결산조정분개	기타민간보조비	100,000	미지급금	100,000

**(2) 오류에 따른 영향**

부채가 인식되지 않음에 따라 비용과 부채가 모두 과소 계상된다.

**(3) 점검 방법**

결산담당자는 과거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중 ‘발생주의 계정 과목 인식과 관련된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해당 중앙관서에 동일한 사유로 인식해야 할 미지급비용 또는 미지급금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아직 지출되지 않은 비교환거래 비용 중 비용 인식시기가 도래하여 비용과 부채로 계상해야 할 건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TIP> 비교환거래 비용 인식 기준**

법령 등에 따른 지출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어(의무이행을 위한 지출을 승인하였고, 거래 상대방이 수급조건을 충족한 경우) 그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적용사례 3~6 참조)



사례	비용 인식시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보조금 교부결정 시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	배상금 지급청구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출연금	출연금 협약체결 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른 국제부담금	부담금 협약체결 시

#### (4)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사회보험미지급금 미인식으로 부채 과소 계상(2011회계연도)

OO부 XX기금에서 본 회계연도 말 현재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급여 등을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 사회 보험미지급금(유동부채)이 45억 4,624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656p 중>

- 판결이 확정된 소송사건에 대한 미지급금 계상 누락(2012회계연도)

OO부 일반회계에서 본 회계연도 중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은 소송가액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아 미지급금(유동부채)이 62억 7,660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보전비가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400p 중>

- 수선유지비 누락(2013회계연도)

OO청 일반회계에서 '남해청 여수 카모프 헬기 기체 검사정비 용역'과 관련하여 미지급한 용역비를 수선유지비 및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기타의미지급금(유동부채)이 10억 8,912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기타일반 유형자산수선유지비(프로그램명: 장비관리)가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 되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I 354p 중>

-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관련 부채 누락(2014회계연도)

OO부 XX회계에서 대중교통 지원 등을 목적으로 본 회계연도에 교부가 확정된 보조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비용과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보조비(프로그램명: 광역교통정책, 지역개발, 도시 정책, 산업단지개발및지원)가 2,005억 5,288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기타유동부채(유동부채)가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I 217p 중>

○ 최소운영수익보장 관련 미지급금 계상 누락(2015회계연도)

OO부 XX회계에서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영수익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과 관련하여 본 회계연도에 지급이 확정된 금액을 비용과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민간보조비(프로그램명: 민자도로건설및관리)가 629억 5,400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미지급금(유동부채)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I 232p 중>

○ 미지급비용 계상 누락(2016회계연도)

OO부 XX기금에서 수수료, 각종 공공요금, 수당 등을 발생시점에 비용 처리하지 않고 납부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여 미지급비용(유동부채), 전기료, 급여, 기타수수료, 국내교육비, 공공요금이 각각 3억 4,856만원, 1억 1,762만원, 1억 7,096만원, 3,058만원, 1,583만원, 1,357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또한 OO부 일반회계에서 본 회계연도에 퇴직한 인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미지급액을 비용과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급여와 미지급비용(유동부채)이 각각 1억 1,757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363p 중>

○ 임차료 미지급금 계상 누락(2017회계연도)

OO부 XX회계에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해 건물을 임차하면서 본 회계연도 임차료 중 지급한 임차료와 관리비만 비용으로 인식하고, 미납한 임차료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지급임차료(프로그램명: 인도적 문제 해결)와 기타유동부채(유동부채)가 각각 3억 9,896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607p 중>

## 4 소송충당부채 설정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패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사건에 대해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아 소송충당부채와 소송충당부채전입액이 과소 계상되었다.

### (1) 오류의 유형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어 향후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소송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소송에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손실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거나, 손실 부담 가능성 또는 추정액이 감소하였으나 이를 소송충당부채에 반영하지 않아 부채가 과대 계상되는 경우가 있다.

### (2) 오류에 따른 영향

소송충당부채를 적정하게 계상하지 않을 경우 부채, 비용(소송충당부채전입액) 또는 수익(소송충당부채환입액)이 과소, 과대 계상되어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가 왜곡 표시된다.

### (3) 점검 방법

#### ① 일관된 소송충당부채 설정기준 및 근거자료 미비

소송충당부채 계상 시 충당부채 설정기준(1,2심 모두 패소 시 설정 등)을 명확히 하고, 전문가(변호사 등)자문 등 근거자료를 마련하여야 한다. 실제 감사원 검사 시 중앙관서의 합리적인 설정기준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설정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② 소송 관련 지급주체 판단 오류

국방부와 특별회계(기금포함)를 제외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의 소송비용은 법무부 예산에서 일괄 계상하므로, 일반회계의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의 경우 법무부가 지급주체이므로 법무부와 중복하여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③ 환급가산금, 이자 등 소송충당부채 계상누락

소송충당부채는 소송가액이나 판결금액, 청구원금뿐 아니라 패소 시 소송가액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환급가산금 및 이자비용, 예상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설정해야 하므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④ 소송충당부채 최선의 추정치 미반영

재정상태표일과 결산시점 사이에 소송 패소가 확정될 경우 소송충당부채 금액을 실제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과 일치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 소송충당부채 관련 감사원 지적 사례 및 조치방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1장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20선\_13. 소송충당부채 설정액 누락 등 소송충당부채 설정 오류] 참조

## (4) 소송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패소가능성이 높은 소송사건에 대한 충당부채 미설정(2013회계연도)

OO부 XX회계에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사건 중 패소가능성이 높은 소송사건(2건)에 대해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아 기타장기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가 21억 1,856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기타비용(비배분 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I 225p 중>

○ 패소가능성이 높은 소송사건에 대한 충당부채 미설정 오류(2014회계연도)

OO부 일반회계에서 소송사건에 대하여 2심 판결이 확정되어 향후 손실부담 가능성이 높고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여 기타장기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가 16억 4,973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보전비(프로그램충원가)가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I 163p 중>

○ 환급가산금 관련 소송충당부채 과소 계상(2015회계연도)

OO회 일반회계에서 본 회계연도 말 현재 2심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2심에서 환급이 결정된 과징금액은 소송충당부채로 계상되었으나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이 누락되어 소송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가 1억 11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기타비용(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I 266p 중>

○ 소송충당부채 과소 계상(2016회계연도)

OO청 일반회계에서 2심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사건의 경우 향후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에 대한 소송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하여 소송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전입액(관리운영비)이 각각 1,004만원, 963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소송충당부채환입액(비배분수익)이 41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885p 중>

○ 소송충당부채 과대 계상(2017회계연도)

OO회 XX기금에서 이행보증금 반환소송과 관련한 추정손실과 재정상태표일 이후 위 소송의 패소로 확정된 손실금액의 차이를 소송충당부채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소송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 및 기타장기충당부채전입액(비배분비용)이 각각 154억 913만 원, 42억 113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소송충당부채환입액(비배분수익)이 11201억 800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371p 중>

## 5 자산 감액여부 판단

OO부 일반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중 휴폐업으로 인하여 회수불가능한 자산에 대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계상하여 장기투자증권(투자 자산)이 1,084억 8,044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 (1) 오류의 유형

금융자산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금융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감액손실'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국유재산담당자는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유가증권에 대해 회계연도말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며, 감액 대상인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마감업무 메뉴[국유재산>마감>재산관리관별>조정자료입력]에서 감액손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결산담당자는 국유재산담당자와 감액사유 발생 여부를 검토하고, 감액손실 인식이 누락된 경우 국유재산담당자가 감액손실을 인식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점검 방법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출자금 등 유가증권의 경우, 회계연도 말에 국유재산담당자와 감액 인식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가 왜곡 표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3)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출자금 회수가능성 미평가로 인한 자산 과대 계상 오류(2011회계연도)

OO부 특별회계에서 출자한 □□공사가 완전자본잠식상태로서 출자금의 회수가능성이 낮아도 □□공사 출자금에 대한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아 장기투자증권(투자자산)이 1,060억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574p 중>

○ 유가증권 감액손실 미인식 오류(2012회계연도)

OO부 일반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중 일부는 휴업, 폐업, 회생정리절차 폐지 및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데도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아 장기투자증권(투자자산)이 1,290억 9,443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자산감액손실(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326p 중>

○ 유가증권 감액손실 미인식 오류(2014회계연도)

OO부 일반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중 공정가액이 현저하게 하락 하였는데도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장기투자증권(투자자산)이 108억 5,394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자산감액손실(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I 163p 중>

○ 유가증권 감액손실 미인식 오류(2015회계연도)

OO부 일반회계에서 회생절차에 따른 주식 감자로 인해 보유 유가증권의 지분율이 0%가 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장기투자증권(투자자산)이 64억 6,512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자산감액 손실(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I 142p 중>

○ 유가증권 감액손실 미인식 오류(2017회계연도)

OO부 XX기금에서 보유한 주식회사□□ 주식은 해당 기업이 폐업되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도 투자주식에 대한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장기투자증권(투자자산)이 7,059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자산감액손실(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607p 중>

**(1) 배경**

결산조정분개는 결산담당자가 반영해야 하지만 관련 세부내용을 일선관서 담당자가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에 결산담당자는 일선관서담당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공문 등으로 요청해야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적시에 조정분개를 입력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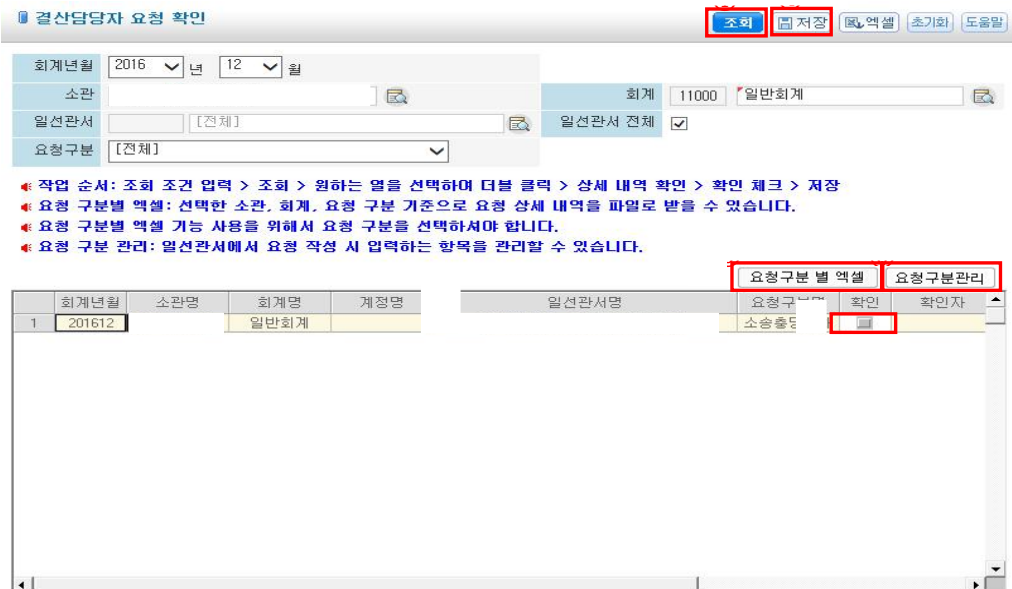
dBrain시스템은 '결산담당자 요청 확인' 및 '일선관서 요청 등록' 메뉴를 신설하여 결산담당자가 적시에 조정분개를 입력하기 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결산담당자 요청 확인**

결산담당자는 '결산담당자 요청 확인'\* 화면의 '요청구분관리'를 통해서 일선관서담당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회계결산 > 재무결산 > 회계기금 > 결산조정분개 > 결산담당자 요청 확인]

그림 4-5 | 결산담당자 요청 확인



### (3) 일선관서 요청 등록

일선관서 담당자는 '일선관서 요청 등록'\* 화면에서 결산담당자가 요청한 자료를 작성하여 엑셀업로드 할 수 있다.

\* [회계결산 > 재무장부 > 회계기금 > 일선관서 요청 등록]

그림 4-6 ■ 일선관서 요청 등록

일선관서 요청 등록

조회 저장 삭제 엑셀 초기화 도움말

회계년월 2016 년 12 월

일선관서

요청구분 소송충당부채 확인여부 N

작업 순서: 조회 조건 입력 > 조회 > 양식서 받기 > 양식서에 작성 > 엑셀 업로드 > 저장  
엑셀 파일에 미리글은 수정하지 마세요.

양식서받기 엑셀업로드

요청구분명	요청일련번호	확인자	확인일	등록자	등록일	소관	일선관서	회계	계
-------	--------	-----	-----	-----	-----	----	------	----	---

요청 구분 설명  
소송충당 부채 업무 자료

- ◆ 결산조정분개 후 내부거래 제거 및 원가집계 등을 거치면 회계실체의 결산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다. 결산보고서는 크게 재무제표와 부속서류로 구분된다.
- ◆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는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로 구성된다.
- ◆ 재무제표와 부속서류는 합계잔액시산표와 정보관리항목을 토대로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부분과 결산담당자가 직접 입력하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본 장에서는 결산보고서 중 결산담당자가 직접 입력하는 부분에 대한 오류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1. 시스템을 통한 결산보고서 생성	...	217
2. 주석(소송)	...	230
3. 주석(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	232
4. 주석(세입·세출외 현금 등)	...	234

## 1 시스템을 통한 결산보고서 생성

결산담당자 나결산 주무관은 결산보고서를 생성하였을 때, 금액이 입력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스템에서 나온 숫자가 틀릴 리 없다고 생각하여 별도의 검토 절차 없이 결산을 마감하였다.

### (1) 보고서생성내역조정 항목

주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별첨 중 서술항목 이외 숫자 부분은 합계잔액시산표와 정보관리항목을 토대로 dBrain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산출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자동 산출되는 항목은 정보관리항목 누락 등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어 결산담당자가 숫자를 검증하여 조정해야 한다.

자동으로 산출되지 않는 항목은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업로드하거나 dBrain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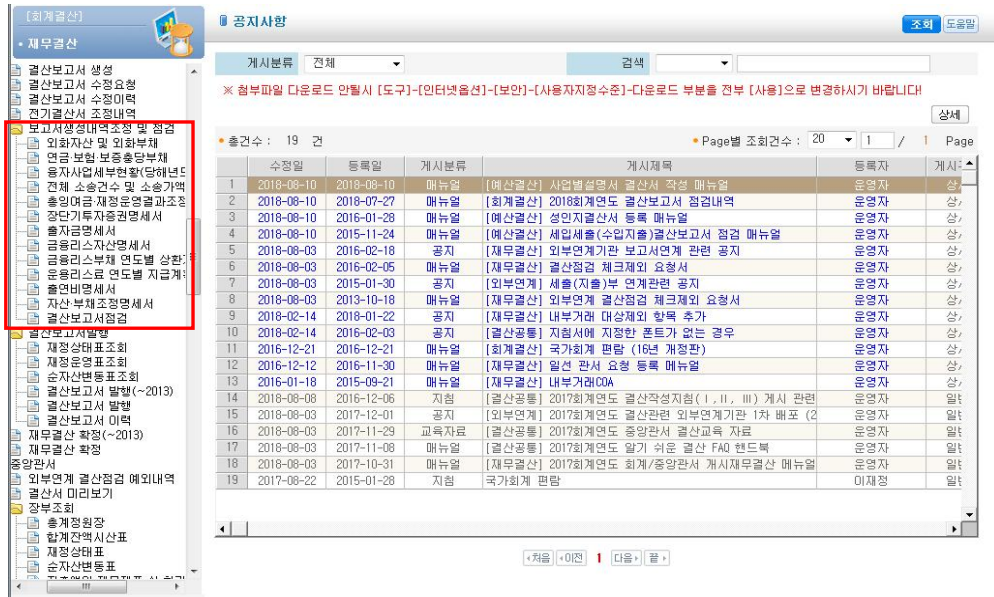
표 5-1 | 보고서생성내역조정 항목

구분	항목	수정 방법	비고**
주 석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직접 입력	중앙관서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엑셀 업로드	회계·기금, 중앙관서
	연금·보험·보증충당부채*	엑셀 업로드	회계·기금
	용자사업세부현황(당해년도)	엑셀 업로드	회계·기금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	직접 입력	회계·기금
필수보충정보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직접 입력	회계·기금, 중앙관서
부속명세서	장단기투자증권명세서	직접 입력	회계·기금
	출자금명세서	엑셀 업로드	회계·기금
	금융리스자산명세서	직접 입력	회계·기금
	금융리스부채 연도별 상환계획	직접 입력	회계·기금, 중앙관서
	운용리스료 연도별 지급계획	직접 입력	회계·기금
	출연비명세서	엑셀 업로드	회계·기금
별첨	자산·부채조정명세서	직접 입력	회계·기금, 중앙관서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연금·보험·보증충당부채,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은 자동산출 자료가 없고, 그 외의 항목은 있지만 적정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 '보고서생성내역조정' 항목은 [회계결산>재무결산>회계기금(또는 중앙관서)>보고서생성내역 및 점검]에 있으며, 회계·기금과 중앙관서의 항목이 다르고 그 차이는 '비고'란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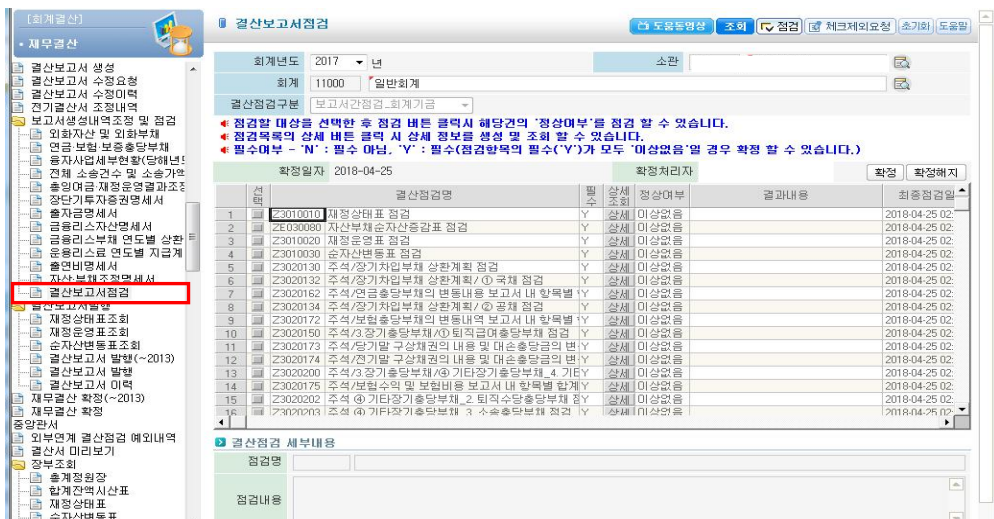
그림 5-1 | 보고서생성내역조정 및 점검(회계 · 기금)



(2) 결산보고서 점검

결산보고서 생성이 모두 완료되고 나면 결산보고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화면에서 모든 항목이 '이상없음'으로 표시되어야 결산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결산보고서 점검에서 모든 항목이 '이상없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결산보고서 수정요청 및 보고서생성내역조정 항목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그림 5-2 | 결산보고서 점검



### (3) 보고서 작성 방법

#### ①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주식)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은 시스템에서 금액이 자동으로 산출되나, 조회된 내역 중 정부내장기차입금에 오류가 있을 경우 직접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다.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은 중앙관서에만 있고 회계·기금에는 없다.

그림 5-3 |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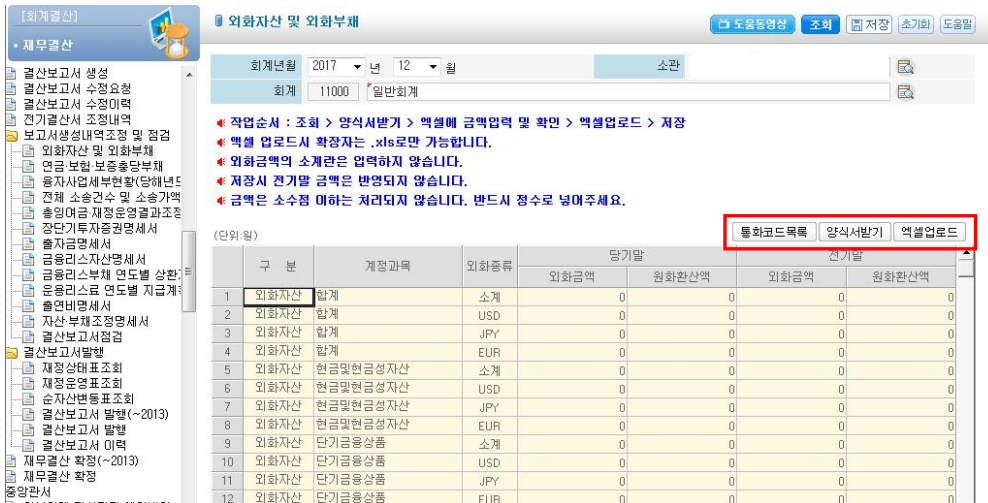
#### ②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주식)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국가회계기준22)에 따라 주식에 해당 명세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메뉴에서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보고서 양식에 맞게 내역을 입력한 후 업로드하여 결산보고서에 반영한다. ‘원화 환산액’은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기준환율, 즉 서울외국환중개(주)의 매매 기준율로 환산한 가액을 기재하며, 외화금액의 소계는 입력하지 않는다. 또한 소수점 이하는 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정수로 기재해야 한다.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주식은 시스템에서 금액이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결산담당자가 ‘양식서받기’를 클릭하여 양식을 엑셀로 다운받아 직접 입력, 저장한 후 ‘엑셀업로드’를 클릭하여 동 파일을 업로드 하여야 한다.

22)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①~⑤ 생략  
 ⑥ 중요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내용, 평가기준 및 평가손익의 내용을 주식으로 표시한다.

그림 5-4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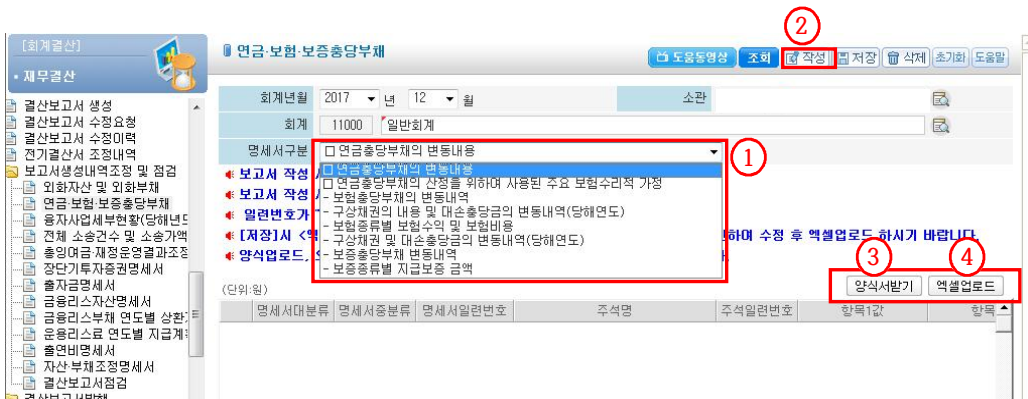
### ③ 연금·보험·보증충당부채(주석)

연금·보험·보증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에 포함)는 국가회계기준<sup>23)</sup>에 따라 주석에 해당 명세를 공시하여야 한다.

연금·보험·보증충당부채 주석은 시스템에서 금액이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결산담당자가 '양식서받기'를 클릭하여 양식을 엑셀로 다운받아 직접 입력, 저장한 후 '엑셀업로드'를 클릭하여 결산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양식서받기'는 '명세서구분'에서 각 항목을 선택한 후 '작성' 버튼을 눌러 화면 하단 시트에 양식이 조회된 다음 실행할 수 있다.

그림 5-5 | 연금·보험·보증충당부채



23)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주석) ① 생략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주석 사항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1.~2. 생략 3. 장기충당부채

#### ④ 용자사업 세부현황(주석)

국회 요청에 따라 용자사업의 세부현황에 대한 보고서도 2013회계연도부터 결산보고서에 공시되고 있으며, dBrain 화면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질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8회계연도부터 추가된 항목으로 조직개편 금액은 별도로 생성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용자사업의 정보를 확인하여 직접 입력을 하고 누락, 중복계상 및 금액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후 오류가 있을 경우, 양식을 다운받아 올바르게 작성한 엑셀파일을 업로드 하면 결산보고서에 수정반영 된다.

그림 5-6 ■ 용자사업세부현황(당해년도)

용자사업명	기초용자금잔액	당기지원액	당기회수액	기말용자금잔액	용자보조원가총액
1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용자	9,656,240,000	9,000,000,000	3,939,080,000	14,717,160,000	-617,70
2 근로복지공단 장기실업자지원	69,847,050	0	69,847,050	0	0
3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	90,783,008,650	0	35,618,862,000	55,164,146,650	-1,376,21
4 능력개발시설장비 비용대부	52,228,880,000	13,075,300,000	5,830,950,000	59,473,230,000	-3,633,37
5 여성고용환경개선용자	8,820,250,000	560,000,000	3,201,120,000	6,179,130,000	-548,98
6 장애인고용시설설치비용용자	24,767,224,000	23,000,000,000	8,557,915,000	39,209,309,000	-1,936.03
7 중소기업고용유지자금대부	643,387,430	0	643,387,430	0	0
8 직업훈련생계비대부	80,825,112,645	40,593,810,180	19,313,648,595	102,105,274,230	-4,461.16
9 고용창출지원사업	43,757,507,800	26,377,068,470	5,263,470,000	64,871,106,270	-2,055.51
10 기타	33,503,592,375	0	33,503,592,375	0	0
11 합계	345,055,049,950	112,606,178,650	115,941,872,450	341,719,356,150	-14,623.40

표 5-2 ■ 용자사업 관련 주석 기재 내역

구분	작성방법	유의사항
(1) 용자사업의 개요	직접작성(서술)	
(2) 용자조건	직접작성(표)	용자사업세부현황과 용자사업명 일치
(3) 용자사업의 규모	자동 산출	
- 용자사업세부현황	엑셀 업로드	(3)의 금액과 합계 금액 일치
(4) 용자보조비용	자동 산출	
(5) 그밖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직접작성(서술)	

### ⑤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주석)

과거 텍스트 입력 방식은 국가통합 시에 자동합산이 불가능하여 2015회계연도부터 데이터 입력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은 시스템에서 처음 조회시 아무런 데이터도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결산담당자가 dBrain 화면에서 활성화 되어있는 셀(하얀색 바탕으로 표시되며 입력 가능)에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해야 한다.

그림 5-7 |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

【회계결산】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

회계년월: 2017년 12월 | 회계: 11000 | 일반회계

작업순서: 조회 > 금액입력 및 확인 > 저장

구분	원고인 경우		피고인 경우	
	소송건수	소송가액	소송건수	소송가액
1 달기말	23	4,240,713,953	478	91,374,586,817
2 전기말	9	4,486,001,656	550	176,062,990,950

## ⑥ 총잉여금 · 재정운영결과조정표(필수보충정보)

총잉여금 · 재정운영결과조정표(이하 '조정표')는 예산결산 총잉여금(세입·세출)과 재정운영표 재정운영결과와의 차이를 공시하는 보고서로 필수보충정보에 해당된다.

조정표는 첫 조회 시 금액이 입력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히 재무제표 상 계정과목별 증감금액이 자동 입력되어 있는 것으로 반드시 결산담당자의 수정이 필요하다.

조정표 양식 중 '1. 자산·부채의 증감'과 '4. 순자산변동'에는 현금유출입을 수반하는 증감금액만 입력하고, '2. 발생주의 기간수익·비용 차이'에는 현금 유입·유출을 수반하지 아니하여 세입·세출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에는 반영된 금액을 기재해야 하나, 시스템은 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dBrain 화면에서 활성화 되어있는 셀(하얀색 바탕으로 표시)의 금액을 직접 수정할 수 있다.

그림 5-8 | 총잉여금 · 재정운영결과조정표

구분	2017	2016
1. 총잉여금(단)	269,303,387,671,840	0
II. 차이합계	-276,706,593,656,834	0
1. 자산 부채의 증감	-11,350,456,484,913	-16,093,794,438,126
(1)현금및현금성자산 증가(감소)	-78,070,667,266	-65,298,309,828
(2)금융상품의 증가(감소)	1,375,152,965	1,839,068,194
(3)투자증권의 증가(감소)	509,161,774,273	1,831,979,722,078
(4)대여금의 증가(감소)	-154,400,000,000	-102,522,490,000
(5)일반유형자산의 증가(감소)	-1,177,756,534,473	974,418,058,968
(6)사회기반시설의 증가(감소)	0	0
(7)무형자산의 증가(감소)	24,204,343,423	4,864,481,162
(8)기타자산의 증가(감소)	272,313,401,100	103,542,100,775
(9)국공채의 감소(증가)	0	1,839,015,680
(9)자입금의 감소(증가)	-10,662,650,837,730	-22,729,540,472,651
(9)기타부채의 감소(증가)	-84,633,057,295	3,895,025,387,596
2. 발생주의 기간수익·비용 차이	-7,956,583,938,293	-8,698,309,576,947
(1)국세수익 차이	0	0
(2)부담금수익 차이	0	0

표 5-3 ■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중앙관서) 항목별 작성원칙

구 분	작성원칙
<b>I. 총잉여금</b>	<b>세입 - 세출(수입 - 지출)</b>
<b>II. 차이항목</b>	
1. 자산·부채의 증감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는 자산·부채 증감 금액
2. 발생주의 기간수익·비용 차이	
(1) ~ (8)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는 관련 미수채권 증감 금액
(9) ~ (18)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으나 재정운영결과에 반영되는 금액
3. 전기 결산상 잉여금 세입이입액	전기 결산상 잉여금(전년도이월금-33관88항881목) 금액
4. 순자산변동	현금 유출입을 수반하는 순자산변동 금액
5. 국세수익 수납액	각 국세 세목별 현금주의 기준 수납액
6. 내부거래 차이	회계실체간 재정운영표와 순자산변동표 항목간 내부거래 금액
<b>III. 재정운영결과(I+II)</b>	<b>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와 반대부호로 표시</b>

상기 작성원칙에 따라 작성 시 다음 항목은 '수익·비용 성질별재정운영표' 금액과 일치하게 되므로, 작성 또는 검증수단으로 해당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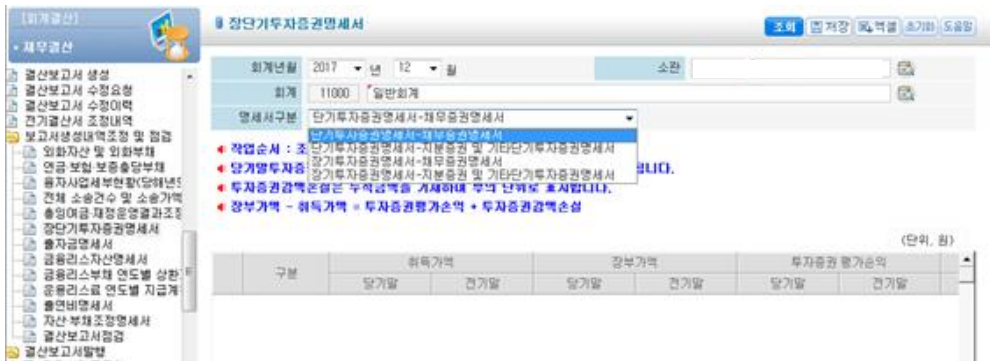
표 5-4 ■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와 수익·비용 성질별재정운영표 대응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수익·비용 성질별재정운영표
평가이익 차이	평가이익
퇴직급여 차이	퇴직급여(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외)
감가상각비 차이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차이	대손상각비
평가손실 차이	평가손실
자산감액손실 차이	자산감액손실

### ⑦ 장단기투자증권명세서(부속명세서)

장단기투자증권명세서는 장단기투자증권의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장부가액, 평가손익 및 감액손실 금액을 보여주는 부속명세서로 그림과 같이 총 4가지의 명세서가 존재한다.

그림 5-9 ■ 장단기투자증권명세서(4종)



결산담당자는 화면에 조회된 투자증권감액손실 금액을 확인한 후 오류가 있으면 해당 금액을 직접 수정해야 한다. 투자증권감액손실은 누적금액을 기재하며, 부(-)의 단위로 표시된다.

그림 5-10 ■ 장단기투자증권명세서(장기투자증권\_지분증권 및 기타단기투자증권)



위와 같이 dBrain 화면에서 활성화 되어있는 셀(하얀색 바탕으로 표시)의 금액을 직접 수정할 수 있다.

### ⑧ 출자금명세서(부속명세서)

출자금명세서는 조회되는 내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엑셀 업로드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거래처 별로 금액이 표시되며, 합계금액은 장기투자증권 명세서 출자금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그림 5-11 | 출자금명세서

출자금명세서

회계년월 2017 년 12 월 회계 11000 일반회계

작업순서 : 조회 > 양식서받기 > 금액입력 및 확인 > 엑셀업로드 > 저장  
 엑셀 업로드시 합계금액은 변경 될 수 없습니다. (취득가액 당기말 / 당기배당금수익 변경가능)  
 저장시 전기말 금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위: 원)

종지대상기관	취득가액		장부가액		투자증권 평가손익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1 합계	45,480,186,476,751	45,064,443,819,229	45,338,586,276,751	45,064,443,819,229	0	0
2 12,403,707,432,211	11,987,964,774,689	12,265,211,945,265	12,220,311,945,265	0	0	
3 822,171,422,835	822,171,422,835	697,171,422,835	822,171,422,835	0	0	
4 206,191,584,736	206,191,584,736	206,191,584,736	206,191,584,736	0	0	
5 7,204,468,780,120	7,204,468,780,120	7,704,468,780,120	7,579,468,780,120	0	0	
6 7,542,850,715,571	7,542,850,715,571	7,500,557,929,524	7,084,131,929,524	0	0	
7 22,300,000,000	22,300,000,000	22,300,000,000	22,300,000,000	0	0	
8 141,600,200,000	141,600,200,000	16,000,000,000	141,600,200,000	0	0	
9 16,000,000,000	16,000,000,000	16,000,000,000	16,000,000,000	0	0	
10 1,396,528,643,363	1,396,528,643,363	1,396,528,643,363	1,373,528,643,363	0	0	
11 130,440,000,000	130,440,000,000	68,337,825,550	68,337,825,550	0	0	
12 6,623,370,000	6,623,370,000	6,623,370,000	6,623,370,000	0	0	
13 39,263,534,242	39,263,534,242	39,263,534,242	39,263,534,242	0	0	
14 1,080,000,000,000	1,080,000,000,000	1,080,000,000,000	1,080,000,000,000	0	0	
15 3,297,604,636,155	3,297,604,636,155	3,297,531,208,155	3,297,531,208,155	0	0	

### ⑨ 금융리스자산명세서 및 금융리스부채 연도별 상환계획(부속명세서)

본 메뉴에서는 금융리스자산의 명세와 금융리스부채의 연도별 상환계획을 조회한 후 오류가 있으면 해당 금액을 직접 수정할 수 있다.

그림 5-12 | 금융리스자산명세서

금융리스자산명세서

회계년월 2017 년 12 월 회계 11000 일반회계

작업순서 : 조회 > 금액입력 및 확인 > 저장  
 현재가치 : 합계 > 조정금액

(단위: 원)

과 목	당기말금융리스자산	당기말감가상각누계액	당기말거말잔액
1 합계	21,801,319,520	13,791,565,768	8,009,753,752
2 합계 - 배분 - 차등분류	16,199,719,300	13,075,296,626	3,124,422,674
3 기타일반유형자산	5,601,599,640	716,267,142	4,885,332,498

그림 5-13 | 금융리스부채 연도별 상환계획

‘금융리스자산 명세서’와 ‘금융리스부채 연도별 상환계획’은 각각 ‘금융리스 자산 기초자료’와 ‘리스계약별 상환계획’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결산담당자는 금액이 서로 다를 경우 명세서를 올바른 금액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금융리스 관련 명세서는 dBrain 화면에서 활성화 되어있는 셀(하얀색 바탕으로 표시)의 금액을 직접 수정할 수 있다.

‘금융리스부채 연도별 상환계획’의 ‘금융리스부채의 현재가치’ 금액은 주석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의 금융리스부채 합계 금액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금융리스 관련 자료 조회>**

○ 금융리스자산 기초자료 조회

- 메뉴: 회계결산>재무장부>회계기금>원장조회>계정과목별 명세>계정과목 세부명세서(8.(5)물품 계정과목별 현재액 현황(자산별))
- 조회조건: 대장종류를 ‘금융리스대장’ 으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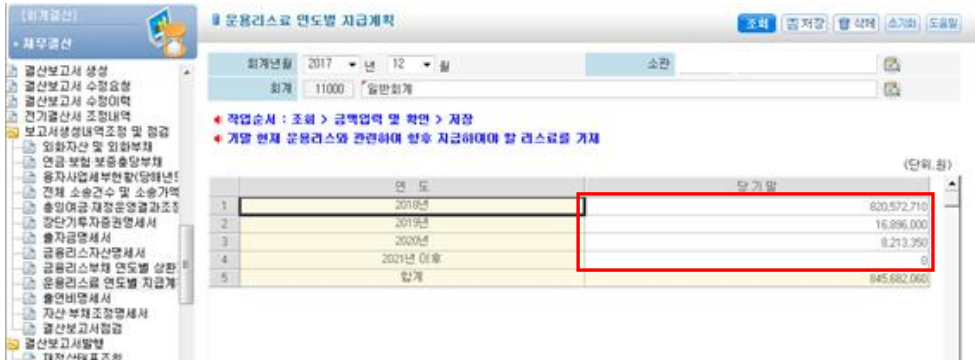
○ 리스계약별 상환계획

- 메뉴: 조달(계약)>계약>리스계약관리>장기차입금(금융리스부채)

### ⑩ 운용리스료 연도별 지급계획(부속명세서)

본 메뉴에서는 운용리스료 연도별 지급계획을 조회한 후 오류가 있으면 해당 금액을 직접 수정할 수 있다.

그림 5-14 | 운용리스료 연도별 지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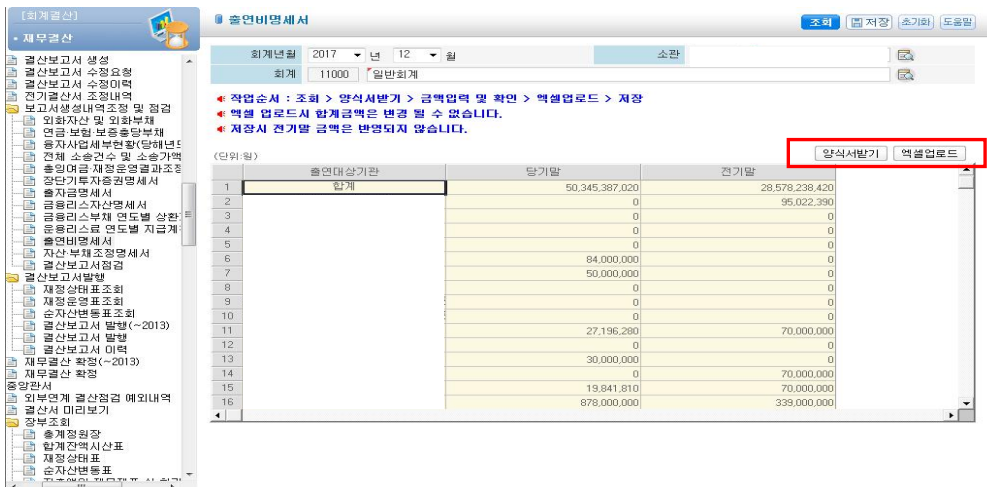


당기 재정운영표에 '운용리스료'가 계상되어 있는 경우 차기 이후에 지급할 운용리스료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명세서 작성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⑪ 출연비명세서(부속명세서)

출연비명세서는 조회되는 명세서 내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엑셀 업로드를 통해 수정하여 저장할 수 있다. 거래처 별로 금액이 표시되며, 합계금액은 수익·비용 성질별재정운영표의 '출연비' 금액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그림 5-15 | 출연비명세서



## ⑫ 자산·부채조정명세서(별첨)

자산·부채조정명세서는 개별법 자산·부채(국유재산, 물품, 국가채권, 국가채무) 금액과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간의 차이 상세내역을 작성하는 것으로, 'Ⅲ. 차이내역' 부분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차이내역 하위항목 금액을 입력하면 합계는 자동으로 계산되며 금액을 수정한 경우 '저장'을 클릭하여 결산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엑셀'을 클릭하면 조회된 데이터를 엑셀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그림 5-16 ■ 자산·부채조정명세서

① 자산·부채조정명세서

조회
저장
엑셀
초기화
도움말

회계년월
년 12 월
소관

회계
일반회계

❖ 작업순서 : 조회 > 금액확인 및 수정 > 저장

❖ 금액 변경시 각 소계 항목은 자동계산됩니다.

❖ 2010년 결산부터 자산·부채 데이터를 원단위로 입력해야 한다.

(단위: 원)

②	구분	자 산	부 채
1	I. 개별법 자산·부채 금액	5,735,389,335,702	487,087,405,110,891
2	1. 국가채권현재액	3,202,827,268,102	0
3	2. 국유재산현재액	2,532,562,067,600	0
4	3. 물품현재액	0	0
5	4. 국가채무합계	0	487,087,405,110,891
6	II.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	510,275,790,548,688	511,184,698,365,270
7	III. 차이내역 (II-I =A+B+C+D+E)	504,540,401,212,986	24,097,293,254,379
8	1. 보고대상기관차이(A)	0	0
9	2. 국가상호간 채권 채무 차이(B)	497,602,264,480,011	15,313,387,823,000
10	3. 결산조정항목 차이(C)	6,750,564,063,645	8,019,248,861,949
11	4. 대상차이(D)	187,572,669,330	0
12	5. 기타차이(E)	0	764,656,569,430

## 2 주식[소송]

OO부 일반회계에서 본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으로 국가가 피고로 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주식으로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송가액이 큰 금액 위주로 주석을 공시하였다.

### (1) 오류의 유형

우발부채는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는 한 주석에 공시하도록<sup>24)</sup> 되어 있다. 소송사건은 우발부채의 대표적인 사례로 결산보고서에 '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중 '① 계류 중인 소송사건'으로 보고하고 있다.

결산작성지침에서는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 ①원고, 피고인 경우 각각 총 소송건수와 총 소송가액을 기재하고, ②중요한 내역은 계류법원, 사건내용, 소송가액 및 진행상황 등을 소송건별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표 5-5 | 계류 중인 소송사건

-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

(단위 : 건, 원)

구분	OO기금(또는OO회계)이 원고인 경우		OO기금(또는OO회계)이 피고인 경우	
	소송건수	소송가액	소송건수	소송가액
당기말				
전기말				

-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

(단위 : 원)

계류법원	원고	피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상황
OO기금(또는OO회계)이 원고인 경우					
OO기금(또는OO회계)이 피고인 경우					

상기 감사원 지적사항은 총 소송건수와 총 소송가액을 누락하여 발생하였다.

<sup>24)</sup>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① 생략 ② 우발부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하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는 한 주석에 공시한다.

1.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국가회계실체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
2.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해당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아니하는 현재의 의무

## (2) 오류에 따른 영향

‘① 계류중인 소송사건’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국가회계실체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승소, 패소)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과 부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 (3) 점검방법

결산담당자는 당기말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의 전체 내역을 업무담당자로부터 입수하여 주석에 전체소송 건수 및 가액을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한다. 특히 전기 주석에 공시하였던 소송사건의 경과가 당기에 변동된 경우 그 내용을 주석에 수정 반영해야 한다.

## (4)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진행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주석공시 누락(2011회계연도)

OO부 일반회계에서 본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으로 국가가 피고로 되어 있는 사건의 소송가액 1조 8,886억 원에 대해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으로 주석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송가액 406억 원에 대해서만 공시하고 나머지 1조 8,480억 원에 대해서는 주석 공시하지 않고 있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459p 중>

- 소송사건에 대한 주석 공시 오류(2012회계연도)

OO부 일반회계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부장관이 대표하는 소송으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을 공시하면서 완료된 소송사건 등 공시대상이 아닌 1,634건 및 관련 소송가액 4조 8,366억 원을 포함하여 잘못 공시하였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400p 중>

### 3 주식(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OO부 XX회계에서 수자원공사의 금융비용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다음 회계 연도부터는 금융비용과 더불어 채무원금 일부를 함께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으나 해당 사실을 주식에 수정 반영하지 않았다.

#### (1) 오류의 유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은 주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계류 중인 소송사건 이외에도 많은 우발사항이 존재하며, 약정사항 역시 주식에 공시하여야 한다.

표 5-6 | 국가결산보고서 상 공시 중인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구분	내역
계류 중인 소송사건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 주요 소송사건 등
담보제공자산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 및 채권 최고액 등
파생상품내역	파생상품의 당기 변동 내역 및 기말잔액
지급보증	보증채무의 규모 및 구성내역, 보증채무 외 지급보증내역
중요한 계약사항	건설공사계약, 업무위탁계약 등
최소운영수입보장내역	BTO 등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장 계약 내역
기 타	장기임차토지의 원상회복 의무
	철도운영자의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손실 부담 계약
	수자원공사 및 지하철공사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발자산	국가귀속물품, 몰수품

#### (2) 점검 방법

결산담당자는 과거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중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과 관련된 지적사항 및 국가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공시할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3)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금융비용 지원 관련 주식 미공시(2011회계연도)

OO부 일반회계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정책조정회의(2009.9. 25.) 결과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8조원 규모로 발행할 회사채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2010년 700억원, 2011년 2,417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고, 2012년에 3,55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부의 유출이 발생할 예정인데도 관련 사항을 주식으로 공시하지 않고 있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704p 중>

- 최소운영수입보장 관련 구체적 사항 주식 미공시(2011회계연도)

OO부 XX회계에서 일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실시협약서에서 정한 최소 운영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3개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액, 보장사업 건수 및 주요 협약 내용을 주식으로 공시하고 있으나, 주요 사업별 최소운영수입 보장기간을 단순히 기간(예: 20년)으로만 공시하고 구체적인 약정기간(예: 2008년부터 2022년까지)을 표시하지 않는 등 우발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있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704p 중>

- 주파수할당대가 관련 우발자산 주식 미공시(2011회계연도)

OO부 XX기금에서 일정기간(6년~10년) 동안 특정 주파수대역 이용 대가를 징수하기로 통신 3사(SKT, KT, LGU+)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향후 수취하게 될 금액 8,042억원 등을 주식으로 공시하지 않고 있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781p 중>

-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주식 미기재(2014회계연도)

OO청 XX특별회계에서 비축물자 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과 관련한 파생상품거래는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거래목적 및 거래명세 등을 주식으로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표시하지 않았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I 280p 중>

## 4 주식(세입·세출외 현금 등)

OO부 일반회계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 등록 기탁금 및 정치자금법에 따른 기탁금 등은 국가가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세입·세출외 현금이므로 주식으로 기재해야 하는데도 관련 기탁금을 주식으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 (1) 오류의 유형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세입·세출외 현금(예산과 관계 없이 국가가 보관하는 공유 또는 사유의 현금으로 국가소유가 아닌 현금을 의미하며 보관금, 복구비와 각종 보증금, 공탁금 등으로 구분)에 대하여 주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회계처리지침 상 주요 세입·세출외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5-7 | 주요 세입·세출외 현금 항목 및 관련 법령

구분	관련법령
보관금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제53조
계약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하자보수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신원보증금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적부심보증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7조
가납금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0조
임치금	「가사소송규칙」 제125조
농지복구비	「농지법」 제36조
산지관리복구비	「산지관리법」 제38조
법원보관금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조
공탁금	「공탁규칙」 제62조

## (2) 점검 방법

결산담당자는 과거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중 '세입·세출외 현금'과 관련된 지적사항 및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 등을 참고하여 담당 회계실체 및 중앙관서에 공시할 세입·세출외 현금이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세입세출외 거래>



세입·세출외 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비용, 자산·부채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주식 공시 뿐 아니라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관련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전대차관: 세입·세출외 거래로 처리되나 전대차관대여금으로 회계처리
- 현물출자: 세입·세출에 반영되지 않으나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회계처리
- 회전자금: 재정상태표의 기타유동자산으로 반영

### <기술료>



국가재정법의 개정(2014.1.1.)에 따라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를 사용에 대한 대가(통칭 기술료)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서 삭제되어 세입세출 內로 들어오게 되었다.

하지만 2013년 이전에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상 기술료는 세입세출외 거래인 경우에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가 수행되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회계처리 변동은 없었다.

### (3)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세입·세출외 현금(기탁금) 주식 공시 누락(2011회계연도)

OO부 일반회계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 등록 기탁금 및 정치자금법에 따른 기탁금 등은 국가가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세입·세출외 현금이므로 주식으로 기재해야 하는데도 관련 기탁금 103억 5,764만원(후보자 등록 기탁금 17억 100만원 및 정치자금 기탁금 86억 5,664만원)을 주식으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319p 중>

- 세입·세출외 현금 주식 공시 누락(2011회계연도)

OO부 일반회계에서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따른 지방선거관리경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는 경비로 OO부가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세입·세출외 현금이므로 주식으로 기재해야 하는데도 지방선거관리경비 등 653억 9,617만원(집행액 594억 3,115만원, 반환액 59억 6,502만원)을 주식으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319p 중>

- 세입·세출외 현금 주식 공시 누락(2012회계연도)

OO부 일반회계에서 본 회계연도 세입·세출외 현금인 제18대 대통령선거 기탁금 24억원을 주식으로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표시하지 않았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276p 중>

- ◆ 결산보고서를 생성하게 되면 회계실체 및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를 dBrain에서 발행할 수 있다. 결산보고서는 재무제표, 주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된다.
- ◆ 결산보고서 발행 단계에서는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되었거나 '보고서 생성내역조정' 등을 통해 작성한 내역이 보고서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산담당자가 직접 기재해야 하는 부분을 적절히 입력해야 한다.
- ◆ 또한 결산담당자는 결산서 제출전에 재무제표와 주식, 주식과 부속명세서 등 보고서 구성항목 간 정보의 일치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 결산보고서 발행단계는 재무결산 프로세스를 통해 산출된 최종 결과물이 완성되는 단계이므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재무제표 작성 시 유의사항	...	238
2. 주식 작성 시 유의사항	...	248
3. 필수보충정보 작성 시 유의사항	...	271
4. 부속명세서 작성 시 유의사항	...	280
5. 기타 유의사항	...	301

## 1 재무제표 작성 시 유의사항

### (1) 비교환수익 회계처리 오류

기금 또는 기업특별회계의 비교환수익 계정과목을 재정운영표가 아닌 순자산 변동표로 인식하는 오류 발생

#### ○ 관련규정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비교환수익은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에 반영되나, 기업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

#### ○ 오류내용

기금 또는 기업특별회계에 해당하는 회계실체가 비교환수익 회계처리 시에는 재정운영표 계정과목(4번대)을 사용하여야 하나, 동일한 명칭의 순자산 변동표 계정과목(6번대)을 사용하였다.

#### ○ 오류발생 사례

(OO청) 기업특별회계에 해당하므로 비교환수익 회계처리 시 재정운영표 계정과목(4번대)을 사용하여야 하나, 동일한 명칭의 순자산변동표 계정과목(6번대)을 사용함

\* (오류) 61090000 기타재원조달 → (적정) 42080200 기타재원조달

## (2) 농어촌특별세 회계처리 오류

- 농특세이전수입 회계처리 시 순자산변동표 계정과목이 아닌 국세징수활동표 계정과목으로 인식하는 오류 발생
- 농특세 환급 관련 회계처리 누락하는 오류 발생

### ○ 관련규정

「비교환수의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징수결의, 지방자치단체 징수 및 해당 농림축산식품부의 수납 후 징수결의를 거쳐 국고로 이전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수납 시 기획재정부에서는 농특세이전지출(국세징수활동표)로 처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특별회계로 이전시키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특세이전수입(순자산변동표)과 국고이전지출로 처리하여 국고금회계로 이관시키게 된다.

### ○ 오류내용

- 농특세이전수입 회계처리 시 순자산변동표 계정과목(6번대)이 아닌 국세징수활동표 계정과목(7번대)을 사용하였다.
- 농특세 환급 시 농특세이전지출 및 농어촌특별세수익국세환급금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 농특세이전수입(순자산변동표) 금액이 농특세이전지출(국세징수활동표) 금액 합계와 불일치하였다.

### ○ 오류발생 사례

(OO부) 농특세이전수입 회계처리 시 순자산변동표 계정과목(6번대)이 아닌 국세징수활동표 계정과목(7번대)을 사용

\* (오류) 71170100 농어촌특별세수익 → (적정) 61071300 농특세이전수입

(OO부) 농특세 환급 시 농특세이전수입 및 농어촌특별세수익국세환급금 회계처리를 수행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환급금 회계처리를 누락  
차) 농어촌특별세국세수익환급금 XXX 대) 농특세이전지출 XXX

### (3) 순자산변동 구분 오류

순자산변동표 계정과목 회계처리 시 기본순자산,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조정  
구분을 잘못 선택하는 오류 발생

#### ○ 관련규정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회계변경누적  
효과는 누적효과를 발생시키는 계정 및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본순자산,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하여 순자산변동표에 반영해야 한다.

#### ○ 오류내용

회계변경누적효과를 적립금및잉여금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 ○ 오류발생 사례

(OO처) 미수제재금수익 회계처리 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효과를 적립금  
및잉여금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으로 회계처리 함

#### (4) 자산취득시 회계처리 오류

##### 자산 취득분에 대하여 순자산의 증가로 처리하여 발생하는 오류

###### ○ 관련규정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은 국가회계실체가 보유하는 미술품 및 미화물품 중 「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아 유산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자산으로, 일반유형자산에 해당하며 일반유형자산은 검수 또는 국유재산대장 등의 등재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 ○ 오류내용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 증가분에 대하여 순자산변동표의 기본순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 ○ 오류발생 사례

(OO청) 정부미술품 취득분에 대하여 기본순자산으로 반영한 오류

## (5) 해당 없는 계정과목 발생 오류

- 당기 조직개편이 없었으나 조직개편으로 인한 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계정과목이 생성되는 오류 발생
- 재화판매수익,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감액손실 등 손익계정 인식 시 본 자산과 관련이 없는 손익계정을 사용하는 오류 발생

### ○ 관련규정

-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 문단6 및 관련 실무해설1에 따르면, 조직개편을 수행하여 순자산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 순자산의증감’을 이용하여 순자산변동표에 표시하여야 한다.
- 「계정과목해설서」에 따르면, 재화판매수익은 판매를 위하여 취득한 상품과 판매목적으로 생산한 제품 등을 비롯한 재고자산의 판매에 대한 대가로 국가회계실체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한다.
- 수선유지비는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유산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대상자산의 종류에 따라 세부계정과목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 이자수익은 금융상품 예치, 국·공채 등 장·단기투자증권 보유, 외부 자금 대여 등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수익을 말하며, 대상자산의 종류에 따라 세부계정과목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 자산감액손실은 자산의 물리적인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말하며, 이 때 본 자산에 따라 투자증권감액손실, 일반유형자산감액손실, 사회기반시설감액손실, 기타자산감액손실로 구분하여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한다.

### ○ 오류내용

- 조직개편이 발생하지 않은 부처에서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의 증감(기본순자산)’ 계정과목 금액이 발생하였다.
- 자산과 관련된 손익을 인식할 때 해당 자산과 관련된 손익계정이 아닌 다른 자산과 관련된 손익계정을 사용하거나, 해당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그 자산과 관련이 있는 손익계정을 사용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 오류발생 사례

- (OO부) 당해연도에 조직개편이 없었음에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순자산의 증감(기본순자산)’ 금액이 발생함
- (OO부 외 2개 부처) 재화판매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계정과목 선택 오류로 인하여 재화판매수익이 발생함
- (OO부) 사회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중앙관서에서 계정과목을 잘못 선택하여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계정금액이 발생하는 오류 발생함
- (OO부) 투자증권에서 발생한 감액손실 및 감액손실환입은 투자증권 감액손실/환입 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나 기타자산감액손실 및 기타자산감액손실환입을 사용하는 오류 발생
- (OO처) 금융상품과 채권이 없는 소관에서 금융상품이자수익 또는 채권 이자수익 계정 발생

## (6) 계정과목 부호 오류

- 총계정원장에 부(-)의 잔액으로 기재되는 오류 발생
- 재정운영표에서 프로그램수익은 부(-)의 부호로 기재되어야 하나 양(+)의 부호로 기재되는 오류 발생
- 당기말 퇴직급여충당부채금액에서 부(-)의 금액 발생 오류

### ○ 관련규정

- 「결산작성지침」 ‘제3장. 결산보고서 작성양식’에 따르면, 총계정원장의 기말잔액은 양(+)의 부호로 기재되어야 하며(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조정 제외), 재정운영표의 프로그램수익은 부(-)의 부호로 기재되어야 한다.
-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9에 따르면,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추정하여 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을 말하며,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국가회계실체가 외부 금융기관의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적절한 자산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회계처리 시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산으로 재정상태표에 표시해야 한다.

### ○ 오류내용

- 재무제표에 부호가 반대로 표시되거나 총계정원장에 부(-)의 잔액이 발생하는 오류 발생하였다.
-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퇴직연금운용자산이 있는 경우 기타투자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인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인식하여 당기말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부(-)의 금액이 발생하였다.

### ○ 오류발생 사례

- (OO부 외 3개 부처) 투자증권평가손실 잔액, 기타재원이전, 장기기타의 선급비용, 건설중인사무용집기 금액이 부(-)의 금액인 오류 발생
- (OO부 외 2개 부처) 재정운영표상 재화및용역제공원가, 운용리수로, 지급임차료(비배분비용), 보증수익(비배분수익)이 부(-)의 금액인 오류 발생
- (OO부) 프로그램 중 ‘XX활동’의 프로그램수익이 양(+)의 부호로 기재되는 오류 발생
- (OO청) 퇴직급여충당부채 부(-)의 잔액 발생 오류

## (7) 손익의 분류 오류

- 프로그램충원가, 관리운영비로 분류해야하는 비용을 비배분비용으로 분류하는 오류 발생
- 관리운영비로 분류해야 하는 비용을 프로그램충원가로 분류하는 오류 발생

### ○ 관련규정

-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문단13에 따르면 비배분비용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비용이다. 평가손실, 자산감액손실, 자산처분손실, 이자비용, 기타비용 등이 비배분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비용에 해당하더라도 자산의 취득과 관리, 처분, 외환관리, 자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충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
-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문단17에 따르면 행정형 회계는 행정운영성 경비를 모두 관리운영비로 구분하여야 한다.

### ○ 오류내용

- 인건비, 공무원연금부담비,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등은 관련 프로그램 충원가 또는 행정운영성 경비로 관리운영비에 반영되는 것이 적절하나 비배분비용으로 분류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 행정형 회계의 행정운영비 관련 프로그램은 재정운영표에 관리운영비로 분류해야하나 프로그램충원가에 반영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 ○ 오류발생 사례

(OO부 외 3개 부처) 인건비(퇴직급여), 공무원연금부담비, 업무대행수수료, 기타수수료, 배상비, 용자보조비용,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대손상각비, 이자비용, 평가손실 등 프로그램충원가, 관리운영비 성격의 비용을 비배분비용으로 분류함

(OO부) 행정지원프로그램(7100)인 ‘환경행정지원’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충원가에 반영됨

## (8) 계정과목 적정성 오류

- 전기 이전에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반납 받은 경우 계정과목 선택 오류 발생

### ○ 관련규정

「비용 회계처리지침」 문단29의2 및 29의3에 따르면 국가회계실체가 당기에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반납 받은 경우 그 금액을 해당 비용에서 차감하며, 과오가 아닌 사유로 전기 이전의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에 '지출금반납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오류내용

전기 이전에 지출했던 사업비 반납액을 지출금반납금이 아닌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 ○ 오류발생 사례

(OO부) 사업비 반납액을 지출금반납금이 아닌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함

## (9) 중앙관서 전기재작성 미반영 오류

### 중앙관서 통합 시 기금 전기 재작성 항목이 반영되지 않아 오류 발생

#### ○ 관련규정

「보험 회계처리지침」과 「보증 회계처리지침」의 변경(부의 보험비용 및 보증비용을 프로그램수익으로 인식)으로 인해 비교 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도록 하였다.

#### ○ 오류내용

「보험 회계처리지침」과 「보증 회계처리지침」의 변경으로 인해 기금의 비교 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가 재작성 되었으나 중앙관서 통합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오류가 발생하였다.

#### ○ 오류발생 사례

(OO부) 기금의 보증비용과 관련한 전기 재작성 사항이 중앙관서 결산 시 반영되지 않음

(OO부) 기금에서 부의 보험비용과 관련하여 비교 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으나, OO부에서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함

## 2 주식 작성 시 유의사항

### (1) 중요한 회계처리 방법 기재 오류

- 해당 사항이 있음에도 일부 항목을 누락하는 오류 발생
-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등 기재 항목을 잘못 기재한 오류 발생
- 결산작성지침의 표준 기재양식과 다르게 기재한 오류

#### ○ 관련규정

「결산작성지침」, 「주석 1. 중요한 회계처리방법」에 따르면, 재무보고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 재무제표의 작성주체에 대한 파악과 재무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기 위해서 재무제표에서 금액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 적용한 회계방침,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주요평가손익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 오류내용

- 해당 사항이 있음에도 중요한 회계처리 방법을 누락하거나,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중요한 회계처리 방법을 기재하였다. 또한 일반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등을 잘못 기재한 오류가 발생하였다.
- 결산작성지침에 따른 표준 기재양식과 다르게 기재하여 잘못된 용어가 사용된 오류가 발생하였다.

#### ○ 오류발생 사례

(OO부) 자산감액손실이 존재함에도 감액명세와 이에 대한 기술을 누락함.  
당기 프로그램명이 변경되었으나 '주석 1. ⑯ 기타 중요한 회계 원칙 등'에 기술하지 않음

(OO부) 장기충당부채와 우발상황,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누락함

(OO부) 전기 및 당기의 감액손실 금액을 비교표시 형식으로 기재하지 않음

(OO부) 일반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기재 오류

(OO부 외 3개 부처) 일반유형자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함

(OO부 외 5개 부처) 표준 기재양식인 '최소리스료'를 '보증잔존가치를 제외한 최소리스료'로 오류 기재함

##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기재 오류

- '주석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에 당기 상환된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오류 발생
- '주석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의 상환금액과 '부속명세서 11. 장기차입금 명세서' 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오류 발생

### ○ 관련규정

「결산작성지침」 '주석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에 따르면, 국채 및 공채의 액면금액, 기말장부가액의 상환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한다.

### ○ 오류내용

- '주석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장기차입금의 20X8년 상환금액과 부속 명세서 장기차입금명세서의 유동성정부내장기차입금 금액이 불일치하였다.
- '주석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장기차입금의 합계금액과 '부속명세서 11. 장기차입금명세서'의 합계금액이 불일치하였다.

<주석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단위: 원)

구분	계	국채	공채	장기차입금			
				국내 장기차입금	해외 장기차입금	정부내 장기차입금	금융리스 부채
합계				(a)	(b)	(c)	(d)
20X8년				(e)	(f)	(g)	(h)
20X9년							
20X0년							
20X1년							
20X2년							
20X3년 이후							

<부속명세서 11. 차입금명세서>

2) 장기차입금명세서

(단위: 원)

구분 및 차입처		이자율(%)	당기말	전기말
합계				
국내 장기차입금	소 계			
	국내장기차입금		①	
	(유동성국내장기차입금)		①	
해외 장기차입금	소계			
	해외장기차입금	소계		㉑
		시설채		
		보험료		
		용역비		
		원자채		
		현금		
		기슬료		
기타				
(유동성해외장기차입금)		①		
정부내 장기차입금	소계			
	장기전대차관			
	정부내 장기에수금	소계		㉓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유동성정부내장기차입금)		㉒		
금융리스부채	소계			
	금융리스부채		㉔	
	(유동성금융리스부채)		㉔	
기타장기 민간에수금	소계			
	기타장기민간에수금			
	(유동성기타장기민간에수금)			

위 표의 해당항목은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검증되어야 한다.

㉑ = -㉒, ㉒ = -㉓, ㉓ = -㉔, ㉔ = -㉕

㉑ = ㉒, ㉒ = ㉓, ㉓ = ㉔, ㉔ = ㉕

○ 오류발생 사례

- (OO부 외 1개 부처) 정부내 장기차입금의 20X8년 상환계획금액이 장기 차입금명세서상 유동성정부내장기차입금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오류
- (OO부) 정부내장기차입금 합계가 장기차입금명세서와 일치하지 않는 오류, 20X8년 상환금액에 당기에 이미 상환된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오류

### (3)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퇴직급여와 필수보충정보의 불일치

-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퇴직급여금액과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의 퇴직급여 차이금액이 불일치하는 오류 발생

#### ○ 관련규정

「결산작성지침」, 「주석 3. 장기충당부채」, 「필수보충정보 5.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에 따르면, 발생주의상 퇴직급여 금액은 「필수보충정보 5.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의 퇴직급여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 ○ 오류내용

「주석 3.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퇴직급여 금액과 「필수보충정보 5.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의 퇴직급여 차이 금액이 불일치하였다.

<주석 3. 장기충당부채>

#### ① 퇴직급여충당부채

(단위: 원)

구분		금 액	
		당기	전기
퇴직급여 추계액	기초잔액(A)		
	퇴직금 지급액(B)		
	퇴직급여(C)	a	b
	조직개편으로인한증감(D)		
	기말잔액(E=A-B+C+D)		
차감항목	퇴직보험예치금(F)		
	국민연금전환금(G)		
	퇴직연금운용자산(H)		
	기말잔액(I=F+G+H)		
퇴직급여충당부채(J=E-I)			

<필수보충정보 5.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20X7	20X6
<b>I. 총잉여금(*)</b>	XXX	XXX
<b>II. 차이 항목</b>	XXX	XXX
<b>1. 자산·부채의 증감</b>	XXX	XXX
(1) 현금및현금성자산 증가(감소)	XXX	XXX
(2) 금융상품의 증가(감소)	XXX	XXX
(3) 투자증권의 증가(감소)	XXX	XXX
(4) 대여금의 증가(감소)	XXX	XXX
(5) 일반유형자산의 증가(감소)	XXX	XXX
(6) 사회기반시설의 증가(감소)	XXX	XXX
(7) 무형자산의 증가(감소)	XXX	XXX
(8) 기타자산의 증가(감소)	XXX	XXX
(9) 국공채의 감소(증가)	(XXX)	(XXX)
(10) 차입금의 감소(증가)	(XXX)	(XXX)
(11) 기타부채의 감소(증가)	(XXX)	(XXX)
<b>2. 발생주의 기간수익·비용 차이</b>	XXX	XXX
(1) 부담금수익 차이	XXX	XXX
(2) 제재금수익 차이	XXX	XXX
(3) 재화및용역제공수익 차이	XXX	XXX
(4) 사회보험수익 차이	XXX	XXX
(5) 연금수익 차이	XXX	XXX
(6) 보험수익 차이	XXX	XXX
(7) 보증수익 차이	XXX	XXX
(8) 이자수익 차이	XXX	XXX
(9) 평가이익 차이	XXX	XXX
(10) 기타수익 차이	XXX	XXX
(11) 퇴직급여 차이	(c)	(d)
(12) 이자비용 차이	(XXX)	(XXX)
(13) 감가상각비 차이	(XXX)	(XXX)
(14) 대손상각비 차이	(XXX)	(XXX)
(15) 기타이전비용 차이	(XXX)	(XXX)
(16) 평가손실 차이	(XXX)	(XXX)
(17) 자산감액손실 차이	(XXX)	(XXX)
(18) 기타비용 차이	(XXX)	(XXX)
<b>3. 순자산변동</b>	XXX	XXX
(1) 납입자본의 증감	XXX	XXX
(2) 기타순자산의 증감	XXX	XXX
<b>III. 재정운영결과(I + II)</b>	XXX	XXX

위 표의 해당항목은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검증되어야 한다.

(a) = (c), (b) = (d)

○ 오류발생 사례

(OO부 외 3개 부처) ‘주석 3. ①퇴직급여충당부채’의 퇴직급여 금액과 ‘필수보충정보 5.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의 2. 발생주의 기간수익·비용 차이 중 퇴직급여 차이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오류

#### (4) 연금충당부채 및 보험충당부채 기재 오류

- ‘주석 3. ② 연금충당부채’ 주석 작성 시 연금사업현황 내역이 실제와 불일치하는 오류 발생
- ‘주석 3. ③ 보험충당부채’ 보험종류별 충당부채 변동내역, 보험수익 및 보험비용, 보험 현황 및 주요 내용을 누락하는 오류 발생
- ‘주석 3. ③ 보험충당부채’ 의 보험수익 및 보험비용에서 전기 및 당기 금액이 총계정원장 금액과 불일치하는 오류 발생

##### ○ 관련규정

「결산작성지침」 주석 3. 장기충당부채 중 ‘② 연금충당부채’에 따르면, 연도별 연금수급권자 현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③ 보험충당부채’에 따르면, 보험의 현황 및 주요내용, 보험충당부채의 변동내역, 보험수익 및 보험비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 ○ 오류내용

- 연금사업의 현황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중 비율 계산 오류가 발생하였다.
- ‘주석 3. ③ 보험충당부채’ 기재 시 보험충당부채의 변동내역, 보험수익 및 보험비용, 보험의 현황 및 주요내용 기재 누락이 발생하였다.
- ‘주석 3. ③ 보험충당부채’ 중 보험수익 및 보험비용에서 전기 및 당기 금액이 총계정원장 금액과 불일치하였다.

##### ○ 오류발생 사례

- (OO부) 기재한 연도별 연금수급권자 현황에 오류가 발생함(연도별 연금수급권자 현황의 증가인원/수급인원 비율 계산 오류)
- (OO부) 보험종류별 보험충당부채의 변동내역, 보험수익 및 보험비용 기재 누락
- (OO회) 보험의 현황 및 주요내용 기재 누락
- (OO부) 보험수익 및 보험비용의 전기 및 당기금액이 총계정원장 금액과 불일치함

**(5) 기타장기충당부채 주석 상 조직개편일의 정보 누락**

**‘주석 3. ④ 기타장기충당부채’ 작성 시 신설 중앙관서의 조직개편일 금액이 작성되지 않은 오류 발생**

○ **관련규정**

「결산작성지침」 ‘주석 3. 장기충당부채/④ 기타장기충당부채’에 따르면,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신설된 중앙관서의 경우 조직개편일 금액이 당기말과 비교 표시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 **오류내용**

조직개편일(㉠)에 이관받은 기타장기충당부채 금액이 작성되지 않았다.

<주석 3. 장기충당부채>

④ 기타장기충당부채

(단위: 원)

구분	금액	
	당기말	조직개편일(㉠)
보증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		
소송충당부채		
기타의기타장기충당부채		
합계		

○ **오류발생 사례**

**(OO처) ‘주석 3. ④ 기타장기충당부채’ 작성 시 당기말 내역만 기재하고 조직개편일에 이관받은 기타장기충당부채 내역 작성을 누락**

**(6) 기타장기충당부채 주식 상 소송충당부채 당기 및 전기 금액 누락**

**‘주석 3. ④ 기타장기충당부채’ 작성시 소송충당부채의 당기 및 전기 금액을 누락하여 기재**

○ **관련규정**

「결산작성지침」 ‘주석 3. 장기충당부채/④ 기타장기충당부채’에 따르면, 주석 작성시에 기타장기충당부채 관련 세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오류내용**

소송충당부채의 당기 및 전기 금액 기재를 누락하였다.

<주석 3. 장기충당부채>

④ 기타장기충당부채

(단위: 원)

구분	금액	
	당기말	전기말
보증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		
소송충당부채		
기타의기타장기충당부채		
합계		

○ **오류발생 사례**

(OO부) 소송충당부채의 당기 및 전기 금액을 누락하여 기재

## (7) 소송충당부채 기재 오류

- ‘주석 3. <3. 소송충당부채>’ 작성시 소송충당부채의 당기 및 전기 증감 작성을 누락
- ‘주석 3. <3. 소송충당부채>’ 작성시 소송충당부채의 당기 및 전기 증감 작성 시 단위를 잘못 기재
- ‘주석 3. <3. 소송충당부채>’ 작성시 계정과목 분류 오류로 잘못 기재
- ‘주석 3. <3. 소송충당부채>’ 작성시 소송충당부채 금액과 서술 내용 불일치

### ○ 관련규정

「결산작성지침」 ‘주석 3. 장기충당부채/<3. 소송충당부채>’에 따르면, 당기와 전기의 소송충당부채 금액의 증감액 및 기초 기말금액을 비교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 오류내용

- 소송충당부채의 당기 및 전기 증감 작성을 누락하였다.
- 소송충당부채의 당기 및 전기 증감 작성시 단위를 잘못 기재하였다.
- 소송 지급의무만 남아있는 건에 대하여는 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 소송충당부채로 잘못 기재하였다.
- 당기말 현재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표 하단에 전기와 동일한 문구를 그대로 작성하였다.

### ○ 오류발생 사례

- (OO부 외 2개 부처) 소송충당부채의 당기 및 전기 증감 작성을 누락
- (OO부) 소송충당부채 금액의 표시 단위를 ‘원’이 아닌 ‘백만원’으로 오류 기재
- (OO부) 소송이 끝나 지급의무만 남아있는 건에 대하여는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 소송충당부채로 계정과목을 오류 기재
- (OO회) 당기말 현재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표 하단에 전기와 동일한 문구를 그대로 작성.

## (8) 기타의기타장기충당부채

‘주석 3. <4. 기타의기타장기충당부채>’ 작성시 표 하단에 상세내역을 기재  
누락

### ○ 관련규정

「결산작성지침」 ‘주석 3. <4. 기타의기타장기충당부채>’에 따르면, 주석  
작성시 표 하단에 세부항목에 대한 상세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오류내용

- ‘<4. 기타의기타장기충당부채>’ 작성시 표 하단에 상세내역을 누락하였다.

### ○ 오류발생 사례

(OO처 외 1개 부처) 기타의기타장기충당부채 작성 시 표 하단에 상세  
내역을 기재 누락

## (9)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기재 오류

- '주석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작성시 외화자산 및 부채에 적용할 환율을 잘못 적용하여 잘못 기재
- '주석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작성시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개별 금액 합계와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음

### ○ 관련규정

「결산작성지침」 '주석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에 따르면, '원화환산액'은 기말시점의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 오류내용

- 외화자산 및 부채에 적용할 환율을 잘못 적용하였다.
-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개별 금액 합계와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았다.

### ○ 오류발생 사례

(OO부) '원화환산액'은 기말시점의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기준환율이 아닌 잘못된 환율로 기재

(OO부) 개별 외화자산의 합계액과 합계금액이 불일치

## (10) 소송사건 기재 오류

- ‘주석 5. ① 계류 중인 소송사건’ 작성 시 전체 계류 중인 소송사건 및 소송가액을 기재하여야 하나 일부 누락하여 기재하는 오류 발생
- 중요 소송사건에 대한 세부항목을 누락하거나 전기와 동일한 내역으로 기재하는 오류 발생

### ○ 관련규정

「결산작성지침」 ‘주석 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①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따르면, 당기와 전기의 계류 중인 전체 소송사건의 건수 및 소송가액을 원고와 피고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중요한 소송사건은 상세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오류내용

- 전기 결산보고서 상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과 당기 결산보고서 상 전기의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이 불일치하였다.
- 당기 전체 소송건수와 소송가액을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하였다.
- 결산작성지침 상 양식과 동일하지 않은 양식으로 작성하였다.
- 중요 소송사건에 대하여 계류법원, 기말현재 진행상황 등 일부 항목 기재를 누락하였다.
-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에 대한 표를 누락하거나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 대비 현저히 적게 기재하였다.
- 소송사건의 피고 및 원고 명칭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였다.
- 피고가 법무부 혹은 대한민국인 건은 법무부의 결산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나, 다른 중앙관서에서 해당 내용을 기재하였다.

○ 오류발생 사례

- (OO회 외 4개 부처) 전기 결산보고서 상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과 당기 결산보고서 상 전기의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 불일치
- (OO청) 당기 전체 소송건수와 소송가액을 누락
- (OO부 외 5개 부처) 중요 소송사건에 대하여 계류법원, 기말현재 진행 상황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 일부 항목을 누락
- (OO원) 당기 소송 현황을 기재하지 않고 전기 현황을 그대로 기재
- (OO부 외 1개 부처) 결산작성지침과 상이한 양식으로 소송사건을 기재
- (OO부 외 1개 부처)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에 대한 표 누락
- (OO부 외 1개 부처)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 대비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에 기재한 소송 건수 및 가액이 현저히 적음
- (OO청)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에서 소송가액 10억원 규모의 소송 1건 누락
- (OO부 외 1개 부처) 소송사건의 피고 및 원고 명칭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 (OO청 외 1개 부처) 피고가 법무부 혹은 대한민국인 건은 법무부의 결산보고서에 기재해야하나, 다른 중앙관서에서 해당 내용을 기재한 경우

## (11) 기타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기재 오류

- 담보제공자산 금액을 잘못 기재하는 오류 발생
- 전기말 파생상품내역과 불일치하는 오류 발생
- 전기말 지급보증에 대한 주식 기재를 누락하는 오류 발생
- 기금과 중앙관서의 파생상품내역 불일치
- 기타 우발부채에 대한 내용, 자원의 유출에 따른 재무적영향 관련 오류
- 중요한 계약 사항 기재 누락 오류
- 지급보증 표에서 비고란 누락 오류
- 우발자산의 공시 오류

### ○ 관련규정

- 「결산작성지침」 주식 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중 ‘② 담보제공자산’에 따르면, 담보제공자산별로 장부가액, 채권최고액, 담보제공이유, 담보권자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③ 파생상품’에 따르면 파생상품의 보유 목적별, 종류별 손익 및 장부가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④ 지급보증’에 따르면 보증처/피보증처 및 당기 및 전기말 지급보증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국가채무관리보고서 상 보증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 ‘⑤중요한 계약 사항 요약’에 따르면 장기운송계약 등 중요한 계약 사항에 대하여 상대회사, 기간 등 주요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⑧기타 우발부채에 대한 내용, 자원의 유출에 따른 재무적 영향’에는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기재해야 한다.
- ‘⑨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발자산’에 따르면 우발자산의 예로 압수품 및 몰수품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 ○ 오류내용

- 담보제공자산의 장부가액을 잘못 기재하였다.
- 당기 결산보고서 상 지급보증 내역 및 전기 파생상품 내역이 전기 결산 보고서상 내역과 불일치하였다.
- 파생상품 내역의 자산, 부채 기말 잔액을 부(-)의 금액으로 기재한 오류와 전기 파생상품 내역 기재 오류가 발생하였다.
- 기금과 중앙관서의 파생상품내역이 불일치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 우발상황관련 비용 지급액에 전기 내용을 기재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 중요한 계약사항을 미기재한 오류가 발생하였다.
- 지급보증 표의 비고란에 국가채무관리보고서상 보증채무 해당 여부에 대해 기재를 누락한 오류가 발생하였다.
- 전기에는 우발자산 중 국가귀속물품과 몰수품에 대한 종류와 금액을 공시하였으나, 당기에 공시하지 않은 오류가 발생하였다.

○ 오류발생 사례

- (OO회) 담보제공자산의 장부가액 기재 오류, 전기 결산보고서상 지급보증 내역이 존재하나 당기 결산보고서 상 기재 누락
- (OO부) 당기 이자율변동보험 자산의 기말잔액, 환변동보험 부채 기말잔액을 부(-)의 금액으로 기재, 전기 결산보고서상 파생상품 내역과 당기 결산보고서상 전기 파생상품 내역 불일치
- (OO부) PSO 공익서비스 비용 지급액에 전기 지급액 기재
- (OO처) 건설중인선박 및 항공기 관련 중요한 계약사항 누락
- (OO부) 중앙관서의 당해연도 파생상품 내역이 하위 기금 결산보고서상의 파생상품 내역과 불일치
- (OO부) 지급보증 표의 비고란에 채무관리보고서상 보증채무 해당 여부 기재 누락
- (OO청)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발자산 기재 누락

## (12)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기재 오류

- 총계정원장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하였으나 ‘주석 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작성을 누락하거나 기재금액이 총계정원장 금액과 불일치하는 오류 발생
-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한 순자산변동표 반영 내역과 주석 기재 사항이 불일치하는 오류 발생

### ○ 관련규정

「결산작성지침」 ‘주석 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에 따르면,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를 주석에 기재하여야 한다.

### ○ 오류내용

- 주석에 기재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총계정원장의 전기오류수정손익 금액과 불일치하였다.
-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기초순자산에 영향이 있는 경우 순자산변동표 상의 기본순자산,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조정의 구분내역과 일치하도록 주석에 기재하여야 하나 주석 기재내용이 순자산변동표와 불일치하였다.

### ○ 오류발생 사례

(OO부 외 2개 부처)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하였으나 ‘주석 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작성을 누락

(OO부 외 7개 부처) 전기오류수정손익 기재금액이 총계정원장의 전기오류수정손익 금액과 불일치, 회계변경누적효과 기재금액이 순자산변동표와 불일치

(OO처)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기초순자산에 영향이 있는 경우 순자산변동표상 기본순자산,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조정의 구분내역과 불일치함

\* 미수제재금수익으로 인한 회계변경누적효과

(오류) 순자산변동표(적립금및잉여금) ≠ 주석(기본순자산)

→ (적정) 순자산변동표(적립금및잉여금) = 주석(적립금및잉여금)

### (13) 순자산조정명세 기재 오류

- '주식 7.순자산조정명세' 표 안의 합계액이 불일치하는 오류 발생
- '주식 7.순자산조정명세' 표에서 증가, 감소 금액의 부호가 (-)로 기재되는 오류 발생

#### ○ 관련규정

「결산작성지침」 '주식 7. 순자산조정명세'에 따르면, '증가'와 '감소' 금액에는 당해연도 '순자산변동표' 상 '조정항목'을 증가와 감소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 오류내용

- 순자산조정명세 상 투자증권평가손익 증가, 감소금액 합계가 항목별 합계금액과 불일치하였다.
- 순자산조정명세의 증가, 감소열의 금액이 (-)부호로 기재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 ○ 오류발생 사례

(OO처) 순자산조정명세서상 투자증권평가손익 증가부분과 감소부분의 소계가 하위 항목들을 합한 금액과 불일치

(OO부) 기타순자산의 증감 열에서 증가와 감소 금액을 부(-)의 금액으로 기재

**(14)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주석 작성 누락**

- 주석8 중 '1) 세입·세출외 현금' 및 '2) 세입·세출외거래' 작성을 누락하는 오류 발생
- 전기보고서의 내용과 당기보고서의 전기내용이 불일치
- 합계 불일치

○ **관련규정**

「결산작성지침」 '주석 8.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따르면, 재정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지는 않지만, 국가가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세입·세출외 현금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시 세입·세출 외로 관리되는 우체국예금과 우체국 보험적립금 관련 자산, 부채, 순자산 및 수익과 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오류내용**

- 세입·세출외 현금이 발생하였으나 주석 작성을 누락하였다.
- 세입·세출외거래 주석 작성을 누락하였다.
- 세입·세출외 현금 주석사항에 해당사항이 없음에도 작성하였다.
- 세입·세출외 현금 전기보고서 상 내용과 당기보고서 상 전기내용이 불일치 하였다.

○ **오류발생 사례**

- (OO부) 가납벌과금, 압수현금 등 세입·세출외 현금이 발생하였으나 주석 작성 누락
- (OO부) 세입·세출외로 관리되는 우체국예금 관련 자산·부채 등에 대한 주석 작성 누락
- (OO부) 세입·세출외 현금에 해당사항 없으나 주석 작성
- (OO청 외 1개 부처) 전기 세입·세출외 현금에 보증금, 보관금 등이 있었는데 당기에는 누락

## (15) 자산재평가 주식 기재 오류

당기 중 자산재평가 수행으로 인한 평가증 또는 평가감이 발생하였으나, '주석 8. 3) 자산재평가' 에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오류 발생

### ○ 관련규정

「결산작성지침」 '주석 8.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자산재평가'에 따르면, 당기에 재평가를 수행한 경우 재평가기준일, 재평가금액 추정에 사용한 방법과 유의적인 가정, 재평가에 따라 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한 금액과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 오류내용

- 재평가 관련 주식 입력사항이 누락되거나 입력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 특히, 평가증 및 평가감이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아래 예시와 같이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거나 기재내용에 오류가 발생하였다.

예시) 재평가에 따라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서 xx원 평가증이 발생하여 재평가이익으로 xx원을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으로 인식하였고, 일반유형자산재평가손실환입 xx원 및 사회기반시설재평가손실환입 xx원을 재정운영표 상 비배분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서 xx원의 평가감이 발생하여 일반유형자산재평가손실 xx원 및 사회기반시설재평가손실 xx원을 재정운영표 상 비배분비용으로 인식하였고 전기 인식한 재평가이익 xx원이 당기에 상계되었습니다.

\* 평가증 = 재평가이익 + 재평가손실환입

\* 평가감 = 재평가손실 + 상계된 재평가이익

### ○ 오류발생 사례

(OO회 외 21개 부처) '주석 8. 3) 자산재평가'의 상세 내역(재평가기준일, 재평가에 따라 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한 금액과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등)을 텍스트로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

(OO부 외 7개 부처) '주석 8. 3) 자산재평가'의 기재한 내용이 재무제표 및 재평가 주식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

(OO청) 재정운영표상 일반유형자산재평가이익 감소가 반영되어 있다고 기술되었으나 관련 손익 미존재

## (16) 용자사업 대상 오류, 세부 기재사항 누락 및 잘못 작성한 오류

- '주석 8. 4) 용자사업' 작성 시 용자사업 대상이 아닌 용자금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오류 발생
- '주석 8. 4)용자사업' 작성 시 별도로 한글 파일로 기재하여 주석 작성하는 오류 발생
- '주석 8. 4)용자사업' 의 세부 사항((1)용자사업의 개요/(2)용자조건/(3)용자사업의 규모) 기재 누락 및 잘못 작성한 오류 발생
- 용자사업의 규모 표 상 금액이 총계정원장의 금액과 불일치

### ○ 관련규정

「결산작성지침」 '주석 8.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용자사업'에 따르면, 「용자회계처리지침」 문단2의 용자사업<sup>25)</sup>에서 발생한 용자금에 대하여 주석을 작성하여야 한다.

### ○ 오류내용

- 용자사업 주석은 용자보조원가충당금 설정 대상 용자금에 대하여 작성하며, 용자금 중 유효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외되어야 하나 이를 포함하여 작성하였다.
- dBrain 화면에서 결산보고서를 직접 수정하고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지 않고 한글파일을 별도로 작성하여 수정하였다.
- 용자사업의 개요, 용자조건, 용자사업 세부 현황 기재를 누락하거나 용자사업 세부현황 상 직전연도 표에 표시된 기말용자금 합계액과 당해연도 표에 표시된 전기 용자금 합계액이 불일치하게 작성 되었다.
- '(3) 용자사업의 규모' 표 상의 금액이 총계정원장의 장(단)기저리용자금 금액과 불일치하였다.

25)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용자를 제공하는 사업

<주석 8. 4) 용자사업(용자보조원가총당금 설정 대상)>

(1) 용자사업의 개요

※ 용자사업의 종류, 용자대상 등 현황을 서술형태로 기술

예) ○○부의 ○○기금은 관광시설확충과 관광사업체운영지원을 위해 조달이자율(국채이자율 등)보다 낮은 이자율로 용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입니다.

(2) 용자조건

용자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용자대상	이자율	용자기간
A	yy.mm.dd~ yy.mm.dd			X.XX% ~ X.XX%	
B	yy.mm.dd~ yy.mm.dd				
...		...	...		...

(3) 용자사업의 규모

(단위: 원)

구분	금액	
	당기말	전기말
용자금		
(용자보조원가총당금)		
합계		

○ 오류발생 사례

(OO청) ‘주석 8. 4)용자사업 (3) 용자사업의 규모, (4) 용자보조비용’을 별도로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기재

(OO부 외 6개 부처) 용자사업의 개요, 용자조건 기재 누락 및 용자사업 관련 세부 사항 기재오류

(OO부 외 2개 부처) 용자사업 세부현황의 기말 용자금 잔액과 총계정원장 상 장(단)기처리용자금의 합계가 불일치

(OO부) ‘(1) 용자사업의 개요’와 ‘(2) 용자조건’에 현재 진행 중이 아닌 용자사업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였고, ‘(1) 용자사업의 개요’에 기재한 용자사업명과 ‘(2) 용자조건’ 이하의 용자사업명을 불일치하게 기재

## (17) 정부조직개편 주석 기재 오류

- 조직개편 해당이 없는 부처이나, 정부조직개편 이관내역 요약 및 부처별 세부이관내역을 기입하는 오류 발생
- 이관내역의 금액 및 계정과목 기재 오류
- 결산작성지침의 표준 기재양식 미충족에 따른 오류

### ○ 관련규정

- 「결산작성지침」 ‘주석 8.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정부조직 개편 (3) 이관받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에 따르면, ‘이관과 관련된 사항 개요’ 및 ‘이관 직무 현황’ 등을 작성하고, [이관내역 요약] 표와 [부처별 세부 이관내역] 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 「결산작성지침」 ‘주석 8.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정부조직 개편 (5) 이관받은 사업 관련 프로그램충원가 및 프로그램 수익’에 따르면, 프로그램 단위로 이관받은 모든 사업에 대하여 이관하는 부처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 ○ 오류내용

- 조직개편 해당이 없는 부처임에도 정부조직개편 이관내역 요약 및 부처별 세부이관내역을 기재하였다.
- ‘이관과 관련된 사항 개요’ 및 ‘이관 직무 현황’ 등 일부 서술을 누락하였다.
- ‘이관받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 아래 [이관내역 요약] 표에서 일부 금액을 잘못 기입 혹은 누락하거나 [부처별 세부 이관내역]의 금액과 불일치하였다.
- ‘이관받은 사업 관련 프로그램충원가 및 프로그램수익’의 이관부처별 표에서 일부 금액 누락, 중복 기재, 합계 검증 오류가 발생하였고, 프로그램 충원가 및 수익의 합계가 재정운영표 상의 금액과 불일치하였다.

○ 오류발생 사례

- (OO부) 조직개편 해당이 없는 부처이나 정부조직개편 이관내역 요약 및 부처별 세부이관내역 기입
- (OO부) ‘이관하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과 ‘이관받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에서 ‘이관과 관련된 사항 개요’ 및 ‘이관 직무 현황’ 표 누락
- (OO부 외 1개 부처) ‘이관받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 아래 [이관내역 요약] 표에서 일부 금액을 잘못 기입 혹은 누락하거나 [부처별 세부 이관내역]의 금액과 불일치
- (OO부 외 1개 부처) ‘이관받은 사업 관련 프로그램총원가 및 프로그램수익’에서 이관 전 금액 미기재
- (OO처) ‘이관받은 사업 관련 프로그램총원가 및 프로그램수익’ 아래에 프로그램을 중복 기재
- (OO부) ‘이관받은 사업 관련 프로그램총원가 및 프로그램수익’ [이관 부처: OO부]와 [이관부처: OO처]의 아래 표에서 ‘이관 후’ 부분의 I. 프로그램총원가, III. 프로그램순원가 금액이 아래 개별프로그램 금액의 합계와 불일치
- (OO부) ‘이관받은 사업 관련 프로그램총원가 및 프로그램수익’의 프로그램 총원가, 수익의 합계가 재정운영표 상의 금액과 불일치

### 3 필수보충정보 작성 시 유의사항

####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 당기에 표시되는 직전연도 내용이 전기결산보고서와 불일치하는 오류 발생
-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기재대상 부처이나 내용 기재 누락하는 오류 발생
- 당기에 유산자산 내역이 변경되었음에도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전기 유산자산의 내용을 표시하는 오류 발생

##### ○ 관련규정

「결산작성지침」, 「필수보충정보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에 따르면, 유산자산의 종류별로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량·면적 등 단위에 따라 비교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문화재, 국립공원 및 보호구역의 관리 체계 및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술하고 유산자산 취득비 및 유산자산수선유지비의 상세내역을 기술하여야 한다.

##### ○ 오류내용

- 당기에 비교 표시되는 직전연도 내용과 전기 결산보고서상 내용이 불일치하였다.
-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에 대한 내용 기재 대상 부처임에도 해당 내용을 누락하였다.
- 당기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관리상태 표를 수정하지 않아 전년도 금액이 표기되었다.

##### ○ 오류발생 사례

(OO청) 작성 대상 부처임에도 '①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에

대한 내용과 '② 유산자산취득비 및 유산자산수선유지비' 누락

(OO청) 당기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관리상태 표 미수정하여 전년도 금액

표기하였으며, 유산자산취득비 및 수선유지비 상세내역 기술 누락

(OO청 외 1개 부처) 전기말 유산자산 수량 및 금액이 전기 보고서상 금액과 불일치

(OO부) 신규 취득 유산자산에 대한 표 및 세부내역 기재 누락

## (2) 보험보고서

### 보험보고서 기재대상 부처이나 해당 보고서 작성을 누락하는 오류 발생

#### ○ 관련규정

「결산작성지침」, ‘필수보충정보 3. 보험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는 보험별 인수위험의 개요, 보험충당부채 산정 내역, 기타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보험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 오류내용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임에도 결산보고서에 보험별 인수위험의 개요, 보험충당부채 산정 내역, 기타 주요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보고서를 누락하였다.

#### ○ 오류발생 사례

(OO부) XX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임에도 불구하고 결산보고서에 보험별 인수위험의 개요, 보험충당부채 산정 내역, 기타 주요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보고서를 누락

### (3)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상의 전년도 금액이 전기 결산보고서 금액과 상이한 오류 발생
-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상의 일부 항목 금액이 필수보충정보 및 주석 내역과 불일치하는 오류 발생
- 일부 항목의 차이분류 및 중복기재하는 오류 발생
-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에 내부거래 제거가 반영 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하는 오류 발생
- 기타순자산의증감 금액이 없음에도 금액을 기재하는 오류 발생

#### ○ 관련규정

「결산작성지침」, ‘필수보충정보 6.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에 따르면,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는 예산결산 기준의 총잉여금(세입-세출)과 재정운영표상 발생주의 기준의 재정운영결과의 차이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며, 총잉여금 산출내역은 주기로 표기되어야 한다. 또한,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상 평가이익 차이, 퇴직급여 차이, 감가상각비 차이, 대손상각비 차이, 평가손실 차이, 자산감액손실 차이는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와 일치해야 한다.

#### ○ 오류내용

-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상 전년도 금액이 전기 결산보고서 금액과 불일치하였다.
-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상 일부 항목에 대한 분류를 잘못하거나 중복으로 기재하였다.
-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상 평가이익차이, 퇴직급여차이, 감가상각비 차이, 대손상각비차이, 평가손실차이, 자산감액손실차이가 필수보충정보 및 주석 내역과 불일치하였다.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상 다음의 항목들은 수익·비용 성질별재정운영표와 일치해야 하나 불일치하였다.
- 무상이전지출, 기타순자산의증감에서 내부거래가 포함된 금액이 기재되었다.
- 총계정원장 상 기타순자산의증감 당기 발생금액이 없었음에도, 기타순자산의 증감에 금액이 입력되었다.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수익·비용 성질별재정운영표
평가이익 차이	평가이익
퇴직급여 차이	퇴직급여(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외)
감가상각비 차이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차이	대손상각비
평가손실 차이	평가손실
자산감액손실 차이	자산감액손실

평가이익:  $a = w + w'$ ,  $b = x + x'$

퇴직급여:  $c = m$ ,  $d = n$

감가상각비:  $e = o + o' + o''$ ,  $f = p + p' + p''$

대손상각비:  $g = q + q' + q''$ ,  $h = r + r' + r''$

평가손실:  $i = s + s' + s''$ ,  $j = t + t' + t''$

자산감액손실:  $k = u + u' + u''$ ,  $l = v + v' + v''$

<필수보충정보 2.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20X7		20X8	
	XXX	XXX	XXX	XXX
<b>I. 총잉여금(*)</b>				
<b>II. 차이 항목</b>		XXX		XXX
<b>1. 자산부채의 증감</b>	XXX		XXX	
(1) 현금및현금성자산 증가(감소)	XXX		XXX	
(2) 금융상품의 증가(감소)	XXX		XXX	
(3) 투자증권의 증가(감소)	XXX		XXX	
(4) 대여금의 증가(감소)	XXX		XXX	
(5) 일반유형자산의 증가(감소)	XXX		XXX	
(6) 사회기반시설의 증가(감소)	XXX		XXX	
(7) 무형자산의 증가(감소)	XXX		XXX	
(8) 기타자산의 증가(감소)	XXX		XXX	
(9) 국공채의 감소(증가)	(XXX)		(XXX)	
(10) 차입금의 감소(증가)	(XXX)		(XXX)	
(11) 기타부채의 감소(증가)	(XXX)		(XXX)	
<b>2. 발생주의 기간수익·비용 차이</b>	XXX		XXX	
(1) 부담금수익 차이	XXX		XXX	
(2) 제재금수익 차이	XXX		XXX	
(3) 재화및용역제공수익 차이	XXX		XXX	
(4) 사회보험수익 차이	XXX		XXX	
(5) 연금수익 차이	XXX		XXX	
(6) 보험수익 차이	XXX		XXX	
(7) 보증수익 차이	XXX		XXX	
(8) 이자수익 차이	XXX		XXX	
(9) 평가이익 차이	a		b	
(10) 기타수익 차이	XXX		XXX	
(11) 퇴직급여 차이	c		d	
(12) 이자비용 차이	(XXX)		(XXX)	
(13) 감가상각비 차이	e		f	
(14) 대손상각비 차이	g		h	

(15) 기타이전비용 차이	(XXX)	(XXX)
(16) 평가손실 차이	(㉠)	(㉠)
(17) 자산감액손실 차이	(㉡)	(㉠)
(18) 기타비용 차이	(XXX)	(XXX)
<b>3. 전기 결산상 잉여금 세입이입액</b>	<b>(XXX)</b>	<b>(XXX)</b>
<b>4. 순자산변동</b>	<b>XXX</b>	<b>XXX</b>
(1) 납입자본의 증감	(XXX)	(XXX)
(2) 기타순자산의 증감	(XXX)	(XXX)
<b>III 재정부업결과(Ⅰ+Ⅱ)</b>	<u><u>XXX</u></u>	<u><u>XXX</u></u>

(\*) 총잉여금

	20X7	20X6
	XXX	XXX
I. 세입	XXX	XXX
II. 세출	(XXX)	(XXX)
<b>III. 총잉여금(Ⅰ+Ⅱ)</b>	<u><u>XXX</u></u>	<u><u>XXX</u></u>

<주석3. 장기충당부채>

① 퇴직급여충당부채

(단위: 원)

구분		금 액	
		당기	전기
퇴직급여 추계액	기초잔액(A)		
	퇴직금 지급액(B)		
	퇴직급여(C)	㉢	㉣
	조직개편으로인한증감(D)		
	기말잔액(E=A-B+C+D)		
차감항목	퇴직보험예치금(F)		
	국민연금전환금(G)		
	퇴직연금운용자산(H)		
	기말잔액(I=F+G+H)		
퇴직급여충당부채(J=E-I)			

<필수보충정보 6.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20X7	20X6
<b>I. 프로그램총원가</b>	XXX	XXX
1. 재화및용역제공원가	XXX	XXX
2. 인건비	XXX	XXX
3. 복리후생비	XXX	XXX
4. 감가상각비	(o)	(p)
5. 대손상각비	(q)	(r)
6. 평가손실	(s)	(t)
7. 자산감액손실	(u)	(v)
...		
<b>II. 프로그램수익</b>	XXX	XXX
1. 재화및용역제공수익	XXX	XXX
2. 연금수익	XXX	XXX
3. 보험수익	XXX	XXX
4. 평가이익	(w)	(x)
...	XXX	XXX
<b>III. 관리운영비</b>	XXX	XXX
1. 인건비	XXX	XXX
2. 복리후생비	XXX	XXX
3. 감가상각비	(o')	(p')
4. 대손상각비	(q')	(r')
5. 평가손실	(s')	(t')
6. 자산감액손실	(u')	(v')
...	XXX	XXX
<b>IV. 비배분비용</b>	XXX	XXX
1. 자산처분손실	XXX	XXX
2. 기타비용	XXX	XXX
3. 감가상각비	(o'')	(p'')
4. 대손상각비	(q'')	(r'')
5. 평가손실	(s'')	(t'')
6. 자산감액손실	(u'')	(v'')
...	XXX	XXX
<b>V. 비배분수익</b>	XXX	XXX
1. 자산처분이익	XXX	XXX
2. 기타수익	XXX	XXX
3. 평가이익	(w')	(x')
...	XXX	XXX
<b>VI. 재정운영순원가 ( I - II + III + IV - V )</b>	XXX	XXX
<b>VII. 비교환수익</b>	XXX	XXX
1. 부담금수익		
2. 제재금수익	XXX	XXX
3. 사회보험수익	XXX	XXX
4. 기타비교환수익	XXX	XXX
5. 채무면제이익	XXX	XXX
6. 기타재원조달및이전	XXX	XXX
<b>VIII. 재정운영결과 ( VI - VII )</b>	XXX	XXX

○ 오류발생 사례

(OO회의) 전기의 발생주의 기간수익·비용 차이금액에 감가상각비차이와 기타재원조달 합계금액이 기재됨	
* (오류)	
2. 발생주의 기간수익·비용 차이	XXX원
(1) 감가상각비 차이	XXX원
(2) 기타재원조달	XXX원
→ (적정)	
2. 발생주의 기간수익·비용 차이	XXX원
(1) 감가상각비 차이	XXX원
3. 순자산변동	XXX원
(1) 기타재원조달	XXX원
(OO부) ① 당기보고서의 전년도 금액과 전기 결산보고서상의 금액이 상이함 ② 당기의 퇴직급여차이 금액과 퇴직급여충당부채 주석 상 당기 퇴직급여 금액이 불일치	
(OO청) ① 전기의 퇴직급여차이, 기타차이, 무상이전수입, 기타재원조달 금액이 전기 결산보고서상의 금액과 불일치 ②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상 ‘순자산변동’ 하위의 제재금수익 항목을 중복 기재함	
* (오류)	→ (적정)
(1) 제재금수익 XXX원	(1) 제재금수익 XXX원
(2) 제재금수익 XXX원	(2) 무상이전수입 XXX원
(3) 제재금수익 XXX원	(3) 기타재원조달 XXX원
(OO실) 전기의 퇴직급여차이 금액과 퇴직급여충당부채 주석 상 전기 퇴직급여 금액이 불일치	
(OO부) 당기의 퇴직급여차이 및 감가상각비차이금액과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상의 금액이 불일치	
(OO청)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상 ‘기타의기타투자자산’ 및 ‘퇴직연금운용자산’의 변동을 각각 ‘기타자산의 증가(감소)’ 및 ‘기타부채의 증가(감소)’에 반영해야함에도 다른 항목에 반영함	
(OO회) 무상이전지출, 기타순자산의증감에 내부거래 미제거 금액 기재	
(OO회) 총계정원장 상 기타순자산의증감 당기 발생금액은 없으나, 기타순자산의 증감에 금액 존재	

#### (4)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적정성 오류

-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상의 금액 또는 계정과목이 재정운영표상의 금액 또는 계정과목과 불일치하는 오류 발생
-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상의 일부 항목이 부(-)의 금액인 오류 발생
-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상의 일부 항목이 전기와 분류가 상이함

##### ○ 관련규정

「결산작성지침」 ‘필수보충정보 7.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에 따르면,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 총원가와 프로그램 수익을 구성하는 수익·비용을 성질별로 작성하는 것으로 나머지 관리운영비, 비배분수익·비용 등은 재무제표 상의 재정운영표와 동일해야 한다.

##### ○ 오류내용

-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상의 금액 또는 계정과목이 재정운영표상의 금액 또는 계정과목과 불일치하였다.
-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상의 일부 항목이 부(-)의 금액인 오류가 발생하였다.
-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상의 일부 항목이 전기와 분류가 상이한 오류가 발생하였다.

##### ○ 오류발생 사례

- (OO부)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상의 프로그램총원가와 비배분비용이 재정운영표상 금액과 불일치
- (OO부) 프로그램총원가 하위의 운용리스료 금액이 부(-)의 금액임
- (OO부 외 2개 부처) 비배분비용 하위의 업무대행수수료, 건물임차료, 국내차입금이자비용과 비배분수익 하위의 재화판매수익, 보증수익이 부(-)의 금액임
- (OO부) 인건비의 분류가 전기와 상이(전기에는 비배분비용의 하위항목이 아니었으나 당기 비배분비용의 하위항목으로 분류됨)
- (OO청) 결산보고서 계정과목 중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상 ‘연구개발비’가 재정운영표상 ‘교부금’으로 표시됨

(5)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당기 내역을 전기보고서 내역으로 기재하는 오류 발생
- 보고서상 일부 내역을 누락하는 오류 발생
- 하천 토지 중 가격평가 제외자산 현황의 금액이 전기보고서와 불일치

○ 관련규정

「결산작성지침」 ‘필수보충정보 8.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따르면,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로 관리하는 자산은 특정요건을 충족하여 객관적으로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이 유지되므로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및 충족한 특정요건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작성하여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해야 한다. 또한,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준공 전 위험 부담여부에 상관없이 위탁개발자산의 현황 및 발생비용 등에 대해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해야 한다.

○ 오류내용

-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중 당기 내역을 전기보고서 그대로 기재하거나 일부 내역을 누락하였다.
- 당기보고서의 ‘하천 토지 중 가격평가 제외대상 자산’ 현황의 금액이 전기보고서와 불일치하였다.

○ 오류발생 사례

(OO부) ①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내용 중 일부 내역을 전기보고서 내용 그대로 기재

\* (오류) 최근 5년(’09~’13년) → (적정) 최근 5년(’10~’14년)

② ‘일반국도의 관리구간 내역’은 필수보충정보 내에서도 서로 일치하지 않음

(OO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위탁하고 있으므로 위탁개발사업의 현황 및 발생비용 등에 대해서 결산보고서에 기재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

(OO부) 하천 토지 중 가격평가 제외자산 현황의 금액이 전기보고서와 불일치

## 4 부속명세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현금및현금성자산 명세서 오류

‘한국은행국가예금’ 잔액이 한국은행 재정상태표 상 해당 회계실체 잔액과 불일치하는 오류 발생

#### ○ 관련규정

한국은행국가예금은 한국은행에 납입 또는 예탁한 국고금으로 한국은행 재정상태표 상 해당 회계실체 잔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 ○ 오류내용

한국은행 재정상태표상 잔액과 현금및현금성자산명세서상 한국은행국가예금 잔액이 불일치하였다.

#### ○ 오류발생 사례

(OO부) OO부 산하 XX항만청이 YY처 산하로 변동되면서 당기 지출 금액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여 불일치 사례 발생

## (2) 단기투자증권 명세서 오류

- 회사채의 ‘장부가액 - 취득가액 = 투자증권평가손익 + 투자증권감액손실’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오류 발생

### ○ 관련규정

「결산작성지침」 ‘제 4장 부속명세서 3. 단기투자증권명세서’ 에 따르면, 투자증권명세서의 검증은 ‘장부가액 - 취득가액 = 투자증권평가손익 + 투자증권감액손실’이 성립하여야 한다.

### ○ 오류내용

- ‘장부가액 - 취득가액 = 투자증권평가손익 + 투자증권감액손실’의 검증식이 성립하지 않았다.

<부속명세서 3. 단기투자증권명세서>

(단위: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합계		
채무증권		
지분증권		
기타단기투자증권		

### 1) 채무증권명세서

(단위: 원)

구분	취득가액		장부가액		투자증권평가손익		투자증권감액손실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합계								
국채								
공채								
지방채								
회사채								

### ○ 오류발생 사례

(OO부) 단기투자증권명세서 상 회사채의 ‘장부가액 - 취득가액 = 투자증권평가손익 + 투자증권감액손실’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오류

### (3) 장기투자증권 명세서 오류

- 전기말 '기타장기투자증권' 의 '국채' 행을 누락하는 오류 발생
- 해당 금액이 부정확하게 입력되거나 합계가 불일치
- 명세서의 구성 항목 순서가 결산작성지침과 상이한 오류 발생

#### ○ 관련규정

「결산작성지침」 '제 4장 부속명세서 4. 장기투자증권명세서 2) 지분증권 및 기타장기투자증권 명세서'의 구분별 구성 순서는 결산작성지침에 따라 합계, 대분류(지분증권/기타장기투자증권), 중분류(주식/출자금/기타지분증권/국채/공채/지방채/회사채/주식/출자금/기타지분증권) 순으로 작성해야 한다.

#### ○ 오류내용

명세서상 행 자체가 누락되거나, 구분별 구성 순서가 결산작성지침과 상이하였다.

#### ○ 오류발생 사례

(OO부) '지분증권 및 기타장기투자증권 명세서'에서 '국채' 행 누락  
(OO부 외 1개 부처) 해당 금액을 잘못 기재하였고, 합계가 불일치하는 금액을 기재  
(OO부 외 1개 부처) '지분증권 및 기타장기투자증권 명세서'에서 작성 순서가 결산작성지침과 상이함  
\* (오류) 주식/회사채 → (적정) 회사채/주식  
(오류) 주식/출자금/기타지분증권/소계 → (적정) 소계/주식/출자금/기타지분증권

#### (4) 출자금 명세서

- 출자금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없는 거래처가 출자대상기관으로 기재(국가회계 실제 또는 조직개편 이전 명칭)하는 오류 발생
- 동일한 기관명 중복으로 기재
- 하위 항목의 합계와 합계금액 행에 기재된 금액이 불일치
- 출자대상기관이 실제 명칭으로 기재되지 않은 오류

##### ○ 관련규정

「결산작성지침」, ‘부속명세서 4. 장기투자증권명세서 2) 지분증권 및 기타장기투자증권명세서 ① 출자금명세서’에 따르면, 실제 출자를 받은 출자대상 기관별로 명세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 ○ 오류내용

- 출자대상 기관으로 볼 수 없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거나, 출자대상 기관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재정상태표일 현재 최종 명칭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례 및 동일한 기관이 다른 명칭으로 기재되어 중복으로 계상되는 사례 등이 존재하였다.
- 출자대상기관이 실제 명칭이 아닌 ‘기타거래처’로 기재되었다.

##### ○ 오류발생 사례

- (OO부) 출자대상 기관으로 볼 수 없는 국가회계실체 명칭 기재
  - \* (오류)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 (OO부) 출자대상 기관의 최종 명칭 미기재
  - \* (오류) 한국정책금융공사 → (적정) 한국산업은행
  - (오류) 농업기반공사 → (적정) 한국농어촌공사
- (OO부 외 2개 부처) 동일 기관명으로 판단되는 출연대상기관 중복 기재
  - \* (동일) 조세재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대구경북산업진흥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부산대, 부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 (OO부) 합계금액 기재된 수치와 하위항목의 합계가 불일치
- (OO부 외 1개 부처) 출자금명세서 상 출자대상기관이 실제 명칭으로 기재되지 않은 오류(‘기타거래처’로 통합 기재됨)

## (5) 미수채권명세서 오류

- 전기 보고서와 당기보고 전기 금액 및 내역이 불일치
- 미수연금수익이 부(-)의 금액으로 기재
- 미수이자수익 채권 잔액은 없으나, 대손충당금 잔액은 남아있는 오류
- 미수국세명세서 전기 합계금액 불일치

### ○ 관련규정

「결산작성지침」, 「부속명세서 4. 미수채권명세서」에 따르면, 합계는 재무제표상 '미수채권', '미수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 '미수채권대손충당금' 금액과 동일하여야 한다.

### ○ 오류내용

- 명세서 상 전기말 미수부담금수익 금액과 총계정원장상 금액이 불일치하였다.
- 당기말 미수연금수익이 부(-)의 금액으로 기재되었다.
- 총계정원장 상 미수이자수익은 채권 잔액은 없으나 대손충당금 잔액은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계상되었다.
- 명세서 상 전기 세부내역 금액의 합과 합계금액이 불일치

### ○ 오류발생 사례

- (OO부) 명세서 상 전기말 미수부담금수익 금액과 총계정원장상 금액이 불일치
- (OO처) 당기말 미수연금수익이 부의 금액으로 기재됨
- (OO처) 총계정원장 상 미수이자수익은 채권 잔액은 없으나 대손충당금 잔액은 존재하는 오류
- (OO청) 미수국세명세서 상 전기 세부내역 금액의 합과 합계금액이 불일치

## (6) 대여금 명세서 오류

- 이자율 표시 방법이 결산작성지침과 상이한 오류 발생
- 이자율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오류 발생
- ‘정부내단·장기예탁금’ 회계실체별 분류 오류 발생
- 명세서에서 총당금 이외 부(-)의 금액 존재하는 오류 발생
- 용자사업 주식 상 이자율과 명세서상 이자율 불일치

### ○ 관련규정

「결산작성지침」 ‘제 4장 부속명세서 6. 대여금 명세서 1) 단기대여금명세서 2) 장기대여금명세서’의 구분별 구성 순서는 결산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또한 해당 대여금 내 이자율이 여러 이자율로 존재할 경우 범위(최소 이자율~최대이자율)로 기재하여야 한다.

### ○ 오류내용

- 이자율(㉠) 표시방법이 결산작성지침과 상이하며, 이자율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였다.
- 정부내단·장기예탁금 거래처(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를 잘못 분류하였다.
- 상계되어 잔액이 존재하지 않는 계정에 대하여, 보고서에 기재하였다.
- 용자사업 주식 상 이자율과 대여금명세서상 이자율이 서로 불일치하였다.

### <부속명세서 6. 대여금명세서>

#### 1) 단기대여금명세서

(단위: 원)

구분		이자율(%) (㉠)	당기말	전기말
합 계				
단기전대차관 대여금	소 계			
	정부내 단기전대차관대여금	소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정부외단기전대차관대여금			
정부내단기예탁금	소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단기용자금				
단기대여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단기용자금현재가치할인차금)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소 계			
	(단기용자금대손충당금)			
	(단기전대차관대여금대손충당금)			

○ 오류발생 사례

- (OO부) ‘단기융자금’ 이자율 표시방법이 결산작성지침과 상이  
\* (오류) .22~.4.07% → (적정) 0.22~4.07%
- (OO부 외 6개 부처) 대여금명세서 상 이자율이 기재 누락된 오류
- (OO부 외 1개 부처) 장·단기 대여금의 최저이자율이 0%가 아님에도 0%로 기재
- (OO부 외 3개 부처) 정부내단·장기예탁금 거래처 분류 시 ‘기금’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 ‘기타’로 잘못 분류됨
- (OO부) ‘정부내단기대여금’의 당기말 잔액이 존재하지 않지만, 결산 보고서상 기금에 (+) 잔액, 기타에 동일한 금액의 부의 (-) 잔액이 존재함. 상계되어 잔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고서에 기재 불필요
- (OO부) 융자사업 주석 상 최고이자율과 대여금명세서 상 최고이자율 불일치

## (7) 일반유형자산 명세서 오류

- 증가하는 항목에 부(-)의 금액 표시 오류 발생
- '보유토지의 공시지가' 의 전기말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의 내역이 전기 보고서와 상이하거나 당기말 내역(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이 잘못 기재 되는 오류 발생
- 재무제표와 금액 대사 불일치
- 당기 보고서의 금액을 전기 보고서 금액으로 기재
- 명세서 합계 검증 시 불일치 오류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에서 대체와 기타증감 금액이 부적절하게 분류된 오류
- 기금의 조직개편 금액 발생 오류

### ○ 관련규정

- 「결산작성지침」 제 4장 부속명세서 7. 일반유형자산명세서 1) 당해연도 증감명세서 2)직전연도증감명세서'에서 각 항목의 경우 감소항목은 부(-)의 단위로 표시하고 증감내역 중 대체는 건설중인자산이 본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만 부(-)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또한, 보유토지에 대해 공시지가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내역을 표시해야 한다.
- 「결산작성지침」 제 4장 부속명세서 7. 일반유형자산명세서 1) 당해연도 증감명세서'에서 감가상각은 당기 중 감가상각으로 인한 비용에서 자산 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과 상계된 금액을 기재하며, 성질별재정운영표 상 감가상각비와 일치해야 한다.

### ○ 오류내용

- 유형자산 취득 및 대체 등 증가 항목의 금액이 부(-)의 금액으로 표시되었다. 취득/ 자본적 지출은(㉔) 당기중의 매입 및 자본적 지출 금액을 기재하므로 (+) 금액이 기재되어야 한다.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의 대체(㉕)는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은 (-)금액으로, 자산으로 대체된 토지, 건물 등의 계정은 (+)금액으로 하여 합계가 0이 나오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 '보유토지의 공시지가'의 전기말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의 내역이 전기 보고서와 상이하거나 당기말 내역(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이 잘못 기재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 명세서의 감가상각비 및 장부가액이 재무제표와 대사 시 불일치하였다.
- '5)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명세서' 상 '건설중인기계장치'의 당기 내역을 전기보고서 내역으로 기재함에 따라 전기 잔액과 당기 잔액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 증감명세서의 '재평가이익' 합계가 하위항목의 합계와 불일치하였다.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에서 대체와 기타증감 금액이 부적절하게 분류되어 기타증감이 대체로 표기되었다.
- 기금의 경우 조직개편으로 인한 증감이 발생할 수 없으나, 조직개편으로 인한 증감이 기재되었다.

<부속명세서 7. 일반유형자산명세서>

1) 당해연도 증감명세서

(단위: 원)

과목	기초 장부가액	증감내역							기말 장부가액	기말잔액		
		취득/자본적지출(a)	대체 (b)	처분	감가상각	감액/환입	조직개편	기타 증감		감가상각누계액	사용수익권	재평가이익
합 계		(+)	0									
토지		(+)	(+)									
건물		(+)	(+)									
구축물		(+)	(+)									
기계장치		(+)	(+)									
집기·비품·차량운반구		(+)	(+)									
전비품		(+)	(+)									
기타 일반유형자산		(+)	(+)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	(-)									

○ 오류발생 사례

- (OO부) 직전연도증감명세서상 기타일반유형자산의 대체로 증가하는 금액이 부(-)의 금액으로 표시됨
- (OO청) 구축물의 취득, 자본적지출 금액이 부(-)의 금액으로 표시됨
- (OO부 외 4개 부처) ① 당기에 비교표시되는 직전연도 보유토지 공시지가 내용과 전기 결산보고서상 내용이 상이함 ② 당기 공시지가 내역(면적, 장부가액 등)이 잘못 기재되는 오류가 발생함
- (OO실) 부속명세서상 감가상각비와 재정운영표상 감가상각비가 불일치하며, 부속명세서상 일반유형자산 장부가액과 재정상태표 상 장부가액과 불일치
- (OO부)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명세서에서 당기 내역을 전기보고서 내역으로 기재함에 따라 건설중인기계장치의 전기 잔액과 당기 잔액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오류가 발생함
- (OO부) 증감명세서의 재평가이익 합계가 하위항목의 합계와 불일치
- (OO부 외 1개 부처)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에서 대체와 기타증감금액이 부적절하게 분류된 오류(기타증감이 대체로 표기됨)
- (OO부 외 1개 부처) 기금의 경우 조직개편으로 인한 증감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당기 중 조직개편 관련 기타증감으로 조정한 전표 취소 후 결산보고서 재생성 필요하지만 조직개편 금액이 미제거된 오류
- (OO부) 건설완료로 인한 대체의 경우 명세서의 대체에 기록하여야 하나 건설중인자산의 취득/자본적지출 항목이 음수로 표기됨

## (8) 사회기반시설 명세서 오류

- 사회기반시설의 증감명세서에 해당하는 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기재하는 오류 발생
- 합계 검증 불일치 및 전기보고서 대비 당기보고서 내용 불일치
- 증감명세서의 '증감내역' 세부 분류 오류

### ○ 관련규정

「결산작성지침」 제 4장 부속명세서 8. 사회기반시설명세서 1) 당해연도 증감명세서 2) 직전연도증감명세서'는 각 부처별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 ○ 오류내용

- 전기 보고서 상 사회기반시설증감명세서에는 관련 해당사항이 없음에도 당기 보고서 상 직전연도증감명세서에는 금액 및 서술이 기재되었다.
- 부처 특성 상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 명세서에 금액을 기재하였다.
- 사회기반시설의 '증감내역' 세부 분류를 잘못하였다.

### ○ 오류발생 사례

(OO청) 사회기반시설 증감명세서 (1) 도로증감명세서 ② 직전연도 증감명세서'에서 전기 보고서에는 도로증감명세 관련 해당사항이 없음에도 당기 보고서에는 취득/자본적지출과 동일한 부의 금액의 기타증감이 기재되어 있음

(OO부 외 1개 부처) 공항자산증감명세서의 당해연도증감명세서의 사용수익권 항목, 합계란과 하위항목 합계가 불일치, 3) 향만 자산 증감명세서의 전기말금액과 당기초 금액이 불일치

(OO부) 사회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기재하거나, 기타사회기반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중인기타사회기반시설을 기재

(OO처) 사회기반시설 증가 내역을 '기타증감'으로만 분류

### (9) 무형자산 명세서 오류

- 무형자산명세서의 구분 순서가 결산작성지침에서 요구하는 순서와 상이한 오류 발생
- 증가하는 항목에 부(-)의 금액을 기재하는 오류 발생
- 기타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가 '기타증감'에 잘못 표시 되는 오류

#### ○ 관련규정

「결산작성지침」 제 4장 부속명세서 9. 무형자산명세서 1) 당해연도증감명세서 및 2) 직전연도증감명세서의 내역별 구성 순서는 결산작성지침에 따라 산업재산권/광업권/소프트웨어/기타무형자산 순으로 작성해야한다. 또한, 처분, 자산의 감액 등 감소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의 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 ○ 오류내용

- 무형자산명세서의 구분 순서가 결산작성지침 상의 순서와 상이하며, 증가항목의 금액이 부(-)의 금액으로 표시되었다.
- 취득/ 자본적 지출은(㉠) 당기중의 매입 및 자본적 지출 금액을 기재하므로 (+) 금액이 기재되어야 한다.
- 기타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가 '기타증감'에 잘못 표시되었다.

<부속명세서 9. 무형자산명세서>

#### 1) 당해연도 증감명세서

(단위: 원)

내역	기초 장부가액	취득/자본적 지출(㉠)	처분	감가상각	감액/환입	조각개편	기타증감	기말 장부가액
합계		(+)						
산업재산권		(+)						
광업권		(+)						
소프트웨어		(+)						
기타무형자산		(+)						

#### ○ 오류발생 사례

(OO부 외 2개 부처) 무형자산 내역이 결산작성지침상 순서와 상이함  
 (OO회) 직전연도증감명세서 취득/자본적지출 금액이 부(-)의 금액으로 표시됨  
 (OO부) 무형자산명세서 상 기타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가 '기타증감'에 잘못 표시 되는 오류

## (10) 국채 및 공채 명세서 오류

- 이자율이 기재 누락되었거나 표기가 잘못되는 오류 발생
- 조직개편일 기준 국채 및 공채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일 열에 금액을 0으로 잘못 기재하는 오류 발생

### ○ 관련규정

「결산작성지침」 제4장 부속명세서 10. 국채및공채명세서에서는 동일한 내역에 여러 이자율의 국채가 존재할 경우 이자율은 범위(최소이자율~최대 이자율)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 ○ 오류내용

- 이자율(㉠)이 기재 누락되었거나 표기에 오류가 발생하였다.
- 신설부처에서 국채 및 공채 금액이 존재하였으나 표기를 누락하여 조직개편 열의 금액에 기재 오류가 발생하였다.

<부속명세서 10. 국채및공채명세서>

#### 2) 장기국채및공채명세서

(단위: 원)

내역		이자율(%) (㉠)	당기말	조직개편일 또는 전기말
장기국채	합 계(G=E+F)			
	국고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종 국민주택채권			
	2종 국민주택채권			
	3종 국민주택채권			
	국제기구 출자재정증권			
	액면금액 소계(A)			
	(유동성장기국채)(B)			
	국채할증발행차금(C)			
	(국채할인발행차금)(D)			
	장부가액(E=A+B+C+D)			
(자기국채)(F)				
장기공채	...			

### ○ 오류발생 사례

(OO부) 명세서 상 이자율 기재 누락, 잘못 표기(최소이자율을 0%로 잘못 기재함)하였고, 조직개편일 열에 금액을 0으로 잘못 기재한 오류

## (11) 장기차입금 명세서 오류

- 이자율이 기재 누락되었거나 표기가 잘못되는 오류 발생
- 금액이 부(-)의 금액으로 기재
- 장기차입금명세서상 유동성금융리스부채 금액이 주식 장기차입부채상환계획에 기재된 상환예정액 금액과 불일치
- 불필요한 행 삽입되는 오류

### ○ 관련규정

「결산작성지침」 제 4장 부속명세서 11. 차입금명세서 2) 장기차입금 명세서에서 이자율은 '구분 및 차입처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분 및 차입처별'로 여러 이자율의 차입금이 존재할 경우 이자율은 범위(최소 이자율~최대이자율)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 ○ 오류내용

- 차입금별 이자율(㉠) 기재가 누락되거나 표기오류가 발생하였으며, 정부내 장기예수금의 거래처(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기재 오류가 발생하였다.
- 금융리스는 민간에서 운용하는 사업이므로 0%가 나올 수 없으나, 0%로 기재하였다.

<부속명세서 11. 차입금명세서>

### 2) 장기차입금명세서

(단위: 원)

구분 및 차입처		이자율(%) (㉠)	당기말	전기말
합계				
국내 장기차입금	소 계			
	국내장기차입금			
	(유동성국내장기차입금)			
해외 장기차입금	소계			
	해외장기차입금	소계		
		시설재		
		보험료		
		용역비		
		원자재		
		현금		
		기술료		
	기타			
(유동성해외장기차입금)				

구분 및 차입처		이자율(%) (a)	당기말	전기말	
정부내 장기차입금	소계				
	장기전대차관				
	정부내 장기에수금	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유동성정부내장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소계				
	금융리스부채				
	(유동성금융리스부채)				
기타장기민간예수금	소계				
	기타장기민간예수금				
	(유동성기타장기민간예수금)				

○ 오류발생 사례

- (00부 외 17개 부처) 차입금별 이자율이 누락되거나 표기 오류
- (00부 외 3개 부처) 기금 및 기특 등의 회계실체를 기타로 표기함
- (00청) 이자율범위 기재시 최소이자율 및 최대이자율을 작성해야 하나 다른 이자율이 표기됨
- (00청 외 2개 부처) 장기차입금명세서상 유동성금융리스부채 금액이 주석 장기차입부채상환계획에 기재된 상환예정액과 불일치
- (00부) 기타해외장기차입금을 부(-)의 금액으로 기재
- (00청) 정부내장기차입금 행이 불필요하나 기재
- (00부 외 1개 부처) 차입금별 이자율 기재내역 중 최저이자율을 0%로 잘못 기재함
- (00부) 해외장기차입금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나 금액이 기재됨
- (00부 외 3개 부처) 금융리스 부채의 최소 이자율을 0%로 기재함

## (12) 운용리스료 연도별 지급계획 오류

- 표 세로 합계 검증 오류 발생
- 총계정원장에는 운용리스료 금액이 존재하나 연도별 지급계획 작성 누락 또는 계정과목 선택 오류

### ○ 관련규정

「결산작성지침」 ‘제 4장 부속명세서 11. 차입금명세서 4) 운용리스료 연도별 지급계획’에서는 기말 현재 운용리스와 관련하여 향후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를 기재해야 한다.

### ○ 오류내용

운용리스료 연도별 금액의 합과 합계금액이 불일치하며, 총계정원장 상 운용리스료가 존재함에도 작성을 누락하였고, 실질적으로 운용리스료가 아님에도 해당 계정과목을 선택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부속명세서 11. 차입금명세서>

4) 운용리스료 연도별 지급계획(당해연도: 20X7회계연도) (단위: 원)

연도	당기말
20X8년	㉠
20X9년	㉡
20X0년	㉢
20X1년 이후	㉣
합계	㉤

위 표의 해당항목은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검증되어야 한다.

$$㉤ = ㉠ + ㉡ + ㉢ + ㉣$$

### ○ 오류발생 사례

(OO청) 운용리스료 연도별 금액의 합과 합계금액이 불일치  
 (OO부 외 5개 부처) 총계정원장에 운용리스료가 존재함에도 ‘운용리스료 연도별 지급계획’ 작성을 누락하거나 운용리스료가 아님에도 운용리스료 계정과목으로 잘못 선택한 오류

### (13) 금융리스부채 연도별 상환계획 오류

- 상환계획연도를 잘못 작성하는 오류 발생
- 민간에서 운용하는 금융리스부채의 이자율을 0%로 기재한 오류

#### ○ 관련규정

「결산작성지침」 '제 4장 부속명세서 11. 차입금명세서 3) 금융리스부채 연도별 상환계획'에서는 금융리스부채의 상환계획 금액은 현재가치 평가를 반영하지 않은 총액을 기간별로 기재하도록 하며, 현재가치 조정금액은 리스부채의 액면가액과 현재가치 평가액과의 차이금액 중 기말 현재 소멸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부(-)의 금액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리스부채의 현재가치는 연도별 상환계획 금액 합계에서 현재가치 조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며, 금융리스부채와 유동성금융리스부채의 기말 장부가액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 ○ 오류내용

연도별 상환계획표상 '연도' 구분에 '20X8년(㉠)부터 20X1년 이후(㉡)'로 작성되어야 하나 '20X7년'이 포함되거나 '20X1년 이후'가 누락되었다.

<부속명세서 11. 차입금명세서>

3) 금융리스부채 연도별 상환계획(당해연도: 20X7회계연도) (단위: 원)

연도	당기말
20X8년(㉠)	
20X9년	
20X0년	
20X1년 이후(㉡)	
합계	
(현재가치 조정금액)	
금융리스부채의 현재가치	

#### ○ 오류발생 사례

(OO처) 연도별 상환계획표상 '연도' 구분에 당해연도가 포함되거나 당해연도로부터 4년 이후(㉡)가 누락됨

#### (14) 출연비 명세서 오류

-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관을 각각 유사명칭의 다른 이름으로 나누어 기재한 오류
- 출연대상기관이 실제 명칭으로 기재되지 않은 오류
- 출연비명세서 상 금액이 성질별 재정운영표 상 출연비 합계와 불일치

##### ○ 관련규정

「결산작성지침」 ‘제 4장 부속명세서 12. 출연비명세서’ 작성시 출연대상 기관별로 당기와 전기의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 오류내용

- 출연기관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명칭으로 중복 기재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 출자대상기관이 실제 명칭으로 기재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 출연비명세서 상 금액이 성질별 재정운영표 상 출연비 합계와 불일치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부속명세서 12. 출연비명세서>

(단위: 원)

출연대상기관	당기	전기
합 계		

##### ○ 오류발생 사례

- (OO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관을 각각 유사명칭의 다른 이름으로 나누어 기재한 오류((사)OO회, OO원 등)
- (OO부) 출자대상기관이 실제 명칭으로 기재되지 않은 오류(‘기타’로 기재됨)
- (OO부) 성질별 재정운영표 상 출연비 합계와 불일치

### (15) 재원별 원가명세서 오류

- 전기 보고서와 전기 금액 및 내역이 불일치
- 당기 프로그램 순원가 금액 및 내역이 당기 재정운영표와 불일치
- 재정운영표 전기 금액 재작성 시 재원별 원가명세서에 반영되지 않아 불일치
- 반괄호 번호, 프로그램명 등 오기재
- 관리운영비가 프로그램순원가로 인식된 오류

#### ○ 관련규정

「결산작성지침」 제4장 부속명세서 13. 재원별 원가명세서에서는 중앙 관서가 운용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총원가, 수익 및 순원가 금액을 회계별로 구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총원가(A)는 정(+)의 금액으로, 수익(B)는 부(-)의 금액으로 표시하며, 순원가는 총원가와 수익의 합으로 표시한다.

#### ○ 오류내용

- 전기 금액이 전기 보고서상 금액 및 내역과 불일치하였다.
- 당기 프로그램 순원가 금액 및 내역이 당기 재정운영표상 금액 및 내역과 불일치하였다.
- 재정운영표의 비교 표시되는 전기금액 재작성으로 발생한 금액변동이 재원별 원가명세서에 반영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 동일 번호가 중복되거나 프로그램명이 재정운영표와 불일치하였다.
- 관리운영비가 프로그램순원가로 인식되었다.

<재원별 원가명세서>

(단위: 원)

	20X7			20X6		
	총원가(A)	수익(B)	순원가(A+B)	총원가(A)	수익(B)	순원가(A+B)
	㉑	㉒	㉓	㉔	㉕	㉖
<b>I. 프로그램순원가</b>						
1. 프로그램(가)	㉑	㉒	㉓	XXX	(XXX)	XXX
(1) 일반회계	XXX	(XXX)	XXX	XXX	(XXX)	XXX
(2) 특별회계(a)	XXX	(XXX)	XXX	XXX	(XXX)	XXX
(3) 특별회계(b)	XXX	(XXX)	XXX	XXX	(XXX)	XXX
(4) 기금(c)	XXX	(XXX)	XXX	XXX	(XXX)	XXX
(5) 기금(d)	XXX	(XXX)	XXX	XXX	(XXX)	XXX
...						
2. 프로그램(나)	XXX	(XXX)	XXX	XXX	(XXX)	XXX
(1) 일반회계	XXX	(XXX)	XXX	XXX	(XXX)	XXX
(2) 특별회계(a)	XXX	(XXX)	XXX	XXX	(XXX)	XXX
(3) 특별회계(b)	XXX	(XXX)	XXX	XXX	(XXX)	XXX
(4) 기금(c)	XXX	(XXX)	XXX	XXX	(XXX)	XXX
(5) 기금(d)	XXX	(XXX)	XXX	XXX	(XXX)	XXX
...						

<재정운영표>

(단위: 원)

	20X7			20X6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b>I. 프로그램순원가</b>	㉠	㉡	㉢	㉣	㉤	㉥
1. 프로그램(가)	㉦	㉧	㉨	XXX	(XXX)	XXX
2. 프로그램(나)	XXX	(XXX)	XXX	XXX	(XXX)	XXX
3. 프로그램(다)	XXX	(XXX)	XXX	XXX	(XXX)	XXX
...	XXX	(XXX)	XXX	XXX	(XXX)	XXX
<b>II. 관리운영비</b>			XXX			XXX
1. 인건비			XXX			XXX
2. 경비			XXX			XXX
(1) 복리후생비			XXX			XXX
(2) 소모품비			XXX			XXX
(3) 인쇄비			XXX			XXX
(4) ...			XXX			XXX
<b>III. 비배분비용</b>			XXX			XXX
1. 자산처분손실			XXX			XXX
2. 기타비용			XXX			XXX
3. ...			XXX			XXX
<b>IV. 비배분수익</b>			XXX			XXX
1. 자산처분이익			XXX			XXX
2. 기타수익			XXX			XXX
3. ...			XXX			XXX
<b>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b>			XXX			XXX
<b>VI. 비교환수익 등</b>			XXX			XXX
1. 부담금수익			XXX			XXX
2. 제재금수익			XXX			XXX
3. 사회보험수익			XXX			XXX
4. 채무면제이익			XXX			XXX
5. 기타비교환수익			XXX			XXX
6. 기타재원조달및이전			XXX			XXX
<b>VII. 재정운영결과(V-VI)</b>			<u>XXX</u>			<u>XXX</u>

- 위 표의 해당항목은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검증되어야 한다.

- ㉠=㉣, ㉡=㉤, ㉢=㉥
- ㉦=㉨, ㉧=㉩, ㉨=㉪
- ㉭=㉯, ㉮=㉱, ㉯=㉲

○ 오류발생 사례

- (OO부 외 3개 부처) 전기 금액이 전기 보고서상 금액 및 내역과 불일치
- (OO부 외 1개 부처) 당기 금액이 당기 재정운영표상 금액 및 내역과 불일치
- (OO부 외 4개 부처) 프로그램명이 바뀌거나 반괄호 숫자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는 등 양식작성상 오류 발생
- (OO부 외 1개 부처) 비교 표시되는 전기금액 재작성으로 인한 금액 변동이 반영되지 않음
- (OO부)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행정운영성경비가 관리운영비로 표시되지 않고, 프로그램순원가의 OO부 행정지원 프로그램으로 표시됨

## 5 기타 유의사항

### (1) 자산·부채조정명세서

-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 이 재정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 금액과 불일치하는 오류 발생
- 차이내역 간 분류 오류 발생
- 표 세로 합계 검증 오류 발생
- 각 항목별 차이금액과 서술내역상 금액이 불일치하는 오류 발생
- 차이내역에 대한 설명금액이 총계정원장과 불일치하는 오류 발생
- 자산·부채조정명세서상 금액과 개별법보고서상 금액 불일치

#### ○ 관련규정

「결산작성지침」, 「별첨1 자산·부채조정명세서」에서는 '개별법 자산·부채 금액'에는 '5. 부속서류'에 첨부된 각 개별법상 결산서상 당년도말 잔액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며,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에서는 재정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 합계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차이내역'에는 개별법상 자산·부채 금액과 국가회계기준상 자산·부채 금액의 차이내역을 '1.보고대상기관차이', '2.국가상호간채권·채무차이', '3.결산조정항목차이', '4.대상차이', '5.기타차이'의 사유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 ○ 오류내용

- 'Ⅱ.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a, b)이 재정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금액과 불일치하였다.
- '대상차이' 항목을 '기타차이'에 분류하는 등 각 항목별 차이내역 분류에 오류가 발생하였다.
- 표 세로 합계가 각 내역의 합계금액과 상이하였다.

개별법 자산·부채금액 = 국가채권현재액 + 국유재산현재액 + 물품현재액 + 국가채무합계

차이내역 = 보고대상기관차이(A) + 국가상호간 채권·채무차이(B) + 결산조정항목차이(C) + 대상차이(D) + 기타차이(E)

- 각 차이항목에 대한 서술 내역상 계정과목별 합계금액이 'Ⅲ. 차이내역'의 각 차이 항목별 금액과 불일치하였다.
- 각 차이항목에 대한 서술 내역상 금액이 총계정원장상 금액과 불일치하였다.
- 자산·부채조정명세서상 'I.개별법 자산·부채 금액'과 개별법보고서상 금액 불일치

<자산·부채조정명세서>

(단위: 원)

구분	자산	부채
<b>I. 개별법 자산·부채 금액</b>	XXXX	XXXX
1. 국가채권현재액	XXXX	-
2. 국유재산현재액	XXXX	-
3. 물품현재액	XXXX	-
4. 국가채무합계	-	XXXX
<b>II.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b>	㉞	㉟
<b>III. 차이내역 (II - I =A+B+C+D+E)</b>	XXXX	XXXX
1. 보고대상기관차이(A)	XXXX	XXXX
2. 국가상호간 채권·채무차이(B)	XXXX	XXXX
3. 결산조정항목차이(C)	XXXX	XXXX
4. 대상차이(D)	XXXX	XXXX
5. 기타차이(E)	XXXX	XXXX

## (2) 결산개요

- 구체적인 증감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금액만 기재
- 재무제표는 수정하였으나, 결산개요는 미변경
- 필수 기재 대상 행 누락
- 표의 금액과 하단의 설명금액이 불일치
- 백만원 단위로 표시해야 하나, 원단위로 기재

### ○ 오류내용

- 증감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로 금액만 기재하였다.
- 재무제표 금액은 수정하였으나, 결산개요 금액은 수정하지 않았다.
- 표에 기재한 금액과 설명에 기재한 금액이 불일치하였다.
- 백만원 단위로 기재해야 하는 금액을 원단위로 기재하거나, 단위명 기재를 누락하였다.

### ○ 오류발생 사례

- (OO부 외 20개 부처) 증감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금액만 기재
- (OO부 외 2개 부처) 재무제표 금액은 수정하였으나, 결산개요 금액은 수정하지 않음
- (OO청) 백만원 단위로 기재해야 하는 금액을 원단위로 기재하거나, 단위명 기재 누락
- (OO청 외 6개 부처) 표에 기재한 금액과 설명에 기재한 금액이 불일치

## 집 필 진

###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과 장 김 선 길  
회계결산과 사무관 장 시 열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팀 장 현 지 용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회계사 최 금 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회계사 임 종 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회계사 오 가 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회계사 곽 섭 이

## 2018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결산담당자용)

---

---

2018년 11월 일 인 쇄  
2018년 11월 일 발 행

발간등록번호 : 11-1051000-000605-14

발 행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  
전화 : (044)215-5436  
팩스 : (044)215-8128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홈 페이지 : <http://www.moef.go.kr>

인 쇄 : (주)삼일기획 (044)866-3011

---

2018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